고령화 사회의 사회정책 개혁

머 리 말

1998년 OECD와 G7 정상들은「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보고서에서 출발한 정책 원칙 들의 수행에 대한 국가별 진도 보고를 요구했다. 1999년 최근의 개혁 보고를 요청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설문에 제시된 가상적인 개혁 모형과 실제 개혁을 비교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도구가 사용되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얻어진 교훈들을 적시하여 다른 회원국들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개혁(정책)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들은 연금과 노동 유인의 강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 고령 인구의 건강 및 보호 욕구, 그리고 큰 증가율의 개인연금 저축을 다루는 금융시장의 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 결정적인 도전(문제)은 고용상태로 보내는 시기가 줄어들고 은퇴후 기간이 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어떻게 느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 공고화 역시 개혁의 주요 동인이었으며 그 결과 더욱 다양한 은퇴수입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세금과 소득 사이의 보다 나은 균형.

근로와 은퇴의 최근 경향과 맥락을 살펴볼 때, 최근의 개혁에서 출발점은 퇴직제도와 자금조달에 대해 제도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모니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출간물은 회원국들이 제공한 많은 개혁과 교훈들을 기술하고 있고,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요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트 북"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9개 OECD 회원국들에 고령화가 드리운 새로운 압력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이 책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간되었다.

OECD 2000

차 례

서 론 ····· 1

제1부 ····· 9

연령 연계 개혁 정책의 도입과 추진

1 ▸ 퇴직 유인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 11
2 ▸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연령제한 없는 직장은 가능한가? ····· 26
3 ▸ 재정 공고화-많은 국가에서 가시적으로 진행 ····· 38
4 ▸ 퇴직소득 보장 개혁 ····· 49
5 ▸ 보건과 장기요양-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 ····· 78
6 ▸ 금융시장 ····· 92
7 ▸ 전략적 틀-몇 가지 질적 고려사항 ····· 104

제2부 ····· 109

퇴직과 활기찬 노년기로의 전환

8 ▸ 퇴직으로의 전환 ····· 111
9 ▸ 경제활동기와 은퇴기의 생활시간 소비 경향 ····· 129
10 ▸ 일부 국가에서의 개인적 · 사회적 고령화 시나리오 ····· 137

결 론 ····· 151

부록 1. 설문에 대한 주 ····· 161

부록 2. OECD 29개 국에서의 고령화 압력과 정책대응 ····· 163

호주 ····· 164
오스트리아 ····· 168
벨기에 ····· 172
캐나다 ····· 176
체코 ····· 180
덴마크 ····· 184
핀란드 ····· 188
프랑스 ····· 192
독일 ····· 196
그리스 ····· 200
헝가리 ····· 204
아이슬란드 ····· 208
아일랜드 ····· 212
이탈리아 ····· 216
일본 ····· 220
한국 ····· 224
룩셈부르그 ····· 228
멕시코 ····· 232
네덜란드 ····· 236
뉴질랜드 ····· 240
노르웨이 ····· 244
폴란드 ····· 248
포르투갈 ····· 252
스페인 ····· 256
스웨덴 ····· 260
스위스 ····· 264
터키 ····· 268
영국 ····· 272
미국 ····· 276

표 차례

<표 2-1> 필란드-고령화와 취업생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 29

<표 4-1> 덴마크와 캐나다의 소득구성 ····· 54

<표 4-2> 주요 OECD국가들의 빈곤 지표 ····· 73

<표 5-1> 2020년까지 공적 장기 요양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계 ····· 79

<표 6-1> GDP 대비 연금 기금의 금융 자산(%) ····· 94

<표 6-2> 고령화사회에서 번영 유지 보고서에 의해 추천된 사용자(기업)연금방식의 규제원칙 ····· 96

<표 8-1> OECD 국가의 인구 대비 고령남성 취업비율 : 1983-1998 ····· 114

<표 8-2> OECD 국가의 인구 대비 고령여성 취업비율 : 1983-1998 ····· 115

<표 8-3> 몇몇 OECD 국가의 이탈율 ····· 116

<표 8-4> 계약직 ····· 117

<표 8-5> 자영업 ····· 120

그림 차례

〈그림 1-1〉 생애기간 노동시장참여 현황 ····· 13
〈그림 1-2〉 생애기간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여실태 ····· 14
〈그림 2-1〉 고령 근로자(45~59세 및 60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에 대한 구성비(퍼센트) ·· 27
〈그림 3-1〉 인구학적 · 노동시장 경향에 따른 재정 압박 ····· 39
〈그림 3-2〉 일반 정부 재정 부채, 1983-2001, OECD 평균 ····· 40
〈그림 3-3〉 총/순 재정 부채, 1997 ····· 40
〈그림 4-1〉 노인의 소득원 ····· 51
〈그림 4-2〉 은퇴 전 소득 대비 노인 소득 ····· 71
〈그림 6-1〉 지역별 연금 기금의 총자산 연평균 성장률 1990~96 ····· 93
〈그림 8-1〉 1990년 중반 취업 및 연급수급 지위에 따른 고령남성 퇴직 유형 ···· 122
〈그림 8-2〉 55-69세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비율 ····· 125
〈그림 8-3〉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비율 ····· 126
〈그림 8-4〉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활동의 재분배 ····· 127
〈그림 9-1〉 7개국 평균 및 일부 국가의 성별, 연령별 생활시간 소비 유형 ····· 131
〈그림 9-2〉 캐나다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 소비 유형(1992년) ····· 133
〈그림 9-3〉 일부 국가의 성별, 연령별 시간소비 유형 ····· 134
〈그림 10〉
고용 및 비고용 년수 (남성/여성) ····· 138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 143
총고용인구 점유율(각 국가와 OECD 평균) ····· 143
피용인구 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148
총고용인구에서의 점유율 ····· 148

서 론

서 론

요 약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의 인구 및 노동력 추이는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해 왔다. 취업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여 왔다. 남성의 경우 일생 동안 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남성 취업자는 과거에 비해 조기에 퇴직하고 일단 퇴직한 후에는 보다 오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생애 취업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쇄되었으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오히려 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가능인구에 속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우호적인 경향은 5~10년 이내에 역전될 수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퇴직 인구를 포함한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OECD는 1998년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인구변동이 재정, 경제 및 사회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퇴직 연령 변화의 잠재적 효과 등 개별 OECD 국가에 미치는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가 단행한 최근의 주요 개혁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 있어서 노령 근로자의 취업가능성을 지원하고, 노령인구의 건강과 요양 욕구에 부응하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적 연금저축(private pension savings)을 취급하는 금융시장의 작동을 개선하는 개혁정책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의 시스템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개혁정책 의제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재정시장,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책 개혁을 통해 지원이 증가하면 고령화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퇴직 전이와 퇴직소득의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는 보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생애 취업기간이 보다 짧아지고, 퇴직 후 기간이 보다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느리게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안정화(fiscal consolidation)가 개혁의 주요 동력이며, 공공과 사적 연금의 균형, 조세제도,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 등 보다 다양한 퇴직소득 시스템은 주요 성과가 될 것이다.

보다 활발한 사적 연금 활용은 노령인구의 소득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개혁정책은 자본소득이 장래에는 점차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조기퇴직 경향의 결과로 현 노령인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조기퇴직 경향은 과거 수년 동안 정체상태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개혁 추이로 볼 때 근로소득이 장래에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퇴직 재정부담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최근의 개혁 의제는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필요한 재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새로이 나타나는 의제는 퇴직 후 기간의 장기화와 생애 취업기간의 단축 경향을 역전시키는데 주어지게 된다.

발생하는 변화의 규모와 새로운 정책 의제의 형태는 세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담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 있어서 조기퇴직의 경향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 활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조기퇴직경향이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늦게 퇴직하는 경향에 대한 증거는 없다. 또한 퇴직이 보다 유연해 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퇴직과 활발한 고령화(active ageing)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과거의 노인은 주로 일로 시간을 보냈다면, 대부분의 현 노인들은 퇴직 후 TV 시청이나 수면 등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균형과 같은 잘 알려진 정책 논쟁들은 퇴직 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역할이 장래에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

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점차 맞벌이부부 양측의 근로소득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노년기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매우 긴 노년기의 수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OECD를 포함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경향을 모니터링 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니터링은 취업 기간과 퇴직 기간의 균형과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퇴직제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효과적인 개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료(특히, 비교 가능한 체계적인 정보)의 괴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은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7가지 행동 원칙의 견지에서, 연령과 관련된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그 진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행동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연금체계, 조세체계 및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들은 조기퇴직에 대한 재정적 유인(인센티브)과 만기퇴직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디스인센티브)을 제거하기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
2. 노령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3.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공공부채부담은 축소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적 연금 급여에 있어서의 단계적 감축과 기여율에 있어서의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
4. 퇴직 소득은 조세와 이전소득 체계, 기금 체계, 사적 저축과 근로소득의 혼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위험 분산, 세대간 부채-분담의 적절한 균형에 있으며, 개인들의 퇴직 결정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5. 보건과 장기요양에 있어서는 비용 효과성에 보다 많은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의료 지출과 연구는 신체적인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허약노인에게 요양을 제공하는 명백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6. 선적립방식의 연금체계 개발은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재정시장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장기에 걸쳐 고령화 개혁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책의 이행 및 국민적 합의와 지원획득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틀(구상)이 국가 차원에서 당장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7가지 영역에 걸친 개혁정책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조사표가 1999년 봄 OECD 국가에게 송부되었다. 또한 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로서의 임의적인 개혁정책과 실제 개혁정책과의 비교도 요청하였다. 비록 정교하지 않은 조사표이었지만,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대략적인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슈의 중요성과 근년에 이루어진 정책개혁의 규모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개혁의 결과로 이미 강력한 정책을 시행중인 강력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개혁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 특성이 보다 점증적(incremental)일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는 잘 작동되고 있는 현존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표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특정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흩어져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초점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의 새로운 개혁 정책 동향을 검토하는데 있으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을 비교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 제1부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개혁은 잘 이행되고 있으며, 퇴직에 대한 이해나 재정지원의 방식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7가지 행동원칙은 미세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목적은 퇴직에 대한 정보 및 취업 중이거나 퇴직 후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정보 등 취업-퇴직 전이와 활동적인 고령화와 같은 주요 주제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2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보는 OECD 국가 중 9개국을 대상으로 OECD 사무국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소득보장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의 초기 산물이다. 제2부는 생애과정에서 개인이 취업에의 진입과 퇴출에 소비하는 시간 등 정책적으로 조절 가능한 영역과 인구의 고령화와 같이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에 걸쳐 분석대상 국가의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에 관하여 필연적인 것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정책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목적은 개별 국가의 고령화 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의 부록 2에는 인구 및 고용 동향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개별 국가의 기초자료가 차트북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연령과 관련된 개혁을 시도할 때 연구자가 다른 나라의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보다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표의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 내용 및 본 보고서의 개발과정에 대한 기술은 OECD 웹 사이드(www.oecd.org/ subject/ageing)에 수록되어 있다. OECD 웹사이트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가 정보에 대한 참고문헌이 수록되어 있다.[1)]http：//www.oecd.org/subject/ageing/awp3_4e.pdf

1) OECD(1999). *A Caring World：The New Social Policy Agenda*. 이 보고서는 1997년까지의 개혁동향이 서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보고서는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oecd.org/subject/ageing/awp3_4e.pdf

•

제 1 부

연령 연계 개혁 정책의 도입과 추진

제1장
퇴직 유인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요약 및 주요결과

1998년 발표된 OECD 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는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책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및 공공부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퇴직자 규모의 증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 노동력 규모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은퇴를 결정하는 개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가능 노동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야기되는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력 감소 현상이 단순히 조기퇴직 이후 보다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시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들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퇴직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로워야 하며, 퇴직 후 전개되는 제3의 인생기에 집중된 여가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론적으로 활발한 고령화(active ageing)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조기퇴직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조기퇴직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에게 자신의 퇴직시기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노력이 지난 수년간 이루어져 왔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 문제를 공공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히 야심 찬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연금제도에 있어 근로유인책이 강화되거나, 장애수당 및 실업급여와 같이 조기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적 수단에 이르는 다른 경로들이 폐쇄 또는 제한되었

으며, 취업상태에서 퇴직에 이르는 점진적인 전환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학문적 연구, 정책계획 수립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행되고 있다.

사실, 기존의 공공 정책은 조기퇴직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업률을 낮추는데 조기퇴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수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동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혁의 정도는 상당히 다르지만 최근의 정책들은 은퇴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취업에서 퇴직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지지하는 명시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기간 연장을 방해하는 정책을 제거할 것인가 또는 보다 장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아직 없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초기 연금제도 개혁의 효과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개혁의 효과성은 수년간 진행되는 개혁의 영향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동시에 개혁에 대한 노동시장이나 경제상황의 반응은 물론 인구구조나 규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논의하게 될 제1차 개혁은 조기퇴직 경향을 완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 황

인구현황 및 노동시장 여건을 볼 때, 퇴직자 수와 비교하여 생산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고령화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 OECD 국가의 사회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보다 일찍 퇴직하고 은퇴 후에는 과거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되며,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 즈음 퇴직연령에 도달하여서도 현재의 조기퇴직 경향이 지속된다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연금을 수급하고 기타 연령과 관련된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1-1은 OECD 전체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 현황을 보여주는데, 조기퇴직 경향에 있어 기대될 수 있는 역전현상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예측한 결과이다. 동 가정(assumption)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인데(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장에 제시하였음),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60년 수준으로 전환된다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1. 생애기간 노동시장참여 현황

A. 생애기간 중 취업 및 비취업 기간

남성의 근로기간 단축 : OECD 국가 전체로 볼 때, 남성의 임금노동 참여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은퇴 후 시간이 훨씬 증가하였다. 1960년, 남성의 평균수명은 68세이고 이 중에서 50여년은 고용상태에 있었다. 현재, OECD 국가 남성의 평균수명은 75세 가량 되지만 이 기간 중에 약 절반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남성의 근로연한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여성의 근로연한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인구대비 노동시장 참여율 및 취업률

인구고령화의 영향과 인구구조 : 남성의 근로연한 단축의 영향은 인구고령화 및 여성의 취업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되었다. 또한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인구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취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유지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기에 이르면 전체 인구에서 취업한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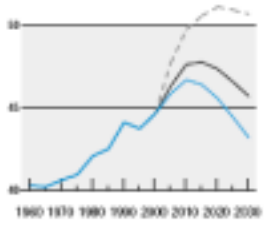

C. 시나리오 유형별 취업률 변화

취업률은 남성의 경제활동참여 유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첫 번째 추계는 현재의 경향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두 번째 추계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마지막 추계는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의 결과로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상쇄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비율이 향후 20여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 들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생애기간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여 실태

55~56세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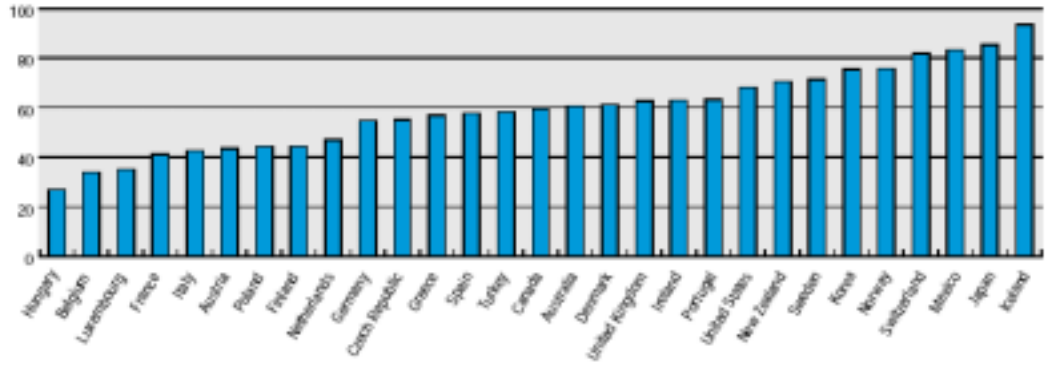

전체 55~65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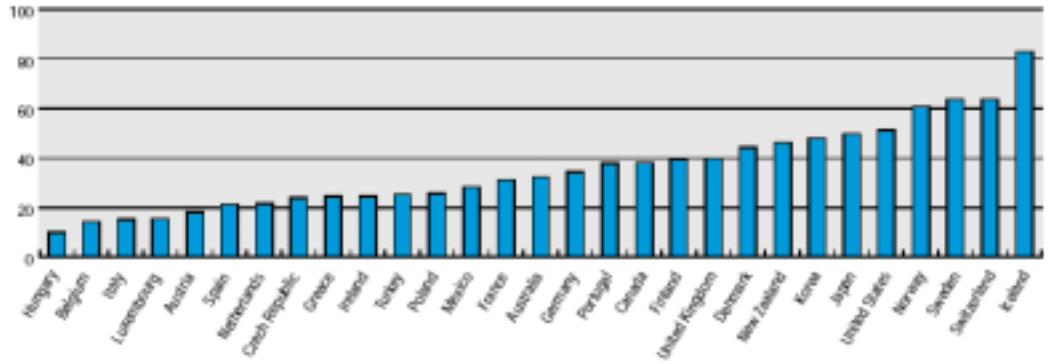

전체 55~65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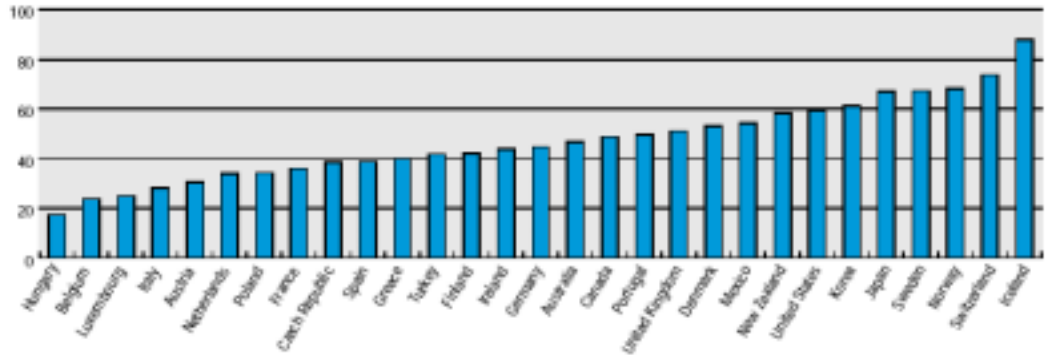

자료 : OECD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난 조기퇴직의 영향은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을 낮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그림 1-2와 같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55~64세 인구의 60%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헝가리, 벨기에,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들 연령층의 30% 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취업 및 퇴직과 관련된 최근 자료 및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취업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추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그림 1-1과 같이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는 시나리오 검증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질문에 대한 각 국의 응답은 개괄적인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퇴직유인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각국의 현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국가일수록 서둘러 개혁방안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일부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기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개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 추진은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개혁 동향

연구, 계획, 그리고 합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는 노인정책팩키지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동 정책팩키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55~65세 인구의 취업률을 현재 25~3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령에 대하여 다소 비전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연금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고용에서 은퇴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노동시장참여 형태 등을 포함하여 생애단계별 특성 및 변화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자료수집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스 1.2 참조).

연금제도 근로유인책의 수정 - 연령기준의 개혁

퇴직연령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생애기간 동안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비교하여 은퇴 후 보내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OECD 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은퇴기로의 급작스러운 전환과 조기퇴직 관행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동시장참가율이 괄목한 만한 증가를 보인 것은 좋은 사례이다. 뉴질랜드와 같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혁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한편,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의 수급연령도 상향조정되고 있다(박스 1.4 참조).

연금제도 근로유인책의 수정 - 기여와 급여의 연계

연금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많은 연금수급액 산출공식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간의 취업에 대한 벌점요인(예를 들어, 연금수급액 수준이 최종 또는 최고 임금수준에 준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기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정 연령 이후의 노동시장 참가는 연금수급액 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은 전체 생애기간의 기여정도에 따라 수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일종의 재정적 보상을 담보하는 것이다. 박스 1.5에서는 이러한 개혁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 또한 다른 개혁방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예시는 박스 1.6에 제시되어 있다.

은퇴에 이르는 일부 경로의 폐쇄 또는 제한

보편적인 연금수급 경로는 필요에 따라 공적 연금의 수급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장애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의 수급경로와 같은 다른 대안적 경로와 상호보충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퇴직 경로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고령 근로자들을 기업에서 퇴출시키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퇴직에 이르는 이러한 보충적 경로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박스 1.7에서는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조기퇴직 및 다른 공공 부조 제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질병급여 또는 장애연금의 남용에 따르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박스 1.8은 장애연금제도의 개혁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은퇴경로의 강화 - 점진적 전환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 전환과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생애기간 동안 개인의 기여 정도와 연금수급 수준을 연계하는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 이러한 시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개혁방안들은 퇴직 직전의 임금수준에 연금수준이 연동되도록 하는 과거 연금제도의 비유인(disincentives)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있다.

박스 1.9는 퇴직으로의 전환이 보다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부분 연금수급을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단순히 시간제 근로를 촉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참여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단

그림 1-1에 나타나듯, OECD 국가의 인구현황이나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취업률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퇴직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퇴직연령과 관련된 이슈는 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특정 연령층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층에서 취업률을 제고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방안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논의의 필요성 때문에 연금개혁에 있어 많은 국가에서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 및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박스 1.1. 은퇴 유인과 노동력 공급-「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목표

원칙 1. 공공연금체계, 조세체계 및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들은 조기퇴직에 대한 재정적 유인(인센티브)과 만기퇴직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디스인센티브)을 제거하기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

OECD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의 분석에 의하면 조기퇴직 유인책이 보편화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시킴으로써 개인의 기여기간을 확대하고 지출부담을 감소시켜야 함.

아울러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다른 공공 부조제도 및 다양한 사회정책의 개혁을 필요로 함. 이들 개혁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연금의 전액수급을 위하여 개인의 기여기간을 연장하고 생애기간의 수급수준과 기여수준을 연계함. 적어도 수급액은 총 근로기간 동안 축적되어야 함.
- 고령취업 기간에 연금소득의 기준 및 그 밖의 고령취업을 억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함.
- 연금수급 연령 및 조기퇴직의 최소연령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조기퇴직 연령기준을 직역연금 및 노령연금과 연계시켜야 함.
-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제거되어야 함.
- 고령자에 대한 장애수당이나 실업수당 및 기타 사회정책의 선호경향이 제거되어야 함.

박스 1.2. 은퇴기로의 전환에 관한 실증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선두적 역할

미국 정부는 고령근로자 및 최근 퇴직자의 생활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10년 주기 센서스 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가구단위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인구동향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나 전국소득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는 미국인의 고용과 퇴직경향이 반영되는 조세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자료가 여러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자료수집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퇴직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지원으로 실시되는 보건 및 퇴직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는 퇴직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저축 그리고 사회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동 조사는 1992년 51~61세 인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매 2년마다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매 조사마다 새로운 코호트 집단이 추가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자 자산 및 건강 조사(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Oldest Old Study)와 함께 51세 이상 미국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함.

이러한 실증자료는 경제활동참가 경향을 비롯하여 퇴직유형, 연금 및 의료보호체계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과학적 증거확보를 가능케 하여 조세정책 및 각종 사회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박스 1.3. 노령퇴직수당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한 뉴질랜드의 시도는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뉴질랜드 은퇴자의 주 수입원은 노령퇴직수당(New Zealand Superannuation)으로서, 이는 소득조사를 근거로 하지 않는 보편적 연금제도임. 기혼부부에 대한 최소 연금수준은 이들의 평균 소득의 65% 수준이며 조세 및 부과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 뉴질랜드의 노령퇴직수당은 연금수급자의 종사상 지위나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연금수급액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참여에 대한 직접적 유인책은 아님. 더구나 동 제도의 재원이 일반조세에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와 연결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도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노령퇴직수당 수급연령은 퇴직시기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고령취업에 따르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노령퇴직수당의 수급개시 연령이 9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되었는데(2001년 완성),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고, 다소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지만, 뉴질랜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음.

이러한 성공 원인 중에 하나는 정책의 변화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즉, 60세에 근접하고 있는 노령퇴직수당 수급 예정자에게 새로운 전환기 퇴직수당(Transitional Retirement Benefit)이 제공되었음. 전환기퇴직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수당액이 차이가 있으며, 노령퇴직수당 수급 3년 전부터 지급 되었음. 한시적 수단으로서 동 제도는 노령퇴직수당 수급연령인 65세까지만 지급됨.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 61세 남성의 취업률은 38.1%에서 58.5%로 20% 포인트 증가하였음. 또한 50대 후반 남성의 취업률도 3%에서 7% 포인트 증가하였음. 여성의 경우에도 취업률 상승이 나타났지만, 남성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음.

노령퇴직수당의 수급연령이 상향된 결과 재정적 이득도 뚜렷하게 나타났음. 1997년, 수급연령이 63세에 이르자 수급자규모는 1992년 노령퇴직수당과 보훈대상자 규모보다 55,000명이 감소하였음. 이로서 GDP의 2.5%에 이르는 600백만NZ$를 절약할 수 있었음.

한편 노령퇴직수당 수급연령을 연장하자 동 제도의 영향을 받는 연령층의 취업률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음.

이는 60세 이상 63세 이하 인구 가운에 일부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질병수당, 실업수당 등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규모였음.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퇴직 후 기대수명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임. 즉, 인간의 연장된 수명이 추가적인 노동시장 참여의 형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

박스 1.4.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사례

일본 : 고정연금에서 소득연계 연금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1994년 이루어진 연금제도개혁에서 고령근로자 연금의 고정연금 부분에 대한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음. 동 개혁은 2001년에서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현재는 2013년에서 2025년까지 고령근로자연금의 임금연동 부분에 대한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제출 상태임. 고정연금부문과 임금연동부문에 대한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70세임.

영국 : 여성의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없음.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예상과 달리 반대의견이 없었음. 동 개혁은 현존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보장할 것을 합의하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결과 확정되었음. 영국의 사례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개혁과정 홍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 : 연급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였음.

1983년 시작된 연금제도의 개혁은 2000년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동 개혁은 62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금급여수준을 삭감하고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퇴직연령을 연장하는데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광범위한 개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이슬란드 : 이미 실제 퇴직연령이 상당히 높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지난 1997년도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금수급이 60세부터 이루어지는 기준의 폐지가능성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노동력 수요가 높고 강력한 근로 동기에 따른 것이었음. 아일랜드의 연금제도는 근로연한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완전연금수급은 70세부터 이루어짐.

이탈리아 : 근로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을 시도하였음.

1992년 이후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였음. 예를 들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금수급을 위한 총 기여기간은 2010년까지 20년에서 3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며, 장애수당 수급기준이 강화될 것임. 이러한 개혁이 생애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호주 : 고령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고령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연금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남성이나 61.5세 이상의 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음.

1998년 연금법에 의하여 65세부터 70세 까지 매월 0.8%씩 연금수급액이 증가되고 있음. 아울러 소득기준에 의한 사회보장수당의 수준이 낮지만, 연금은 노동시장 참여 기간에 따라 증가됨.

벨기에에서는 여성의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 여성과 남성의 퇴직연령이 거의 유사해졌음.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는 여성의 연금수급액은 40년 경력에서 45년 경력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 될 것임. 동 경력기준에 충족될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며 최소 경력기준은 2005년까지 35년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임. 저임금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새로운 최소지원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 경우 15년 경력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수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음. 한편, 최근 근로시간의 유연화 경향 및 고령자의 시간제 근무 선호 등을 연금제도에 반영 하기 위하여 조기연금 퇴직연령(pre pension retirement age)을 58세로 상향조정 하였음.

프랑스 :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민간부분에 대한 개혁은 1993년부터 이루어졌으며, 3대 개혁안건을 포함함. 첫째, 2008년에 적용되는 임금연동 연금수급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용기간을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함. 둘째, 소득 및 연금수급액은 물가에 연동함. 셋째,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서 연금제도 기여기간을 세대 당 1쿼터로 계측하여 총 150쿼터에서 160쿼터로 확대함. 이러한 개혁은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내에서 수반되도록 하였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핀란드 : 조기퇴직 연령제한이 상향 조정되었음.

1944년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조기퇴직 가능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기퇴직 최소연령은 2002년까지 56세를 유지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개혁은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법안이 계획되고 있음.
기타 국가의 유사한 연금개혁 사례 :

포르투갈은 여성의 공식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음.

그리스의 새로운 연금제도는 성별 및 민간 공공분야에 상관없이 퇴직연령을 65세로 연장하였음.

헝가리의 공식 퇴직연령은 성별에 관계없이 62세로 연장 될 것임. 과도기의 조기퇴직자는 급여수준의 삭감을 경험하게 됨.

한국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개혁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2013년에 61세로 연장하고 매 5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에 도달예정임.

박스 1.5. 급여 및 기여기간 변화를 통한 근로유인책 확대 방안

연금제도를 생애기간의 총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아일랜드에서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였음.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생애기간의 총 임금이 연금수준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고 있음.

급진적인 **스웨덴**의 개혁은 근로유인책인 동시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준과의 자동적 연계를 포함하는 것임.

스웨덴 연금개혁의 골자는 61세 이후 퇴직자의 연금수준을 생애기간 동안 개인의 기여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임.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연금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유지될 것임. 또한 연금수급액 산정에 각 연령 코호트별로 기대수명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아일랜드의 연금개혁은 보다 장기간의 기여를 요구함.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고령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임금연계 사회보험 기여연한을 2012년까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보충적 사회보험은 전체 고용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들도 연금제도 안으로 유입하였음. 이는 모든 소득이 보충적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연금수급액의 산출에 있어 퇴직전 최근 5년을 고려하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총 10년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박스 1.6. 퇴직연령 연장을 통한 연금개혁의 사례

그리스 : 연금제도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소 퇴직연령을 제안하였음.
1983년 소개된 새로운 제도에 의해 그리스 연금 제도는 한층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 또는 민간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자는 기여기간, 퇴직연령, 최소 수급기준 등을 법적으로 보장 받음. 비록 과거제도에 비하여 덜 관대하지만, 최초로 최소 연금수급 연령을 법적으로 고시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연금수급 연령은 42세임. 과거에는 공공부문 취업자에 한해 최소 연령이 아니라 최소 취업기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었음.

체코 :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퇴직연령의 단계적 연장을 실시하였음.
연금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6년 처음 소개된 신연금보험법(New Act on Pensions Insurance)에 근거하고 있음. 동 법에 근거하여 연금수급액은 개혁이 완전 정착되는 2015년부터 과거 30년간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임.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권한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연령의 단계적·점진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음.

터키 : 초기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연장하였음.

현재로서는 제2단계 연금개혁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음. 제1 단계는 최소퇴직연령의 연장과 최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기여 기간의 연장 및 긴급수단의 동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이었음. 제2 단계는 2000년도 말부터 적용된 개혁으로서 사회보험기관의 행정능력을 개선하고 보편적 보건의료제도의 도입 및 민간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박스 1.7. 퇴직경로의 차단 또는 제한 개혁 사례

핀란드 : 장애연금보다 재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근로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차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태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

노르웨이 : 노동시장과 협력하여 조기퇴직을 지양. 노르웨이는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조기퇴직계약제도(Contractual Early Retirement Scheme)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시간제 근로연금 수급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음. 조기퇴직계약제도는 기업과 행정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기퇴직과 관련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쟁점이 되었음.

네덜란드 : 부과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유동적인 확정기여방식으로 대치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비용과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함.

폴란드 : 조기퇴직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재구조화 과정에서 융통성을 필요로 하였음.
폴란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령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일례로 조기퇴직 관련 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러나 재직자연금급여(pre retirement benefits)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근로자 삭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수단이었음.

아이슬란드 : 장애수당 수급기준이 강화되었음. 장애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의료기록에 의한 장애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아울러,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일지라도 재활노력을 강조하는 입법 조항을 발의하였음.

독일 : 실업수당을 삭감하였음. 조기퇴직 유인책이 제거되는 데에는 1996년 실행된 점진적 은퇴촉진법 (Law to Promote Gradual Transition to Retirement) 의 영향이 컸음. 60세부터 실업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노령연금 제도를 수정한 것인데, 이는 실업 수당과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오스트리아 : 1996년 조기퇴직 유인책을 제거하는 대신, 조기퇴직 대상 최소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해당 노동자들은 연금재정으로 마련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음.

덴마크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조기퇴직제도의 접근성을 제한하였음. 또한 50~59세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당제도를 폐지하였음. 동 개혁은 60세 이후 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점진적 퇴출을 지향하고 있음.

박스 1.8. 영국 장애프로그램의 개혁

지난 70~80년대 영국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질병급여 수급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건강수준의 악화와 관계없이 일어난 현상으로 무노동 수급자 규모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정적인 것임.

개인적 차원 : 장애급여에 의존하는 삶은 소득의 감소 및 미래 연금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약화

거시경제적 측면 :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발생

정부재정 측면 : 지난 20여 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장애급여 관련 지출은 현재 GDP의 3% 수준에 이르고 있음. 정책변화의 노력 없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공부문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 발생 우려

정책적 대응

지난 5년간 장애급여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거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199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기존 의 질병급여(Sickness Benefit) 와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대신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폐질급여 (Incapacity Benefit)를 도입하였음. 이 급여제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함.

이 패키지는 기술증진 및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상담과 구직 서비스 제공, 훈련 보조금 등을 지급함. 이 시범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후 프로그램은 2000년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것임. 약 110,000명이 개인 상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45,000명이 고용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위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정부는 고용주에 의한 연령 차별을 감소하기 위한 “고용조건에서의 연령 다양화를 위한 실행법령”을 이슈화함으로 여론의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활동 영역에서 변경되어, 기능적 역량(functional capacity)에 대한 질병 또는 장애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함. 검사는 개인이 공공부조를 받는 조건으로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첫째, 급여 구조의 변경으로 폐질급여의 급여 수준이 질병급여 보다 낮음. 둘째, 수급기준이 직업 관련 노동참여가 요구되지 않을 정도의 무력 상태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상되었음. 따라서 수급대상자의 기술이나 경력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이전의 체계와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임. 한편, 이러한 개혁이 고령자 조항과 함께 도입되었기 때문에 노령급여에 대한 유입에 비해 상대적 유입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을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Disabled People) : 폐질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기간의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신정책이 시범 운영되고 있음. 시범사업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는 50세 이상이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증가와 장애발생이 정적 상관관계.

50세 이상 인구에 대한 뉴딜정책 : 50세 이상 인구에 대한 뉴딜정책은 노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패키지임. 이 패키지는 현금지원을 포함하는데, 50세 이상 인구 또는 전일근로(시간제 근무의 경우 40파운드)를 하는 이들이 부양하는 배우자가 50세 퇴직자인 경우, 또 6개월 이상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간 주당 60파운드의 현금 고용 수당을 지급함.

한편, 고령인구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 노령화 (Active Aging Project)”프로젝트가 도입되었음.

초기 결과

가장 최근에 남성 노인의 고용율이 다소 증가하는 변화가 확인되었음. 이는 전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 이며, 이러한 증가의 일부는 아마도 경제성장의 효과일 수 있음. 그러나 과거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변화된 정책 기조가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박스 1.9. 새로운 퇴직경로의 강화 사례

퇴직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촉진시키는 독일법이 보편화되고 있음.

퇴직으로의 점진적 전환 촉진법(Law to Promote Gradual Transition to Retirement)은 고령자가 계속해서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55세 이상 근로자는 규정 근로시간의 절반만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임금과 연금 기여부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 보조금을 지급함. 또한 고용주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직자에 의해 일자리가 채워질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됨. 단체 협상은 현재 대부분의 생산 영역에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의 장려가 오히려 고령취업자의 일자리를 제약할 수 있음.

호주 : 연금협정은 점진적 은퇴를 장려함.

호주의 노령연금 구조는 그 자체로 퇴직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첫째, 연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빈곤 완화이지, 소득대체가 아님. 따라서 연금은 개인이 퇴직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음. 둘째, 소득조사는 개인이 은퇴시 사적 소득과 자산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이는 2000년 7월, 재화 및 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의 도입과 함께 소득조사를 통해 추가로 개혁될 것임. 한편, 호주는 건강문제를 포함한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공식적인 퇴직 연령을 초과한 일부 근로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미국 : 근로연계를 강조하는 미국의 제도는 한층 복잡하지만 보다 강력한 개인의 안정성을 제공함.

최근 미국인들은 50세 후반에 자신의 직장에서 퇴직하여 새롭게 취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일제 자문의 역할이나 시간제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장을 통해서 퇴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임. 특히, 시간제로 재취업하는 경우 연금수급과 함께 일정 수준의 임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복수 소득원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음.

아일랜드 : 조건부 연금수급으로 여성의 재취업 촉진

벨기에 :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를 지향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에서 은퇴로의 점진적 전환을 지원

스페인 : 부분퇴직제도(Partial Retirement Plan)를 도입하여 퇴직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65세 이전이면서 퇴직시기에 근접할 경우 시간제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제2장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연령제한 없는 직장은 가능한가?

요약 및 주요결과

고령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거나 특히 직업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고령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행동원칙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박스 2.1 참조). 고령화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전반적인 실업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정도와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은 개별 국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비취업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직 지원, 그리고 일반 고용 프로그램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은 대부분의 개혁이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그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는 퇴직에 대한 유인책이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특별히 고령근로자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모든 연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명백히 실업을 축소하는 경제 및 고용 정책이 포함된다. 연령차별철폐나 법정 퇴직연령 등 고령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은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는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모든 연령층을 위한 평생학습은 주요 주제이며, 작업장 건강과 재활 이슈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황

제1장에서 언급한 조기퇴직 경향은 노동력에서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1은 근로계층인구의 연령구조가 국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연령 관련 장벽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모든 연령 계층이 활용하고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고령 근로자(45-59세 및 60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에 대한 구성비(퍼센트)

45~59세 노동력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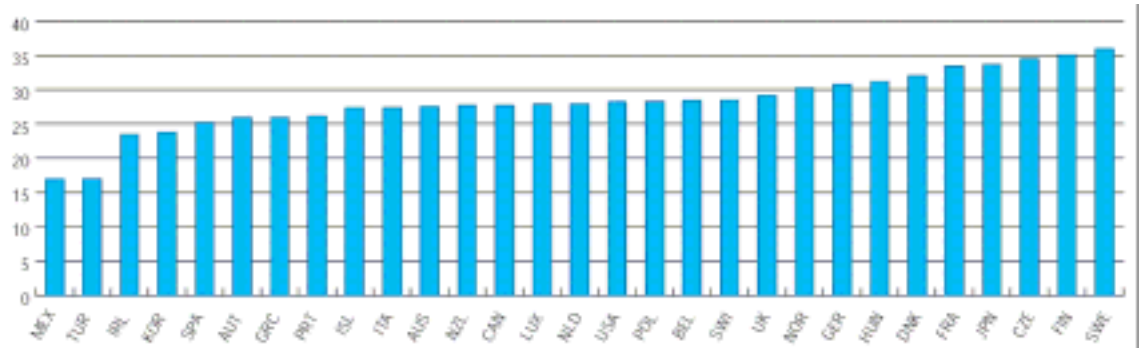

60세 이상 노동력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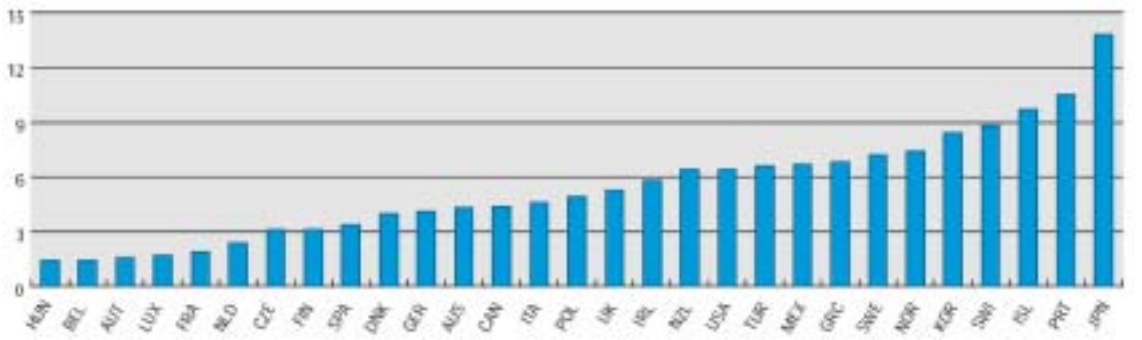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은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특별히 중요한 정책과제[2]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혁은 이러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다.

개혁 동향

고령근로자 고용 유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개혁은 강제퇴직연령의 철폐와 고령근로자를 일시 해고하거나 또는 고령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고령근로의 개념의 증진이나, 사례연구 또는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모범사례의 취합 등 유럽연합(EU)차원에서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 박스 2.2는 몇몇 국가의 개혁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령근로자 구직 지원

호주의 경험은 노동시장에서 고령구직자가 겪고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종합적인 노동시장 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통계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실업자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8가지의 요인(연령 포함)에 기반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25-39세는 3점, 50-54세는 7점, 그리고 55세 이상은 9점을 받게 된다. 또한, 45세 이상인 남성은 추가로 3점을 받게 되는데, 이는 45세 이상 여성에 비해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스 2.3은 직업이 없는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개혁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 활동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

2) 여기서도 관찰 시점은 아주 임의적이어서, 국가간 개혁의 규모에 대하여 대략적인 비교만 가능하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모니터링, 검토, 그리고 개혁의 과정에서 설정되므로 2010년 이후의 기간 동안, 55세에서 64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40대와 50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와 효과성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3) 예를 들어, “고용상 연령장벽과의 투쟁”, 생활 및 근로조건향상을 위한 유럽재단, 1997. 참조.

전 연령층을 위한 노동력 증진

호주 모델을 포함한 각국의 일련의 개혁들을 보면, 고용 정책과 사례들은 전체 노동력, 즉 전 연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최신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고령근로자가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노동력의 유연성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젊은 근로자의 작업 스케줄의 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고령화와 "근로능력"-고용가능성보다는 넓은 개념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핀란드-고령화와 취업생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제/가능성	수단/해결	결과/목표
개인	기능적 능력 건강 재능 근로동기 근로 소진 실업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원 증진 건강 증진 재능 개발 변화에 대한 적응 참여	기능적 능력 향상 건강 향상 재능 향상 근로능력 향상 소진 축소 실업위험 감소 삶의 질 향상
기업	생산성 경쟁력 상병휴가 변화에 대한 수용 근로 조직 근로 환경 채용	연령 관리 개인 해결 연령그룹간 협조 연령 인간공학 연계 근로 휴식 스케쥴 조정 유연 근로시간 파트타임 근로 맞춤식 재능 훈련	총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상병휴가 감소 관리 향상 유능한 인력 이미지 향상 근로장애비용 감소
사회	근로와 퇴직에 대한 태도 연령 차별 조기퇴직 근로 장애 비용 퇴직 비용 건강요양 비용 부양율	태도 변화 연령 차별 예방 연령고려근로정책 개발 연령고려퇴직정책 개발	연령차별 감소 만기 퇴직 실업비용 감소 건강요양비용 감소 국가 경제 향상 복지 향상

주 : 핀란드는 고령 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령근로자를 위한 의욕적인 전략개발을 하고 있다. 1998년, 2000년 고령근로자를 위한 핀란드 국가프로그램은 45세 이상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재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핀란드는 개혁의 범위가 넓고 개념적 토대로 인하여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핀란드의 개혁은 "근로 능력"이라는 개념에 중심을 둔 많은 조치계획으로 구성된 의욕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가능성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보다 친숙한 개념인 훈련, 차별금지, 그리고 홍보와 함께 개인의 건강, 근로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로능력의 증진 및 유지는 고령화와 고령 근로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다.

이 범주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의 다수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작업장에서의 관행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 효과는 대규모의 개혁보다는 작은 변화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작업생활 개혁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2.4는 주로 홍보용으로 발표된 조치계획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와 다양한 연령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인정하는 정부정책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선전용 홍보의 대다수는 1999년 국제연합 노인의 해와 일부 관계가 있다. 조치계획들은 특별히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전쟁과, 국가의 경제사회분야에서 고령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증진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의 개혁으로부터 2가지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에서 친숙한 주제가 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근로자에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4]. 또한 직업보건과 재활조치들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프로그램들은 긴 역사를 가지지만, 고령자에게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연장한다는 견지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가진다.

4)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자의 교육수준, 근로경험 및 고용가능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습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젊은이에게 집중되는 한, 젊은이와 고령자사이의 기술격차는 축소될 수 없다.

박스 2.1.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의 정책적 원칙

원칙 2. *노령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고령근로자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는 요청되는 정책적인 반응을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저해하는 특정 요인과 같은 두 가지 이슈가 있다. 또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퇴직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수단으로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핵심 정책과제는 근로자가 고령화됨에 따른 학습, 기술, 생산성, 그리고 임금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실증적인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다.
- 직업생활의 장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가능성을 획득하는 수단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를 확충한다.
- 퇴직자가 사회와 경제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요양제공 역할 포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고령근로자 채용관련 차별을 제거한다.

고령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OECD 직업 전략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른 행동조치를 유지하고 증진한다.

박스 2.2. 고령근로자의 취업유지를 위한 개혁 사례

뉴질랜드 : 강제퇴직 철폐

뉴질랜드에서는 1993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퇴직하게 하는 경우 차별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인권법은 1994년부터 발효되었지만, 특별조항은 1999년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즉, 강제퇴직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혁은, 노동시장에서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근로자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 차별금지와 훈련 영역에서의 개혁

네덜란드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철폐한 후,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는 연령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직원 채용이나 선정에 있어서 연령에 근거한 직접적인 구분이나 교육 제한 등은,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금지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피용인을 훈련하는 경우 특히 고령근로자를 훈련하는 경우 모든 고용주에게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 강제퇴직연령 철폐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연령에 근거한 강제퇴직은 철폐되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특정 연령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연금급여공식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회사에서는 (연령과 근속년수에 기초한) 집단에 속한 모든 고용인에게 조기 퇴직할 경우 퇴직보너스로서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용인들은 이러한 제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계속 일함으로써 받게 되는 가치보다 퇴직급여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식할 경우 퇴직 제안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 :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령근로자는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당에 의해 협상안이 작성된 "고령근로자 계약"은 2000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한 부분은 고령근로자의 단기근로를 위한 보조금에 대한 개혁이다. 현재, 고용주는 기업내의 예기치 못한 일시적 일지라도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월 평균) 4/5로 줄일 수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서는 회사 고용인의 대부분이 45세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단기 근로상태에 있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로시간을 1/5로 줄일 수 있다. 단기근로 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1996년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채용 시에는 재정 지원을 그리고 해고 시에는 벌칙을 가하는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 고령근로자를 위한 회사책임 강조

프랑스의 1997년 7월 새로운 지침은, 고령근로자는 내부적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긴급 원칙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1987년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실업보험에 기여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한 Delalande 기여제도(The Delalande contribution)가 도입되었다. 1992년 이 제도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되었으며, 1998년에는 기여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2개월 치의 봉급을 실업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생긴다. 게다가 여분의 고령근로자에게 계약유지가 제안된 곳에서는 "외부 재배치 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작은 회사에서는 (12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되는) 재배치 부서가 설립되었다. 이는 상

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의도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계약유지 프로그램(4개월 계약)은 회사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을 신속히 도와 근로자의 재배치 또는 훈련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스웨덴 : 고령근로자를 지원하는 "최근 고용인 우선 해고 법"

스웨덴의 55세부터 64세 사이의 고령근로자의 고용비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령근로자에게 유리한 고용보호법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경제불황기에 기업이 감원할 수 밖에 없을 때 최근 고용인 우선해고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고령근로자에게 유리한데, 이는 고령근로자는 근속기간이 대체로 길어서, 그 결과 회사에 계속 잔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은 고령근로자의 이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고용조치가 사용되었다.

일본 : 법률을 통한 정년연장

일본에는 고용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장려하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1990년대 중반 정년 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재고용 하기 위한 노력에 기반한 의무(efforts based obligation)를 포함한 몇 가지 점에서 강화되었다. 해당 기업의 거의 100%가 이를 따르고 있다.

덴마크

1997년 덴마크 정부는 고령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유지하기 위하여 고령자정책조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이슬란드 : 고령 노동력 공급확대

아이슬란드에는 (제1장에서 언급한 이유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동력 참가율이 높다. 1998년의 연금법에 따라 7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기금에의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벨기에

5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취해 졌다. '어코드 인터프로페셔널(The Accord Interprofessionnel) 1999-2000'은 노령근로자를 위한 계속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

독일 : 작업 안전과 보건 이슈를 포함한 광의의 적극적 고령화 전략

고령자를 위한 독일연방계획은 작업안전과 보건 이슈를 포함한 고용가능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 독일연방계획은 고령자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조직과의 접촉이나 자조그룹의 설립에 자문하는 노인시민사무소를 지원하는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한 계획이다. 그 의도는 고령자가 축적한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려는 것이다.

스페인 : 장기실업고령자 지원제도 도입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45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었으며, 부양가족이 있고,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훈련이나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조치를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수급자는 반드시 공공고용소득서비스 기관이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된다.

박스 2.3. 고령자 구직 지원 개혁 사례

일본 : 중.고령자 대상 훈련시설 확보

일본에는 빌딩관리나 정원 가꾸기 등 중.고령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종류의 직업 훈련 과목을 특별히 갖춘 직업훈련시설이 있다. 이는 다양한 고령근로자를 위한 훈련 및 직업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평생인적자본센터와 일시적인 지역사회 수준의 직업을 제공하는 실버인적자본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 실업고령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평가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대체

캐나다는 실업상태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에 고령근로자를 노동력으로 재통합하는 시험 방법에 대한 일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고령근로자를 비영리부문의 직업에 배치하는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본 연구의 조사표에 대한 응답으로서 캐나다는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 등 사업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독일 : 고령근로자 통합 보조금 확대

독일에서는 고령고용인의 통합보조금(고령자 채용의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노동비용 보조금)의 수급자격기준은 완화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도 폐기되었다. 1999년 8월 1일부터 통합보조금 지급 연령제한 기준은 2001년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55세까지 낮아졌다. 동독 제조회사에게 지급하는 추가고용인을 위한 보조금(구조조정 조치)은 55세 이상 고용인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고용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조조정 조치의 맥락에서 55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간은 3년에서 동독이나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최대 5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멕시코와 스위스 : 고령근로자 취업증진 프로그램 착수

멕시코 노동부는 고령근로자의 기술 영역에서의 훈련에 대한 접근성제고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민간 부문과 협상을 하고 있다.

스위스는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를 재배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방의회 하원은 이러한 실업상태의 고령근로자에게 제공할 조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보고서는 실업보험기관에서 제안한 다양한 가능성(일시 고용, 자영업 장려, 시범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AVS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The Swiss Pro Senectute Foundation 역시 실업 고령근로자에 대한 활동이나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스 : 시범사업

그리스에서는 고령근로자(50 64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 프로그램에서는 20개월 동안 실업고령근로자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채용된 고용인이 작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 두 달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 : 지정보조금제도로 고령근로자의 수요 증진

1999년 덴마크 정부와 국립단체(The National Association)는 고령자 일자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1999년 12월부터 실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합의의 목적은 지정보조금제도를 활용하여 장기실업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 : 개혁 패키지

한국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위한 3가지 직업배치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과의 주도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작업장 그리고 (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고용촉진이 있다. 또한 고용촉진법은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고용인의 3 퍼센트 이상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일부의 사업체만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령근로자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 개혁

5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벨기에 정부와 사회 단체들은 새로운 조치들을 확립하였다. 이미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기여금의 무제한 감면제도는 확정되었다. 게다가 실업고령근로자와 퇴직 직전에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추가수당 수급자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기로 최근에 결정되었다. 또한 2000년 3월 1일 정부와 사회 단체는 연방보건의료 부문에서 고령근로자의 대량 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의 나이가 45세부터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하지만, 완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프랑스 : 고령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조치 개발

시장 부문(market sector)에서, 고용주도계약은 고용주가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를 채용할 때 복지 기여분과 채용 프리미엄을 100% 감면하고 있다. 유사한 모델이 비시장 부문에도 존재하는데, 복지 기여분의 면제 이외에도 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스 2.4. 모두를 위한 작업장 만들기 개혁 사례

호주 : 특별 지정 프로그램의 위험성 지적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계획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단기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개혁과는 다를 수가 있다. 고령자의 기술과 경험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만드는 활력적인 노동시장은 정부가 직업을 유지하거나 재취업하는 고령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의 역할은 노동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장벽을 제거하며, 필요할 때 촉매자로서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주는 1996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작업환경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작업장관계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 주 35시간 근로제도 도입

2000년 2월 회사에서는 정부의 완전조기퇴직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기본구상(framework)이 설계되었다. 이에 대한 교환조건으로서, 회사는 주 35시간 근로제도로 변경할 때 제출하는 인력과 기술 계획의 설정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 목적은 근로자들의 평생 동안의 경력을 관리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국 : 연령차별철폐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 도입

영국은 1999년 6월 고용상의 연령 다변화를 위한 실천 규약을 도입하였다. 이 규약은 고용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연령에 기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이다. 영국은 고령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가지고 있다. 총리는 고령근로자가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력있는 노령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의뢰하였다. 여기에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및 직업 유지를 위하여 사업체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검토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고용기회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 문제예방 중심 개혁

스페인에서는 노동시장 상황이 다른 OECD 국가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 실업률은 높고, 참가율과 취업률은 낮으며, 특히 청년 및 여성의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시장 정책은 이러한 두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노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통합 및 직업 상실을 피할 목적으로 고용개혁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 외에도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취업기간 중 계속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국가

이태리에서는 1997년과 1999년에 교육시스템과 평생학습제도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성인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의 특별 개혁이 실행되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조치들은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관계가 있으며,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Social Economic Council : SER)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정부 요청의 틀 내에서 제안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진행중인 성인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2000 2000년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가까운 장래에 수립될 것이다.

덴마크 :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통합수단으로서 "유연한 일자리"

덴마크 정부는 특별히 유연한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대해 작업 중에 있다. 1998년 이래로 3000개의 새로운 유연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장기 상병 휴직자를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제거하는 내용의 법률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게다가, 고령실업근로자나 조기퇴직자가 직업을 갖게 되면, 급여손실을 줄여주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

아이슬란드 : 평생학습개혁 고려중

최우선 순위로 3차 수준의 성인 접근 프로그램인 국립 성인 문해 프로그램의 설치와 성인교육에 있어서 교육자 포럼을 설치하는 내용의 성인교육에 대한 녹색보고서(Green Paper)가 출판되었다.

독일 : 모든 연령계층을 위한 작업장 확대의 중요성 강조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작업 중 안전과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고령의 유급근로자가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인해 중요한 회사의 자원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국가인 독일에 있어서의 인구학적인 변화와 유급 고용의 미래"에 초점을 둔 "작업과 기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연령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작업조건의 개발을 지원하는 조치와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으며, 진행 중에 있다.

오스트리아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령근로자의 참가 증대 기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고령근로자 계약의 한 요소는 고령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도구가 소개되었다. 2001년 말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을 것이다. 법적인 요구, 대체근로자 채용 의무, 그리고 연령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체코 : 고령근로자 작업장 개발을 위한 광의의 정책 접근

체코 공화국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상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수의 노동시장 (그리고 관련된) 개혁조치들이 발표되었다. "국가고용계획"이 1992년 결정되었으며, 4가지 기본 과제가 있다. 첫째, 고용가능성 지원을 위하여(주로 인적자원개발 교육과 재훈련의 개발, 확대 및 향상 포함), 둘째,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주로 고용주와 사업의 개발 및 지원 포함), 셋째, 노동시장의 활발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하여(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지원, 새로운 종류의 고용계약 등 포함), 그리고 넷째,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성, 연령, 인종, 또는 종교, 피부색, 성적 지향 등에 있어서 고용에 대한 보상과 접근성 측면).

폴란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 고려의 대상이다.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2000 - 2006"에서는 계속적인 성인 교육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하부구조와 훈련기회는 계속 개발되어질 것이다.

멕시코 : 다른 전략으로 고령근로자 유지에 초점

1998년 7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공공정책의 개발 책임이 있는 노동 및 사회급여부는 '형평성과 젠더를 위한 일반 지침'을 작성하였다. 주요 초점은 고령근로자였다. 멕시코 정부는 고령자 취업기회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공공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제3장
재정 공고화 – 많은 국가에서 가시적으로 진행

요약 및 주요결과

인구학적 압력 예측 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오랜 동안 국가·국제적으로 주목 받아 왔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가 밝힌 재정적 압박은, 연령 연계 프로그램의 개혁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간 더욱 재정 공고화와 채무 감소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게 할 것이다(박스 3.1 참조). EU 국가들 또한 마스트리히트 원칙에 따라서 적자(그리고 공공 채무)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지출 삭감을 통해서 공공 채무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재정 공고화를 공공 정책의 계속적인 도전으로 인식했고, 그에 따라 과감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한 축은 대체율 감소, 최대 급여 수급에 필요한 년수 증가, 그리고 자산 조사 급여비중 증가와 같이 기존 급여 제도(주로 연금과 장기 요양)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공적 연금의 비중이 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기여변동에 상응하여 급여 수준을 맞추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개혁의 두번째 축은 부가방식과 적립적 요소 사이의 균형 이동 등 제도 자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세번 째 축은 특별히 연령 관련 지출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명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적자가 누적되던 추세는 방향을 틀어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의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와 함께 지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혹은 흑자)을 맞추는 방향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다른 연령 관련 지출에 대한 개혁 등 추가적인 재정 개혁이 없이는 몇 년 안에 다시 재정 압박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개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출발은 순조로웠다.

현 황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공공 부문 적자와 GDP 대비 채무율 상승을 경험했다. 재정 공고화 프로그램의 지속 시행은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현재의 인구학적 · 노동 시장 경향이 계속된다면, 5~10년 내에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며, 공적 급여를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무 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세금의 대폭 증가와 혹은 공공서비스의 대폭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그림 3.1은 공적 재정의 압박을 보여준다. 이 차트는 OECD 평균치이며 개별 국가에 상응하는 도표는 10장과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 인구학적 · 노동시장 경향에 따른 재정 압박

A. 경제활동기 인구와 총 고용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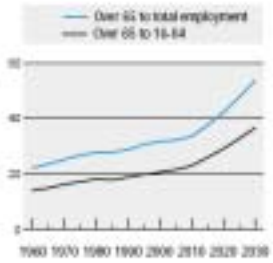

아래선은 널리 알려진 고령자 의존률로서, 고령화의 압력을 밝히는데 흔히 쓰인다. 생산가능인구(16 64)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와 대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인구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여준다. 2010년 경부터 눈에 띠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령자 의존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점점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일찍 퇴직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윗선은 근로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를 감안하여 조정된 의존율이다. 이를 보면, 2010년 이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더 큰 재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조정된 의존율도 여러나라의 실제 재정압력을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다양한 공사 연금체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고령자중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정방식은 2부와 부록 2에 제시한다.

B. 3가지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의존률 조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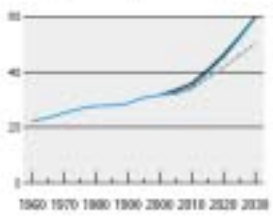

1장의 차트는, 미래인구에 관한 추계가 남성노동력의 노동패턴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 바 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 비율은 증가한다. 아래선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조정된 의존율은 올라가기는 하나, 그 기울기가 덜 가파르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의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10장 참조.

그림 3-2. 일반 정부 재정 부채, 1983-2001,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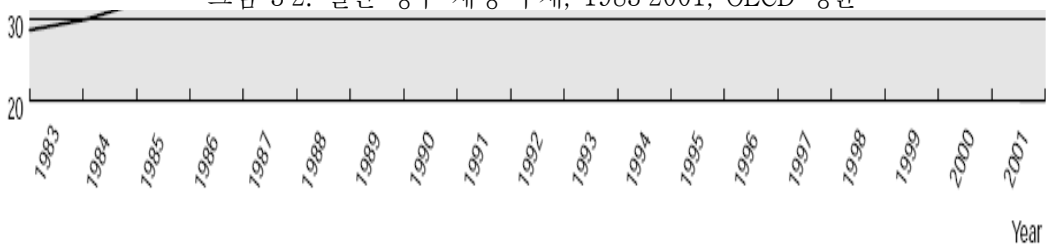

Note: OECD average is based upon data for all countries, for which data is available.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1999).

주 : OECD 평균은 가용한 국가의 자료에 기초함.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1999)

그림 3-2는, 비록 국가 마다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총/순 재정 부채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채의 수준은 그림 3-3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필요의 정도 또한 상당히 다르다.「고령화 사회의 번영 유지」 보고에 따르면, 연금 개혁 없이는 향후 20~30년 내에 채무 비율이 다시 솟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3. 총/순 재정 부채,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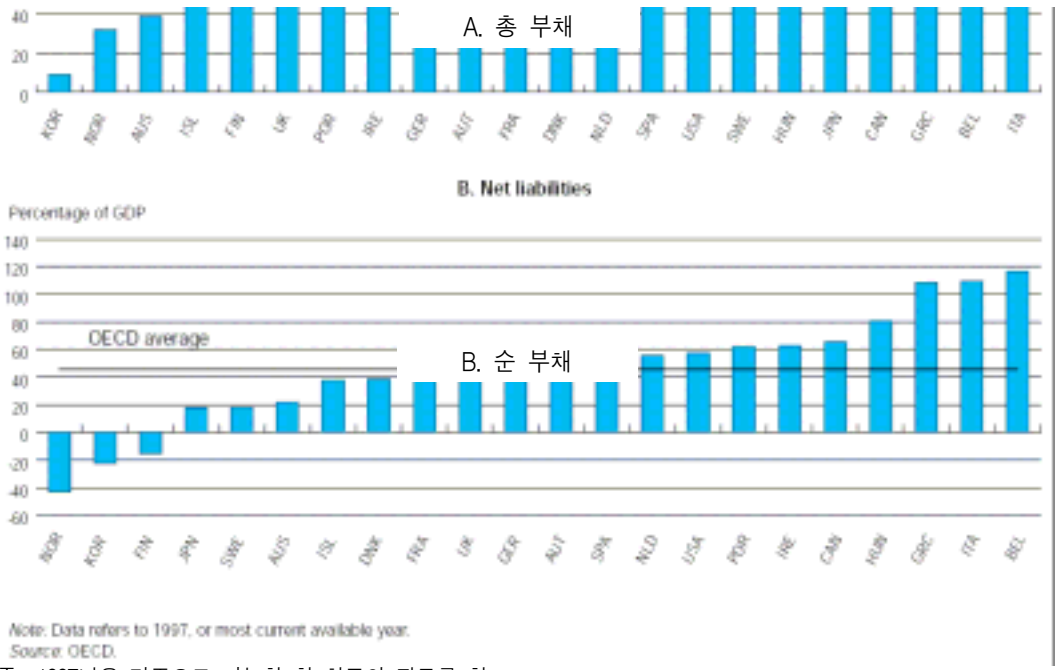

Note: Data refers to 1997, or most current available year.
Source: OECD.

주 : 1997년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참조.
출처 : OECD

도전의 규모와 국가 정책 반응의 정도

재정 공고화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주요한 도전이었다(부록 1 확인).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같은 도전을 긴밀하게 반영하는 개혁을 시도해왔다.

개혁의 경향

지출 삭감 혹은 기여율 증가

많은 국가에서 공적 연금의 대체율이 삭감되었다. 실질 퇴직 연령이 상승했거나, 자산 조사가 확대되었거나, 또는 조기 퇴직 급여수급조건이 보다 엄격해졌거나, 아니면 최대 연금 수혜 원칙이 엄격해졌다.

많은 국가들이 기여율 증대를 선택했다. 몇몇 국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엄격한 부가방식 원칙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것이다. 캐나다는, 같은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부가방식에 적립금을 쌓고 있다. 그 밖의 나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들은 장래의 연금 지출을 위해 일반 조세를 배당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박스 3.2는 기여와 급여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하고 기여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급여 수령 기간을 줄이는 개혁방식이 덧붙여진 것이다. 편의상 박스 3.2는 단일 개혁을 예시했지만, 실제로는 보다 통합된 개혁 방식이 취해졌다. 예를 들어 관대한 공적 연금을 줄이는 것은 사회 부조와 같은 다른 공적 이전 지출을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의 해결책은 자산조사 급여와 같은 표적화 방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반면, 자산 조사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번갈아서 근로 유인 강화 수단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책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스 3.3은 개혁 패키지가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예시한다.

연령과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의 재정 조치가 고령화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비록 많은 국가에서 연령 연계 지출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령 연계 프로그램에서만 재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호주의 경험은 고령화의 압력을 경감시키는 데에 광의의 정책 조치들이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박스 3.4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연령 연계 지출은 삭감된 반면 기여 증대나 급여 삭감 없이 공적 연금 프로그램은 유지되었다.

호주의 경우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통해 재정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인구 고령화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에 대비하여 건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박스 3.5).

연금과 장기 요양의 재정조달을 위한 새로운 모형

여러 나라가 기존 체계 내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있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을 도입하려는 나라도 있다. 이는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예산 과정 강화

몇몇 국가의 개혁은 행정부와 의회의 협조하에 지출 상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와 야당 사이의 넓은 동의를 요구한다. 합의와 공통된 이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개혁을 장기적으로 이행할 때 매우 중요하다. 박스 3.6은 이러한 개혁의 예들을 제시한다. 스웨덴도 예산 과정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스 3.1. 재정 공고화-「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

원칙 3.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공공부채부담은 축소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적 연금 급여에 있어서의 단계적 감축과 기여율에 있어서의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높은 대체율을 가진 부가방식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와 보건 의료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장기 재정 공고화 프로그램을 추구해야 한다.

- 인구 고령화의 주요 영향이 2010년 이후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특히 연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치를 미룰수록 문제는 점차 복잡해지므로, 조기 조치가 바람직할 것이다.
- 의료·요양 비용을 포함하여 효과성 향상이라는 아젠다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공적 연금 지출의 확장도 조정해야 한다. 의료·요양 혹은 추가적인 장기 요양 비용에는 모든 출처(연금 소득과 민간 건강 보험 등)로부터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박스 3.2. 연령 연계 프로그램에서 취해진 개혁의 예들- 급여 삭감 혹은 기여 증대

네덜란드는 미래의 연금 지불을 위해서 기금을 설립했다
네덜란드는 2020년 이후 증가될 연령 연계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 저축 기금을 도입했다. 이 기금에 정기적인 정부 기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뉴질랜드는 임금 연동 방식에서 최저액수 하한을 낮추었다
임금 대비 뉴질랜드 연금 가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연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에는 65 72% 수준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부부를 위한 연금이 임금의 65%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1998년에 605로 삭감되었던 하한액은 1999년의 새 정부 출범시에 655로 복귀되었다. 이는 현재 급여율이 평균임금의 약 67%임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기여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적립금 증가가 포함됨)
캐나다 개혁은 기여 기반을 확장하고 급여 계산 방식을 변경하며 장애 연금의 수급 규칙을 강화하였다. 이 개혁은 캐나다의 기금 조성 수준을 상승시키고 높은 수익률을 가능케 할 것이다. 광범위한 국민 합의가 이 개혁의 중요한 요소였다.

핀란드에서도 (많은 다른 나라처럼) 경기 변동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엄격한 예산 정책이 채택되어 왔다. 1990년대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연금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연금 기여를 맞추기 위하여 1993~1996년에 걸쳐 주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핀란드 연금 방식의 변화 때문에, 연금 지출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기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급여상승 제한을 두었다
검토 중에 있는 일본 연금 개혁 입법은 피용인 연금의 소득 비례 급여 상승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만을 포함시켜 제정된다면, 이 법은 연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페인은 보건비 지출에 제한을 두었다
스페인은 보건비 지출의 최대치 한도를 도입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행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예로는 공공 영역에서 퇴직 연령을 상승(65세에서 70세)한 것이다.

한국은 대체율을 낮추었다
한국에서, 연금 대체율은 1998년에 70%에서 60%로 줄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가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율 삭감은 정부와 의회 사이의 검토의 결과였다.

퇴직 연령을 바꿈으로써 급여를 줄이고 기여를 늘린 다른 예들이 많이 있다
1장과 4장에서 기술된 많은 개혁은 급여를 줄이고 기여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 개혁들은 노동시장 활동기간을 늘리고 급여 수급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박스 3.3. 재정적 영향이 큰, 광범위한 연금 개혁의 예

헝가리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구축했다

헝가리는 유연한 연금 제도로의 개혁을 통하여 퇴직 연령 한도를 높이고, 피용인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그들은 전환 기간 동안 개혁의 재정적 영향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노인층에게 손실이 없도록 배려했다. 개혁의 성공은 130만명이 새로운 제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터키 현대화의 첫번째 단계는 재정 관련

터키 사회보장 개혁은 연금 방식에 의해서 적용되는 1,070만명의 기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소 퇴직 연령의 상승, 최소 기여 기간의 증가, 대체율의 감축, 건강 보험 기여율의 증가(농민에 해당), 그리고 요양 비용 공동부담 등이 기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합해보면, 사회보장 개혁은 기여자, 수급자, 그리고 피부양자를 고려할 때 총 인구의 거의 80%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재정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개혁의 두번째 단계는 건강 보험의 보편적 적용 범위 도입, 사적 연금 방식의 도입, 그리고 모든 사회 부조와 사회 서비스를 하나의 단일 기관하에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보험 제도의 관리・ 행정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탈리아의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연금 개혁의 결과, GDP 대비 연금 지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속에 가장 기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연동의 조정, 급여 공식에 기여분의 영향 확대, 연금 수급 자격 강화, 그리고 장애연금의 지급년수 감소. 요양 지출을 줄이려는 개혁 역시 이루어졌다.

스페인도 일련의 재정 개혁 단행

부가방식의 향후 재정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이 강구되었다. 톨레도협약 내용에 따라 연금의 가치와 기여의 현재 가치 간에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는 7장에서 논의된다.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 방식을 추구

많은 다른 국가들은 특히 연금 제도를 재구축하는 일련의 거대한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 안정화를 추구해왔다. 국가들의 예는 5장에서 논의된다.

박스 3.4. 재정 조치가 고령화 압력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나 : 미국의 예

1997년 이후 미국의 재정 개혁은, 세금을 높이고 또한 지출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던 1994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3 의 재정 원칙을 지속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은 2002년 예산 흑자 도달을 목표로 초당적인 균형예산법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했다. 예측보다 4년이 빠른 1998년에 이미 흑자가 되었다. 1999년의 흑자는 1,23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흑자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채무는 1,400억 달러 감소하였다.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 재정 정책의 목표가 연방 예산의 비사회보장 부문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일차적으로 요양 관련 지불을 감소시킴으로써 메디케어 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켰다. 실제 메디케어 총지출은, 1998년도에 2,136억 달러에서 1999년 2,120억 달러로 조금 감소하였다. 그러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함에 따라 등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의료 비용이 임금보다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성장, 수입 증가와 더불어 지출 제한은 재정에서 중요하다.
행정부는 미래의 사회보장 흑자가 부채 삭감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확실히 하고자 재정 규제를 유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15년까지 모든 공공 연방 부채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부채 삭감에 따라 이자 저축이 사회보장 트러스트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2050년까지 지급능력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메디케어 개혁에 필요한 자원 보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의회의 개혁 제안 도입에 따라 행정부 역시 초당적인 기반 하에서 의회와 작업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미국에서의 적자 감소는 '선(virtuous)순환' 연방은 덜 빌리고, 채무는 삭감되며 경제 성장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재정 규제 실행은 통화 정책의 확장을 허락하였고 인플레이션을 줄였다. 선순환은 계속되어 현재 통합 흑자를 낳았다. 강력한 성장 덕분에 지난 30년 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재정 규제 때문에, 정부 차입에 흡수되었을 1조 7,000억 달러가 대신 민간 경제에 투자되었다. 6년 연속 구매와 함께 비즈니스 투자가 증가하였고, 늘어난 자본금은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 비농업 부문 생산성 증가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1.4%이었는데, 1995년 말 이후 약 1.5%로 늘었다.

미국은 2015년까지 공공 부채를 없앨 방침이다. 이 재정 공간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과 연관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공 부채의 제거는 사적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고, 보다 높은 생산성과 임금, 높은 경제 성장, 그리고 미래 퇴직자의 소비를 지원할 국가 능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박스 3.5. 재정 조치가 고령화 압력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나 : 호주의 예

호주 연방은 1996년 이후 재정 공고화 프로그램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기반하에 있다. 재정 조치의 신중성 원칙 도입과 함께, 연령 연계 지출의 미래 압력에 잘 대처할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 예산은 1997-98년 이후 흑자 상태이며, 순 채무는 1999-2000년에 GDP의 약 8% 수준이다. 이는 1995-96년에 GDP의 약 19%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이다. 강력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출 제한은 호주 성공의 기반이었다. 공공 재정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상당한 구조적 향상이 없었다면, 호주는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금융 시장 파동에 휩쓸렸을 것이다. 호주는 또한 경제 순환과 함께 평균적으로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 정책 도입 후 그 실행을 강화해왔다.

중기 재정 전략은 호주가 신중한 재정 운영을 실행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백한 신호이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정책 형성에서 보다 큰 규제, 정기적으로 재정 목적을 명시, 그리고 정부 재정 성과 책임 증대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호주의 거시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제고에도 기여해 왔다. 더욱이 호주의 중기 재정 전략은 현재 연방 예산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 예산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로부터 발생하는 호주의 장기 재정 압력을 고려한다. 재정 관련 원칙은 두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첫째, 5년 마다 세대간 보고서의 발표에 현정부 정책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40년 이상 길게 내다보고 추정하며, 인구학적 변화도 포함한다. 둘째,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하에서 미래 세대에 미치는 금융 영향을 고려한다.

박스 3.6. 예산 수립 과정 개혁의 예

노르웨이는 일반 예산 수립과정에서 항목(item)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조세가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 사업에 통합되어 일반 예산에서 항목이 사라지면, 초점이 흐려질 위험이 있고 중요한 정보가 상실되어 필요한 조정이 너무 늦게 이뤄질 수 있다.

아일랜드는 고령화 비용을 미리 확보하려 한다
아일랜드는 고령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GDP의 1% 만큼 저축하는 개혁을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이 재정 목표를 세우다
예를 들어 향후 3년 동안 핀란드는 GDP 대비 채무를 50% 이하까지 줄이고, 공공 부문 통합 부채를 35%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00~2002년 **벨기에**는 '1999 2002년 안정화 프로그램'을 세우고 GDP 6% 수준의 예산 흑자와 공공 채무 축소를 목표로 삼았다. 1997년에 GDP의 122.1%였던 채무는 2010년 72.4%, 2030년에 34%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재정 목표를 일단 유보했다

일본에서 1997년 11월 28일에 승인된 재정구조개혁법(FSRA)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틀과 구체적인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FSRA 시행은 일본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일시 정지되었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지체없이 재정 구조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아이슬란드는 공공 부문 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아이슬란드는 공무원 연금을 독립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미래의 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 근로자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뉴질랜드 재정책임법(1994)은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운영 원칙을 구체화하고 보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관리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최소한 미래 10년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진도 보고치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호주의 중기 재정 전략은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장기 재정 압력을 인지하고, 5년 마다 세대간 보고서를 공식 발행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영향을 고려한다.

덴마크 또한 미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

예산 균형에 대한 새로운 개념 '조정된 예산 균형'이 1999년에 도입되었다. 이 조정된 방식은, 현재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래 수입과 지출 사이의 예산 균형이 어떠할지를 예측한다. 따라서 향후 적자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협력 방식을 선택했다

예산 적자의 시기에, 어떻게 자금을 비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스위스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2001년에 시도되었다. "Round Table"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고용주와 노조, 정당, 캔톤(지방정부), 연방정부에서 모인 대표로 구성된다. Round Table 논의로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방안을 내놓았고 시간을 상당히 절약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년 동안 대처해왔다

공적 재정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산 정책이 이행되어, 1999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 재정 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변화로 연금 기금에 대해 충분한 기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미래 인구에게 미칠 금융 충격을 줄일 것이다.

박스 3.7. 예산 규제의 강화 - 스웨덴의 지출 상한

3년 명목 지출 상한의 도입은, 예산 규제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인 예산 과정을 중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예산 과정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대한 필요를 의미한다. 동시에 예산액의 체계적인 추적(follow up)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모든 지출의 적정화를 위해서 매달 행해진다.

공공 재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려면 모든 지출은 총량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세 경감 유형에 대해서도 세밀한 추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의 하락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른바 조세 지출은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예산 개혁은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진행되어 왔고, 예산 상한은 초과되지 않았으며, 이는 공공 재정의 안정에 기여했다. 현재 두 개의 정부 위원회가 행정과 공공 재정의 개혁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개혁 경험이 공유될 것이다.

제4장

퇴직소득 보장 개혁

4-1. 노령세대 재정 상황의 변화

요약과 주요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박스 4.1).

퇴직소득제도의 구조개혁은 정부정책 개혁안 중의 주요사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전 개혁은 소득과 여러 종류의 공·사적 연금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다양화한 제도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에서는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결과물 중의 하나로 변하였다.

대부분의 제도 개혁은 다음 4개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첫째, 현대적인 연금 모델 구축에 목적을 둔 개혁, 둘째, 사적 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셋째, 공적 연금을 재구성하는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모델로 진행되는 개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구조상의 조정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 구조개혁에 관해 많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노인층에 대한 소득 관련 제도의 다양한 발달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은 퇴직 소득보장제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퇴직제도 자체를 재정립시킬 것이다. 개혁의 일반적인 목표는 박스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련의 공통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의 결론은 6장에서 언급되는 연금재정 관련 조항과 금융시장 개혁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현 황

퇴직소득보장제도는 주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 공적 정률연금, 강제적 사적 연금(소득비례), 그리고 개인의 자유 저축 등 -의 복합적 형태로 구성된다[5]. 그림 4-1은 노인 소득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소득은 개인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조세를 포함한다. 이 표는 국가들마다 퇴직한 노인의 소득원이 다양하며,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중인 개혁이 완성 단계에 이를 때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사적연금 및 다양한 형태의 자산 소득은 고소득자에게 중요하다.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의 고소득 노인집단의 30%는 기업연 금(occupational pensions)과 자유저축이 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낮다. 당연히 최저소득을 가진 30%의 인구 집단에게 사적 연금이나 자산
소득은 주요한 자원이 아니다.

공적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재원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고소득 층에게도 마찬가지이다.

30%의 저소득집단은 대부분의 소득을 공적 연금과 기타 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이 표는 조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이같은 기타 수당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고 독일의 고소득 노인집단에 있어서도 순이전소득(연금 등)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소득활동은 총소득의 양을 결 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노인의 또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은 소득 활동에서 오는 소득으로서, 퇴직 한 노인 자신의 근로소득 혹은 동거하는 가족의 근로 소득이 모두 해당된다. 저소득층 노인에 게 있어서 근로소득은 그 비중이 매우 적다. 이러한 경향이 일본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더 오래 소 득 활동에 종사하고, 가족 구 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고소득 노인들이 65세에 정년 퇴직한 뒤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거주환경과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

5) 세계은행이 출간한 "노령으로 인한 위기의 예방 (Averting the Old Age Crisis)"에 제시한 모델이 가장 유명한 형태로서, 강제적 공적 연금층, 강제적 사적 연금층(사전 기여형), 그리고 자발적인 층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퇴직소득보장제도를 3층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3층 구조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형태가 다양하며, 단층구조의 연금체계일 경우도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

소득활동에 의한 재원은 감소하고 개인연금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추세를 보여주는 이 차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에 의한 재원은 감소하고 개인연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득 활동에서 나오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은 조기 퇴직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연금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령을 높이고 공적 연금을 감소시키려는 최근의 개혁은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현재의 추세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림 4-1. 노인의 소득원

A. 총소득 중 사적 연금과 기타 자산소득의 양 (1990년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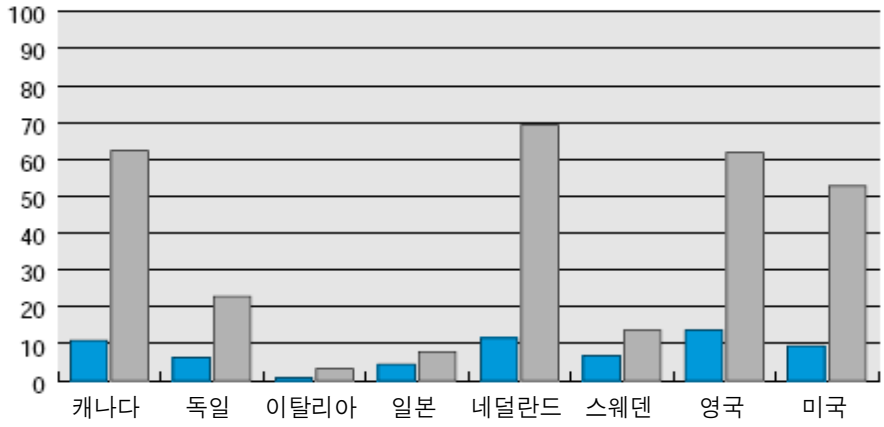

B. 총소득 중 순공적이전에 의한 양 (1990년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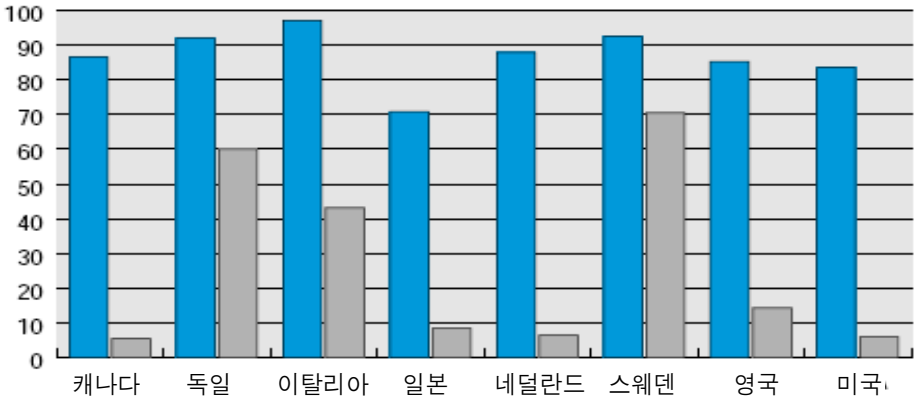

C. 총 소득 중 근로소득의 양 (1990년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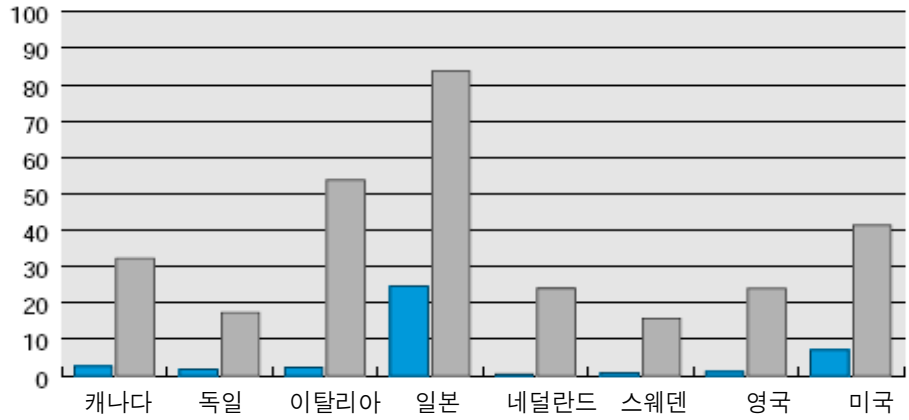

D.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의 변화 (1970년대 중반, 80,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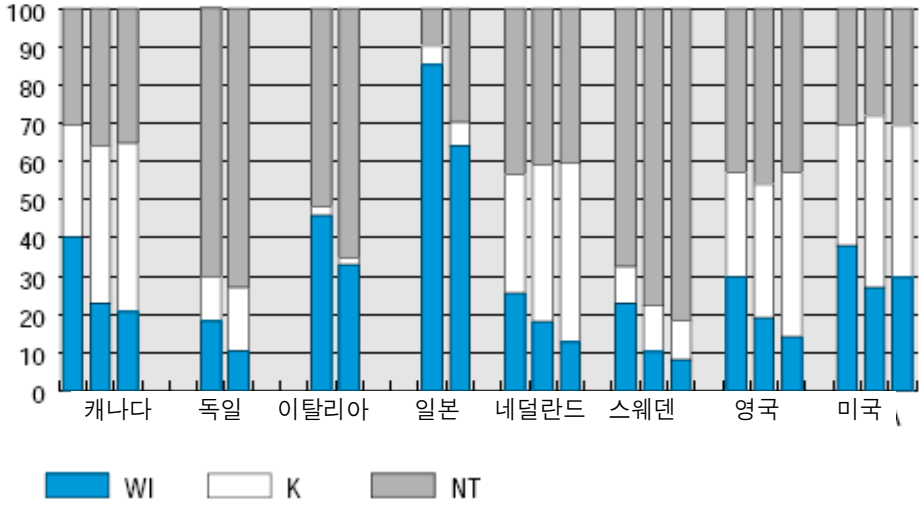

주 : (마지막 차트)

1. 이 차트의 자료는 노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고려했고 순수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한다. 가구의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등가 조정을 했다(가족 크기의 제곱근).
2. 각 소득 그룹에서 평균 실질소득(65세 이상)은 각각 1.0이다.
3. 순사회이전(NT)은 사회이전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제한 것이고, 근로소득(WI)은 고용소득과 자영 소득을 말하며, 자본소득(K)은 직역연금을 포함한다.
4.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막대는 각각 1970년대 중반, 80년대, 90년대를 의미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는 70년대 중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출처 : 퇴직소득 정책의 비교연구(가구소득의 분배에 관한 OECD 설문으로부터 산출,1999)

오늘날 노인의 소득원은 연금제도, 개인저축,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 등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축적한 자원에 영향을 받는다. 표 4.1에서는 조기퇴직을 선호하는 최근 몇 십 년 간의 경향을 보여준다. 노인의 소득원으로서 소득활동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기퇴직을 예방하는 최근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몇 년이 소요될 것이다. 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노인 부부 각각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노인의 소득지위(income position)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년 퇴직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에서 일본의 경우, 많은 일본 노인들은 대가족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그 예이다. 캐나다 역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거주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8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반면에, 표 4.1과 그림 4-1을 통해서는 순공적이전에 비하여 자유저축과 연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관대한 공적 연금을 중단시키고 6장에서 설명된 연금재정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표 4.1. 덴마크와 캐나다의 소득구성

A. 덴마크

	1997	%	2045	%
- 공적부과방식 연금	76 000	55	67 000	41
- 기업 및 민간연금	34 000	25	61 000	37
- 적립형 강제연금	5 000	4	25 000	15
- 이자	23 000	17	13 000	8
- 총소득	127 000	100	165 000	100
- 세금	-41 000		-51 000	
- 조세후 소득	96 000		115 000	
- 주택보조금	6 000		5 000	
- 순소득	102 000		120 000	

주 : 소득구성에 관하여 소수의 국가만이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림 4.1과 완벽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퇴직연금, 사적 연금, 그리고 강제 적립연금은 공적 연금 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캐나다

소득원(1996년)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족		65세 이상 개인	
	액수(백만 캐나다달러)	백분율(%)	액수(백만 캐나다달러)	백분율(%)
- 부분 퇴직자나 기타 가족의 근로소득	12 849	19	4 674	7
- 개별 저축 및 투자	7 791	12	9 457	13
- 정액 공적연금 및 반빈곤 프로그램	16 639	25	20 726	19
- 기여기반 공적연금	11 234	17	13 858	20
- 민간 기업연금	9 558	14	11 963	17
- 자발적 개인저축 (소득공제형)	4 205	6	5 264	7
- 조세 감면	1 590	2	1 590	2
- 기타 공적 이전	2 043	3	1 701	2
- 가족 외부로부터의 이전	1 224	2	1 239	2
- 총액	67 313	100	70 472	100

주 : 캐나다 노인 개인과 노인가구에 대한 많은 자료는 1996년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종단적 비교를 통하여 퇴직한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근로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

자료 : 여러 국가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보려면 www.oecd.org/subject/ageing 참조.

정책적 과제와 국가의 대응 범위

개혁의 목표는 대개 제도 자체의 다양성 확대라기 보다는 재정 공고화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게 퇴직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부록 1을 참조하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측하건대, 최근 개혁들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국 노인들의 소득을 다양화할 것이라 한다. 노인의 소득이 다양화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던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다양화한 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있다.

개혁의 경향

현대적 연금모델의 구축

이 장에서 "현대적" 연금개혁안은 적용범위가 넓고,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하며, 공적 요소와 사적 요소가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층체계(규모가 큰 부과방식 공적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연금 체계와 반대되는 의미이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현대적인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안을 도입하였다.

멕시코는 최근, 박스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금의 현대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특히 통합적인 개혁이다. 사적 영역의 근로자를 위하여 개인 계좌에 적립금을 예치하는 적립식 연금을 도입하여 민간 부분에 관리운영을 맡겼다. 또한 의료보호와 장애연금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개혁하였다. 박스 4.3은 이 영역의 선별된 개혁의 예로서 중앙유럽 OECD 국가들의 예도 포함하고 있다.

사적 연금의 강화

많은 국가에서 사적 연금은 아직 그 규모가 작다. 이러한 사적 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 축소추세에 있는 공적 연금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연금이나 소득비례형 보충연금, 그리고 자유저축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이중 어떤 것들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의 운영을 향상시키고 연금 기금의 관리를 개선시키려는 조치이다. 이것은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 밖의 것들은 박스 4.4에 제시되었다.

호주의 개혁은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보장망을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강제

개인연금으로 이행시켰다. 박스 4.5는 수 십 년에 걸쳐 구축한 3층 보장체계에 대한 결정을 보여준다. 이 3층 체계에는 공적 노령연금, 강제적 노령연금(사적 기업연금), 그리고 자유저축이며, 소득비례 공적 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적 연금 개혁

1장은 근로 유인제를 바꾸는 내용에 중점을 둔 공적 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다. 3장은 재정안정에 목적을 둔 공적 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많은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Section 4.2는 빈곤퇴치 제도의 개혁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급여나 공적 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채 급여나 보험료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공적 연금 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기본적으로 부과체계 에서 사전 기여방식(greater advance-funded)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등 공적 연금이 명목확정기여체계(notional defined-contribution accounts)로 전환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박스 4.6은 스웨덴 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스 4.7은 세 국가의 명목확정 기여체계에 대한 비교를 제시해 놓았다.

중요한 점은 이 국가들이 연금 개혁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명목확정기여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가 퇴직에 관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처럼 전체적인 연금 개혁의 실제 결과를 강조하였다. 최근 국제 연구들의 관심사는 박스 4.7에 덧붙였다. 이러한 국제 연구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결합, 개인계좌에 기초한 의사결정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연금 중점 정책을 뛰어넘어

어떤 국가들은 전통적인 연금층을 뛰어넘어 특히 퇴직 소득체계가 조화되고 다양화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가하는 소득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세금의 역할이나 보건, 장기요양과 같은 노인을 위한 공적 이전의 역할은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정책은 노인들을 지원하는 자원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금 자체에 국한하면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4층 연금체계를 도입하였다. 법적 연금은 노령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층으로써 유지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수용 가능한 삶의 수준을 명심해야 한다. 2층은 기업 연금으로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층은 개인 저축이며 역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된 4층에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회사의 수익과 생산 자본을 더 나누어야 할 것이다.

박스 4.8은 노인을 위한 방대한 종류의 지원자원을 가진 캐나다 연금의 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층의 개수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으나, 위험을 분산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성취하기 쉽다고 평가된다.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많은 국가들이 개인 생애의 소득을 재분배하며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소득비례형 공적 연금을 갖추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소득 재분배와 빈곤퇴치 정책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체 생애 동안 갹출한 보험료와 급여를 연결시키려는 개혁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빈곤퇴치 정책을 완전히 분리한 나라는 없다. 보다 일반적인 예는 소득비례적인 연금 내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빈곤방지와 소득재분배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하였다. 사회보장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를 위한 폭넓은 소득분배를 제공하며 저소득자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 십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인 빈곤방지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국민들이 '취득한' 급여의 일종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 강조되었으나, 미래를 위한 개혁을 고안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는 이도 저도 아닌 형태이며, 어느 입장에서도 명확히 방어될 수 없다. 사회보장에서 빈곤방지의 관점은 획득된 권리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상되는 역영향으로 인하여 개선책을 적용하기 복잡해질 수도 있다.

확인할 사항

앞 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개괄하자면, 퇴직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은 재원 부분에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퇴직제도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목표와 퇴직관련 정책의 원칙에 관하여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변화의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국제적인 수준의 개혁안을 위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혁의 범위를 확실히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부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통계자료를 재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조기퇴직에 대한 경향이 역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도 질문하고 있다. 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가생활을 가장 하위의 차원으로 놓을 것인가?

박스 4.1. 퇴직소득체계의 구조 -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의 정책적 원리

원리 4. *퇴직 소득은 조세와 이전소득 체계, 기금 체계, 사적 저축과 근로소득의 혼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위험 분산, 세대간 부채 분담의 적절한 균형에 있으며, 개인들의 퇴직 결정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고 한다. 각국 마다 개혁의 시작점이 다르기에 각각 상당히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다음의 제언은 재정적 압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삶의 수준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현재 부과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선적립(advance funded) 부분을 증가시킬 것. 이것은 공공연금 체계 내에 사전 기여 요소를 증가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전 기여 제도를 촉진하고, 강제적 개인 계좌를 도입하며, 부과체계에서 급여의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 방식들을 혼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 불필요하게 공적 연금의 급여가 높은 부분은 그 수준을 낮출 것. 일단 빈곤완화의 목적이 충족되면, 공적 연금이 퇴직 소득의 전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되며, 퇴직 후 가용할 수 있는 소득, 자유 저축 혹은 역모기지론에 인한 자산과 같이 모든 재원의 원천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소득 비례형 연금을 조정하여 생애 급여(lifetime benefits)와 보험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 그 방법은 부과체계 내에서 급여산정 방식이나 확정보험료계좌 (defined contribution accounts)를 바꾸는 방식이나 개인과 사적 영역의 고용주에 의한 사전 기여형 방식(advance funded accounts)을 적극 사용하도록 촉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소득 비례형 연금에서 임의선택 부분과 강제적용 부분을 제공할 것.
- 일반 조세 이외에 재원을 가진 빈곤퇴치 정책에만 연금 재정을 지원할 것(빈곤퇴치 정책과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에 국한됨).
- 장기적인 목표로서 빈곤퇴치 정책과 공적 연금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분리하고 각각의 목적과 특징들을 분명히 할 것.
- 세금환급 제도(refundable tax credits)와 같은 저비용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주력할 것. 근로저해 요인(work disincentive)을 낮추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급여를 폐지할 것. 또한 연금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거나, 노인에게 특권으로 제공된 공공 서비스의 할인제도,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과 사적인 퇴직 저축 계획에 부여되는 과다한 조세의 할인 등과 같은 노인 대상 특권제도를 점차 폐지시키는 것도 포함할 것.
- 사적 연금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의 틀을 보강하여 수급자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유지할 것. 이것은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연금 제도에 차별을 없애고, 연금 수령권을 보호하며, 연금 수급권의 이전성(transferability)을 보장한다.

박스 4.2. 멕시코 - 개인 계좌에 기초한 선진 사회보장 모델로의 전환

1997년 7월에 멕시코 정부는 사회보장에 있어 1943년 이래 가장 거대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자(private worker)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는 확정 기여체계(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재정관리부(Retirement Funds Administrators : Afores)라 불리는 특별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계좌에 개인 퇴직 보험료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Afores는 투자를 위한 퇴직연금 재정특별 투자기구(Retirement Funds Soecialized Investment Societies)를 통하여 시장에 재원을 투자한다. 이 개혁은 완전 적립방식을 도입하였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할 극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였다. 사유재산(individual capitalization system)에서 전환하면서 한번 재정을 조달 받으면, 퇴직자 대 근로자의 비율은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된다.

현 제도에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는 1250주(약 25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과, 적절한 급여를 획득하기에 개인 계좌에 있는 잔액이 부족한 사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 계좌 잔액이 최저 보장수준 보다 30%이상 높을 때, 그리고 보험자를 위한 생명보험 보험료가 충족되었을 때 퇴직을 바로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법은 역시 퇴직 연금(retirement pension)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500에서 1250으로, 장애연금은 150에서 250으로 연장하였다**.

새 법률은 또한 재분배의 요소로서 사회적 할당량(Social Quota, Cuota Social)을 도입하였다. 연금에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덧붙여, 정부는 일일 최저급여의 5.5%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 물가에 연동하도록 하여 1997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분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1997년의 사회보장법은 2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노령 연금 혹은 장애 연금의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이 근로자들은 급료 중 2.5%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고용비용을 낮추게 된다. 둘째, 퇴직자의 의료지출을 위하여 부담하는 급료의 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특별히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IMSS는 이러한 집단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인 보험수리상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년 보험통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새 연금 시스템은 세 가지로 분립된 체계이다. 노령연금 및 노령 실업 연금(old age unemployment pensions), 장애 및 생명 보험(life insurance), 그리고 퇴직자의 의료보호가 그것이다. 본 개혁의 강조점은 임시보험(노인을 위한 저축)을 사회보험(장애)으로부터 명백하게 분리하는데 있다.

장애와 생명보험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퇴직 세대의 기대 수명 연장과 높아진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IMSS는 미래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과거 보험 재정은 적자를 채우기 위하여 건강과 모성 분야로 이전되었다. 이것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여 유지가 불가능하였다. 단기 개혁을 늦추는 것은 높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적인 지출과 IMSS의 보험통계상의 산출에 기초하여, 노인의 의료 보호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개혁은 명백하게 퇴직자의 의료지출을 다른 보험으로부터 분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뒤, 급료의 1.5%(고용주, 근로자 및 정부의 부담)를 거두어 사실상 적립금(reserve fund)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 체계에서 근로자는 IMSS가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단 수급조건으로 750주의 납부기간과 퇴직 연령 이후의 수급연령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보장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사회보장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법안과 규정은 재원의 재구성에 기초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현재의 개혁은 끝이 아니다. 다른 개혁과 연동하여 효력을 발휘하도록 연금과 보충적 퇴직 계획, 정부 예산, 재정 체계, 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노동과 다른 사회보장 이슈에 관한 개혁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문화와 행동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

* IMSS 상의 연금 개혁은 원리적으로 재정이 장단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보고에 따라(IMSS, 1995) 2002년부터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계획되었다. 일반적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는 다음 세가지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 인구 추이에 영향을 받으며(퇴직자 수에 비하여 노동인구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기대수명의 연장을 함축하는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기간을 증가시킨다), 둘째, IMSS가 의료 및 출산급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금 재정으로부터 재정을 이전한 것이고, 셋째는 더욱 중요하게 최저 보장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관련한 연금의 부담 구조 개혁이다.

** IMSS가 근로자를 1급 장애로 판정하고 가입기간은 150주가 될 경우, 그 급여액은 완전 노령연금의 75%에 해당한다.

***새 제도에서 최저 보증연금의 수급조건인 1,250주보다 적다.

박스 4.3. 제도 현대화 개혁의 예

그리스 : 사회보장 번호 등 필요조건을 만들다

그리스의 개혁에 관한 내용은 1장에 설명되었다. 그리스에 있는 대부분의 연금 수령자는 하나의 재원에 바탕을 둔 기초 연금을 수령하고, 또 보충 연금을 지급받으며, 세 번째는 종종 일시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충 연금 제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전체 연금 중 보충성 연금의 비율과 함께 총 연금 소득 중 보충성 연금의 중요성도 동시에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존재한 주요 문제는 피보험자를 식별하기 위한 유일한 사회보장번호 체계가 없었으며, 하나 이상의 재원을 가진 연금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에 시행된 법과 행정적인 개혁으로 해결되었다(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헝가리 :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분리하여 기초를 다지다

1998년 1월 1일, 공적 연금 체계는 이중적 재원이 특징인 2층 연금 체계로 전환되었다. 새 제도는 1998년 6월 30일 이후에 첫 구직을 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 전에 이미 근로중인 자의 경우에도 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젊은이와 고소득자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2중 재정구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3/4을 1층인 공적 연금에 납부하고 나머지 1/4의 보험료는 개인이 이미 지정해 놓은 2층 사적 연금에 납부한다. 이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사적 연금 재원의 퇴직 급여액은 보험 수리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뒤 지급된다.

이탈리아 : 3층 체계로 시스템 개혁 예정

이탈리아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퇴직자를 가진 가구의 소득 대부분은 부과방식의 강제적 공적 연금이다. 이 연금은 특히 공채 증권의 채권으로부터 양산되는 이익으로 보충 된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보험료 중심의 연금 계산법(1995년 개혁 때 도입)은 특히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퇴직한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동시에 보충적 연금을 육성시킬 방안이 고려 중이며, 이는 축소된 부분만큼을 상쇄시킬 것이다. 그 결과 훨씬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 개혁의 진행단계

통합이 주요 목표라고 하여도, 프랑스의 연금체계는 부과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퇴직 후 소득을 위해 자발적 저축액을 늘리고 싶은 근로자는 소득원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장기적, 집약적, 그리고 협상 가능한 저축 수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 연금은 단지 보충적인 역할로 그치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부과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미래에도 삶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더욱이 노인들의 빈곤을 줄이는 역할 역시 계속 될 것이다.

부과체계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개혁 계획에 덧붙여, 1998년부터 적립금이 만들어졌다. 이 집약적인 저축기금은 2020년 이후에도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장기적

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자원들은 통합될 것이며, 재정 기구들은 투자를 하되, 투자의 안전성과 이윤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약을 가할 것이다. 적립금의 관리는 노동계·재계를 포함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관리될 것이다. 또한 계좌 관련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표될 것이다.

체코 : 1994년에 보충적 연금을 도입, 1999년에 강화

체코에서는 1994년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충적 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연금 소득이 다양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의 연금 개정을 통하여 더 강화되었다. 이 수정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현재 존재하는 보충적 연금에 보험료를 낼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2010년 후반까지 큰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퇴직 연금 수급가족의 총 소득 중 10% 수준에 해당함). 완전 적립방식의 보충적 연금 도입은 미래 피보험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부과체계 상에서 급여의 상승을 제한하여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한국 : 1998년 새 연금제도

한국에는 국민연금제도(NPS, National Pension Scheme), 비기여형 사회 연금, 공공부조, 그리고 강제적 퇴직 수당 등 4가지의 노인을 위한 공적 소득 유지 시스템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12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완전 급여의 수령은 2008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세대의 소득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은 매우 작으며, 저소득 노인 집단은 오직 공공 부조나 비기여 사회적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연금 제도는 1998년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더욱 균형 있는 제도를 창출하였으며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인 증가, 그리고, 일단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 보험료율은 재정유지를 위하여 차후에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의 제도는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적용 제외와 세대간 혹은 세대내 소득 재분배를 포함하여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박스 4.4. 사적 연금 강화를 위해 고안된 개혁의 선별적 예

아일랜드 : 사적 연금의 적용범위 증가 예정

아일랜드는 30년에 걸쳐 보충적 연금 급여 수준을 50%에서 79%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것은 개인저축 퇴직계좌(Personal Saving's Retirement Account)를 도입하여 운영될 것이다.

네덜란드 : 2층과 3층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규정 수정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2층인 사적 적립 연금의 세금 혜택 방식을 수정하였다. 수정안은 연금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마지막 급료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40년에서 35세로 축소되었다. 1장에서 설명한 조기퇴직연금의 수정 역시 이를 돕는다. 3층 연금을 위한 조세 지원 역시 앞에서 언급되었다. 현 조세 제도에서 모든 국민은 3층 연금 보험료상의 세금에 대하여 년간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최대 세금공제 금액은 새 제도에서 개인당 최대금액으로 전환될 것이다(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독일 : 기업연금을 위하여 규정을 단순화

독일은 그동안 기업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99년의 <연금 개혁안 8조>는 <기업연금의 향상을 위한 법안>을 수정하였다. 본 법안은 199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기업 연금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이슬란드 : 사적 체계를 더욱 공고히

아이슬란드 연금 체계의 특징은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한 자산조사에 기반한 사회보장체계와, 완전 적립식 재정을 들 수 있다(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1998년에 개인 계좌이자 추가적인 자율계좌(voluntary accounts)를 도입하여 확장이 이루어졌다. 기업연금 재정의 보험료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조세 공제가 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기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재원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자영업자는 제외).

벨기에 : 민간 연금층의 강화에 초점

벨기에는 국가의 규제 및 관리감독을 벗어나있는 사적 연금 보험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실업상태인 노인 중 이전 직업보다 낮은 급여의 직업을 수용한 이들을 위하여 원래의 봉급에 기초하여 정년 퇴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핀란드 : 첫 번째층과 두 번째 층의 역할을 명시

핀란드의 법정 연금은 소득 비례의 고용연계연금과 거주 조건에 기초한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12월에 핀란드 의회는 각각의 제도를 수정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함축된 의미는 첫째, 국민연금은 조세에 기초하여 최저 보장연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둘째, 소득비례형 고용연계연금은 급여와 보험료가 연계성을 높이도록 조정된다.

한국 : 세금 보조형 개인연금저축(tax subsidized retirement savings)을 도입

한국은 1994년 6월에 개인연금저축 제도(IRS, Individual Retirement Saving)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근로기준법(the Labor Standard Law)상의 퇴직 수당(Retirement Allowances)이 연금 형태

로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퇴직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권리이며 일시불로 지급되며, 바로 전달의 임금에 연동한다. 세금 공제는 최고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영국 :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사이의 균형을 바꾸려는 노력중

퇴직자의 최근의 소득을 살펴보면, 대략 사적 재원이 40%를, 공적 재원이 60%를 차지한다. 정책 목표는 다음 반 세기 안에 이 비율을 뒤집는 것이다. 즉, 60%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취하고, 40%를 공적 재원으로부터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퇴직 후의 소득을 위하여 사적인 재원의 준비가 없는 자가 이를 가지도록 촉진하고, 최근에 사적 재원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금 저축(pension savings)을 위한 주요 방법은 유동성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s)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연금에 접근할 수 없는 저소득자 혹은 중간소득자가 가입하기 적합하며, 징수 및 관리비가 절감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제도이다.

캐나다 : 세제 혜택을 통한 자유 저축을 촉진 – 수익 상실(revenue losses)은 장기적으로 상쇄

캐나다는 법정 퇴직저축 프로그램(자유 개인저축,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rogram)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재정담당기구가 적절한 퇴직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비용을 쓰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각 개인이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선불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세금공제와 이자소득의 비과세에 따른 총 비용은 1996년에 73억 캐나다달러였다. 그러나 기업연금과 같은 제도로부터 받은 급여는 과세 대상이다. 장기적인 수익 감소는 다소 줄여질 것이라 예상되며, 특히 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후,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의 비율이 안정될 2030년 이후에 안정될 것이다.

아일랜드 : 개인 계좌를 통하여 보충성 연금의 수준을 올림

아일랜드의 보충성 급여의 급여수준은 개인저축연금(Personal Savings Retirement Account)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서 70%로 향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더 간소하고 유연한 조세정책이 이를 뒷받침 할 것이다. 법적 효력은 2000년 초에 시행되는 새 기업연금안부터 발생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 사적 저축을 장려

오스트리아는 2000년 조세개혁안에서 새로운 정부보조 저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저축 계획에 유사한 것으로, (오스트리아에는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대략 5백만 개의 저축 계약이 있다) 법정 임의연금제도(소위 연금 투자기금이라 불림)에 연간 1000 유로까지 지불하는 자는 지불한 총금액의 4.5%를 정부 보험료로 받게 된 것이다.

스페인 : 기업 연금을 촉진

스페인은 경제정책기구가 보충성 연금, 특히 기업연금의 2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그리하여 개인저축을 하려는 개인의 선택에 양립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고용제도나 전문적인 제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비슷한 개혁을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

다수의 국가들은 사적인 층을 많이 강조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스위스가 흥미로운 특성을 도입했다(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체코에서 참여자에게 안정성 있게 제공되는 많은 국가보조금과 세금면제는 현재 국민에게 인기 있다.

박스 4.5. 호주 - 3층으로 이루어진 성숙된 연금제도

호주의 은퇴후 소득체계는 한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공적 노인연금 및 이와 유사한 공적 급여, 강제적 퇴직연금보증기여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s), 자발적 저축(voluntary saving)의 3층 구조를 형성하였다.

공적 "노인 연금"의 주요한 목적은 빈곤의 감소이다. 연금은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대상 노인들에게 자산조사에 근거한 정률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율은 물가와 임금변동에 같이 연동되며, 적어도 남성의 평균 주간 소득의 25%에 달하는 수준이 보장된다.

1980년대 초반, 호주 노년인구의 함의에 대한 중요한 분석과 논쟁이 있었다.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보조(assistance)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축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퇴를 대비해서 자기부양(self provision)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1983년 이후 일련의 방안들이 퇴직금의 적용 인구 비중을 증가시켰고, 퇴직급여를 통해 은퇴 소득의 적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는데 곧, 1986-87년간의 생산성보상연금(award superannuation)과 1992-93년의 퇴직 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의 도입이 그것이다.

강제적 퇴직연금보증제도(SG)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고용주에게 지급된다. 1992년에 도입되었을 당시 고용주 기여 수준은 3%로 고정되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7%이며, 2002년 7월에는 9%로 증가할 것이다. SG기금은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며, 자영업자들은 자발적 퇴직 기여를 할 수 있으나 SG 기여 의무는 없다.

이전의 생산성보상연금과 1992년에 도입된 SG는 근로자의 40%를 확정급여 및 확정기여 퇴직제도로 포괄하고 있다. 계속 발달하고 있는 SG는 근로자의 52%까지 그 적용을 확장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저소득층, 임시직과 블루칼라 근로자가 많다. SG 기금의 자산은 현재 총 4천 80억 (호주)달러이며, 이 중 약 500억 (호주)달러만이 SG 형식의 계좌에 있다.

정부는 대폭적인 세금 공제로 퇴직연금을 지원한다. 세금공제는 기여 단계에서의 저축, 기금 이익배당 단계, 그리고 기금에서 인출되는 급여에 적용된다. 공제는 저축을 장려하고 최종 퇴직연금 급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서 조세 지출은 1998-99년에 총 94억 (호주)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가적 퇴직연금, 주택이나 주식 및 유가증권의 투자와 같이 자발적 저축을 하게 되는데, 자발적 저축을 위한 이러한 장치들은 과세대상이다.

강제적 퇴직연금과 다른 저축들은 노령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최저 보장금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편이며, 이러한 방법들이 노령연금 지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스 4.6. 스웨덴의 개혁

1998년 6월, 의회는 새로운 은퇴연금제도를 의결하였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1999년을 시작으로 차츰 도입되었다. 소득연계연금의 첫 번째 급여는 2001년에 지급되었다. 이 개혁의 기본 원칙은 16세 이후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기초하여 미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금은 모든 납부된 연금 기여액의 가치에 상응하며, 즉 사람들이 전 근로생애에 거쳐 지불한 기여금을 그들이 은퇴했을 때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개편된 연금제도는, 연금가입자들이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고안되었다. 먼저, 제도는 두 가지 종류의 연금, 소득연계(income related)연금과 적립기금(prefunded) 연금으로 구성된다. 소득연계연금은 부과방식으로 특정기간 근로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납부하며, 그 규모는 각 개인들이 근로생애 동안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에 달려있다(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나 정부관련 근무, 학업에 보내는 시간 역시 연금 수급권이 부여될 것이다). 연금 자산은 일반적인 소득 경향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소득연계연금의 규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적립기금연금제도에서 납부된 기여금은 개인의 계좌와 통장에 예치되며 이들 연금계좌의 자산은 투자로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개인들이 스스로 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61세 연령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은퇴 연령은 유연적이며, 연령 상한선은 없다. 급여는 일시지급 또는 1/4, 1/2, 3/4 등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연금가입자는 언제라도 완전연금에서 부분연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추후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금수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수급하지 않은 연금 차액은 소득의 기울기와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퇴직 후 소득 또한 연금권을 발생시키므로, 장래에 연금은 더욱 누적될 것이다. 이것은 연금 가입자가 연금 소득에 더해, 계속해서 근로 소득을 벌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서, 모든 소득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심지어 아주 적은 일이라도 연금의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연금 가입자는 적립방식 뿐만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지급되는 소득비례 연금을 수급하며, 그들은 또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수준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이 한 개인의 근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모든 연금 기여액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 다른 이유로 충분한 연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규칙이 있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미망인과 같이 가족 부양을 위해 피부양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국가는 불충분한 연금을 갖는 사람들에게 최소 연금, 보증연금을 보장한다. 보증연금제도는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비례 연금을 갖지 않은 미혼자이거나 기초금액(price base amounts)이 1.26 이하인 개인은 2.13까지 최저연금을 받게 된다(price base amounts는 연금과 기타 급여에 사용하는 연동지수식이다. 최근 기초금액은 연간 36,400 SEK이다). 기혼자에게 상응하는 수준은 1인당 1.14~1.90이다. 소득비례연금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획득된 연금권의 규모에 따라 보충급여로 제공될 것이다. 보증연금제도의 범위는 국내의 보충연금 제도에서 미망인 연금을 받는 사람,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종신연금 수급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산, 직역연금, 사적 연금보험과 수발수당(care allowance) 등은 보증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은퇴연금제도는 일반 유족 연금과 연계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다; 하나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특별유족연금으로서의 아동연금이며, 나머지 둘은 성인 유족을 위한 것이다. 이들 유족연금 급여의 목적은 가족 내 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도입되며, 1937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1938년과 195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종전의 연금제도와 새 제도를 동시에 적용 받는다. 195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에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근로자 대부분이 직역연금정책과 같이 근로에 관련한 연금 급여를 수급하는데,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운영되며 보통 최종 임금의 약 10%를 보장한다. 또한 사적연금저축도 증가하고 있으며, 직역연금정책과 함께 둘 다 세금 우대를 받는다.

박스 4.7. 명목 계좌 -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의 새로운 연금

명목계좌 – 새로운 형태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출현한 '명목적 개인별 계좌' 개념에 국제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 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설계를 가정하는데, 첫 번째는 공적 부과방식의 확정급여, 두 번째는 확정기여나 확정급여 둘 다 가능한 사적기업방식, 또 하나는 개념 그대로 확정기여 설계인 개인계좌이다. 전형적인 부과방식 제도에서는 별도로 감안할 것이 없었지만, 스웨덴의 경우 개인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개인별계좌는 축적된 총액으로 최종 급여를 받게 되며, 부과방식기여로 제공되는 금액과 함께 지급된다. 또한 경제성장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자동 조절된다.

표면적으로나마 이러한 제도들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기여와 급여의 자동적 연계 때문에 근로유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개인계좌로 인해 일종의 소유의식을 느끼게 된다. 또한 완전 사전기여형(advance funding)으로의 전환에 부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바꾸는 것보다 이것이 개혁을 수행하기에 훨씬 수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절충안이 포함된 개혁이 수행되면 불만이 쇄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미래에 급여가 자동 상승한다는 약속의 현실성과 바람직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측이 있었다.

최소한 이들 개혁의 결과로서, 연금은 좀더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새로운 방안은 국제 비교에서 얻어져야 한다.

스웨덴의 개혁

전체적인 개혁은 앞의 박스 4.6에서 설명되었다. 매년, 보험자들은 "명목 계좌"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이전 해와 비교한 자산항목의 잔액과, 소득연계연금 및 적립기금연금 계좌의 잔액을 보여준다. 명목계좌는 소득 연계지수와 유족급여(survivor bonus), 그리고 행정 지출로 인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명세서에는 잔액과 향후의 연금 규모(65세에 받는 연금을 기준) 등이 포함될 것이다.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주요 연금 개혁이 1999년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하기 시작한 근로자, 자영업자와 군복무 및 경찰직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한다. 새로운 연금 정책은 다층 제도에 기초한다. 첫 번째 층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부과방식, 두 번째는 사적 자율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적립기금이며, 세 번째는 모든 종류의 그룹 및 개인연금 저축의 임의연금이다. 연금 개혁의 운영원칙은 "다양성을 통한 보장(Security through diversity)"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미래 노령연금 제도의 안정성은 다양한 재정의 연금 수입에 기초함을 의미한다.

연금제도의 부과방식 요소는 명목확정갹출원칙에 기반한다. 모든 기여금은 기여자의 명목적 연금의 원금으로써 개인별계좌에 등록되며, 임금 총액의 75%로 연동된다. 1999년도 이전의 모든 연금권은 초기 원금으로 재산출되며, 개인별 계좌에 등록된다. 장래의 급여는 은퇴 후 평균 여명으로 나눈 뒤의 명목적 원금액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다양한 연금 개혁이 도입되었다. 첫 번째 일련의 개혁은 1992년 "아마토개혁(Amato reforms)"으로 연금 연령의 상승, 자연상승 요소의 삭감, 연계지수 요소들의 조정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또한 예산문제에 따른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의 개혁은 1995년 "디니개혁(Dini reforms)"인데 보다 근본적인 형태로서, 급여와 기여 간에 더욱 긴밀한 연계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후자의 개혁은 기여와 "원금" 축적 총액에 따른 연금 적용이 재평가되도록 하였다. 연금은 이와 더불어 은퇴연령, 동일연령층의 예상 수명, 생산성 증가 기대치 등의 조건에 따라 변동하며 계산된다. 은퇴연령과 연금 기여금에 대한 한계수익상승은 소득 증가 또는 물가상승에 연동된다.

박스 4.8. 캐나다 - 다양한 체계의 정책적 이점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 노인은 매우 다양한 소득원을 갖고 있다. 공적 부양 그 자체는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 표적화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본정률급여**, 사전기여형 및 부과방식 요소를 포함하는 **소득연계급여**, 직역연금과 개인별 계좌에 대한 **세금지원** 등이 그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가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위험분산, 균형적인 세대간 부담, 은퇴 결정의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삼고 개혁의 과정에서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지적하였다.

여타 국가들과 같이 노령화 사회의 압력을 다루는 접근에서 그 출발선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다. 인구구조학적 변동이 다른 국가들만큼 급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미 국가예산 상황이 건전하고, 노동시장은 시장 내 변화에 반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출발선 가운데 하나는 다층 은퇴소득체계이다. 이 제도의 설계는 OECD가 권고한 것을 밀접하게 반영하여, 균형과 유연성을 이루었다. 다양한 연금형식을 통해서 위기를 조정하였으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 개인 그리고 기업들로 이루어진 다양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사적 저축과 소득비례의 캐나다연금제도(CPP) 뿐만 아니라, 은퇴소득 제도의 공적 체계, 고용주/직역연금 등이 구성요소이다. 고용주/직역연금과 사적저축은 둘 다 세제를 통하여 활성화되며, 강제는 아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기초”에는 비소득연계 요소 곧, 일반 재정 예산으로 기금이 형성된 노후보장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것은 고소득 노인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적은 액수지만 기초소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모든 노인의 95%가 이와 같은 정률 급여를 받는다).

캐나다연금제도(CPP)는 평균 임금의 25% 수준까지 대체하도록 고안되었다. 노후보장프로그램(OASP)과 결합하고 저소득을 보충하는 이러한 공적요소들은 개인들이 자신의 은퇴 소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은퇴소득제도는 연방정부만 책임지지 않는다. 저소득노인들은 OAS와 GIS의 지방 프로그램들(예를 들어 주택보조와 의약 보조 등)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망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는다. 캐나다연금제도(CPP) 매커니즘을 보면,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잠재적 압력이 점차 커지고, 이러한 압력에 대한 반응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부과방식인 이 제도의 재정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베이비붐 세대인 현 근로자들의 기여를 높임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증가되는 짐을 줄인다. 2003년까지, 기여율은 소득의 9.9%에서 최고 평균 임금까지 상승할 것이며, 이때 안정적이 될 것이다.

더 광범위한 연금개혁은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는 총체적인 방향에서 시도될 것이다. CPP의 성공적인 개혁과 맞물려, 적자를 제거하고 부채를 감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또 다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다.

캐나다는 노인인구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은퇴소득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큰 개혁보다는 미세한 조정이 예상된다.

4-2. 노인빈곤 대응 - 많은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공사례

요약과 주요 결론

노인빈곤 퇴치는 연금정책의 주요 목표이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성공을 최근 개혁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박스 4.1의 정책원칙에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위치는 개선되어왔고 최근 개혁들도 그러한 성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조사연구와 협의 기제(co-ordination initiatives), 저소득 국민을 위해 기초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개혁 그리고 특히 유족 등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춘 개혁들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결론은 최근 개혁이 반드시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관대함을 줄이거나 최저 소득계층의 지위를 더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여 노인 빈곤의 기타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현 황

노인 빈곤은 OECD 국가에서 제거되지 못했다. 여전히 해결을 요하는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주로 여성)의 빈곤이 그것이다. 주요 정책은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다 특정 인구층과 연관되어있다. 표 4.2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OECD 국가들의 사항을 담고 있다. 노인의 빈곤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인구에서 노인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그림 4-2는 노인 인구 전체를 나타낸다. 그림을 살펴보면, 실제 가처분소득은 은퇴 시점에서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은퇴 후에 노인들은 은퇴 전 소득의 약 80%를 확보하는 편이다.

그림 4-2. 은퇴 전 소득 대비 노인 소득

A. 전체인구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가처분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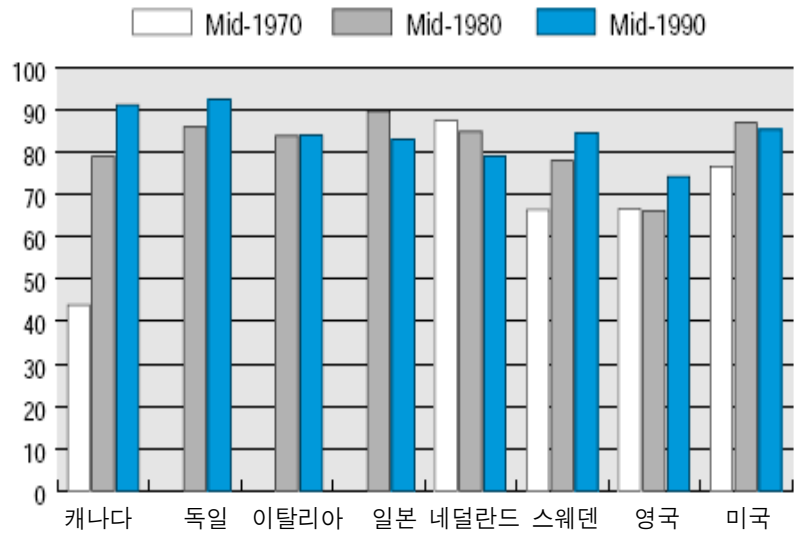

B. 51 64세 노인의 평균가처분소득 대비 65 74세 노인의 평균가처분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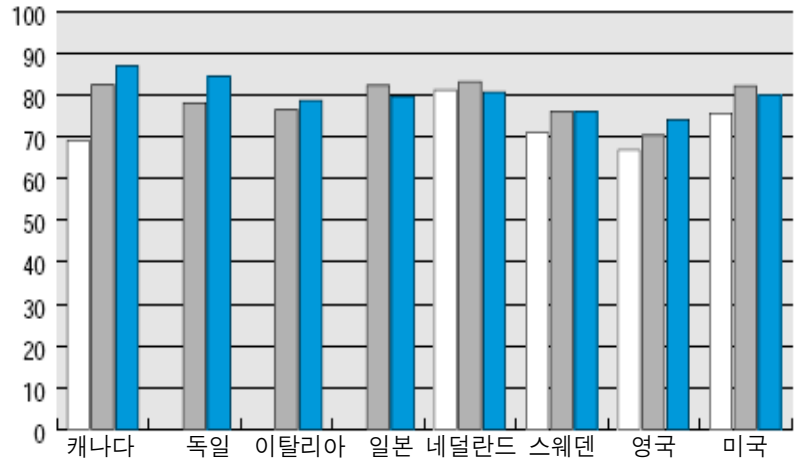

출처 : OECD Comparative Study of Retirement Income Policy.
그림4.1의 주석 참고.

노인의 소득은 증가하거나 안정적이다.

OECD 자료는 노인의 소득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됨을 보여준다. 그래프는 가족과 함께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전체 연령 인구와 비교한다. 여기에는 세금, 가족 규모,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고려되었다. 그림은 노인의 소득이 최근 수 십 년간 점차 증가하거나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의 수와 조기퇴직 경향,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려는 경향 등이 작용 하므로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유로 일본과 캐나다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2부는 현재 생활유형과 은퇴 경향에서 빚어지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노인들은 은퇴 전 소득의 75% 이상 소득을 은퇴 후에 갖는다.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한 것 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유사대체율(quasi-replace- ment rates)" – 은퇴한 연령군의 소득을 일하고 있는 연령군의 소 득과 비교하는 것(국가별로 차이 가 있음) – 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국가별이나 시대별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유사 한 물질적 생활수준을 갖는 것을 목표 삼는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주거자산과 근로연계 지출의 감소가 고려되었을 때, 이것은, 비록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은퇴 전 소득의 80%에 달하는 은퇴 후 평균소득과 대략 일치 한다.

(이는 국가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의 수준(levels)과 경향(trends)의 비교는 퇴직 연령과 주거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이루어진 9개국 은퇴소득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러한 효과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4.2. 주요 OECD국가들의 빈곤 지표

균등화지수 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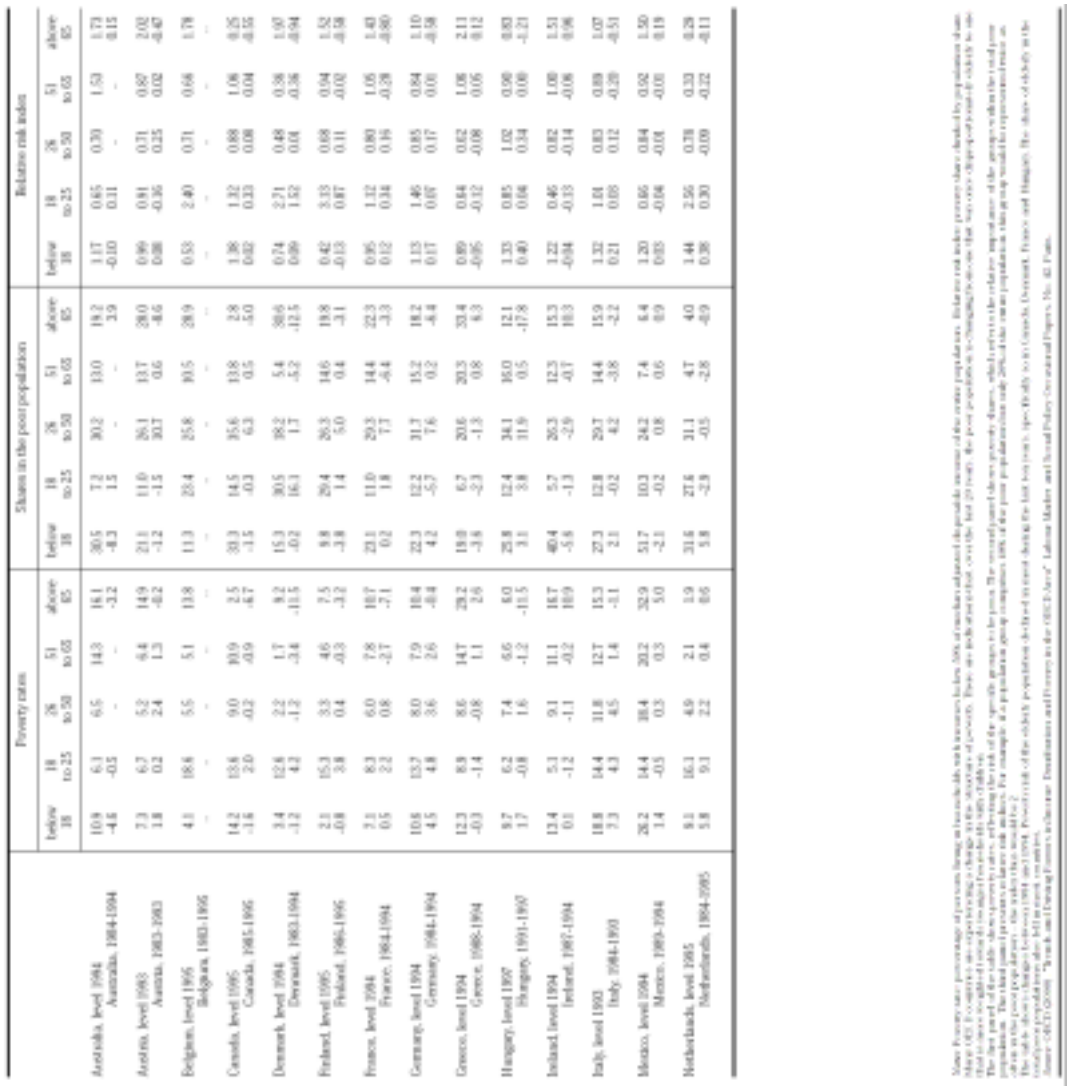

주 : 빈곤율 -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전체평균의 50% 이하 소득 가구의 비율.
상대적 위험 지수 - 빈곤인구의 연령 구성.
많은 OECD국가들은 빈곤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빈곤인구는 노인층이 감소하고 아동이 있는 젊은 가구층이 비대해지고 있다.
표의 첫 번째 행은 특정그룹이 빈곤하게 될 위험을 반영하는 빈곤율이다. 두 번째 행은 빈곤정도로서, 전체빈곤인구내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행은 상대적 위험도이다. 예를 들어, 비교집단이 빈곤인구 대비 40%지만 전체인구의 20%라면, 이 그룹이 빈곤인구일 확률이 2배 더 큼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표는 2가 될 것이다.
이 표는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노인인구의 빈곤위험은 최근 10년간 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그러하였다. 총 빈곤인구의 노인비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출처 : OECD(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2. Paris.

정책 과제와 국가적 대응의 척도

정책과제는 우선, 독거노인 특히 여성을 포함한 저소득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최근의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정이 의도하지 않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또한, 5장에서 논의될 장기요양 제도를 포함해서 다른 과제들 역시 현재 정책 아젠다에서 비중이 높다.

다른 분야의 시급성이 더할지 모르지만, 부록1에서 보이듯 여전히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주목할 만한 효과가 기대된다.

개혁의 경향

연구와 조정

뉴질랜드는 여타 국가들처럼 빈곤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상당히 편안한 환경에 있다. 이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0년 퇴직연금추진위에서는 뉴질랜드 노인의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위탁하였다. 새 정부에 의해 추진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지만 위탁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사회정책부(the Ministry of Social Policy)에 의해 감독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령화와 연금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포함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더욱 충분해진 공적연금

노인 생활에 적절한 최저생활 기준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박스 4.9는 그 일례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계인별 계좌가 보충되고, 급여 산정식의 최고 및 최저치가 물가보다 임금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것 등이다. 또한 흔히 미망인인 독거 노인여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개혁의 다른 표적 그룹은 소득연계연금에 정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로유인에 대한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특히 급여의 자산조사와 관련하여 그렇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자산조사에 의한 연금의 복합적 영향이 발생하고, 일반세가 다수 저소득 노인

들에게 높은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유발했다고 보여진다. 비록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것들이 근로와 투자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0년에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국가들의 개혁은 이러한 유효 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노동시장 참여와 퇴직유형에 대한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스 4.9. 저소득 인구에 대한 부조(assistance) 방안과 개혁의 주요 사례

영국은 최저소득보증제를 도입

영국의 최저소득보장제도는 평균 소득 60% 이하 수준에 있는 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도입되었다. 연령, 장애, 난방 및 무료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비자산조사 보충급여와 함께, 최저소득보장은 연금 가입자의 빈곤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목표는 소득에 따라 최저소득보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연금가입자의 빈곤이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멕시코는 개인별 계좌들을 보충하여 최저임금에 상응하도록 함

멕시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저소득 근로자와 수급자들이 적어도 이전 제도의 급여 수준을 지키고, 연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었을 때 미래에 더 나은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인별 계좌의 축적된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 연방 정부는 연금이 최저임금에 준하도록 보증하며, 필요 부가액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스는 최저임금과의 연계를 끊고, 자산조사 기반 보충급여를 도입

그리스는 연금과 최저소득제 사이의 연계를 1990년도에 폐지하였고, 1996년 대중의 압력으로 자산조사 기반 보충급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주요 사적영역 기금 수혜자들의 약 70%가 기여에 상관없이 연금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수급권과 기여 간 연계의 약화는 보험료 납부 거부로 귀착했다. 자산조사 기반 보충급여는 소득세 대상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며, 세 가지 소득조사(개인 연금소득, 개인총소득, 가족소득)가 수행된다. 개혁의 일부 성공(평가 자체의 공평성 확보)은 집행 과정에서 이뤄졌다. 자진신고와 후불수표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및 수급절차가 신속해지고 비관료적으로 바뀌었다.

스웨덴은 생애 기여와 동등한 급여로의 전면적 전환 과정에서 보충제도를 설계함

스웨덴의 새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은 개인의 전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모든 기여가 급여의 가치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는 질병이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 충분한 연금액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완하는 규칙들이 있다. 또한 미망인처럼 가족부양을 위해 피부양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규칙도 있다. 새로운 연금체제는 보충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충분한 연금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의 연금을 보증하는 최저연금보증제를 제

정하였다.

한국의 빈곤층은 경로연금을 통해 포괄적용됨

한국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의 일환으로 경로연금(비기여 방식)을 1997년 7월에 도입하였다. 국가외환위기 상황에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공식적 사회연금을 도입한 것은 이전의 국민연금제도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빈곤 노인들을 위한 비약적인 발전이다.

호주는 현물급여과세 도입의 보완으로 연금최고액이 임금에 연동되도록 함

호주 노령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연동되며, 정부는 독신의 경우 연금 최고액이 적어도 남성의 주당 평균소득의 25%가 되도록 공식화하였다. 이것은 연금이 물가상승에 연동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조정에 덧붙여, 연금자들이 현재 임금에 따른 지역의 생활수준 증대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제화의 결과로써, 1998년 3월 이후로 연금 최고액은 A$13(2주당)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기혼자 연금 최고액은 부부 각각 A$11(2주당)까지 상승하였다(기타 개혁으로는 2000년 7월 도입된 급여과세의 효과를 상쇄하도록 연금액을 보충하는 다양한 조치가 속한다)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특별 조항을 세움

스위스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노령보험, 직역제도, 세금우대 개인저축의 이른바 3층 체계를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연령의 노인은 보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여타 소득과 함께 노령연금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되면,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령보험과 유족급여 및 폐질급여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시킨다.

아이슬란드는 다양한 혼합방식을 강구

아이슬란드의 노인빈곤은 지난 십년동안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역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증가된 연금자산에 의거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자산조사급여(비자산급여에 비해 급속도로 성장)와 더불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1995년 일반 임대 급여(general rent benefits)는 임대시설에서 생활하는 다수 빈곤노인의 생활수준을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배우자간 연금 수급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임의방식이 도입되었다.

핀란드는 프로그램을 통합시킴

핀란드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모든 핀란드 거주자들에게 최저연금수준을 보증한다. 1996년까지 국민연금은 기초액과 부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혜자의 근로연금액이 특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기초액에 대한 수급권이 없어진다. 1997년 초반 이후로 기초액과 부가액은 단일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었다.

캐나다는 제도를 분리운영

캐나다에서 저소득 위험은 노인이나 그 외 일반 시민들이나 유사한 수준이다. 캐나다 노인의 저소득 범위는 노령소득보장프로그램(OAS), 소득보충보장제도(GIS)와 캐나다 연금계획(CPP)의 도

입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다.

오스트리아는 여성노인의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험중

오스트리아는 여성의 독립적 은퇴소득제도와 관련해서, 미래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논의는 여성의 강제기여에 대한 선택권, 연금 분할, 관대하게 규정되어있는 "유사충족기간(육아 기간 등)을 포함하여, 유족연금이 모든 여성을 위한 독립된 노령연금으로 대체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비기여자에 역점을 둠

이미 빈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과세의 방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근로를 하는데도 보충적 연금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른바 연금의 백색지대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노동인구의 약 9%를 차지한다. 이 중 2%는 고용주가 보충연금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며, 나머지 7%는 연금제도가입에 가능한 특정 기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비정규직이거나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법에는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를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와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최저소득보증제도

룩셈부르크의 최저소득보증제도는 1986년에 시작하였으며 모든 개인이 848.44 유로를 최저소득으로 보장받게 된다. 가족구성원이 한명 추가되었을 때 424.22유로가 증가되고, 이 후로 가족 구성원 한 명당 242.71유로가 올라간다. 벨기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노인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가 1969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 1997년부터 저임금의 은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최소요건(minimum claim)의 연금제도가 근로경력 기간 기준으로 제공된다. 연금은 최근 유연한 근로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 비경제활동과 임시직 기간이 연금 산정에 포함된다. 폴란드의 연금개혁은 저소득층이나 단기근로경력자를 위한 최저연금보증제도를 통해 빈곤퇴치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였다. 여타 많은 국가들은 사회부조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었다.

제5장
보건과 장기요양 – 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

요약 및 주요 결과

이 장은 보건과 장기 요양 개혁에 대한 것이다. 박스 5.1은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밝힌 일련의 원칙을 보여준다. 주요한 관심사는, 보건 의료(health care), 의료 연구 그리고 장기 요양 제도가 주로 나이든 인구 집단에게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의료 제도는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그러나 고령화 그 자체가 개혁의 지배적인 동력은 아니다.

장기 요양에서 주요 주제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 간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은 지역사회와 재가 기반 급여 쪽으로 전반적인 이동이 이루어진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포괄적인 제도가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독일에서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개혁이 있었고 일본도 근본적 개혁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은 점진적인 것이었으며, 기존 제도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최근의 연령 연계 개혁은 다음의 주제들로 분류될 수 있다. (1) 지역사회 그리고 재가 기반 장기요양 자리매김 (2) 보건과 장기 요양의 통합・조정 (3) 보건과 장기 요양의 재정 조달 (4)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는 정보 전략, 그리고 (5) 고령화 압력에 대한 장기적 능력의 강화.

현 황

많은 연령 연계 개혁은 장기 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고령화가 장기 요양에 미칠 압력에 관심을 두고있다. 표 5-1은 여러 나라에서 공적 장기 요양 지출에 장애와 시설 비율 및 고령화 등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한 추정치이다. 이 표는 다른 나라의 개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가지 요소들을 보여준다.

- 장기 요양의 공공 지출에서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다. 장기 요양의 공공 지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지만, 스웨덴에서는 3%에 가깝다. 노르웨이의 수치는 스웨덴의 수치와 비슷하다. 장기 요양의 총 지출액 또한 큰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총 지출은 90년대 초에 3%에 이르렀다. 반면, 미국, 영국, 그리고 벨기에는 1.0%에서 1.5% 사이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수치는 표에서 제시된 나라들보다 더 낮다.

표 5.1. 2020년까지 공적 장기 요양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계

	장애율과 시설율의 과거 추세가 미래에 계속 증가하리라고 가정시				미래에 시설율 혹은 장애 율에서 변화를 가정하는 경우			
	1996	2000	2010	2020	1996	2000	2010	2020
호주								
재가	0.15	0.15	0.17	0.23	0.15	0.16	0.19	0.26
시설	0.66	0.66	0.70	0.76	0.66	0.70	0.88	1.12
전체	0.81	0.81	0.88	0.99	0.81	0.87	1.07	1.38
캐나다								
재가	0.21	0.23	0.28	0.36	0.21	0.23	0.26	0.33
시설	0.50	0.51	0.53	0.57	0.50	0.54	0.66	0.81
전체	0.71	0.74	0.81	0.93	0.71	0.77	0.92	1.14
프랑스								
재가	0.23	0.20	0.18	0.19	0.23	0.24	0.27	0.33
시설	0.37	0.41	0.54	0.71	0.37	0.41	0.52	0.66
전체	0.60	0.62	0.72	0.90	0.60	0.65	0.79	0.98
독일								
재가	0.32	0.32	0.32	0.35	0.32	0.34	0.39	0.47
시설	0.39	0.40	0.45	0.55	0.39	0.40	0.45	0.55
전체	0.71	0.72	0.78	0.90	0.71	0.74	0.85	1.02
일본								
재가	0.08	0.09	0.11	0.12	0.08	0.10	0.14	0.19
시설	0.66	0.74	1.00	1.28	0.66	0.76	1.12	1.54
전체	0.75	0.83	1.10	1.40	0.75	0.86	1.26	1.74
스웨덴								
재가	1.35	1.23	1.05	1.17	1.35	1.31	1.38	1.68
시설	1.51	1.48	1.54	1.71	1.51	1.53	1.58	1.93
전체	2.86	2.71	2.59	2.88	2.86	2.84	2.96	3.61
영국								
재가	0.36	0.34	0.33	0.37	0.36	0.36	0.38	0.44
시설	0.69	0.72	0.75	0.86	0.69	0.72	0.75	0.86
전체	1.05	1.06	1.08	1.22	1.05	1.08	1.13	1.30
미국								
재가	0.24	0.23	0.22	0.25	0.24	0.24	0.25	0.30
시설	0.42	0.40	0.37	0.36	0.42	0.44	0.46	0.52
전체	0.66	0.64	0.59	0.61	0.66	0.68	0.70	0.82

주 : OECD 논문 'Is the health of older persons in OECD countries improving fast enough to compensate for population ageing' (E. Cambois, S.Jacobzone, and J.M.Robine). OECD Economis studies, 30호에 실림.

- 고령화 자체의 영향, 특히 초고령자의 증가는 시설 요양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 그러나, 만일 경증 장애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비용 증가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 시설 비율은 또한 미래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재가 요양(home care)과 시설 요양 간의 균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발전 역시 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중증 장애와 시설 입소 추정이 과대예상 되었다면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 상승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 이 표의 자료는 매우 취약하다. 장시간에 걸쳐 개인들의 경험을 조사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나라의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와 의존률의 국가간 비교에 필요한 지극히 일상적인 정보조차 취약하다.

도전과 국가 정책 반응의 규모

3장에서 논의한 재정 이슈와 별개로 고령화 관련 이슈들은 보건 정책의 주요한 도전이다[6]. 부록 1은 개혁을 도입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싣고 있다. 많은 경우는 보건 분야의 비용 효과성 제고와 장기 요양 제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 점진적인 개혁이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관계없이도 합리적인 조치들이다.

개혁의 경향

지역사회 그리고 재가 기반 장기 요양의 자리매김

많은 개혁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와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은 방안에 집중했다. 특히 호주는 도우미(care-giver)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강조했다(박스 5.2 참조).

6) 미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 : 고령 사회에서 보건 의료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 자료의 개발과 연령 관련 비전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강조로 이동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수준으로 책임이 이동되면, 주요한 주제는 보건과 장기 요양에서 행위자들(actors) 간의 조정(co-ordination)이 된다. 많은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의 탈중앙화를 강조했다그리고 나서 서비스의 조정을 강조한다. 주요 주제는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의 조정을 강조하는 것이다(박스 5.3 참조).

보건과 장기 요양의 통합·조정

보건과 장기 요양의 더 나은 통합을 찾는 개혁은 장기 요양의 탈중앙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 해당. 각국은 독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는데(박스 5.4 참조), 거의 모든 주요 개혁은 비슷한 연구와 조정 강화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보건과 장기 요양의 재정 조달

재정 관련 개혁은 보건과 요양 제도가 고령화의 압력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적 접근이 있다[7]. 몇몇 나라들은 전통적인 공적 해결책이 아닌 사적 대안을 가지고 더욱 다양한 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박스 5.5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서비스와 재정을 연계하는 많은 새로운 모형들을 실험중이다. 반면, 중부 유럽은 보다 기본적인 재정 개혁 과정에 있다.

장기 요양의 재정과 전달 체계에 관련하여 몇몇 기본적인 개혁이 도입되었다. 오스트리아 개혁은 박스 5.6에 제시되었다. 독일은 90년대 중반 개혁을 도입했으며, 일본은 새로운 장기 요양보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는 정보 전략

많은 나라에서,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응용 연구가 매우 강조[8]되고 있다. 이는 또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의 중요 메시지이다. 특히 박스 5.7은 크게 강조되고 있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 보여준다. 미국은 고령화의 도전에 대해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7) OECD의 사적 건강 보험에 관한 책은 별도로 출간됨.
8) 전략적 틀, 좋은 정보, 응용 연구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보건 분야에서 더 관심이 크다.

고령화 압력에 대한 장기적 대처 능력 강화

개혁의 또 다른 주제는 비용효과성을 보다 장기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 과정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는 인구의 점진적 고령화에 따라 더 중요하게 된다.

물론, 연령과 연계된 질병의 치료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의학적·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며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요한 주제는 건강 증진과 같은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다. 이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개혁은 박스 5.8에서 제시되었다.

박스 5.1. 보건과 장기 요양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의 정책 원칙

원칙 5. *보건과 장기요양에 있어서는 비용 효과성에 보다 많은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의료 지출과 연구는 신체적인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허약노인에게 요양을 제공하는 명백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보건 의료(health care)를 더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료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주요한 도전은 이러한 지출이 효과적이고 요긴한 곳에 확실히 쓰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대응에는 다음이 필요하다.

- 분석 틀 : 다차원 개입을 포함하여, 개입의 비용 효과성의 지속적 측정과 정보의 보급; 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 향상;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험이 벤치마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료의 국제적 협력
- 치매, 편두통, 관절염과 관련된 의존(dependence)의 감소와 제거에 대한 의학 연구와 기술
- 치료비의 상승 억제와 예방적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정

초고령의 허약 상태는 고령화 과정에서 예측되는 바이다. 단일한 최선의 해결책은 없지만, 다음의 개혁이 필요하다.

- 근로 연령 인구가 짊어져야 할 재정의 부담에 대해, 장기 요양을 인생의 일반적인 위험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감대 형성.
- 재가 보호와 시설 보호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고 긴급(위기) 비용 발생시에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 전달 체계의 다층화 촉진 : 자신의 집이나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요양을 받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공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덜 강조한다. 병원에서의 장기 요양 제공은 없어져야 한다.
- 보건과 수발 요소의 최상의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개혁과 장기 요양 정책을 조화시킨다.

박스 5.2. 호주 – 가족 care – giver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혁의 역사

80년대부터 호주 연방 정부는 장기 요양 지출의 상승을 억제하고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여, 적절한 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틀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혁 하에서, GDP 대비 노인 요양 지출비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서서히 성장하기는 했지만, 대상 인구집단의 성장률보다는 낮을 수 있었다.

가정과 지역사회 요양 서비스의 확대와 시설 요양의 비중 약화로 정부 재정지원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 70세 이상 인구집단의 12%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다. 반면, 요양원 서비스는 4% 정도이다.

1986년부터 포괄적인 노인 요양 욕구 기반 계획과 산정 틀이 도입되었다. 계획 틀은 전국 수준에서 작동하며, 정부와 지역사회 및 요양 제공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양 서비스는 각 지역에서 7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된다.

새로운 노인 요양 장소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배정되며, 지역 요양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한다. 이러한 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매우 적으며,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산정 틀은 개인 수준에서 작동하며,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인요양 산정팀(Aged Care Assessment Teams)이라고 불리는 보건 전문가 팀은 고령자의 욕구를 산정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사회 요양 서비스와 수발자 지원을 포함하여 적합한 서비스 위임 역할까지 수행한다. 산정 팀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긴급한 경우에 우선수위가 주어지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1992년 이후 연방 정부는, 향상된 재정 지원과 수발자를 위한 일시 휴식 프로그램 및 수당 제공을 포함하여, 가정내 수발자를 위한 일련의 지원 수단을 개발하였다. 수당은 수발 비용에 이용 가능하며, 소득 지원의 성격으로 쓰일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시도인 Carelink는 지역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찾고 있는 보건 전문가들을 위해 정보와 의뢰(referra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에 정부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이다.

1997년부터 시설 요양 부문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지불 능력이 있는 거주자에게 위한 숙박비를 받고 요양 보조금은 소득 조사를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시설 요양에 이용가능한 기금은 퇴직 소득과 함께 증가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는 거주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은 요양으로의 접근이 지불 능력별이 아니라 요양 욕구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호스텔 요양 거주자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그들이 허약해지면서 한 시설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협정은 치매 거주자를 위한 기금을 상당히 향상시켜서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92% 이상 상승하였다.

1997년부터 장기 요양 프로그램의 개혁에서 호주 연방 정부는 가족 수발자 지원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 남아있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거주 요양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은 국가가 설정한 인가 기준에 맞추어 요양원에서의 요양 수준을 보장한다. 이는 높아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조치이다.

2001년 1월부터 독립 기구인 '노인요양 기준 및 보증국'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들은 정부 기금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기금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해서만 이용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정부 서베이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필요조건에 빠르게 적응해왔고 대부분 중요한 서비스 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연방 정부는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연방정부 정부 지역의 전략 개발을 통해서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다.

박스 5.3. 지역사회와 재가 기반 장기 요양의 자리매김

그리스, 헝가리 그리고 포르투갈은 시스템 확장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보건'을 강조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재가보호' 프로그램이다. 이는 보건 복지부의 지도 하에 1998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79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개 요양 센터(Open Care Centres for the Elderly)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재가보호 프로그램은 의학적, 간호, 예방과 일상 생활에서의 도움을 포함하여 독거 노인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03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500여 노인들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2000년 초반 몇 달 동안, 300개 지방 정부로 확산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1차 의료센터와의 연계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 프로그램은 모든 허약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헝가리는 또한 1997년 초에, 국가 건강보험 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가정 요양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목적은 짧은 기간 동안 집에서 환자를 돕는 것이다.

포르투갈은 노인들이 그들의 보건 의료 욕구에 대처하도록 가정 봉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스위스도 재가 요양 방식을 도입했다

스위스는 1980년 이후 재가 요양 서비스의 발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0-2005년 노인들을 위한 행동 계획'을 도입했다. 이것은, 탈중앙화된 전달체계 구축과 노인들 자신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제도의 현대화이다.

영국은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완결했다

지속가능한 장기 요양에 초점을 맞춘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는 1999년에 결과를 보고했다.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독립 증진, 보호 향상, 기준 제고"라는 백서는 고령화 사회의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기 요양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장기 요양은 빈곤 노인을 위해서만 제공되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한국에서 장기 요양급여는 매우 초기 단계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기 요양의 수요 증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현재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이다.

체코 공화국의 중요한 이슈는 보건 의료의 다양한 욕구 간에 바람직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체코공화국에서 보건 의료는 긴급의료와 만성질환 욕구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급성질환 진료후(post acute) 시설, 재활, 간호 그리고 장애와 만성 질병을 가진 아동을 위한 의료와 같은 장기 계획과 설비가 갖추어졌다. 이 개혁에 덧붙여서 재가 요양과 지역사회 요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증 노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된다. 아울러, 치매 노인 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6년에 수립된 특별 10개년 계획(a special ten year Plan for Elderly with Dementia)이 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 센터 내의 '치매 등록과 상담 센터'의 설립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요양장소 산정도구가 서비스 통합에 유효하다고 판명되었다

아이슬란드는 노인을 위한 통합된 요양 정책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정책 목적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 노인의 자기 결정 존중과, 적절한 부담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이는 욕구가 발생했을 때 은퇴마을 혹은 요양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한편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려는 의도이다. 요양장소 산정도구의 도입은 아이슬란드에서 매우 유용했다. 그것의 성공은 두가지 주요한 요소에 의존했다 : 간호사의 훈련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신뢰성 있는 운영.

스웨덴의 개혁은 지역 전달 체계 역할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웨덴에서 최근 몇 년간 이행된 많은 보건과 요양 관련 개혁들은 다양한 당국이 서비스운영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책임과 과업의 분담이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당국과의 협력 구조와 긍정적 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지역 수준에서 협력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긴 과정의 일부이다.

핀란드에서는 지자체 사이의 협력과 정부간 정책 조정이 강조된다

핀란드에서 지자체는, 거주자들에게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목적은 그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요양을 확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1996년에 핀란드는, 2001년까지 이행될 새로운 공식 국가 고령화 정책을 수립했다. 지자체와 지역 병원 평가 산정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이슬란드(와 많은 다른 국가)는 노인성 질병을 전담하는 특별 클리닉을 가지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레이캬비크의 두 병원과, 노인병동과 외래 진료과를 가진 독립 시설에 노인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병원에서 노인을 위한 보다 특성화한 서비스와 더 나은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요양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박스 5.4. 보건과 장기 요양의 상호 조정을 지향하는 개혁

미국은 보건과 요양을 통합하기 위해 관리요양(managed care)을 활용한다

건강보험 방식(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적용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재정과 전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실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대개 이는 다양한 '관리 요양' 계획을 포함하고, 별도로 평가된다.

핀란드는 보건과 요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한다

핀란드는 국가 고령화 정책을 도입하여, 보건과 요양 이슈의 상호 조정을 다룬다. 2002~2003년 동안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었다. 초점은 여러 가지 시설외 요양 프로그램과, 수혜자 친화적 기술 원조와 기술적 적용의 도입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는 전략적 틀을 구축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에 보건과 요양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틀은 1996년에 개발되어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을 계획할 때,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프로그램 계획자에게 제시되었다. 1999년에는 캐나다 보건연구위원회의 창설 하에 보건 연구 기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이 도입되었다. 목적은 보건 연구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스 5.7에 추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영국 개혁은 조사와 평가를 강조한다

영국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한 개혁으로는, 보건 상태에 대한 장기 서베이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 향상 위원회 설립, 보건 의료의 6개 영역에서의 성과 지수 개발 적용, 그리고 새로운 자료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노인의 조기 퇴원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다른 개혁들은 종전의 재정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처리방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과거에 병원은 조기 퇴원을 독려하여 계획되지 않은 재허가가 많이 발생했다. 고령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너무 일찍 퇴원 처리되었고 지역사회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았다. 이는 가족 수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멕시코의 전략 역시 보건과 요양을 아우른다

멕시코는 보건에 관련된 포괄적 범주의 이슈를 다룰 '고령화 대비 국가위원회'를 1999년 8월에 설립했다. 이 위원회의 도입과 함께 노인을 위한 보건과 장기 요양을 지원하는 모든 제도적 노력이 상호 조정될 것이다 서비스, 기금 그리고 노인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등.

박스 5.5. 보건, 장기 요양 재정 관련 개혁

미국은 새로운 세제급여(tax credit)를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 (1) 장기 요양 욕구를 가진 사람을 위한 3000 달러 세제급여를 제공; (2) 가족 수발자(caregiver)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형성; (3)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자격 관리의 형평성 향상; (4) 노인을 위한 저소득 주택과 메디케이드 간의 조정 제고; 그리고 (5) 연방 피용인에게 민간 장기요양보험의 구매를 촉구

…그리고 제3자 평가 체계에 기반한 접근과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 • 장기 요양의 재정과 전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실험이 상당수 진행중이다. 이러한 실험의 대부분은 주정부가 주도한다. 기존의 법과 규제의 면제(waiver)를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체계의 유지를 위해 법률 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제3자 평가가 요청된다.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나 질을 향상시킬지 여부와 같은 산출 지표가 측정될 뿐 아니라, 규제면제 승인 전에 프로젝트의 구상에 대한 상당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다.

체코의 보건과 장기 요양에 대한 재정 개혁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

사회 서비스의 재정 개혁에는 1990년 이후 주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에 의해서 제공되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까지 포함된다. 목적은 노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수혜자가 요구하는 요양의 종류와 그들이 선호하는 제공자, 재정의 새로운 모델 등이 도입되었다. 장기 요양의 구체적인 형태는 수혜자 자신의 선택 – 가족, 지자체 또는 비정부 기관을 통해 – 에 상응하여 제공될 것이다. 이 개혁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 요양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 개혁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일본은 장기 요양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2000년에 도입된 일본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기존 두 개의 독립적인 제도(의료 제도와 복지 제도)를 재조정하는 합리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이는 급여와 기여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보험 방식의 제도이다.

아일랜드에서의 재정 제도 변화는 특정 그룹에게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시도이다

아일랜드 정책은 노인들이 재가 보호와 같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수혜를 되도록 많이 받도록 촉구한다. 집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응급 병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특별 치료부가 있다. 이 부서는 산정과 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노인의료 자문 의사에 의해서 운영된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장기 거주 간호 병원 혹은 간호 병동의 네트워크가 있다. 민간 요양원에 대한 접근은 자산 조사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1993년)에 의해서 더욱 쉬워졌다. 최근 세제 지원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산출하고 있고, 공공 자금 프로그램의 기금은 공공 부문에서 진보를 이끌어 내고 있다.

폴란드는 자발적인 기여 뿐 아니라 강제적인 기여에 기반을 둔 2층 구조의 장기 요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한 요양 수발자로서 가족을 상정한 현재 모형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노인들은 자발적인 기여와 서비스 직접 구매를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민간 요양원과 병원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보건 의료 개혁의 주요한 목적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며, 투명한 조직과 재정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좀더 길게 보면 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스 5.6. 오스트리아 - 장기 요양 제도의 재설계에 초점을 둔 개혁

장기 요양 제도 재설계의 주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요양 욕구를 공평하게 커버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 급여의 7가지 세부 범주는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설계하고 필요로 하는 원조를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1993년에 도입된 장기 요양 급여 제도는, 요양의 필요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급여와 사회 서비스의 결합을 활용한다.

연방 장기 요양 급여법과 9개의 유사한 Länder에 기반을 둔 욕구 기반 장기 요양 방식이 도입되었다. 수혜자들은 그들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요양 욕구에 관계 없이 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있다. 이 급여의 법적 권리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보장한다. 장기 요양 급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욕구 중심의 자기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반면,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정률 기여 방식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9년에 매달 ATS 2000(145)유로에서 ATS 21074(1531유로)에 이르는 7개 층으로 나뉘어 오스트리아 인구의 약 4%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다.

대체로 구 방식이 투입이 적은 요양과 많은 요양 간에 구분이 없었던 반면에, 현재 장기 요양 급여는 더 다양화되고 따라서 더욱 세분화된 범주를 적용함으로써 요양 투입의 양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자료에 근거한 분석에 의하면, 급여의 범주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은 매우 높으며, 새로운 장기 요양 급여 법의 도입은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다. 요양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무급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독특하다. 장기 요양 급여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고 선택권을 제공함에 따라, 가족 수발자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왔다.

포괄적인 평가는 오스트리아의 장기 요양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증한다. 평가 과정의 초석은 비엔나 대학 Badelt 교수의 연구였다. 그는 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의 상황과, 비공식적 요양 수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장기 요양 급여가 일종의 사회 부조 방식이며, 수발자의 삶과 상태를 크게 향상시켜왔다는 것을 밝혔다. 수발자의 급여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구조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요양 이전 급여에 대해 자산 조사를 실시하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조에 다시 의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시행된 연방 장기 요양 급여 법의 수정 등 제도 개선과 조치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박스 5.7. 개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전략

미국은 정책의 성공을 위해 통계적 기반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과 장기 요양의 영역에서 정책 발전은 서비스 활용 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미국 인구집단의 사회 경제적·보건 실태를 모니터하여 정보 수집과 모형 개발까지 상당히 진보되어 있다. 보건과 경제 변수를 포함하는 장기 시계열 서베이가 수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는 여러 횡단 · 종단 서베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왔다 : 매년 국가 보건 인터뷰 서베이, 가정 간호 서베이, 의료 지출 패널 서베이, 고령 패널 연구, 국가 장기요양 서베이, 그리고 의료 수급 서베이가 많이 알려져있다. 마지막 두개는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시설 거주 인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가 장기 요양 서베이는 노인 장애율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준 최초의 자료이다. 노인 인구 집단의 장애가 감소한 것은 잠재적으로 보건과 장기 요양 이용 및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장애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노인 인구 집단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모형들은 여러 인구학적, 경제적, 정치 시나리오 하에서 보건과 장기 요양 프로그램의 수요와 비용을 측정한다.

캐나다는 보건 결정 요인에 대한 정보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베이는 보건 결정요인, 보건 실태 그리고 130개 지역별로 보건 의료 이용의 정기적 횡단 추정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서 새로이 개발되었다. 또한 노인의 심층 연구를 위해 표본추출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니터링이 고려된다

국가 보건 모니터링 인프라(NHSI)는 질병과 기타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과 위협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모니터링 기반을 인터넷에 구축하고 캐나다 공공 보건·요양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의료전문화와 보다 나은 협력 체계 개발은 프랑스에서의 정책 목표이다

노인의 거주 장소에 근접한 1급 평가 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일련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특성화된 부가 업무를 하는 2급 평가 센터뿐 아니라 인지 측면에 관한 개별 산정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전문 센터는 진단부터 의학적 실천까지 발달을 돕고 적절한 요양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주간 센터가 장려되고, 재가보호를 위해 더 나은 조정과 넓은 노년학적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했다. 결국, 2000년에 지역 정보·노년학적 협력센터(CLICs)가 20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되었다. 정부의 목적은, 전국을 연계하는 노년학적 협력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1000개의 CLICs를 설립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정 간호 서비스를 이용률을 5년 동안(2005년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중 서비스가 고안되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의료와 요양을 제공한다. 집에서 노인들이 수발을 받게 하는 전략은 2000년 봄에 정부에 의해 발표된 5개년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스위스는 연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

2002 2003년의 기간 동안 연방 공공 보건 사무소(OFSP)의 연구 우선순위는 설문 조사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 준비이다. 보건 연구의 새로운 초점은 무엇이 보건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중장기적으로 긴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정부는 또한 그들의 개별적 보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의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초 보건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국민 보건 서베이와 영양 서베이는 1998년에 통합되었는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설문과 분석이 보다 연령에 초점을 두고,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 그룹에 알맞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국가 건강·영양 서베이는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질병에 관한 자료도 모아지고 있다. 현재 뇌졸증, 심장병, 골다공증의 발생률, 의학 치료, 그리고 치료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스웨덴은 고령화와 장기 요양 연구의 통합을 강화한다

노인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의 중요한 측면은 이 분야에서 미래 계획과 실행을 위한 지식 기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와 노인의 요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과학 연구위원회 쪽으로 상당한 기금이 투자되었다. 국가 보조금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센터 지원을 위해 지역 당국에도 주어진다. 또한, 요양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종류의 많은 프로젝트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정부의 시도는 4개 지역에서 장기 시계열 연구를 수행하는 준비였다. 그들은 핵심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따라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입의 효과 측정을 위해 지역별로 통제지역을 설정한다. 이 연구 영역은 스웨덴의 모든 지역 정부의 정보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박스 5.8. 고령화 압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혁

멕시코는 노인성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5 2000년 보건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보건부의 특별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개의 주요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당뇨, 경변, 종양, 그리고 고혈압. 이 프로그램은 위험 요소와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강조한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입원 환자 수용 능력을 늘리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특별 기금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 기금은 노년학 연구를 장려한다. 만성적인 질병의 연구와 예방적 보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쓰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비용 효과성을 가장 중시한다

1998년 정부 보고서는 공공 지출의 확대를 억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거시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기초 보건 요양 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향상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장기 요양 부문의 벤치 마킹 방법의 도입을 발표했다. 주요 관심사중 하나는, 시설 요양을 가정 요양으로 대체하는 것

이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아닐 지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는 반면, 복잡한 중증 수혜자에게 가정 요양을 제공하는 것은 시설 요양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할 지 모른다. 만일 주당 몇 시간 정도의 가정 요양 이용의 경우, 시설 요양을 연기하고 대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명백히 비용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집중적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은퇴시설이나 간호 전문시설에서의 체류가 더 저렴할 지 모른다.

핀란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1세기 보건 의료, 요양 발전 프로젝트 이행 계획"이라 불리는 행동계획을 최근 발간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비용 효과성을 비교하는 시스템과 보건 서비스의 재정을 안전하게 하려는 정책 수단들을 포함한다.

한국은 예방적 보건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에서 정부는 예방적 보건을 증대하기 위해서 1995년 1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기반하여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는 공공 프로그램, 보건 교육, 영양과 치료법, 요양이 개발되고 있다. 1998년에는 보건 의료 정책 5개년 계획이 개발되었다. 이 계획은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장기적 준비를 강조한다.

스페인의 2000 2005년 고령화 대비 행동 모델은 노인을 위한 정책의 조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동 모델은 1992년의 노년학 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 지원 계획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건과 장기 요양의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질적 측정이 개발되었다
오스트리아 병원 개혁 계획은 많은 노인의 증대되는 욕구에 맞추기 위해 병원 구조의 조정을 제공한다. 2005년까지 57개 지역에서 약 2000개의 침상이 긴급 노인병 치료와 요양에 쓰이기 위해서 마련된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병 환자와 입원중인 긴급 요양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환자의 긴급한 질병 치료에 덧붙여서 긴급 노인병 및 재활 요양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환자들이 독립적 생활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하고,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터키는 증대하는 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터키는 고령화 대비 개혁 전략을 위한 틀을 새로이 하였다. 만성적 질병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프로그램은 1994년에 시작되었다. 고령화와 관련된 다른 활동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리스에서의 보건 개혁은 평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리스는 보건 부문을 개혁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역사회 지원 틀을 마련하여 훈련과 인프라 모두에서 상당한 자원을 투여할 것이며 또한 프로그램의 평가에도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 발전은 미래 보건과 장기 요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노인이 집중해서 모여사는 고립된 산과 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원거리 의료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건강 고령화 전략은 연방과 지방 정부의 적극 참여하에 이루어진다

호주에서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연방, 주 및 지역사회의 전략은 건강한 고령화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는 인식하에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전략은 연방과 주정부간 강한 협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제6장
금융시장

요약 및 주요 결과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는 선적립식 연금의 증대되는 역할에 대해 금융 시장과 연금 기금을 연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박스 6.1 참조). 중요한 정책 이슈는 규제의 틀을 현대화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개혁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 기술된 것처럼 퇴직 소득 제도의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금융 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대로 이러한 개혁이 많은 나라에서 진행중이다. 3장과 4장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더불어, 이러한 개혁은 사적 연금 제도의 역할을 상당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적 연금 방식의 증진에 관련된 일련의 개혁은 이미 4장에서 언급되었다. 다른 것들은 적절한 금융 시장 인프라를 지원하고 적절한 규제 틀을 공급하는 투자 준칙을 포함하며, 금융 시장 활동 모니터링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일련의 개혁은 여러 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연금 적립의 증진과 함께 이루어진 커다란 일련의 개혁은 위험과 수익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는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완화된 투자 준칙과 투명성의 결합 및 감독이 주요 주제이다. 조세 지원이나 강제 사적 연금의 자본 구조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별도의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혁과 쟁점 관련 설명은 총괄적인 것이다.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은 이 보고서[9]의 결론에서 다룬다.

---

9) 4장의 결과는 퇴직 소득 제도의 중요한 재구조화 경향을-특히 사적 연금 제도의 발전을 통해-명백하게 지적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융시장과 규제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감독과 6장에서 다룰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주요한 작업은 OECD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에 의해서 시행된 통계작업과 금융시장 위원회에 의한 금융 이슈에 대한 작업, 그리고 특히 규제 자료 수집에 관한 사적 연금 보험 위원회의 작업이 포함된다. 다층 보충식 제도를 장려하는 이 접근은 금융시장 인프라와 규제 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를 강조한다. 사적 연금팀의 작업은 연금 기금의 투자 보장, 사적 연금의 적절성 확보와 수급권의 보호, 사적 연금 방식의 분석, 그리고 적절한 통합과 공단 운영 기제 증진 등의 이슈를 특히 강조한다.

현 황

연금 기금 자산은 몇몇 나라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연금 기금은 (사적 연금 시장에서 역시 중요) 보험 회사와 함께 OECD 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다. 연금 기금에 의한 금융 자산의 보유(holding)는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11% 가량 증가했다. 몇몇 국가에서(표 6.1 참조) GDP 대비 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적립식 제도가 덜 발달된 것임을 뜻하고 연금 기금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그림 6-1. 지역별 연금 기금의 총자산 연평균 성장률 199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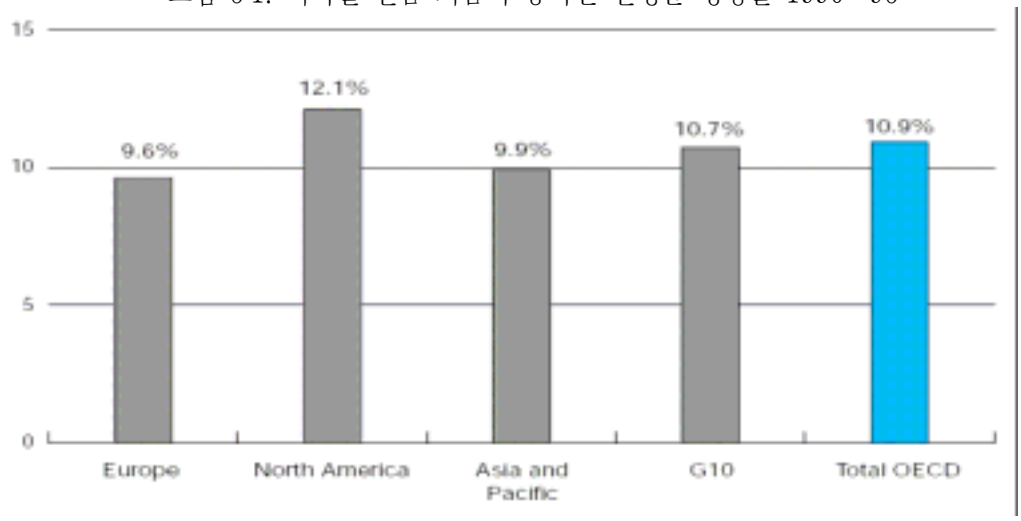

출처 : OECD, 1998.

표 6.1. GDP 대비 연금 기금의 금융 자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주	17.0	21.6	21.3	27.3	27.0	40.3	45.9	46.6	55.4
오스트리아	..	0.5	0.5	0.6	0.7	1.0	1.2	1.7	2.6
벨기에	2.0	2.8	2.5	2.9	2.9	3.7	4.1	4.8	..
캐나다	28.8	30.7	31.3	34.0	35.9	38.6	40.7	43.3	47.7
체코	..	..	..	..	0.1	0.5	1.5	1.2	..
덴마크	14.6	15.5	14.4	16.8	17.2	16.8	16.9	17.9	21.5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3.1	3.3	2.9	2.5	2.7	2.7	2.8	2.9	3.3
그리스	6.5	7.1	6.9	8.0	10.2	10.8	11.9	..	..
헝가리	..	..	..	..	0.0	0.1	0.3	0.6	1.3
아이슬란드	37.1	42.0	40.8	46.8	55.0	57.6	62.6	66.5	71.6
이탈리아	3.5	4.3	3.1	3.4	3.5	3.6	3.2	3.0	3.2
일본	..	..	..	..	..	..	..	14.6	18.9
한국	3.1	2.9	3.2	3.4	3.3	3.1	2.8	1.8	4.0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0.2	1.4
네덜란드	81.0	83.6	76.0	83.1	87.0	88.4	94.5	101.2	85.5
노르웨이	4.4	4.9	4.5	5.5	6.4	6.2	6.5	6.6	7.2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1.6	2.6	2.9	5.0	6.6	8.5	9.4	10.3	12.0
스페인	2.9	3.2	2.5	2.6	2.3	2.1	2.0	1.9	2.1
스웨덴	1.7	1.7	1.6	2.0	2.2	2.4	2.4	2.7	..
스위스	60.3	..	60.6	..	72.5	..	74.9	..	..
터키	..	..	..	..	..	..	..	..	..
영국	55.0	59.2	52.7	72.5	64.8	68.6	77.4	83.1	83.7
미국	44.9	48.9	50.0	52.9	52.6	60.0	66.9	76.9	86.4

출처 : OECD/DAFFE

국가간의 큰 차이는 연금 기금과 퇴직 자산의 공급과 운영에 기여하는 다른 금융 기관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이다. 마찬가지로, 투자 준칙, 연금 기금의 금융 시장 투자 활동 감독,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하고 연금 기금공단 경영의 역할과 능력을 평가하는 틀 등에서 국가간 차이에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인구 추세는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낮출지 모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퇴직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들이 근로 기간 동안 축적해왔던 금융 자산의 순판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수익률에 대한 고령화의 예상 가능한 영향은 잠재적으로 연금 기금과 퇴직 저축의 운영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편, 규제 환경에서의 변화는 연금 기금의 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만일 규제가 위험 감소를 편중되게 만들면, 이는 낮은 자산 수익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또한, 노인들의 사적 개인 저축이 극도로 위험한 투자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책 과제와 국가의 대응

부록1에 소개된 것처럼,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 의제는 정책 개혁의 난제[10]였음이 드러난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금융 시장과 규제의 개혁을 시작했으며, 4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개혁을 진행시켰다. 그렇지만, 금융 시장의 작동을 강화하고 사적 연금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 활동이 있었다.

개혁 추세

사적 연금 방식을 장려

이는 보고된 개혁 가운데 단연 가장 큰 영역이다. 개혁 내용은 4장에 요약되어 있다.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적절한 금융 시장 인프라를 지원

일부 국가는 적절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전형적인 형태는 금융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 자본 시장의 자유화와 투자 내역의 공개는 공통된 주제였다. 연금 기금 자산을 투자하는 데에 보다 많은 유연성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많은 유럽

10) 벤치마킹이 진행중이다. 이는 다음의 분야에 적용되는 행동 계획을 만드는 정책 개혁을 수반하였다 : a) 사적 연금 제도의 증진, b) 적절한 금융시장 인프라, c) 투자 준칙을 포함하여 적절한 규제 틀 마련, d) 더 나은 모니터링, e) 여러 관련 정책의 적합성 증진. 주요한 도전과 그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부록 1 참조.

국가들은 유로(EURO)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국가간 투자 기회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금융 환경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퇴직 소득 패키지의 2, 3층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관해서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개혁들이 보고되었다. 주요한 목적은 연금 기금의 규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보다 일반적인 몇 가지 예는 박스 6.2에 제시되어 있다.

표 6.2. 고령화사회에서 번영 유지 보고서에 의해 추천된 사용자(기업)연금방식의 규제원칙

수급자의 권리
1. 공평 접근 2. 수급권 보호 3. 이전, 조기 수령, 그리고 이동성 증진을 위한 적합한 규제의 이행 4. 최소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급여의 적절성 5. 급여 양식과 비용/부담금의 적합한 규제
연금의 재정 안정성
6. 적절한 법적, 회계적, 기술적, 금융적, 그리고 운영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기능적 시스템의 엄격한 시행 7. 스폰서로부터 기금의 법적 분리 혹은 최소한 적절한 보증 요건 마련 8. 민간 비적립 부가 방식 폐지 9. 자기 자본 혹은 동등한 변제 규칙에 관한 최소 요건 10. 적립에 대한 세금 우대 11. 최소 적립 규칙 설립 12. 보험수리적 기술과 할부상환 규칙을 포함하여 적절한 평가와 기금 계산 방식 마련 13. 비교가능한 기준에 기반한 투명한 회계 방법 14. 당국에 정보 보고를 포함하여 기금 모니터링의 강화 15. 자기 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16. 신중 투자 목적에 맞춘 해외 투자 자유화 17. 기금의 보험 적용 범위의 적절한 규제 18. 수급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마련 19. 기금 운영자를 위한 자기 규제 강화 20. 사용자가 폐업하는 경우 기금의 우선순위 주기 21. 지불 불능 보험과 다른 보증 제도의 규칙에 대한 산정 체계 22. 운영자간의 동등 경쟁기반 마련

투자 준칙과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적절한 규제 틀 제공

박스 6.1에는,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구체적인 정책 영역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국 국가의 대응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주식 투자 같은 투자 제한을 감소시키는 개혁을 포함한다. 박스 6.3은 보고된 개혁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고용주 연금 방식의 규제원칙- 진행중인 조치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는 사적 기업 방식의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틀의 필요와 그 구체적 원칙들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들은 표 6.2에 제시되어 있으며, OECD의 별도 연구[11] 주제이다. 비록 몇몇 국가에서 해외 투자[12] 자유화에 대한 원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장려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스 6.4를 참조하라.

11) 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한 추가 설문이 완성 단계에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주 14 참조.

12) 그러나 보험 회사와 투자 기금에 의해 외국에 투자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정이 OECD council에 제출되고, OECD 보험 위원회는 보험 회사와 연금 기금 투자의 규제를 위한 일련의 원칙을 1999년 12월에 승인했다.

박스 6.1. 금융 시장 관련 원칙 :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의 권고

원칙 6. *선적립방식의 연금체계 개발은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재정시장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는 퇴직 저축의 생산적이고 안전한 투자에는 제대로 기능하는 투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법 제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 기준과 공개 규칙, 적합한 연금 자산 투자 규칙 그리고 퇴직 급여에 맞는 다양한 규제와 감독 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을 포함한다. 경쟁력 있는 뮤추얼 펀드와 자산 운영 회사들은 퇴직 자산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는 새로운 금융 환경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아래의 공공 정책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연금 방식의 효과적인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규제의 질(허가, 기술 제공, 기금 규칙, 자산과 부채의 평가) 향상;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제한된 정부 보증과 연금 제도의 사적 운영 연금 채무 불이행 방식의 합당한 설계.

연금 기금의 적합한 투자 규칙을 설계. 이는 퇴직 소득 급여에 수반된 연금 기금의 투자 규제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현대적 금융 인프라를 가진 나라에서는, 신중한 개인별 투자 원칙의 도입과 투자 제한(국내와 해외)의 자유화나 유연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기준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퇴직 소득 제도의 감독기관은 금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현대적 위험관리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

지수 연계 시장과 같은 새로운 금융 제도와 새로운 시장의 발전 및 퇴직 연금 시장의 기능 향상을 지원.

퇴직 자산의 제공과 운영에 수반된 연금 기금과 다른 금융 상품의 투자 행위를 더 잘 모니터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 : 퇴직 소득의 일부인 연금 기금과 타 제도의 금융 자산 관련 통계 향상; 연금 기금과 타 제도의 투자·거래 전략 및 금융 시장 기능에 대한 영향을 숙지; 규제와 모니터링의 적합성 평가.

연금 기금의 공단 관리자 역할과 능력 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 활동을 위한 법적 혹은 자발적 원칙; 기업 행위에서 연금 기금이 이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금 기금의 운영과 수탁자의 역할.

개발도상국은 퇴직 기금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금융 시장 개혁을 포함하여 신속한 구조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박스 6.2. 적절한 금융 시장 인프라 지원을 목표로 한 개혁의 예

스웨덴의 사례는 국가 정책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시장의 힘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요소가, 국가 정책과 금융 시장 발전을 결정한다. 결국, 중요한 교훈은 개혁이 너무 급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향을 받는 제도와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의 균열 없이 바뀐 법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미시경제학적 관점과 거시경제학적 관점 모두에서 중요하다.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재투자하도록 강요 받으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급속한 변화는 시장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가 보험 회사의 투자 준칙 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EC 보험 지침(Directive)의 이행은 스웨덴 보험 회사의 투자 전망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스웨덴 준칙은 EC의 규정이 열어준 가능성을 수용하기에 제한적이었다. 보험 회사는 스웨덴 금융 시장의 주요한 행위자이다. 그러므로 회사에게 새로운 제도의 적합성을 타진하고 경험을 쌓을 시간을 주고 시장에서 이윤 낮은 재투자를 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은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다. 미국이 수행한 것은 금융 시장에서 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요한 조치는 미국 거주자들로 하여금 직접 금융 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다른 선진국보다도 주식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꾸준한 금융 시장 개혁을 진행한다

1998년에 독일은 여러가지 법을 통해 금융 시장 강화를 지속하였다. 100개의 개별 조치를 가지고 있는 세번째 금융 시장 장려법은 독일에서 금융 시장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 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주요한 것들 중에서, 발행 회사의 주식 시장 접근과, 상장 폐지와 많은 탈규제 수단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투자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뮤추얼 펀드가 허용되었고(박스 6.3 참조), 이미 허가된 뮤추얼 펀드들의 활용(거래) 규모는 상당히 확장되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통합은 증권 거래 감독의 향상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더불어, 유가증권법이 개선되었다. 기업 운영의 원칙은 비지니스 조정과 투명성에 관한 1998년 법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독일의 단체 회계에도 채택되었다. 독일 금융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현재 고려중이다.

오스트리아는 비엔나 주식거래소를 민영화하고 개혁하였다

자본 시장의 개혁은 비엔나 주식거래소의 민영화와 함께 1998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현대적 인수 규제의 도입, 등록 회사가 주식을 다시 구입할 가능성, 주식 거래구성원의 확장과 함께 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비엔나 주식거래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현대 유가증권 감독의 창설은 적절한 틀을 제공했다.

연금 기금 규제 관련

이 내용은 박스 6.4에 제시함.

박스 6.3. 투자 준칙과 감독 등 연금 기금 규제 틀에 관한 개혁의 예

영국은 부도덕한 회사의 생계에서 교훈을 얻었다

영국은 이동가능한 개인 연금 방식의 도입에 따른 조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이것은 1988년에 기존의 거대한 기업 연금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몇몇 부도덕한 기업은 새로운 개인 연금 방식체계를 이용했다. 기업 연금 가입자는 개인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설득되었다. 회사들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소비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했다. 영국은 그 당시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최근의 발전에는 이동 가능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새로운 사적 연금 방식이 포함된다.

아이슬란드는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규제를 조정하였다

기금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주식 투자의 상한을 제한하는 엄격한 준칙 중 몇 개를 푸는 방식들이 고려되었다. 연금 기금에 대한 법은 새로운 요소들을 몇 가지 도입했고 더 엄격하게 한 부분 도입도 있다 : 운영 허가 보조금을 위한 조건, 기금 조정에 대한 개별 감사부서의 설립, 매년 기금운용 보고서 발행 준칙, 해외 통화에 대한 원칙노출 등.

핀란드는 일련의 개혁을 도입한다

핀란드에서의 연금 기금에 관련된 개혁 패키지는 사적 연금 회사가 투자 활동을 향상하기 좋은 곳에서 시작했다. 피용자 연금 프로그램을 가진 모든 회사는 고용주와 고용자의 상호 협력하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윤은 기여 감소 등의 형태로 보험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배된다.

룩셈부르크도 개혁을 도입하였다

보충 연금 방식 가입자의 권리를 유지하고 보장하려는 법은 이미 있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급여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으며, 그 주제에 대한 유럽 지침에 따라 노력중이다. 보충 연금 방식 급여는 사회 본연의 역할로 간주된다. 연금기금에 대한 이 법의 목적은 연금 기금을 위한 적절한 법적 틀을 국가적,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세우는 것이다. 룩셈부르크 금융 시장의 장기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은 경제적 • 재정적 목적을 추구한다.

네덜란드는 감독을 강화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위원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개의 다른 감독자가 금융 감독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금융 감독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진다.

노르웨이는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를 강조한다

노르웨이는 기업 연금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다. 금융 체계는 과거 10년 동안 꾸준

히 향상되어왔다. 그들은 노동과 금융 시장의 진보에 맞추기 위해서 규제 체계의 주기적 점검을 강조한다.

독일은 노령자 대상 특별 투자 기금을 도입한다

세번째 금융 시장 장려 법의 틀안에서 노령 대상 투자 기금을 도입함으로써, 독일 정부는 사적 연금 급여가 중요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구축했다. 199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른바 'Altersvorsorge Sondervermögen'는 독일에서 장기 개인 저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 기금에 의한 투자는 장기 자본 평가에 의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이 기금 자산의 최소 51%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투자에는 75%의 제한이 있다. 파생 상품은 단지 헷징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투자 회사는 저축 기간의 3/4이 지났을 때, 이 기금에 있는 투자자에게 저축 계획을 제공하고, 수수료 없이 한 기금으로부터 다른 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양여 조세 체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스페인은 기업 기금의 사용을 규제한다

사적 보충 제도에서, 스페인은 '부과방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내부 기금에 사용 가능한 자원은 신용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회사에 제한된다. 이 모든 것은 신중한 관리 조직에 의해서 감독 된다.

덴마크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덴마크에서는 연금 기금의 주식 투자 상한을 40%에서 50%로 높여 허용하는 규칙 수정이 있었다. 게다가, 자본 시장의 자유화는 기금을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스위스는 관리를 강화한다

(1) 금융 파생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 연금 기금에 대한 보고 체계와 회계관리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유동 자산이 확보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준다. (2) 회계와 투자에 부과된 새로운 필요조건(1996). 제도와 투자 기금에 대해서 더 높은 투명성 요구. (3) 연금 기금 통계(1996) : "스위스 기업 급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설문, 4년마다의 수정과 재설계가 이루어진다(각 설문의 내용은 최소한 두번 조사된다).

터키는 규제와 감독 틀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등록, 평가 투자 준칙, 위험 운영 제도를 통해서 수급자의 권리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상된 소득세 구조와 엄격한 정보 공개 준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된다.

호주는 규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도입했다

호주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1998년 7월 1일, 금융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기구를 설립하였다. 보다 통합된 조직 구조를 만들어서, 종합적 규제가 가능해졌다. 이 기구는, 운영 실수나 사기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측정·대응하기 위해 피신탁인의 능력에 기초한 감독 방식을 채택했다.

벨기에는 연금 투자를 총괄하는 준칙을 마련했다

이 준칙은 EU가 의무화한 사항에 따라 보험 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추가 법령도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이다.

체코 공화국은 기업 연금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한다

법의 수정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보충 연금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1999년 7월에 시작되었다 : (1) 보충 연금 방식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 허용 규칙이 보다 치밀해졌다. (2) 연금 기금의 기능과 유가증권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생긴 정부 감독 제도의 권한 역시 강화되었다. (3) 정부 감독 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유리하도록 더 엄격한 투자와 투명성 규칙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에서, 규제 틀은 상당히 다듬어졌다

여러 가지 경제적·재정적 급여를 제정한 1998년 7월 2일의 법은 저축보호를 위한 위원회(COB)의 업무를 강조함으로써 저축에 대한 공공 부문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의 개념이 법에 도입되었다. 게다가, 프랑스 채권 시장의 기능이 구체화하고 명확해졌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채권 시장의 국내 부문과 EU 부문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다. 이 규칙은 모든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일한 구별은, 위원회의 우선적 승인에 의해 발행되는 것과 비공공 영역에서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일차적인 투자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다르지 않다. 발행의 최소 만기와 지급 운영은 규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채권에 대한 세금 우대의 최소 크기 규제와 행정 절차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프랑스 발행자들은 프랑스와 다른 EU 지역에서 더욱 쉽게 기금을 발행할 수 있다. 1999년 6월 25일의 저축과 금융 안전에 관한 법은, 재정 상태, 투자자를 위한 단일 보증 기금, 그리고 생명 보험을 위한 보증 기금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신용 기관에 공통적으로 기금 방식을 도입했다. 공공 채무 조치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재정부는 인플레 연동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는 투자자에게 위험의 다양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기 투자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EU 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박스 6.4. (사적 연금에 대한 부가서베이 결과) 민간 연금의 규제에 관한 개혁 예

헝가리는 1998년에 강제 2층 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사적 연금은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해외 투자의 자유화가 고려중인 것을 제외하고,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규제 정책이 답보 상태이다.

일본은 피용인 연금 기금의 기술 지원과 투자 체제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도입한다
일본에서 고용주 연금 제공의 중요한 수단인 피용인 연금 기금은 1997년 이후 중요한 개혁의 주제였다. 예를 들어, 1997년 말까지 연금 기금은 기금 수단을 이원화해야 한다.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과거 몇 년 동안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거의 모든 원칙을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가 1997년 이후 도입되었다.

폴란드는 강제 사적 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1997년에 설립된 폴란드의 새 연금 제도는 사적 연금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법을 도입 했다.

이탈리아에는 과거 몇 년에 걸쳐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어 왔다
이탈리아에서는 법 개혁의 결과로 주요한 규제 원칙이 90년대 중 후반 동안 이행되어왔다. 마지막 개혁은 199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 도입된 것 중 새로운 정보 공개와 투명성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연금기금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제3자 기구가 설립되었다.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 중 연금 기금 회사의 운영자간 경쟁 문제가 남아있다.

멕시코는 새로운 연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멕시코는 최근 강제 개인 계정 사적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틀은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 검토된 주요한 정책들을 아우른다. 그러나 외국 투자와 위험 관리 원칙의 자유화와 같은 몇 가지 이슈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벨기에는 연금 기금의 새로운 가버넌스 기준을 도입한다
벨기에는 작년에, 급여 방식의 규제, 연금 기금 관리자의 적합성과 신뢰 기준, 관리자 사이의 경쟁 그리고 자기 투자에 대한 제한 감축 등 관련 규제에 관한 개혁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급여와 해외 투자 관련된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제안된 규제 개혁은 급여 방식의 변화와 투자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이슈를 포함한다. 후자는 외환 거래 유가증권보다 해외 기금 투자와 관련된다.

한국은 새로운 퇴직 수단을 도입하고 보험 회사의 규제를 높인다
개인 연금 급여의 새로운 틀인 이른바 피용인 연금 보험이 1999년부터 보험 회사에 의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투자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것인데, 예를 들어 급여 방식에 관해서 일시금과 연금방식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

제7장
전략적 틀 – 몇 가지 질적 고려사항

요약과 주요 결과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개혁을 위한 최종적인 원칙은 연령 연계 개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다른 원칙들과는 다르게 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박스 7.1 참조).

연령 연계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는 매우 크다. 이 영역에서 각국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동안 채택된 전략적 틀은 범위와 구조에서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인기가 없을지 모르는 개혁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개혁 방향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주요 결론은 광범위한 단일 전략 틀보다는 여러 전략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 연계 이슈에 관한 정책 옵션을 개발하는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특히 진행중인 개혁을 지원하는 자료와 연구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서 국가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도전과 국가 대응의 차이

개혁은 어느 정도의 협의, 동의 구축과 상호 협력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부록 1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틀의 범위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크다.

주요 주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틀을 마련하면, 상호 협력하에 개혁을 진행하고, 전형적 공공 정책에서 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혁을 지원하기 쉽고, 개혁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제들 중 많은 것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와 이해 그리고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과 노동자, 비정부 기구, 지방 정부,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협조를 요구한다. 한 예가 스페인의 톨레도 조약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장기적 미래에 대해서 정부와 타 정당, 그리고 각종 사회기구로부터 동의를 수반하여 이루어졌다(박스 7.2. 참조).

몇몇 지역에서는 커다란 개혁이 - 종종 연금 개혁 중심 - 시도되었다. 고령화 이슈를 다루는 공식적 계획과 정책적 틀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으로 연령 연계 정책 개발을 위한 원칙, 목표 그리고 목적의 개발을 포함한다. 이러한 틀에는 고령 근로자, 보건, 그리고 다른 하위 주제가 다루어진다. 서베이가 이루어진 1999년이 국제 노년의 해라는 점에서 많은 정책 시도가 일시적이라고 의심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은 발의가 그 전에 시작되었다. 박스 7.3은 다양한 접근의 예를 보여준다.

종종 하나 이상의 전략적 접근이 채택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광의의 원칙에 합의하고 나서 연령 연계 연구를 지원하는 여러 틀을 사용한다.

다양한 전략이 저마다 더 잘 먹혀들어가는 특정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활기찬 고령화의 부분인 생애과정은 장기정책 방향을 잡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 노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특정 단기 개혁에 대한 지원을 얻는 데는 수월할 수도 있다. 물론 언제 어떤 접근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이는 전략이 각 국의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지도 모른다. 전략은 정부의 주요한 협의와 정책 과정에 대한 보충적 기제이다(박스 7.4 참조).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는 고령화 전략을 펴면 장기간에 걸친 실용적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응용 연구의 발전을 장려할 기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물론 유용한 정책적 접근은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개입의 영향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더라도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나은 정보의 개발이 실제 몇몇 나라의 보건 분야에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주요한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만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정보 체계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보건, 소득, 노동, 저축 가운데 상호 연관된 한 영역에서의 정책 개입이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정보 관리와 비용 분담에 관한 각 국의 차이를 탐구한다.

박스. 7.1. 개혁을 위한 전략적 틀-「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의 원칙

원칙 7. *장기에 걸쳐 고령화 개혁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책의 이행 및 국민적 합의와 지원획득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틀(구상)이 국가 차원에서 당장 구축되어야 한다.*

한번에 하나씩 개혁하는 방향은 다른 분야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개혁 방향은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추구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개혁은 정부의 정책 형성 – 각 개혁의 구체적 내용 뿐만 아니라 – 에 상당히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혁을 실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많은 고려들을 탐구한다. 관습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정책 형성 시각을 채택하고 지속하는 것이 도전의 일부이다. 활용 가능한 정보의 차이가 상호 협력 과정에서 채워져야 한다. 장기적 틀과 이슈의 복잡성은, 공공의 이해, 관심, 그리고 실행가능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

- 여러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개혁 사이에 상호 협력을 도출하고 오랫동안 개혁을 지속시킬 국가 차원의 개혁 전략 개발. 이 전략적 틀의 범위는 넓어져야 한다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 개혁을 위한 공공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수단을 강구. 이는 개혁과정 그 자체에서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모으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를 포함한다.

박스 7.2. 스페인 - 톨레도 협약

스페인에서는 고령 인구집단에 관련된 정책을 한꺼번에 다루는 하나의 특정 기관은 없다.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다. 주역할은 노동 • 사회부와 보건 • 소비부에서 수행한다.

그렇다고 고령 인구 집단 대상 정책에서 상호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 정책 결정은 장관 협의회의 몫이다. 두번째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집단이 상호 협력하고 토의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 경제부의 대표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토의하며, 공통의 토대를 찾기 위해 전략을 채택한다.

연금 제도라는 특정 분야에서, 고령 인구 집단과, 퇴직자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른바 톨레도 협약은 정당과 사회 에이전트로부터 대표들이 참석하여 동의한 내용이다. 이 협약은 공적 연금 방식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을 토의 • 채택했고, 퇴직한 사람들의 향후 소득에 기초가 될 2층 체계를 검토 • 추천했다.

첫번째 협약은 1995년에 이루어졌고 1997년에 발효되었다. 2000년에 재검토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과 의회를 거쳐 톨레도 협약은 정치적 • 사회적 동의를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단기적 판단에서 나오는 정치적, 경제적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장기적 문제의 해결이 촉진되었다.

톨레도 협약 – 그 제안과, 수단 및 추천사항은 고령 인구 집단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을 도왔다. 이러한 방식과 추천사항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조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공공의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협화음을 야기하지 않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대중의 관심은 차츰 고조되어 공적 연금의 토론 기간 동안 가계 저축상의 실제 변화로 나타났다.

박스 7.3. 전략적 틀의 예

일본은 포괄적인 고령화 계획 틀을 가진다

1995년에,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본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국가 수준의 조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수상이 의장이 되는 '고령 사회 정책 협의회'를 설립했다. 다음해에, 이 법 하에서 일반 원칙이 확정되었다. 이 법은 노인의 독립, 참여와 선택, 그리고 정책 수단의 체계적 이행에 대한 강조 등을 포함한다. 내용은 광범위하여 노동, 보건, 교육, 생활 환경 그리고 연구 증진을 포함한다.

이 법과 원칙은 고령화 사회를 위한 조치에 관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정책을 명확하게 하였다.

핀란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핀란드에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경륜 국가적 보배"라는 변화를 시작으로 고령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목적은 취업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 고용주, 직업 시장 조직,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법 개정과 같은 모든 부문의 조직화를 포함한다.

호주는 노인의 독립 생활과 생애적 시각을 갖고 국가 고령화 전략을 개발했다

많은 다른 나라처럼, 호주는 국제 노년의 해를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고 활용했다. 4가지의 주요 주제하에서 고령화의 영향과 선택 가능한 정책 반응을 숙고하는 장기적 접근의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 독립과 자기결정권 부여; 세계 수준의 요양; 건강한 고령화; 긍정적 태도와 생활 스타일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등.

한국은 중장기적인 원칙을 구상・논의중이다

한국에서는, 포괄적인 고령사회 전략이 5가지 원칙과 함께 1999년에 고안되었다. 첫째, 노인 보건과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한다(현재는 저소득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정책은 서비스의 질과 사회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복지 제도는 효율성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 원칙과, 평등과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비시장적 이상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는 재가 보호와 시설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은 역할을 나누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 전략을 선택했다

정부의 권력 분산과 견제적 거버넌스 형태에서는 커다란 개혁에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양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의회를 야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주요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개혁의 제안 내용은 종종 타국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서 건의된 바를 기존 부과식에 덧붙이는 것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 개인 계좌 방식의 역할 증대 등이 포함된다. 완전 노령연금 급여가 지불되는 '통상적' 퇴직 연령이 2000 – 2005년에 66세로, 그 이후에 67세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연령 상승을 가속화 시키든가 혹은 70세까지 올리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반면, 급여 감축과 조세 증가는 보통 실제 검토 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점진주의적 정책은 대중의 동의를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벨기에 전략은 EMU 참여와 관련이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 개혁을 위한 일관된 틀이 벨기에에서 도입되었다. 이 틀은 EMU에서 벨기에의 참여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1999 2002년 안정화 프로그램과 유럽 안정성 및 성장 협약과 같은 여러 협약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틀의 주요한 아이템 중 하나는 사회보장 제도의 현대화이다.

터키의 전략은 5개의 개혁 영역을 아우른다

고령 인구 집단은 터키에서는 아직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과 다른 제도에 주요한 과제를 던진다. 국가 전략은 5개의 개혁을 조정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 공공 연금 개혁, 사적 연금 방식 개혁, 건강 적용범위 확대 개혁, 행정 재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부조와 서비스 개혁. 이 개혁들은 두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첫번째는 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고, 두번째는 기타 개혁에 주목했다.

프랑스에서 미래의 주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의 토의를 거쳐 Commissaire au Plan에서 문제를 확인한다. 이러한 틀에서 5개의 주요한 이슈가 확인된다(identify) : 노동 시장 지위의 향상, 초고령 근로자의 참여율 향상, 수단의 이행을 위한 형성과 진보에서의 협력, 재정 부담의 확산, 그리고 퇴직자 지위 향상(소득, 보건, 사회적 역할 인지)

박스 7.4. 기전 틀의 한계를 경험한 국가의 예

스웨덴은 여러 가지 고령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이 국가의 현안 논의 과정에서 정례화해야 효과가 있음을 알려준다

국가 행동 계획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공 요양 제도는 미래 연령 구조에 맞추어 조정되어야만 함이 지적되었다. 인구학적 변화의 실제 영향은 지금부터 15 20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므로 이 전환 과정에 맞추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 조치들의 효과가 장기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명백한 예는 행동 계획의 일부인 노인 관련 연구비의 증액이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 영역에서 일관된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선택이 어려운 여러 우선순위와 영역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고령화 대책 중 대부분은 정부의 정규적 절차로 만들고 개별 전략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캐나다 역시 정책 틀을 잡았다, 그러나 그 틀에 대한 과신 역시 경고한다

캐나다는 연구, 정책 개발, 협의를 위한 일련의 틀을 확립했다. 이 중 몇몇은 특정 개혁과 연관되고, 다른 것 -고령화의 국가적 틀 : 정책 가이드-은 전반적으로 고령화와 관련되고, vision statement, 원칙 그리고 정책 질문을 포함한다. 다른 일반적 틀은, 정책과 연구 센터 간 정보 공유에 대한 것이다. 연구 상호협력은 정책 연구에 의해서 촉진된다. 고령화 관련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 모임도 지원 대상이다.

캐나다는 이미 구축된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 -인구 고령화에 어느 정도 관련-로 인해, 고령화에 특화된 틀을 만드는 것이 한계를 갖는다. 기존 틀은 1997년 캐나다 연금 계획의 개혁에서 정책, 협력, 시민 참여 등 정치적 과정의 성공적인 상호 협력하에 연방의 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은 바 있다.

제 2 부

퇴직과 활기찬 노년기로의 전환

2부는 1부에서 설명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맥락- 특히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된 자료(근로로부터 퇴직으로의 전환과, 임금 근로와 퇴직이라는 두 인생축의 균형)-을 제시한다. 이는 OECD에 의해서 수행되어온 퇴직 소득 정책의 비교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9개 국가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를 포함한다.

제8장
퇴직으로의 전환

요약 및 주요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퇴직 경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퇴직을 늦추고 있는 증거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퇴직이 더 유동적이 되었다는 증거도 별로 없다. 아울러 사람들이 은퇴할 즈음에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를 시행하고 있고, 이중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종종 간과되는 것 중의 하나가 퇴직이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책 수립시 퇴직이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들은 일에서부터 여가로 전환한다. 즉, 사람들은 근로소득 수입에서 연금수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 퇴직자들은 가구와 주거지를 바꾼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게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도 아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어떻게 퇴직 전 연령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부분적으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달려있다.

가구수입의 규모는 대부분 가구원수 같은 가구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직 전후 고령자부부가 가족으로부터 분가하는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퇴직자 가구가 성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양국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젊은이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머무는 문화를 반영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일을 그만두는 노인들이 취업중인 자녀들과 합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수입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여가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주어진 여가시간은 수동적(TV 시청)이거나 혹은 적극적(스포츠, 독서, 봉사활동)으로 보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퇴직과 "활기찬 고령화"가 병행되는 것 같지

는 않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 퇴직한 남성이 여가시간을 가사노동하면서 보내지는 않는다.

본 장의 대부분의 분석은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퇴직유형에 대한 표준 자료가 별로 없다.[13] 예를 들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과의 단순 비교는 고령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퇴직한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고령화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없다는데 있다.

언제 사람들이 퇴직하며 얼마나 점진적으로 하나?

고령남성의 취업율 감소는 사라졌다

몇 년전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가 출판되기 전에, 고령 남성의 취업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조기퇴직 경향은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표 8.1 참조). 이탈리아에서만 고령남성의 취업율이 감소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 두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고령남성의 취업율이 약간 증가하기 조차 했다. 두 국가는 고도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이 매우 하락한 나라들이다. 독일의 경우는 다소 안정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고령자 코호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3)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여성은 이전 여성 코호트보다 해가 지남에 따라서 연령별 취업율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조기퇴직으로 인한 취업 하락율을 상쇄시킨다. 둘째, 많은 고령여성은 "근로자"라기보다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퇴직"하지 않고, "연금수급자"가 되지도 않는다. 셋째, 남성과 여성 간에 비정형(non-standard) 근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노년기에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대부분의 회원국가에서 성인 남성의 계약직 취업은 드문 현상이다. 고령남성이 계약직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일과 퇴직이 현재 점진적이고 혹은 미래에 점진적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흥미로울 것이다. 고령여성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에 취업기혼여성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했고, 미래에도 고령여성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은 남성의 특권인 셈이다.)

< 55-59세 및 60-64세 남성 취업율 - 1983-92년과 비교한 1993년 추이 >

최근 증가한 국가	거의 안정적인 국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가
⇩	⇩	⇩
네덜란드, 미국	독일,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그러나 고령여성은 고령남성보다 여전히 빨리 퇴직한다

표 8.2에 제시되었듯이, 여성 취업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고령여성은 남성과 같이 혹은 더 빠르게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의 피용인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취업남성보다는 취업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14] 본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순이탈율'(net withdrawal rates)이 남성보다 높다. 이러한 추세는 표 8.3에 제시되어 있다.

< 취업으로부터의 이탈율 >

여성의 순이탈율이 남성보다 느린 국가	여성의 순이탈율이 남성과 같은 국가	여성의 순이탈율이 남성보다 빠른 국가
⇩	⇩	⇩
핀란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

14) 이러한 현상은 "유사 코호트 분석"(Quasi Cohort Analysis)에 의해 지난 5년간 5세 간격으로 묶은 연령 집단의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첫 번째 연령집단과 그 다음 연령집단(5살 더 많은 집단)을 두 번째 시기(5년 후)에 비교했을 때 드러난다.

표 8.1. OECD 국가의 인구 대비 고령남성 취업비율 : 1983-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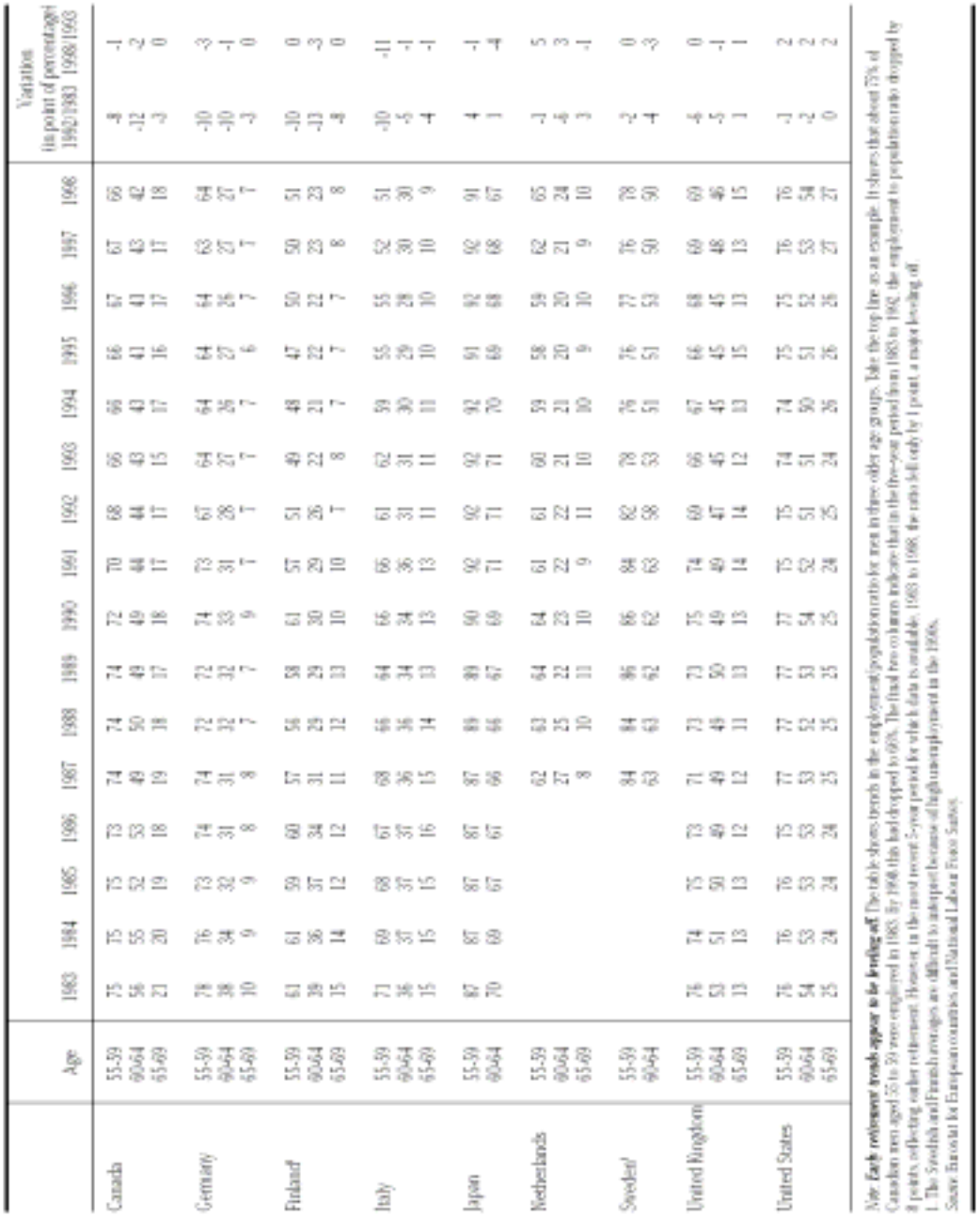

	Age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ariations (in point of percentage) 1992/1983	1998/1983	1998/1993
Canada	55-59	75	75	75	73	74	74	74	72	70	68	66	66	66	67	67	66	-8	-1	-1
	60-64	56	55	52	53	49	50	49	49	48	44	43	43	41	43	43	42	-12	-2	-2
	65-69	21	20	19	18	19	18	17	18	17	17	15	17	16	17	17	18	-3	0	0
Germany	55-59	78	76	73	74	74	72	72	74	73	67	64	64	64	64	62	64	-10	-3	-3
	60-64	38	34	32	31	31	32	32	33	31	28	27	26	27	26	25	27	-10	-1	-1
	65-69	10	9	9	8	8	7	7	9	7	7	7	7	6	7	7	7	-3	0	0
Finland[1]	55-59	61	61	59	60	57	56	58	61	57	51	49	48	47	50	50	51	-10	0	0
	60-64	39	36	35	34	31	29	29	30	29	26	22	21	22	22	23	23	-13	-3	-3
	65-69	15	14	12	12	11	12	13	10	10	7	8	7	7	7	8	8	-8	0	0
Italy	55-59	71	69	68	67	68	66	64	66	66	61	62	59	55	55	52	51	-10	-11	-11
	60-64	36	35	35	35	36	36	34	34	36	31	31	30	29	28	30	30	-5	-1	-1
	65-69	15	15	15	16	15	14	13	13	13	11	11	11	10	10	10	9	4	-1	-1
Japan	55-59	87	87	87	87	87	89	89	90	92	92	92	92	91	92	92	91	4	-1	-1
	60-64	70	69	67	67	66	66	67	69	71	71	71	70	69	68	68	67	1	-4	-4
Netherlands	55-59					62	63	64	64	61	61	60	59	58	59	62	65	-1	5	5
	60-64					27	25	22	23	22	22	21	21	20	20	21	24	-6	3	3
	65-69					9	10	11	10	9	11	10	10	9	10	9	10	3	-1	-1
Sweden[1]	55-59					84	84	86	86	88	82	78	76	76	77	76	78	-2	0	0
	60-64					63	63	62	62	62	58	53	51	51	53	50	50	4	-3	-3
United Kingdom	55-59	76	74	75	73	71	73	73	75	74	69	66	67	66	68	69	69	-6	0	0
	60-64	53	51	50	49	49	49	50	49	49	47	45	45	45	45	46	46	-5	-1	-1
	65-69	13	13	13	12	12	11	13	13	14	14	12	13	15	13	13	15	1	1	1
United States	55-59	76	76	76	75	77	77	77	77	75	75	74	74	75	75	76	76	-1	2	2
	60-64	54	53	53	53	53	52	53	54	52	51	51	50	51	52	53	54	-2	2	2
	65-69	25	24	24	24	25	25	25	25	26	25	24	26	26	26	27	27	0	2	2

Note: **Early retirement trends appear to be leveling off.** The table shows trends in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for men in three older age groups. Take the top line as an example. It shows that about 75% of Canadian men aged 55 to 59 were employed in 1983. By 1998 this had dropped to 66%. The final two columns indicate that in the five-year period from 1983 to 1992,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dropped by 8 points, reflecting earlier retirement. However, in the most recent 5-year period for which data is available, 1993 to 1998, the ratio fell only by 1 point, a major leveling off.

1. The Swedish and Finnish averages are difficult to interpret because of high unemployment in the 1990s.

Source: Eurostat for European countries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주 : 조기퇴직 경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 표는 인구 대비 세 연령집단의 고령남성 취업비율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줄을 예로 들어 보자. 1983년 고용된 55 59세 사이의 캐나다 남성은 약 75%이다. 이는 1998년에 66%로 떨어졌다. 마지막 두 행은 1983년에서 1992년 동안 인구 대비 취업율이 8% 포인트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평균치는 1990년대 고실업율로 인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표 8.2. OECD 국가의 인구 대비 고령여성 취업비율 : 1983-1998

	Age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ariation (in point of percentage) 1983/1993	1993/1998
Canada	55-59	37	37	39	39	41	42	43	43	43	44	43	45	44	45	44	46	7	2
	60-64	24	24	23	23	24	24	22	24	22	22	23	23	22	22	22	23	-2	1
	65-69	7	8	8	7	7	7	7	7	6	7	7	7	7	7	7	7	0	0
Germany²	55-59	38	37	35	36	36	36	35	39	38	36	36	38	40	42	43	43	-1	7
	60-64	12	11	11	10	10	10	10	12	10	9	9	8	10	10	11	10	-3	1
	65-69	5	4	3	4	3	3	3	4	3	3	3	3	3	3	3	3	-1	0
Finland¹	55-59	57	56	55	52	52	52	56	58	57	54	52	50	51	50	49	51	-2	4
	60-64	30	30	29	25	23	22	23	21	20	19	16	14	16	17	17	17	-11	-2
	65-69	7	6	8	6	5	6	5	5	5	6	3	3	3	2	2	2	-4	-1
Italy	55-59	19	19	19	20	19	20	19	19	21	17	19	19	19	20	21	21	-2	4
	60-64	9	10	10	10	10	10	9	10	10	8	8	6	7	6	8	7	-3	0
	65-69	4	4	4	4	4	3	4	4	4	3	3	3	2	3	3	3	-1	0
Japan	55-59	50	50	50	49	50	50	51	53	55	55	56	55	56	57	57	57	5	3
	60-64	39	37	37	38	38	38	39	39	40	40	39	39	39	38	39	39	1	-1
Netherlands	55-59					21	22	21	23	22	25	26	27	28	29	32	30	4	4
	60-64					8	7	8	8	7	7	8	7	8	9	7	9	-1	1
Sweden¹	55-59					77	78	77	78	78	77	75	75	73	74	75	75	2	4
	60-64					46	49	49	52	53	50	47	43	45	46	44	43	3	1
United Kingdom	55-59	47	48	49	49	49	49	51	52	51	52	51	52	53	52	50	53	3	0
	60-64	20	20	18	18	16	19	22	22	23	23	24	25	25	25	26	23	1	1
	65-69	7	7	6	6	5	5	7	7	7	8	8	7	7	7	8	8	1	1
United States	55-59	46	48	48	49	50	52	53	54	54	54	55	57	57	58	59	60	3	3
	60-64	32	32	32	32	32	33	35	35	34	35	36	36	37	37	39	38	1	2
	65-69	14	14	13	14	14	15	16	16	16	16	16	17	17	16	17	17	0	0

주 : 여성 취업율을 제시한 이 표는 앞의 남성의 표와 정확히 형태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더 많은 고령여성이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여성의 취업은 두 가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하나는 조기퇴직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여성들이 일생에 걸쳐서 노동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표 8.3. 몇몇 OECD 국가의 이탈율

		Age 50-54 to 55-59		Age 55-59 to 60-64	
		Women	Men	Women	Men
Canada	1983-88	24	11	36	34
	1988-93	32	25	47	42
	1993-98	25	17	46	36
Germany	1983-88	19	19	72	59
	1988-93	25	28	76	63
	1993-98	26	26	70	58
Finland[2]	1983-88	30	31	53	61
	1988-93	39	34	61	69
	1993-98	29	34	53	67
Italy	1983-88	31	25	49	49
	1988-93	38	28	60	53
	1993-98	37	37	58	52
Japan	1983-88	16	6	25	24
	1988-93	10	2	21	20
	1993-98	13	5	30	26
Netherlands	1983-88	n.a.	n.a.	n.a.	n.a.
	1988-93	23	25	65	67
	1993-98	27	18	67	60
Sweden[2]	1983-88	n.a.	n.a.	n.a.	n.a.
	1988-93	14	15	40	37
	1993-98	11	10	43	36
United Kingdom	1983-88	19	15	61	35
	1988-93	17	20	52	38
	1993-98	20	12	49	28
United States	1983-88	6	8	29	31
	1988-93	13	13	31	33
	1993-98	10	9	30	29

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퇴직은 여성에게 더 보편적이다. 이 표는 일생동안 많은 여성의 취업 여부와 퇴직 유형은 다른 현상임을 나타내준다. 캐나다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 두 행은 1983년 50-54세 된 여성 및 남성의 취업율을 5년 후인 1988년에 55 59세 된 남녀의 취업율과 비교한 것이다. 55-59세 된 취업 여성의 24%는 5년 후에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1% 만이 이탈했다.

표 8.4. 계약직

A. 60 64세 계약직 남성 비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ariation 1998/1993 (in points of percentage)	Average 1993-1998
Canada	13.3	14.8	14.5	14.9	15.8	15.4	**2.1**	**14.77**
Finland	23.1	20.8	20.0	24.0	26.9	25.9	**2.8**	**23.46**
Germany	6.0	5.3	7.0	8.0	8.9	8.9	**2.9**	**7.32**
Italy	3.2	4.0	4.3	3.6	2.8	5.0	**1.8**	**3.80**
Japan	23.5	23.7	22.2	24.0	25.2	25.5	**2.0**	**24.00**
Netherlands	35.2	33.3	34.3	35.4	38.6	35.4	**0.2**	**35.37**
Sweden	43.3	44.9	40.2	34.2	28.7	24.4	**-18.9**	**35.94**
United Kingdom	14.3	14.0	15.6	17.8	18.6	18.5	**4.1**	**16.46**
United States	15.4	17.9	16.6	16.1	16.1	16.1	**0.8**	**16.35**

주 : 이 표는 60 64세 된 남성의 계약직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핀란드를 예로 들어 보자. 1993년에 핀란드 노동자의 23.1%만이 계약직이었다. 5년 후에 이 비율은 2.8% 포인트 증가한 25.9%에 달하였다.

B. 1993년 55 59세, 1998년 60 64세인 남성의 계약직 순변화율

	% change in number of part-timers[1]	Percentage point change in share of population[2]
Canada	47	2
Finland	25	1
Germany	95	2
Italy	-8	0
Japan	54	4
Netherlands	-19	-2
Sweden	91	6
United Kingdom	89	4
United States	64	3

주 : 이 표는 고령 노동자와 전체 고령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1993년 55 59세인 남성 코호트의 계약직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계약직으로 일했던 55 59세인 연령 코호트의 수와 그들이 60 64세 도달 시점을 비교했을 때 계약직 비율이 25%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계약직으로 일하는 전반적인 코호트의 비율은 1퍼센트 포인트만 증가하였다 – 이는 비교적 소수의 고령자 만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점진적인 퇴직은 아직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대다수 국가에서는 취업한 고령남성 중 상당 비율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표 8.4 참조). 특히, 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가 주목된다. 아울러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방식'을 고친 일본도 눈에 띈다. 네덜란드에서는 취업한 고령남성 3명중 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는 남성 계약직 고용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다른 한편,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절대 고령 계약직 노동자 수가 작다 : 이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소수의 고령남성만이 일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계약직 (남성)

고령자 계약직 비율이 높은 국가 (60-64세 고령노동자 중 계약직이 20% 초과)	고령자 계약직 비율이 중간수준인 국가 (60-64세 고령노동자 중 계약직이 15%~20% 사이)	고령자 계약직 비율이 낮은 국가 (60-64세 고령 노동자 중 계약직이 15% 미만)
⇩	⇩	⇩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스웨덴(감소하고 있음)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8.4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 결과 세 국가-스웨덴, 일본, 미국-에서는 계약직 고령남성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에서는 계약직 노동자가 급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부분연금제도 하에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즉, 1994년 이후 보상율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근로시간(non - worked hours)이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부분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이후 새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계약직 (남성) (계속)

55-59세에서 60-64세 사이 계약직으로 전환한 국가 (계약직 성장율 4% 이상)	계약직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국가	계약직 비율이 감소하는 국가
⇩	⇩	⇩
스웨덴,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년기에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상당수의 고령취업자는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노후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인구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는 표 8.5에 제시되었듯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경력으로서의 일'(career)에서 '교량적 일'(bridge jobs)로 이동하고 있는 남성의 자영업 취업이 약간 상승세를 보여준다. 미국은 연구대상이 된 모든 국가의 고령남성 중 눈에 띄게 자영업 비율이 가장 낮고, 심지어 자영업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물론 '교량적' 일의 중요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자영업 (남성)

고령 노동자 중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 (60-64세 고령 노동자 중 50% 초과)	고령 노동자 중 자영업 비율이 중간인 국가 (60-64세 고령 노동자 중 25-50% 사이)	고령 노동자 중 자영업 비율이 낮은 국가 (60-64세 고령 노동자 중 25% 미만)
⇩	⇩	⇩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55-59세와 60-64세 사이에 자영업으로 전환한 국가 (정적 성장)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이 적은 국가 (고령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5% 미만 감소)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이 많은 국가 (고령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5% 이상 감소)
⇩	⇩	⇩
일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표 8.5. 자영업

A. 자영업을 하는 60 - 64세 남성 퍼센트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Variation 1998/1993 (in points of percentage)	Average 1993-1998
Canada	37.1	35.6	36.8	35.3	37.6	37.8	0.1	36.70
Finland	53.8	58.3	52.0	48.0	48.1	44.4	-9.4	50.80
Germany	29.8	28.3	28.3	29.0	27.7	27.7	-2.1	28.47
Italy	59.2	57.3	57.3	56.4	57.2	57.1	-2.1	57.42
Japan	31.2	31.4	31.5	29.6	29.9	30.3	-0.9	30.64
Netherlands	50.7	50.7	53.7	58.5	52.9	42.7	-8.0	51.53
Sweden	24.2	25.7	24.2	24.0	25.9	25.9	1.7	25.00
United Kingdom	25.9	26.1	26.4	27.5	28.1	26.0	0.1	26.67
United States	20.2	19.2	18.5	17.0	18.2	17.7	-2.4	18.50

주 : 독일을 예로 들어 보자. 1993년 60 64세 된 독일 노동자의 29.8%가 자영업자이었다. 이 비율은 1998년에는 2.1% 포인트 감소한 27.7%로 떨어졌다.

B. 1993년 55 - 59세이었고 1998년 60 - 64세가 된 남성의 자영업 순변화율

	% change in number of self-employed[1]	Percentage point change in share of population[2]
Canada	-19	-4
Finland	-33	-5
Germany	-28	-3
Italy	-27	-7
Japan	6	1
Netherlands	-17	-2
Sweden	-4	-5
United Kingdom	-14	-2
United States	-21	-3

주 : 독일의 경우, 55 59세에 자영업에 종사한 남성 수와 비교했을 때 60 64세에 자영업에 종사한 남성의 수는 28%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영업 코호트의 비중은 3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다.

1. 해당 연령 집단의 사망률로 조정한 수치임.
2. 1998년에 자영업에 종사한 60 64세 인구수에서 1993년 자영업에 종사한 55 59세 인구수를 뺀 수치임.

퇴직은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금수급자가 되는 것과 퇴직자가 되는 것의 비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퇴직은 최소한 두 가지의 변화를 수반한다. 하나는 일에서 여가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들은 소득 수입으로 부터 연금 수입으로 수입원이 바뀐다. 정책이 점진적이고 유동적인 퇴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즉, '퇴직'은 때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위치로 정의되고, 때로는 수급 여부로 정의된다. 소득실태조사 자료는 수급 여부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격을 갖고 '퇴직'한 사람은 공적 혹은 사적 퇴직 연금을 받고 있다. 공적 연금은 고령연금이나 장해연금의 형태를 갖는다. 사적 연금은 고용주가 지불한 연금이나 개인의 저축에 의한 연금 형태를 갖는다. 그런데 비근로인구의 일부는 어떤 국가에서는 실업수당을 받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로 취급된다.

퇴직에 대한 두 종류의 정의를 사용하여 그림 8-1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령자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퇴직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두 측면에서 모두 퇴직한 경우 - 일을 하지 않고 연금을 수급함
- 두 측면에서 모두 퇴직하지 않은 경우 - 일을 하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음
- 일을 하고 있으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공적 혹은 사적) 연금과 연관된 일로부터 조기에 퇴직하고, '교량적' 형태의 일을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 일도 하지 않고 연금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장(extended) 실업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등 실업 고령자를 말한다.

노동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8-1은 스웨덴과 일본에서 퇴직연령에 이르게 될 상당수의 남성이 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임을 보여준다. 스웨덴과 일본은 공적연금제도가 (계약직) 고용과 고령연금 수급 간의 조합을 공공연히 혹은 암묵적으로 용이하게 해 주는 국가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65세 미만의 사람들 중 일하면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사적 연금인 경우가 많다.

일을 하지 않고 연금도 받지 않는 것은 네덜란드의 퇴직 전 남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네덜란드에서는 57세에서 65세 사이의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준다. 핀란드는 50대 후반에 달한 사람들에게 특별 실업수당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실 조기연금에 해당한다. 또한 50대 후반의 연금 비수급 실업자가 상당수 있는 독일에서는 조기고령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연장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8-1. 1990년 중반 취업 및 연금수급 지위에 따른 고령남성 퇴직 유형

주 : 연금에는 사적 연금이 포함됨.

일반 퇴직연령 직후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이 스웨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매우 낮다. 앵글로색슨 국가와 특히 미국은 퇴직 후 취업이 다소 보편적이다. 일본에서만 65-69세의 반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퇴직후 취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일과 연금의 조합(남성)

연금을 수급하면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실업수당이 조기 연금 역할을 하는 국가	퇴직후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국가
⇩	⇩	⇩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거주형태의 변화는 세 번째 변화이다 - 이것은 퇴직 후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거하는 가구원이 공동 지출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수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자 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맞벌이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부부 모두 연금을 수급하면서 퇴직한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로 중요한 것은 주거형태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고 대부분 부모집을 떠난다. 따라서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 후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령 부모들은 특히 독신, 성인자녀와 함께 살게 된다.

60-64세의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림 8-2에 제시되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두 국가가 주목된다. 일본과 이탈리

15) 소득과 지출 실태조사는 조사 착수 시 가구구성 조사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구에 사는 개인보다는 가구 전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구를 다른 가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크기와 구성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스웨덴의 소득과 지출 실태자료는 분석단위로써 "세금"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보다는 협소한 단위로, 한 가족은 한 명 이상의 "납세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떤 실태조사는 가족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는 비가구원도 포함한다. 이러한 가구는 비교적 드물고,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전반적인 상황을 별로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아에서는 1명이나 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40 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이 두 국가에서는 퇴직연령에 달한 사람들은 보통 동거하고 있는 성인 자녀가 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일본에서는 이보다는 약간 적은 수가 가구주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10 퍼센트를 넘지 않는다(그림 8-3 참조).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가족이 후반기에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하기까지 집에 머무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연금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젊은이가 가구이전소득과 부모의 수입, 그리고 부모의 퇴직후 연금 혜택에 의존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환기가 지난 후, 다른 국가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도 가족 분리 과정이 지속된다. 50대 중반과 60대 후반사이에 1명으로 구성된 가구나 2명으로 구성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60세 이후 5명이나 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60세 후반 인구의 4분의 1은 5명 혹은 더 많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살고 있다. 반면 50대 후반의 경우는 7분의 1만이 그렇다.

이는 가족이 재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후반기에 처음 나타나고, 다른 국가에서는 미약하게만 나타난다. 이는 일본에서의 연금수급액이 부적절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퇴직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한 자녀의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택비가 비싸고 장만할 수 있는 집의 규모가 작거나 집이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 복잡하게 얽힌 세대간 지원체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 집으로 이사하여 현금과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은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필요한 자원을 상속 받을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

퇴직후 거주 형태

퇴직후에도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	새로 퇴직한 사람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가
⇩	⇩
이탈리아, 일본	일본

그림 8-2. 55-69세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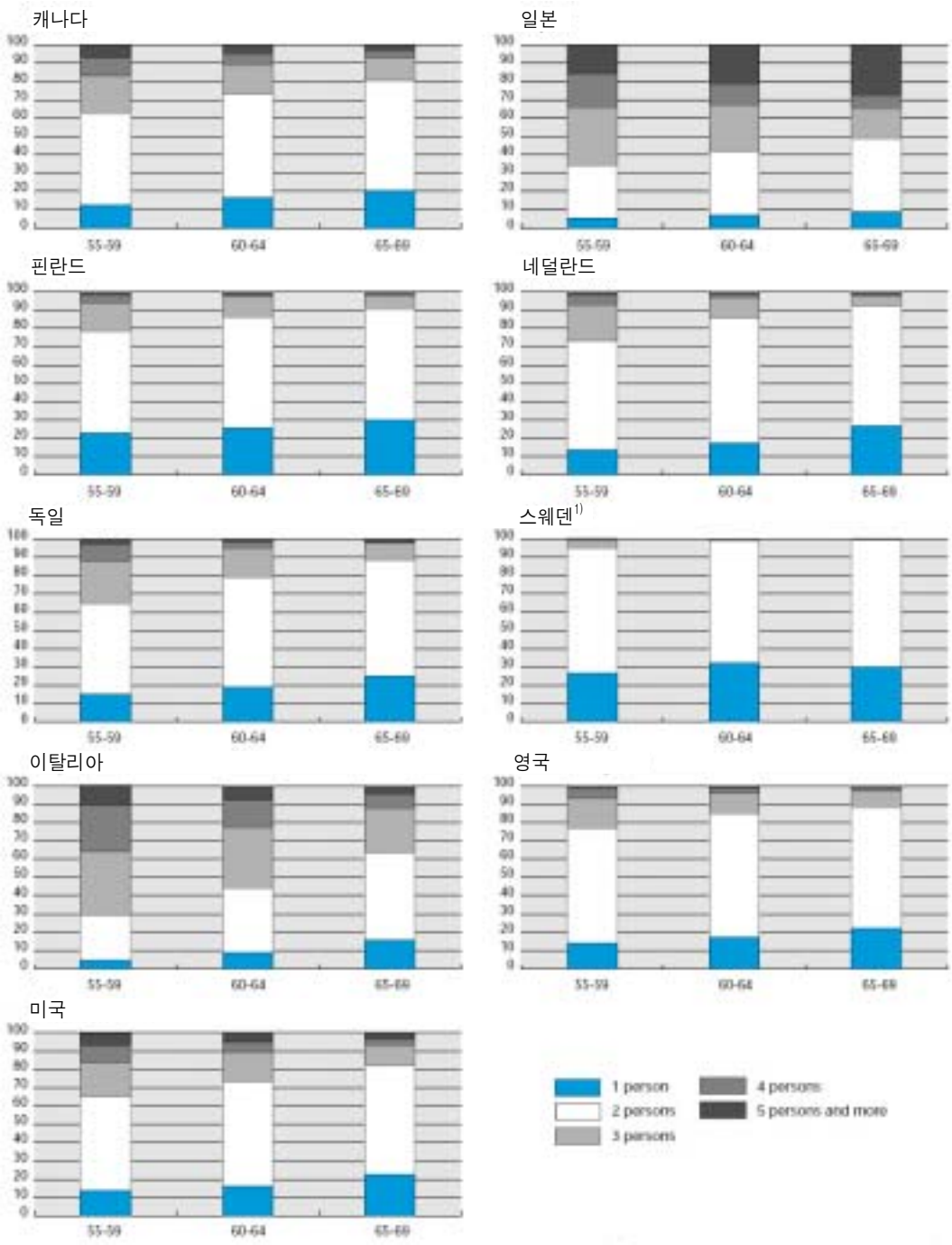

1. 참고로 스웨덴의 한 소득 자료는 “가족”이나 “가구”단위가 아니라 “세금” 단위이다. 그러므로 스웨덴 자료를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림 8-3.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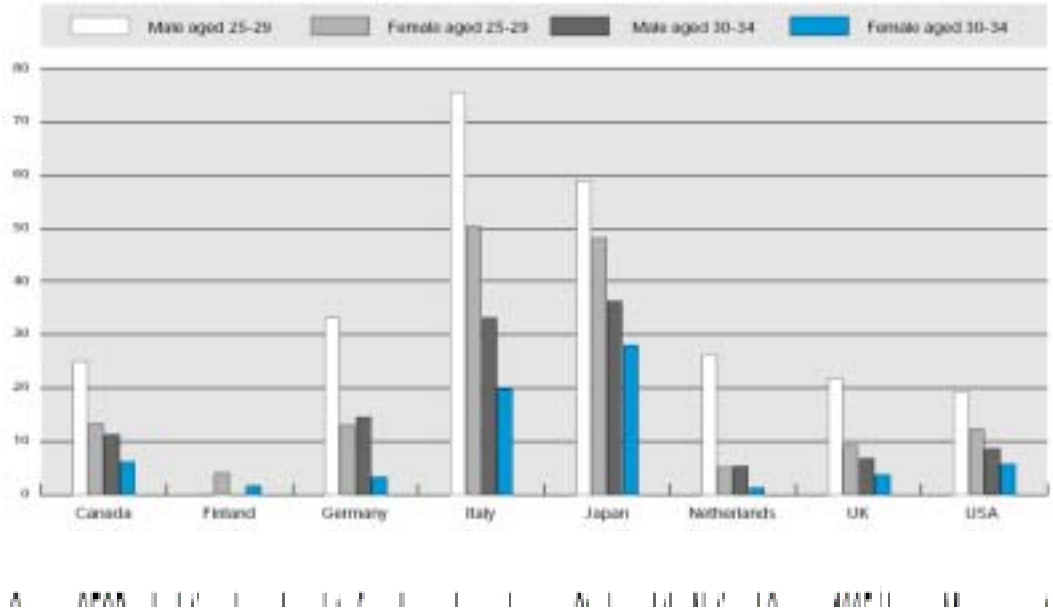

추가 여가시간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만약 정책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퇴직한 후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은 퇴직 기간 - 50세에서 69세 까지 - 동안의 시간 재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남성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의 감소 정도와 속도는 -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는 - 노동 실태조사 자료에 제시된 취업율의 감소율과 감소 속도에 반영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적은 비율이 일하고, 평균적으로 더 짧은 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고령자에 의한 삶의 변화가 덜 뚜렷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그림 8-4는 남성이 추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들은 수동적인 여가활동 시간과 사적인 활동 시간을 많이 갖는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일로부터 퇴직한 후 얻은 추가 시간의 반 이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몇몇 국가-일본과 스웨덴-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추가 여가시간의 일부분 - 약 10 퍼센트 - 만이 가사노동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봉사활동(unpaid work)은 "활동적인" 퇴직으로 가장 잘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는 남성이 추가적으로 갖게 된 시간의 3분의 1이 이

러한 활동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남성 추가 여가시간의 10분의 1 이하만이 이러한 활동에 할애된다.

그림 8-4.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활동의 재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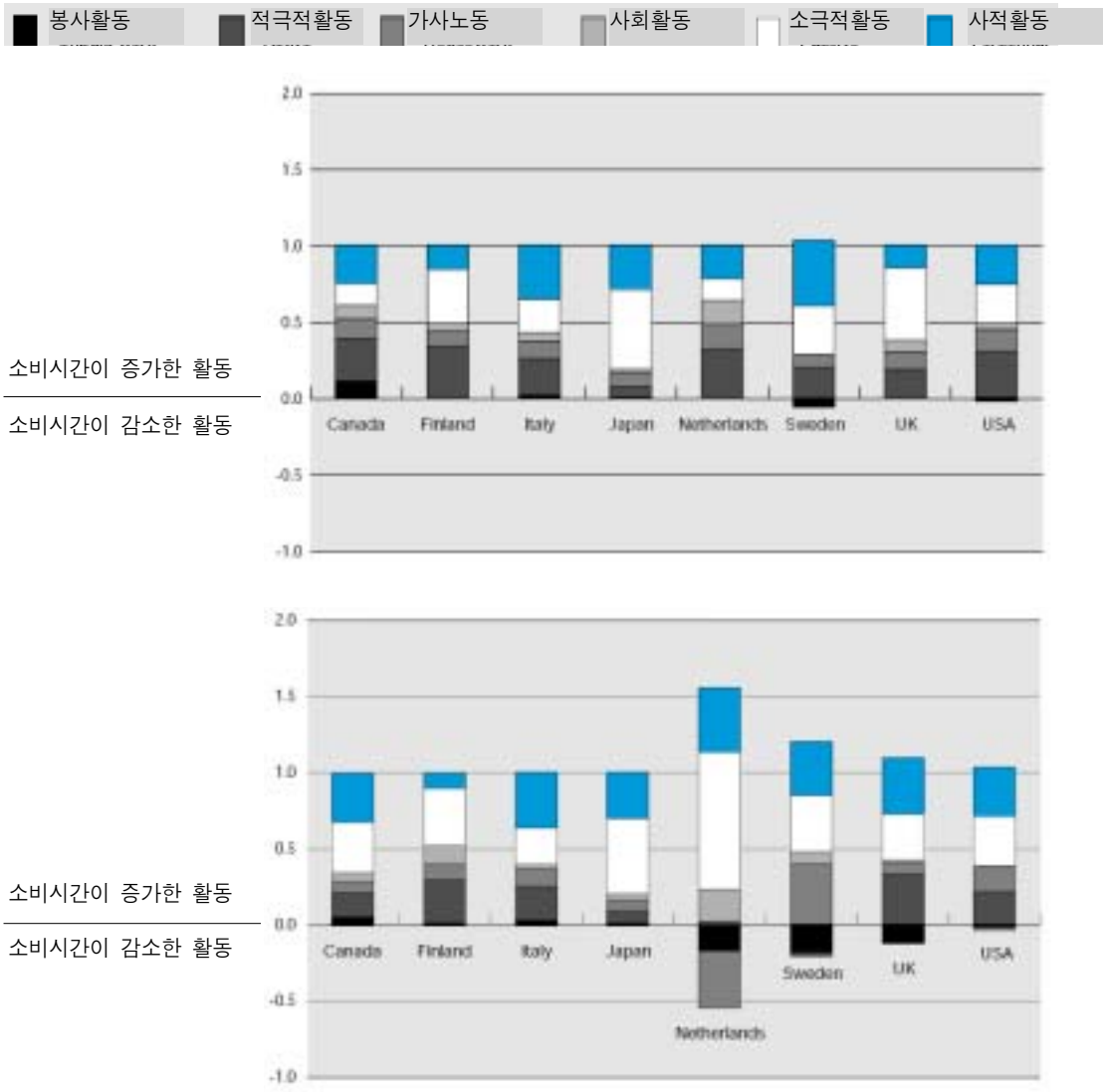

주 : 50 69세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활동을 그만둔다. 이 차트는 사람들이 취업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추가 시간은 취업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의 비율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각 행은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취업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의 양을 나타낸다. 0점 선 위의 활동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 활동들이고; 0점선 이하의 활동들은 할애시간이 줄어든 활동들이다(9장의 차트들은 실제 투입된 시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몇몇 국가에서 취업활동 이외에도 다른 사회활동을 그만두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 즉, 여성은 남성보다 재분배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더 많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일관된 유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추가 여가시간에 수동적인 활동이 많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은 퇴직 전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 그러나 여성이 가사노동을 덜 한다고 남성이 반드시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 참여가 몇몇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9장은 노동-퇴직의 전환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배분 자료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는 다른 활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사회적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하는 가구실태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조사 후 두 연령집단 자료를 비교해 본다. 만약 생애에 걸친 삶의 변화 유형에 관심이 있다면, 한 개인이 다양한 생애의 시점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묻는 것이 훨씬 나은 조사방법이 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부에서 지적하였듯이 양질의 종단자료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전생애 동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제9장
경제활동기와 은퇴기의 생활시간 소비 경향

요약 및 주요결과

제1부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은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노인 인구의 적극적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궁극적 의도를 갖고 있다. 노년기 생활형태는 그들이 생산가능 인구로서 노동시장에 참가했던 과거에 따라 많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러므로, 단순히 노년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와 여가생활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본 장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강문제가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노년기에는 수동적 생활 태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은 은퇴기보다 훨씬 앞서 이들의 행동 및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수동적 생활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생활시간 소비 형태에 대한 본 실태자료는 제1부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보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16) 생활의 연속성에 대한 가설은 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음. 한편,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종단적으로 수집된 시계열적 자료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음. 또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임.

국가별, 성별, 연령별 생활시간 소비 유형의 다양성

본 보고서의 제8장에서는 은퇴 후 자유시간에 노인들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결론을 지었다. 그림 9.1은 1990년 전후 OECD 국가의 평균적인[17]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소비유형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국가간에도 커다란 편차가 나타났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도표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보여준다.

- 일본 남성은 다른 비교국가의 남성들보다 장기간의 임금노동에 참여한다.
- 이태리 남성의 생산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 핀란드 여성은 다른 비교국가의 여성들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 네덜란드 여성의 생산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이어서 제시된 도표는 하루 1,440분 동안 개인의 평균적인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보여준다.

- 그림 9-1의 하단의 하늘색으로 나타난 부분을 통해 개인들은 평균 10시간 정도(600분)를 수면 등의 개인활동에 소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인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노인기에 접어들어 실질적인 증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연령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 다음으로 가사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보여준다. 연령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시간소비가 월등히 높다.
- 도표 중앙의 진한 파란색 부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본 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퇴근시간 및 교육훈련 등에 소비되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임금노동 참여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지만 노인들의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앞서 예상한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은퇴기로의 전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에 나타나듯이 매년도 55세 이후 종일제 근로자 규모는 상당히 낮다.
- 회색 부분은 비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비임금노동시간은 자녀양육 및 봉사활동 시간 등을 포함한 것이다.
- 최상단 부분은 여가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보여주는데, 여가활동은 운동, 산책, 정원가꾸기, 독서 등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방문, 문화활동 등의 적극적 사회 활동 및 TV 시청 및 음악감상 등의 수동적 여가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17) 본 자료는 캐나다, 핀란드,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영국의 가중치 비적용 평균을 사용함.

그림 9-1. 7개국 평균 및 일부 국가의 성별, 연령별 생활시간 소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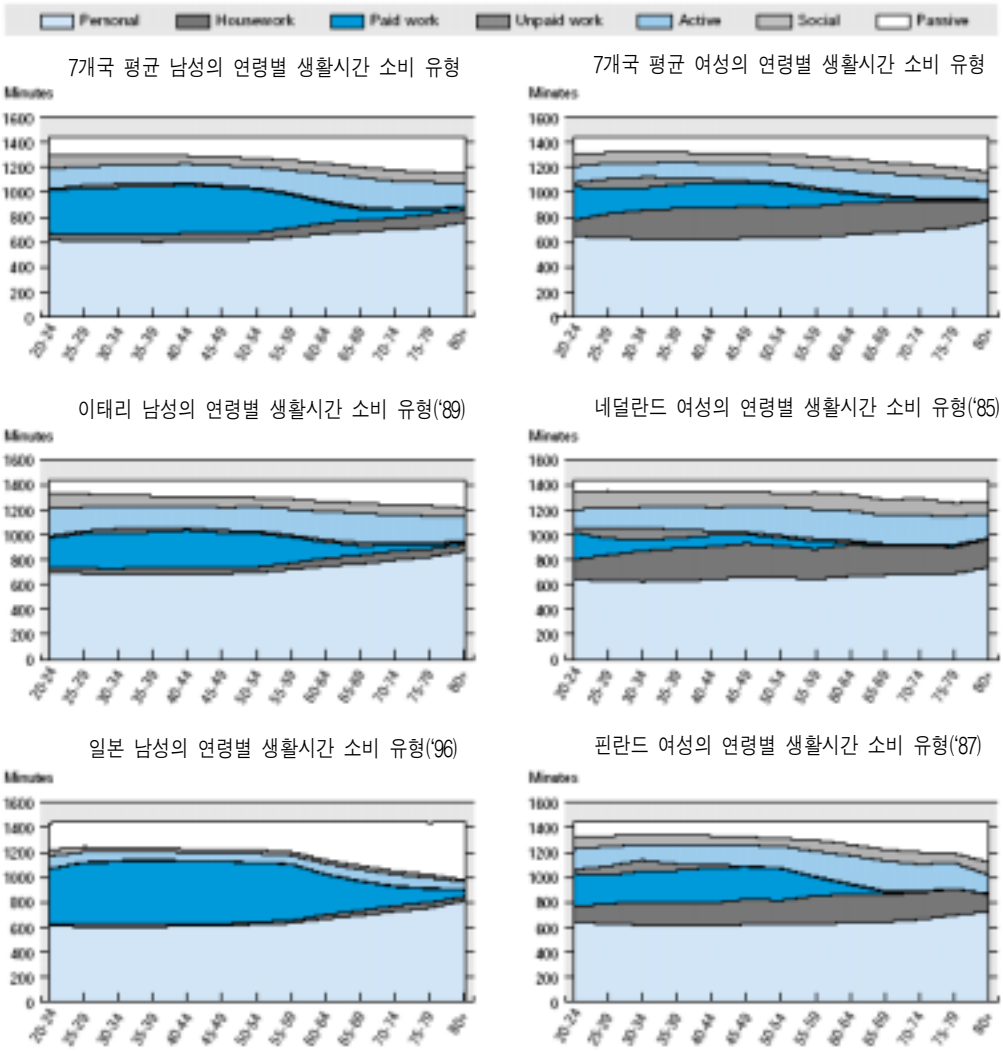

주 : 상단의 도표는 조사대상에게 일상적인 하루의 일과를 수행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일기형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파악한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분석자료는 주말과 주중의 생활시간을 조정한 것이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활동내용의 해석을 조정하였음. 기타 국가의 비교자료는 [그림 9-3]에 제시하였음.

자료 : Anne H. Gauthier와 Timothy Smeeding의 '국제 생활시간 소비 연구(University of Essex)'의 자료를 OECD에서 분석하였음. 일본자료의 경우 기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자료에 대한 재분석 결과가 아님.

연장된 은퇴 후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

제시된 도표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은퇴자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모든 개인은 임금노동, 비임금노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생활시간 배분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지원방안이 제3의 인생기에 노인의 수동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우선순위가 계속 높아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된 도표들은 노년기의 시간 대부분이 주로 수면을 위한 개인활동이나 수동적인 여가활동에 소비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도표의 최하단과 최상단 부분이 중간부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 고령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상당수의 정부 지원방안은 노인의 봉사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임금노동시간의 상당부분이 20대, 30대 및 40대 여성에 의하여 채워지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제외하면 극히 적은 시간에 불과하다.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측정이 없이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극소수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특정 노인들은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극히 부분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일제 또는 시간제 임금노동시간과 비임금노동시간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 퇴직연령인 55~64세 인구의 시간소비 유형을 살펴본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18], 은퇴 직후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전의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유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은퇴 후반기에 이르면 은퇴 전 휴일과 같은 시간소비 유형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는 노인인구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단순히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18) Gauthier, A. H., Smeeding, T. (1999), "Patterns of time use of people aged 55 to 64 years old: some cross-national comparisons", (unpublished), University of Calgary and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University.

그림 9-2. 캐나다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 소비 유형(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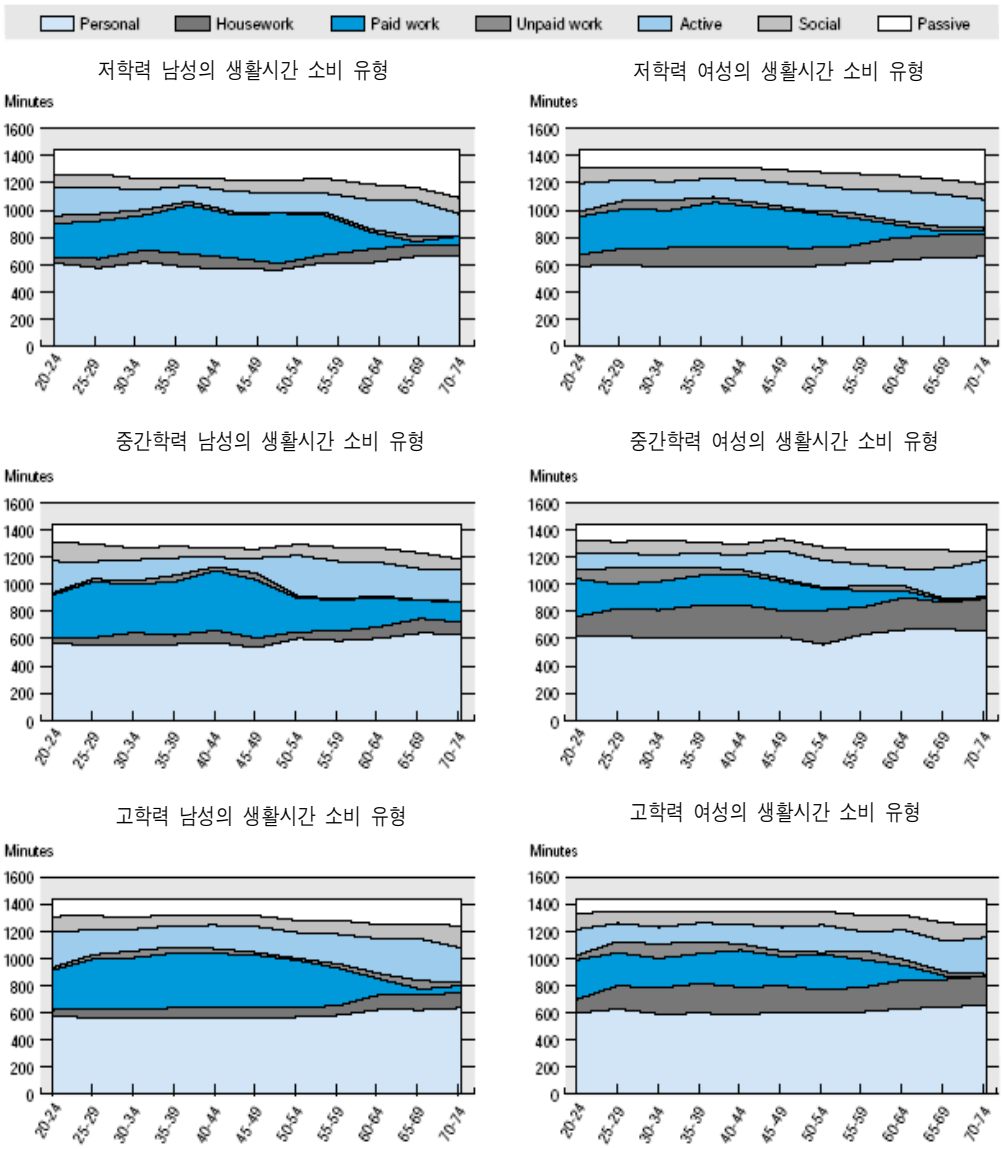

주 : '저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미만, '중간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고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의미함.
자료 : Anne H. Gauthier와 Timothy Smeeding의 '국제 생활시간 소비 연구(University of Essex)'의 자료를 OECD에서 재활용하였음.

그림 9-3. 일부 국가의 성별, 연령별 시간소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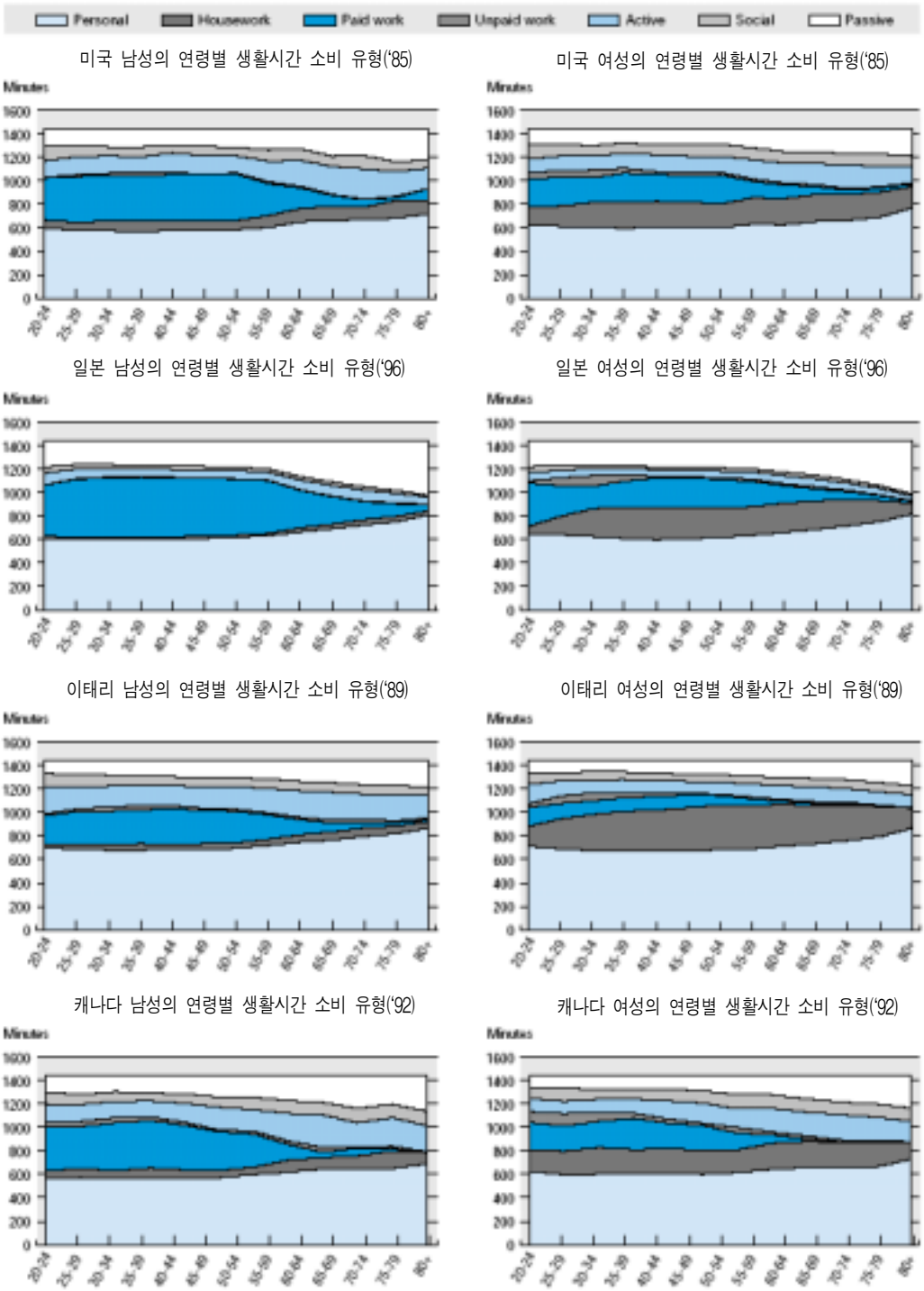

그림 9-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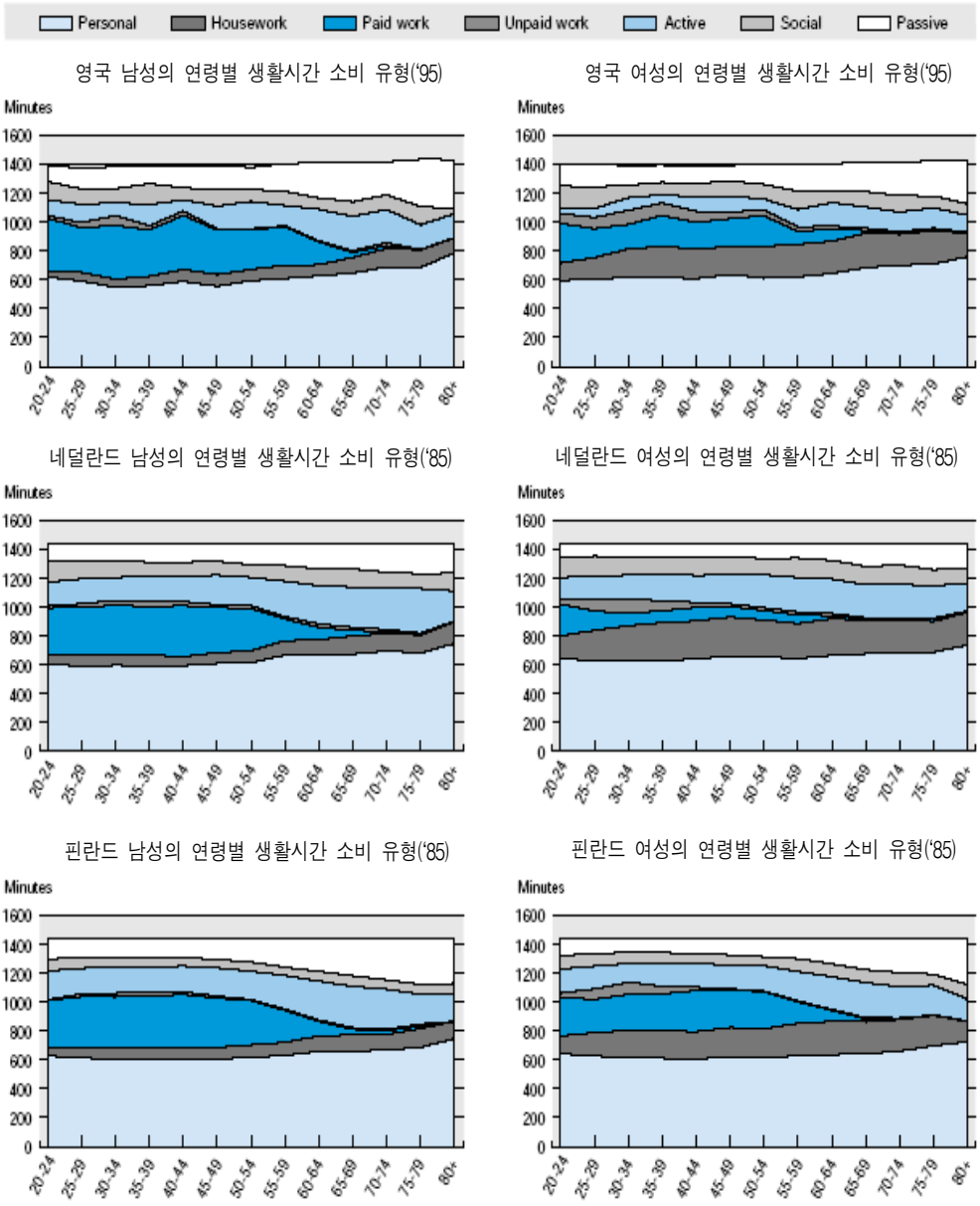

자료 : Anne H. Gauthier와 Timothy Smeeding의 '국제 생활시간 소비 연구(University of Essex)'의 자료를 OECD에서 재활용하였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예상되는 쟁점들

노인기에 증가되는 수동성으로부터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와 수동적 활동 증가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55~64세 연령의 수동성 증가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주요 변수가 아니었으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의존성의 증가는 노인의 생활시간 소비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코호트별로 은퇴기에 이르러 생활시간 소비 유형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그림 9-2에 나타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육수준에 따라 노동참여 및 은퇴유형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노년기에 비임금 노동시간 소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노인인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미래세대의 노인인구는 그들의 생활시간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시간 소비 형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울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실태자료가 매우 드물다. 생활시간 소비경향에 대한 자료는 제1부에서 논의된 자료의 편차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제10장
일부 국가에서의 개인적 · 사회적 고령화 시나리오

요약 및 주요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기간과 퇴직 기간의 균형은 개인이 퇴직을 결정하는 시점과 퇴직기 인구 대비 근로 연령 인구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장기적으로 정책 자체가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책은 개인이 근로와 퇴직에 보내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생애 근로 패턴의 경향을 조사하고, 개별 근로자 삶에서의 변화가 사회의 고령화 압력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조사한다. 이 논의는 현재 수행중인 OECD의 퇴직 소득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이다. 이 나라에 구축된 패널 자료가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기초가 되는 통계인 개인의 수명과 각 사회의 노인 인구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십년 간의 일반적인 패턴은 취업 인구 집단의 비율 증가이다. 만일 실업률이 예전처럼 낮았다면 고용 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요한 영향 요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고령화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는 전층 인구 대비 근로연령 계층 인구가 줄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코호트가 많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참여 패턴도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남성의 기대 고용기간이 극적으로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퇴직 기간의 증가로도 반영된다. 반면 여성은 인생에서 고용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두 요소가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에서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9장에서는 생애 동안 유급과 무급 활동의 패턴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본 장에서의 초점은 근로와 비근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경향이다.

첫 연구 질문은 개인의 노동 시장 참가에서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근로 시간과 의존율에 영향

을 주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 주요한 결론은 조기 퇴직 경향으로의 전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커다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부에서 기술된 여러 개혁들이 성공적이라면 효과는 커질 것이다.

근로와 비근로 소요 년수(예상치)

9장은 생애에 걸친 보수 근로와 무보수 활동에 대한 패턴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고용과 비고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추세를 탐구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생애에 걸친 노동력 서베이 결과이다. 이 자료들은 생활시간 조사처럼 활동 범주가 풍부하지는 않다. 그러나 패널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대상국가 대부분에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남성의 고용 소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남성들은 과거에 인생의 대부분 동안 일을 했었다. 그러나 점점 더 빨리 은퇴하고 있으며, 은퇴한 후 더 오래 살고 있다. 여성들 또한 더 빨리 은퇴하여 은퇴한 후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근로에 소요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OECD 평균치인 캐나다를 예로 들어보자. 1970년에, 남성들은 인생에서 44년을 근로하고, 다른 26년은 다른 것(교육, 실업 혹은 퇴직 후)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경향이 2030년까지 계속된다면 남성들은 보수 근로에 35년을 보내며, 일하지 않는 햇수가 44년이 될 것이다. 캐나다 남성의 경우, 고용과 비고용 기간이 서로 바뀌는 지점에 와 있다. 1970년에, 캐나다 여성들은 고용에 19년을 보내고 비고용 상태로 58년을 보낼 것이 기대되었다. 2030년에는 38년이 고용, 47년이 비고용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패턴은 많은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물론 시점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교차 시기는 1980년이었다. 네덜란드 남성의 경우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경향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급격히 바뀌고 있다.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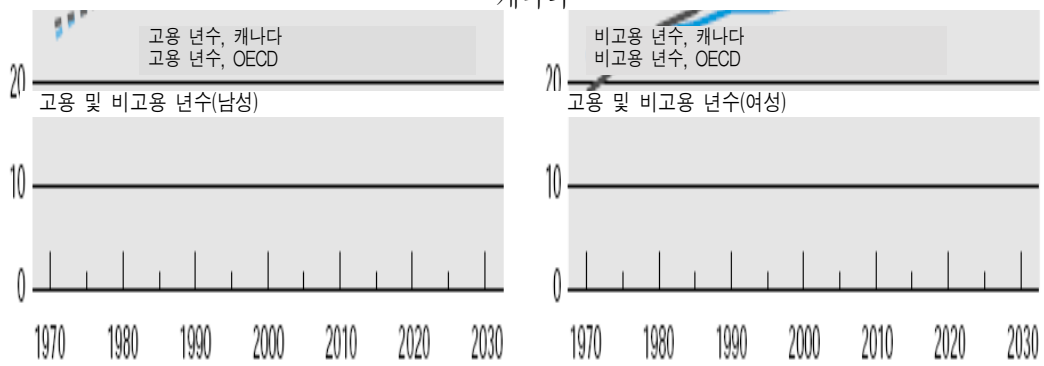

핀란드

고용 년수, 핀란드
고용 년수, OECD
비고용 년수, 핀란드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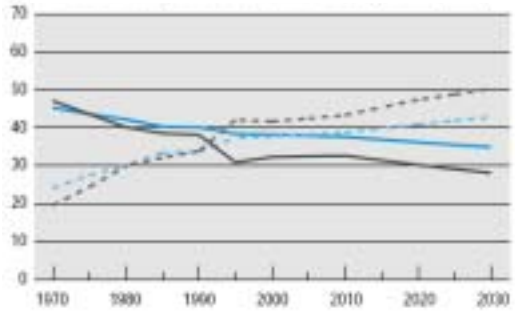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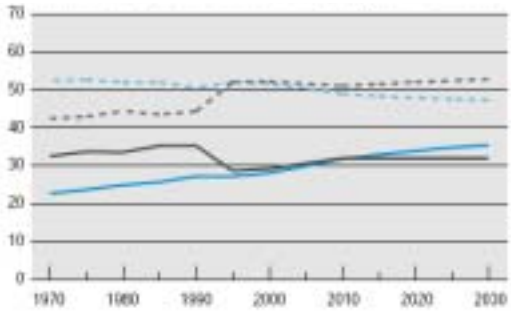

주 : 1980년대 말에 자료의 단절이 있다.

독 일

고용 년수, 독일
고용 년수, OECD
비고용 년수, 독일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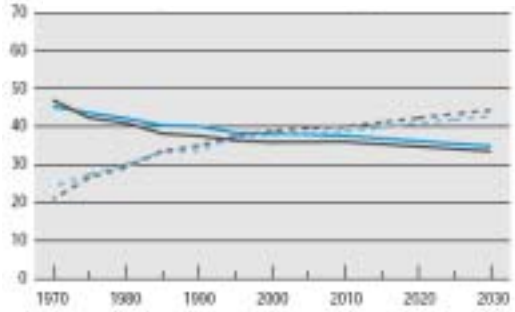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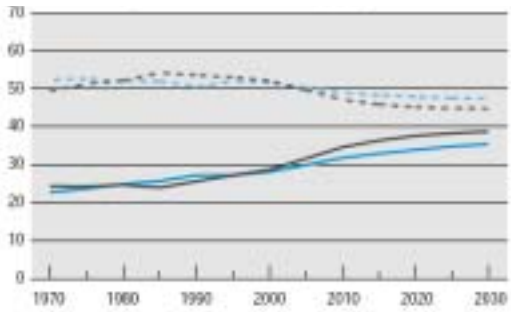

이탈리아

고용 년수, 이탈리아
고용 년수, OECD
비고용 년수, 이탈리아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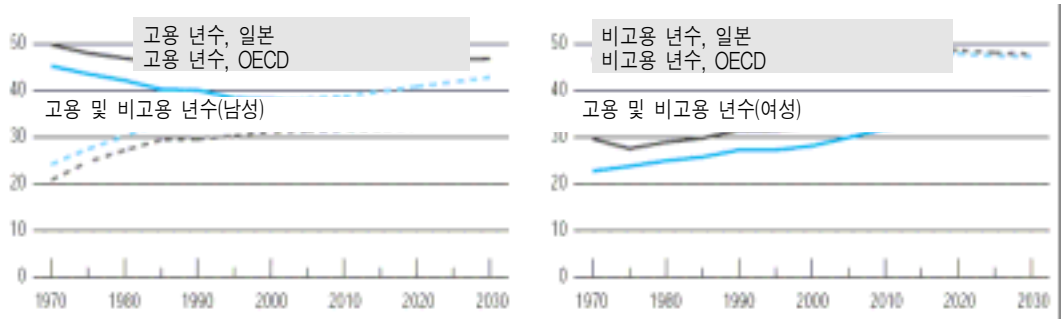
고용 년수, 일본
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비고용 년수, 일본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50
40
30
20
1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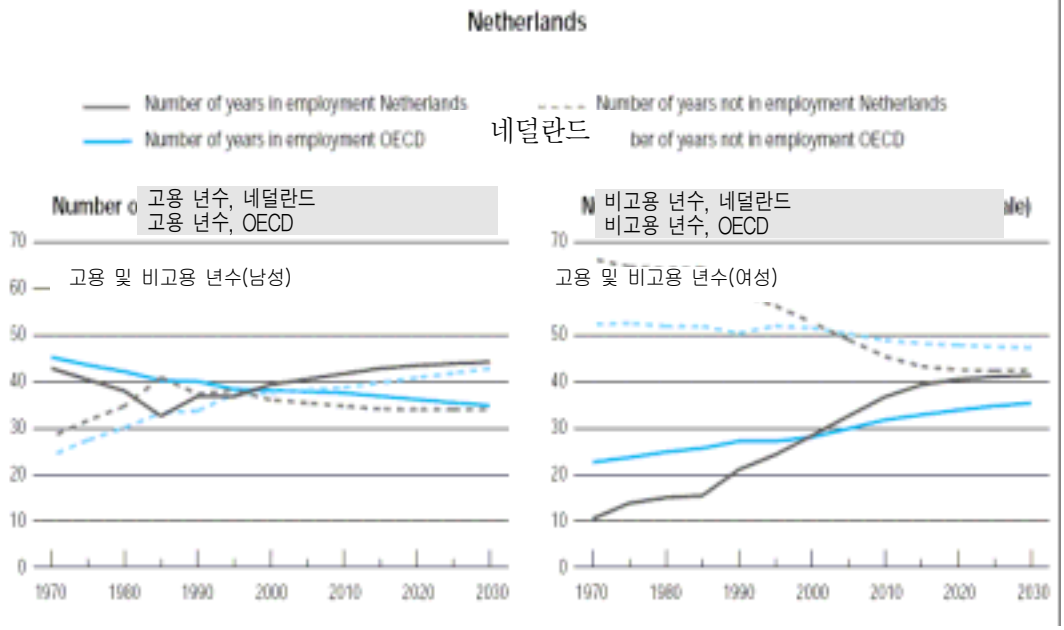
Netherlands
Number of years in employment Netherlands
Number of years in employment OECD
Number of years not in employment Netherlands
Number of years not in employment OECD
고용 년수, 네덜란드
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비고용 년수, 네덜란드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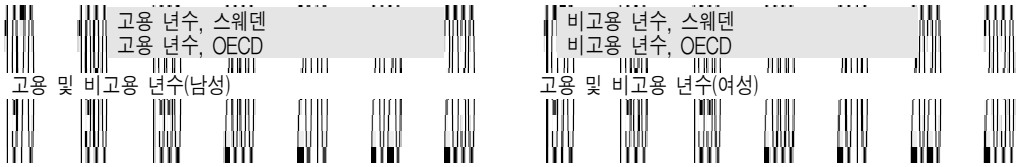
고용 년수, 스웨덴
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비고용 년수, 스웨덴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영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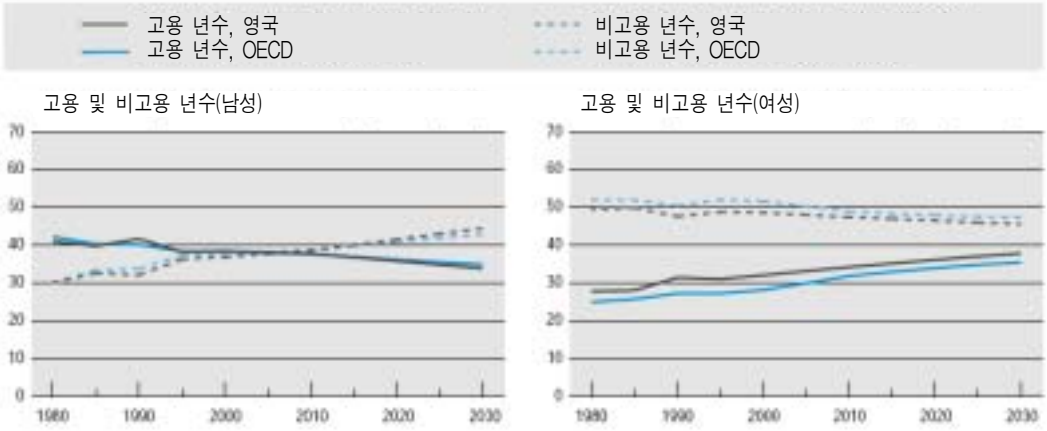
고용 년수, 영국
고용 년수, OECD
비고용 년수, 영국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70
60
50
40
30
20
10
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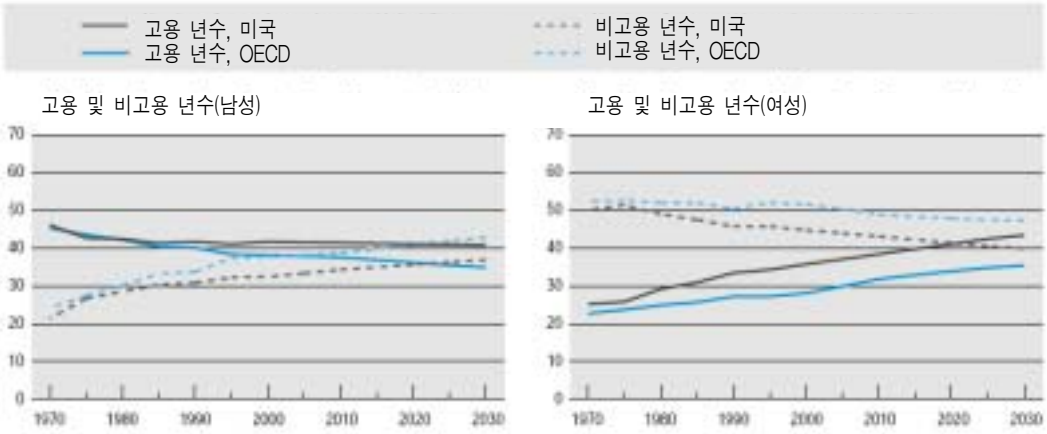
고용 년수, 미국
고용 년수, OECD
비고용 년수, 미국
비고용 년수, OECD
고용 및 비고용 년수(남성)
고용 및 비고용 년수(여성)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고용 인구집단의 비중

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중요한 결론은, 생애에 걸친 고용 패턴에서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복잡한 요소들-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에 대한 유인, 노동 여건, 근로와 레저 간의 선호 변화, 가족과 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반면, 고용 패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일생의 고용 패턴 변화가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지표는 고용 인구-전체 인구 집단이 소비할 자원을 만들어내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담당의 비율이다. 고용 인구의 비율은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변화하는 고용 패턴이다. 두번 째는 인구 고령화, 즉 비근로 인구 집단 대비 근로 인구 집단의 크기이다.

노동력 통계는 고용율-각 연령별 인구 대비 고용된 인구의 비율-에 일단 주목한다.

국가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 간의 지배적인 패턴은 고용된 인구 집단의 비중 증가이다. 인구 구조상 긍정적인 경제적 역할이 기대되었다.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체 인구 집단을 위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근로 연령에 속한 인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 성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까지 향후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국가마다 달라서 일본의 경우는 이미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왼편 하단 차트의 점선은 노동시장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아래의 실선은 고용 비중이다. 두 선 사이의 차이인 실업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나라들은 1990년에 실업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두 나라의 향후 예측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오른쪽 차트에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고용 성장이 특히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된 인구의 비율은 일본에서는 평균 이상이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평균 이하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현저하게 높았다. 낮은 예상치는 1990년의 높은 실업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들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본다.

캐나다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총 고용인구 점유율(캐나다와 OECD 평균)

핀란드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총 고용인구 점유율(핀란드와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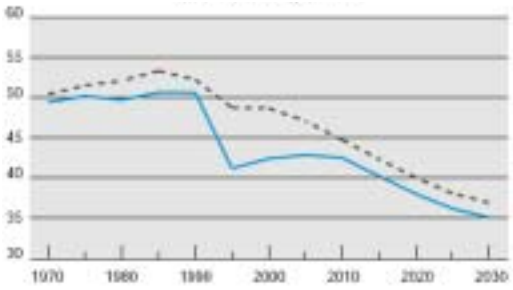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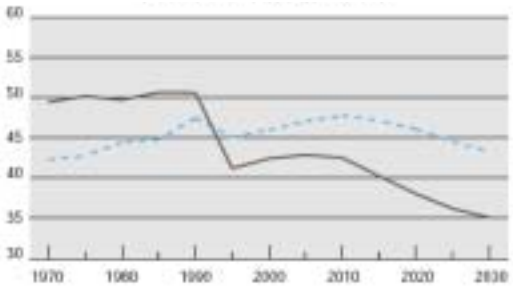

독 일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총 고용인구 점유율(독일과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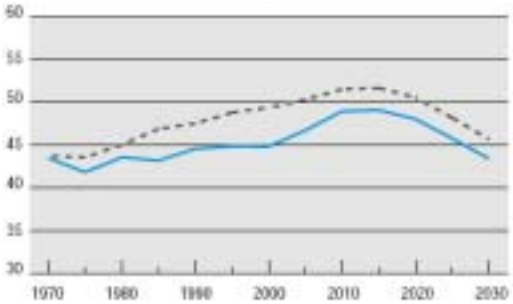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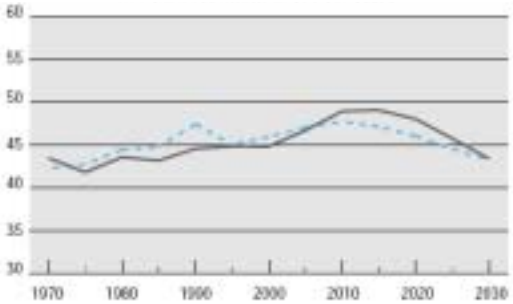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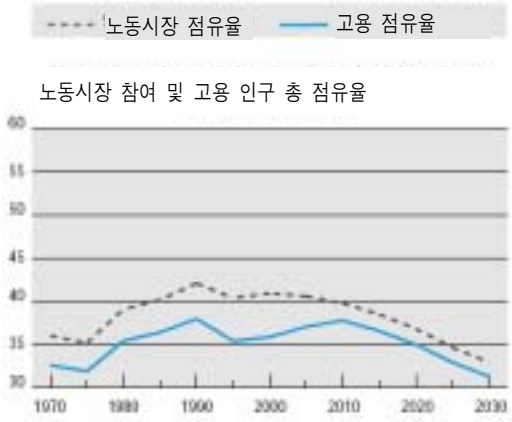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이탈리아
OECD
총 고용인구 점유율(이탈리아와 OECD 평균)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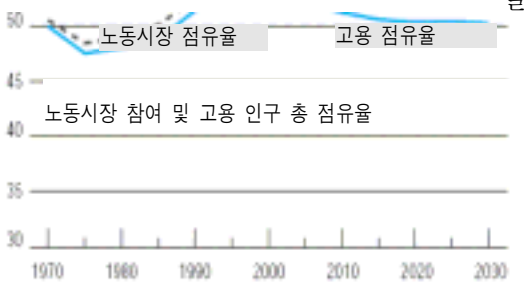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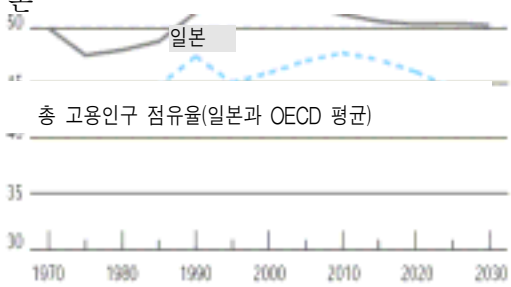
일본
총 고용인구 점유율(일본과 OECD 평균)
5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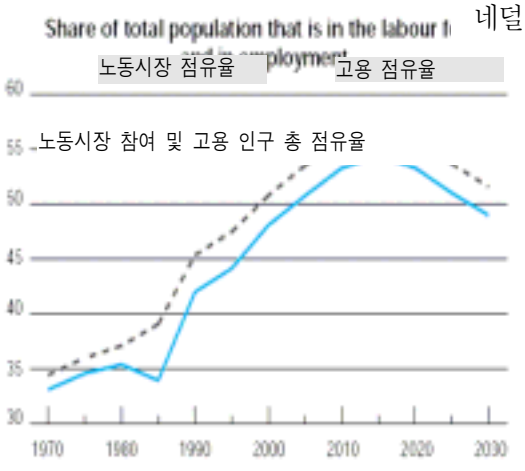
Netherlands
Share in labour force
Share in employment
Share of total population that is in the labour f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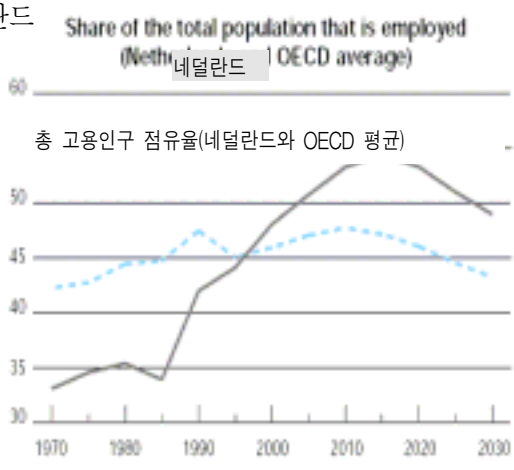
Netherlands
OECD
Share of the total population that is employed
(Neth
OECD average)
네덜란드
총 고용인구 점유율(네덜란드와 OECD 평균)
60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스웨덴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스웨덴
OECD
총 고용인구 점유율(스웨덴과 OECD 평균)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영 국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60
55
50
45
40
35
3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영국
OECD
총 고용인구 점유율(영국과 OECD 평균)
60
55
50
45
40
35
3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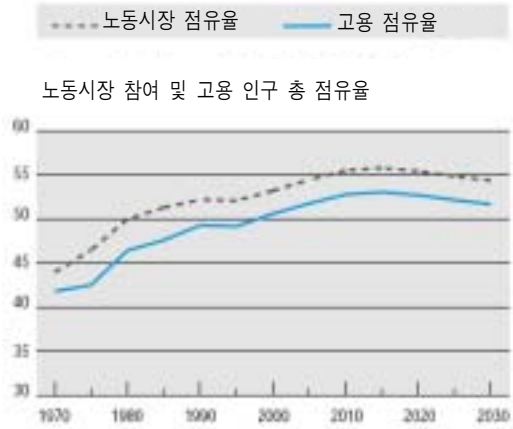
노동시장 점유율
고용 점유율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인구 총 점유율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미국
OECD
총 고용인구 점유율(미국과 OECD 평균)
60
55
50
45
40
35
3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변화하는 노동시장이 인구 고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가?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들

위의 차트들은, 최근 노동 시장 참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8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기 퇴직 추세가 이미 완만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뒤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확실히 많은 국가에서의 정책 목표는 근로할 때 소비되는 시간과 퇴직 후 소비되는 시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론 부분은 생애의 근로 패턴이 변화하는 - 시장의 일반 작용과 정책 조치의 결과 - 몇 가지 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개별적 노동시장 활동의 변화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9개 국가에서 미래 노동시장 참여 추세에 대한 상이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된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정의 가능한 효과를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작업은 노동시장 참여 - 가장 불확실한 변수이고 가장 정책 효과가 불명확한 옵션 - 의 변화가 미칠 효과를 탐구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개발된 3가지 시나리오에서, 여성 참여율은 최근 추세와 맞추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8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의 참여는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와 퇴직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편, 중요한 요소인 실업은 5%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초점은 특히 퇴직의 시점에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를 알아내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하면 명백하게 실업을 줄이게 될 것이다.

첫번째 "벤치마킹"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참여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두번째 "지속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참여는 오늘날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세번째 '역전 시나리오'는 조기 퇴직으로의 기존 추세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 가정되고 196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남성의 참여율이 회복될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회복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왼쪽 차트는 노인 의존율 시나리오의 효과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의존율은 65세 인구 집단 규모와 15-64세 근로 연령 인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잠재적 인구집단의 크기 대비 노인 인구집단의 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제공한다. 밑에 있는 차트에서는 65세 이하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비고용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한 조정치이다. 이는 노령 인구집단과 피고용인수 추계치를 비교하고 있다.

이 조정된 의존율을 보면, 역전된 시나리오가 인구 고령화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역전된 시나리오는 노령 인구수 대비 보다 많은 피고용자를 상정한다.

그러나 의존율에 대한 시나리오의 효과는 많은 나라에서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존율은 2005년 혹은 2010년 후에 계속 증가할 것이다- 때로는 더 급격하게-. 정책 조정 영역 밖에 있는 인구 고령화의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의존율 지표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은퇴자의 수(65세 미만도 포함)와 근로자의 수를 비교하는 측정이 더 낫다. 이 차트에서는 65세 이하의 퇴직자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의존율보다는 나은 측정일 것이다.

밑에 있는 오른쪽 차트는 노동력 참여의 변화 패턴을 포착하는 더 나은 지표를 제공한다. 이 차트들은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으로 돌아가서 9개국의 전체 인구 대비 근로자의 비중을 조사한다. 이에 따르면 역전된 시나리오 하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효과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크게 상쇄될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인구 비중은 다른 시나리오에서보다 역전된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10-20년 동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그 구체적인 효과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기존 참여율이 이미 높은 일본에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이 차트는 인구 고령화 효과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시사점을 준다. 노동시장근로와 퇴직 사이의 균형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고령 근로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제공해준다.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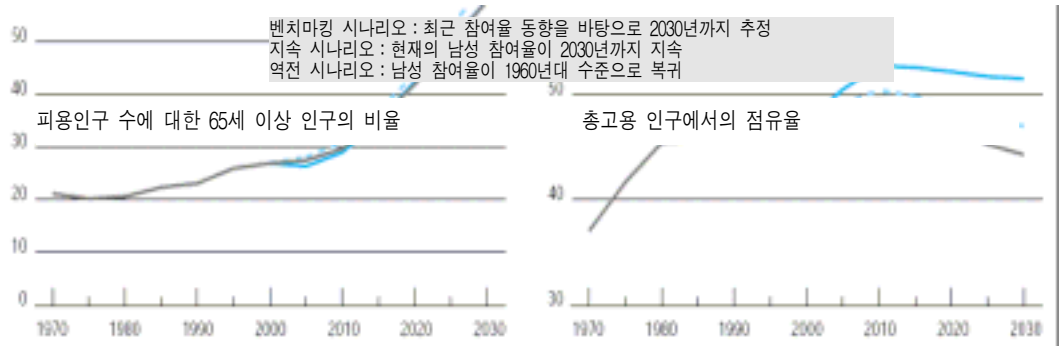

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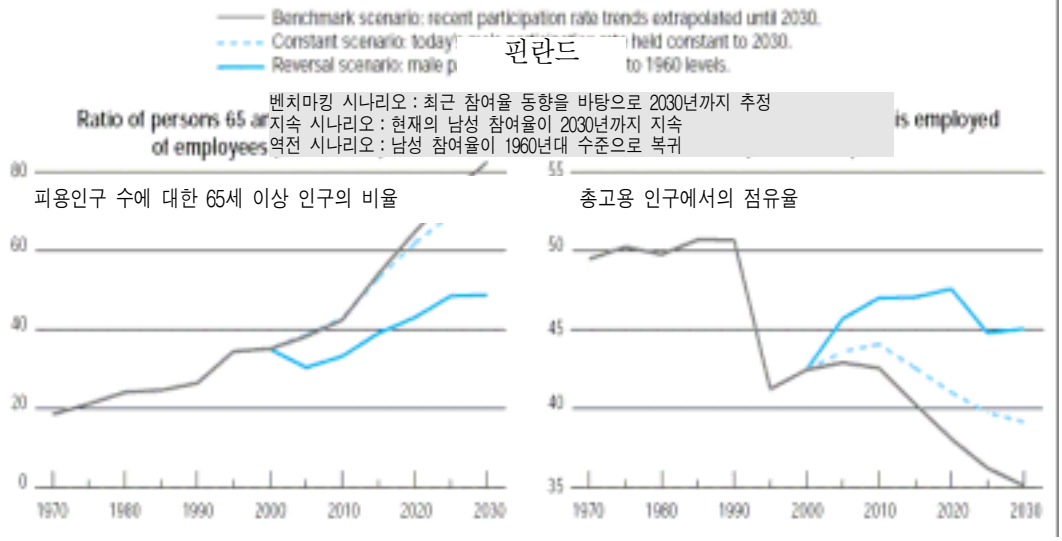

독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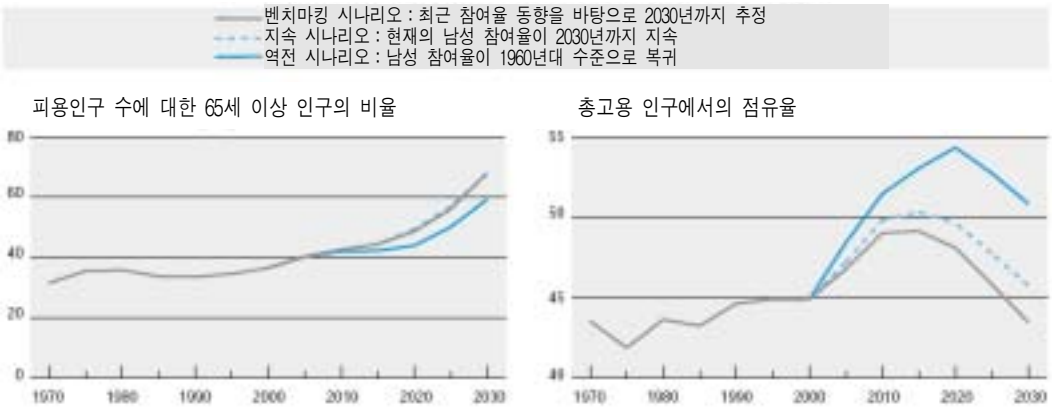

이탈리아

벤치마킹 시나리오 : 최근 참여율 동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추정
지속 시나리오 : 현재의 남성 참여율이 2030년까지 지속
역전 시나리오 : 남성 참여율이 1960년대 수준으로 복귀

피용인구 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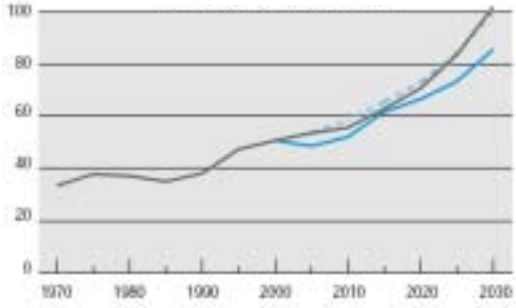

총고용 인구에서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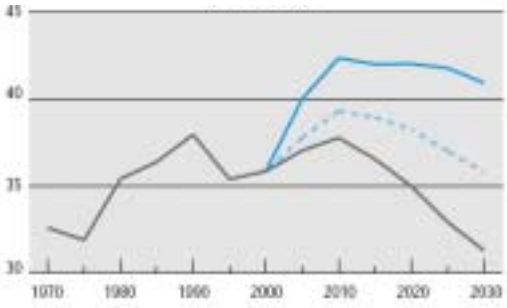

일 본

벤치마킹 시나리오 : 최근 참여율 동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추정
지속 시나리오 : 현재의 남성 참여율이 2030년까지 지속
역전 시나리오 : 남성 참여율이 1960년대 수준으로 복귀

피용인구 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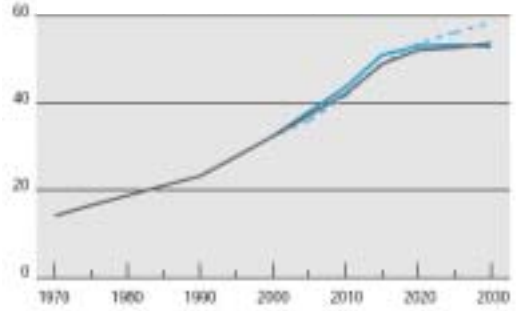

총고용 인구에서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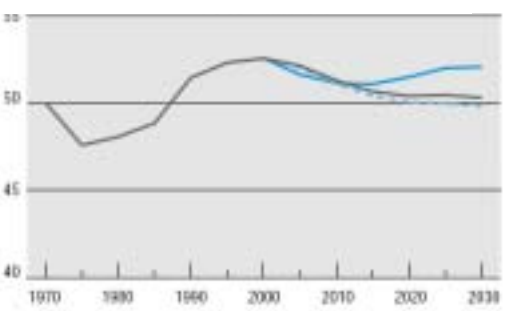

네덜란드

Ratio of persons 65 ar … t is employed
of employees

벤치마킹 시나리오 : 최근 참여율 동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추정
지속 시나리오 : 현재의 남성 참여율이 2030년까지 지속
역전 시나리오 : 남성 참여율이 1960년대 수준으로 복귀

피용인구 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총고용 인구에서의 점유율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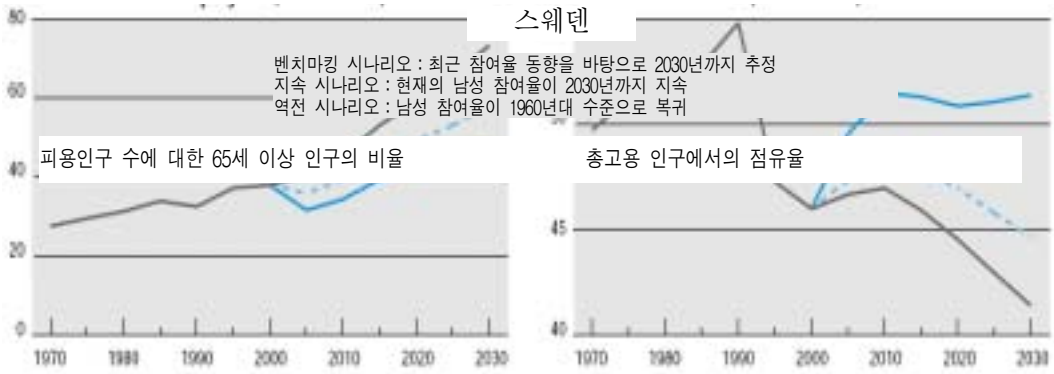

United Kingdom

영 국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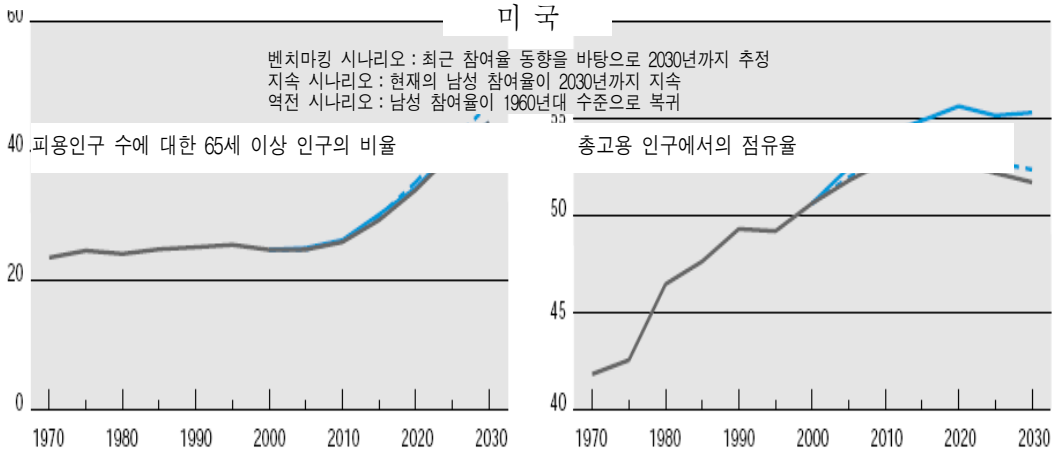

결 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다음 조치

결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다음 조치

요약 및 주요결과

1부에서는, 현재의 정책 개혁이 퇴직 제도와 그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부에서는, 몇몇 OECD 국가에서 이미 진행중인 주요한 변화를 설명하였다. 많은 불확실성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혁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 그리고 응용 연구에 우선순위를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 분석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초점은 퇴직에 있어야 한다. 이는 넓게 말해서 퇴직 소득 제도뿐만 아니라 고용 상태와 퇴직 기간에 소요된 시간의 균형,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이행 과정(노인 적합 직종을 포함), 노인의 생활 여건과 경제·사회적 기여를 포괄한다.
- 발생할 변화의 범위를 밝히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의 역할을 조사하고, 개혁 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모니터 대상 : 노인, 고령 인구집단, 그리고 퇴직 인구집단

모니터와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 전략 틀은 대체로 다음에 초점을 둔다 : (a) 노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혹은 (b)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즉, 능동적 고령화 접근). 그러나 두 부문 모두 국제적 수준에서 감독 체계가 이상적으로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노인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요한 목표를 잃을 수 있다

노령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개혁은, 노인 특화한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평생 교육과 같은 것이다. 고용과 교육 정책이 노동력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에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건 요양 제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구집단의 고령화-그리고 연령 관련 질병-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노인 보건에만 집중하는 연구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 허약한 노인 대상의 장기 요양은 "노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표제하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감독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게 영향을 주는 연속적인 의존과 보살핌 및 수발을 강조하다 보면 노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 재정 통합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모니터링 활동은 반드시 연령 연계형 지출과 수입-연금과 보건 요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와 고립된 채 입안·시행되는 고령화 정책의 재정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슷한 언급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 기금 자산의 성장은 국제적인 공통 요소로 감독과 경험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 시장의 다른 영향력을 배제하고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별 함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틀의 개발은 여러 다른 나라의 정책 접근과 국제적 경험을 통합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층 중심의 정책 구성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화에 대처하는 시각은 넓어야 한다

종종 누락되고 있지만, 적극적 고령화「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보고서에서 제시한 시각- 역시 중요하다. 밑의 박스에서 기술된 것처럼 적극적 고령화는 여러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정책 주제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는 자료 개발과 지원 정책 개발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로부터 퇴직으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모두 아우르며, 평생교육으로부터 건강한 고령화까지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적극적(활기찬) 고령화는 무엇인가?

적극적 고령화는 나이가 듦에 따라 사회와 경제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인간의 잠재능력을 고려한다. 사람들이 그들 인생에 걸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 – 교육, 근로, 레저활동과 수발 참가 – 에서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

- 이러한 것들 중 몇몇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것을 막는 질병 혹은 폐질(invalidity)과 관련된다.
- 다른 것은 휠체어가 통과하기 쉬운 빌딩의 물리적 시설 등과 연결된다.
- 때로는 근로의 비유연성과 관련된다 – 자녀 양육, 노인 부양 혹은 추가적 교육을 위한 휴가 제도 등.
- 그밖에 인구, 가족, 고용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 정책을 부응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평생 교육보다 청년에만 초점을 둔 교육제도가 그러한 예이다.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사회의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다.

적극적 고령화 개혁은 인생 과정에서 비유연성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는 사회 프로그램에 깊이 뿌리내린 조기 퇴직으로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후자의 예는 나이가 듦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평생 교육과 의료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고령화라는 표제 하에서 어떤 다양한 개혁을 언급할 수 있는가?

주로 개혁 방향은 비슷하다. 수렴하는 주제는 아래와 같다 :

- 예방에 대한 강화 – 좀더 이른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개입은 비용이 절약되며 이후 치료를 위한 필요를 감소시킨다.
- 중요한 시점에 덜 파편화하고 집중된 치료를 제공 – 문제의 조기 확인, 사례 운영 기술의 활용, 책임있는 여러 에이전시들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산출(outcome)의 측정 등.
- 개인의 선택 제한 감소와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 균형 잡기 – 연금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 등.
- 개혁을 위한 공통된 전략적 틀이 없으면, 한 지역에서의 개혁의 효과는 낙후된 다른 지역에서 사라진다; 개혁은 전통적 프로그램의 영역을 줄이고 많은 에이전시가 상호 협력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성과를 나누고 필요한 자료의 공유와 응용 연구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오늘의 통찰력은 내일의 효과성으로 나타난다

적극적 고령화는 정책을 찾는 다른 방법, 즉 새로운 통찰력을 낳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핵심은 정책이 삶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개념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의 증상이 노인에게 발견되는 반면 정책은 통상 사람들이 젊을 때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개인의 삶을 연속선상에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현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산출의 체계적 측정을 가능케 할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생애 경로를 고려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모아지기만 하면 적극적 고령화를 고려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지금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노령보다 퇴직이 보다 유용한 초점일 수 있다

변화하는 퇴직 제도 자체가 앞으로 몇 년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책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이러한 강조는 전통적인 퇴직 연령 노인의 보건, 복지와 경제·사회적 기여 뿐 아니라 근로-퇴직 전환을 포함할 것이다.

일관된 고령화 패키지는 (a) 퇴직 관련 특별 정책과 (b) 재정, 조세, 보건, 금융과 노동시장 활동 전분야에서 모니터링 진행 등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연구의 내용

대다수의 나라에서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강조점은 개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아래의 조치들이 발견된다.

- 개별 국가들의 상황과 상이한 집단의 퇴직 여건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표적화한 정책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위험, 편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 근로소득 그리고 세금과 같은 개별 요소 측면 뿐 아니라 여러 타입의 공적, 사적 연금 등 퇴직 소득 제도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 개혁 과정에 대한 추가적 분석 : 어떤 개혁이 개발되고 논의되는지의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특히 잘 작용한 협의 기제와 대중의 태도 등이 분석될 수 있다.
- 효과가 측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개혁의 결과를 감독할 도구의 개발을 지원 : 연금 추계에 사용된 인구학적 가정은 수명 증가를 과소평가해왔다. 미래의 퇴직에 대해서 합리적인 일련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재정 혹은 기타 추계를 시행할 합의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미래의 추계가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규모를 측정하고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일관된 자료 개발과 응용 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료가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래의 퇴직 패턴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정책이 어떻게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국

가들은 정책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아래의 박스는 근로-퇴직 전환과 같이 삶의 전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취약함을 지적한다. 사적 연금의 경우는 기초 행정 자료 조차 부족하다.

'자료 공백'(date gap)의 전형적인 예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령화 관련 자료가 특히 빈약하다. 한 예로 퇴직 연령에 대한 질문을 보내면 반응이 제각각이다. 몇몇 반응은 과감한 개혁을, 다른 반응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주의하자는 측면에서는 퇴직 연령을 높이면 대중이 반대할 것이고 급여 수급 연령이 변경되면 퇴직 연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도입되었던 많은 개혁들이 거둔 커다란 효과를 거론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국가의 상이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타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낼 데이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위의 예에서 간과한 것은 근로로부터 퇴직으로의 이행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이다. 이는 각 경로의 제도적 특색과 각 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 그 경로가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마지막으로 정책 개입의 잠재적인 효과는 어떠할지를 포함한다. 이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근로에서 퇴직으로 이동했을 때 개인들의 경험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개발의 시도는 있었다. 시작할 때부터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게 자료를 구축하면 이득이 많을 것이다.

OECD의 대응

OECD를 포함하여 많은 조직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조치에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현재, 표적집단별 분석, 제도 분석, 개혁과정과 정보 구축 및 필요와 관련된 많은 주제를 탐구할 9개국 퇴직 소득 정책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주제들을 탐구하는 두번째 방법은 OECD Economic Survey에 포함된 개별 국가의 고령화 관련 특별 chapter의 구성이다. 이는 퇴직과 고령화 관련 이슈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 연구를 모아놓게 될 것이다.

연령 연계 재정 추계 작업 역시 현재 진행중이다. 이는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 하에 수행중이다.

고령화 관련 논의는 금융 시장과 사적 연금을 포함하여 OECD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규제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개혁의 필요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넘어 실체 개혁의 이행을 지원하는 보다 특성화한 분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6장은 필요한 여러 정밀한 조사 예를 제시했다. OECD에서는 정보 수집, 정책 분석, 정책 담론의 개발을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집단이 생겼다. 정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보다 규모가 큰 통계 구축 작업 역시 시작되었다.

보건, 장애 그리고 연령 연계 질병의 영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앞으로 필요한 고령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록 1. 설문에 대한 주

부록 2. OECD 29개 국에서의 고령화 압력과 정책대응

부록 1
설문에 대한 주

1부에 쓰인 자료는 7개의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의 결과였다. 각각은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들이다. 해당 국가들은 설문에 제시된 특정 준거시점(reference point)에 각국의 개혁이 가져올 효과를 예측하고 비교하도록 요청 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향후 변화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다른 질문도 주어졌다. 답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국가간 의사소통도 이루어졌다.

개혁의 규모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은 아직 정교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고령화라는 정책영역은 미래에 아무리 세련된 도구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어느 정도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국가들의 개혁은 밑에 있는 표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주요 개혁의 내용

	퇴직 유인과 비유인	고령 근로자 고용	재정 안정화	퇴직소득 제도의 다양화	빈곤 감소	보건과 장기요양		금융시장과 사적연금	전략적 틀
						보건	장기 요양		
호주	A.B	D	ABC	A	ABC		ABC	ABCD	B
오스트리아	A	AB	A	A		B	A	AB	
벨기에	BC	BCE	ABE			AB		ABC	ABC
캐나다						ABC	BC		AB
체코	ADE	CE	ADE	AE		C		AE	B
덴마크	AB	AB	AB	AB				A	AB
핀란드	E	E	BCE						B
프랑스	AC	AB	A	BCD	D	C	C	B	
독일	A	ACE	D	B	D		A	ABD	D
그리스	ABDE		ADE	E	B		B	DE	AB
헝가리	BE	E	BE	E	B		B	BE	B
아이슬란드			E	ABE		A	A	ABCDE	
아일랜드	BCD	D	ABC	CD	D			C	D
이탈리아	ABE	ABE	ABE	AE	ABC			ABE	BCD
일본	AB	A	BCDE	D			AC	D	A
한국	DE		BE	BE	B	A		A	B
룩셈부르크		AD			AC		B	BE	
멕시코	B	BD	A	B	B	ABCD		B	
네덜란드	CDE	BCDE	E					ABC	
뉴질랜드	A		ABD			D	D		D
노르웨이	E	E	A	E		C	AB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ABCE	E	BE	ABE	A	ABC		ABDE	A
스웨덴	E	E	BE	BE	C	BC	AB	ACD	
스위스	ADE	D		A	A	ACD	D	ABD	D
터키	BC		B	C	BC			C	BC
영국	ABE	BC	AC	DE	B	B	BD	A	
미국	C		ABDE			AB	BC		A

주 : 최근 개혁을 강조한 것임. 각 코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 1997년 이전에 도입. B : 1997년 이후 도입. C : 발표됨. D : 적극적으로 고려 중임. E : 공공 정책의 주요 과제임.

부록 2
OECD 29개 국에서의 고령화 압력과 정책대응

이 부록은 29개 OECD 국의 고령화 압력을 살펴본다. 이는 1부에서 기술된 개혁의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각 국가의 섹션은 공통된 주제에 대해 국가마다 별도로 작성되었다. 각 섹션은 기대 수명의 증가, 평생 고용의 패턴 변화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이는 회원 국가가 어떻게 고령화하고 있고 이것이 의존율과 고용된 인구의 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이어지는 차트에 있는 자료는 OECD 노동력 데이터베이스와 UN 인구 추계치를 활용하였다. 이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용된 자료는 1998년에 끝나고, 그 자료는 1장에서 기술된 중요한 코호트 효과를 무시한 단순 횡단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 예측은 기존 노동력 참여 경향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

각 국가에서, 추세와 예측에 대한 보다 정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여건에 더 적합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고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예측과 시나리오 역시 불완전하다. 1부에서 기술한 것처럼 장기적 시계열 자료가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은 국가들 간에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의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호 주

개인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현격하여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호주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호주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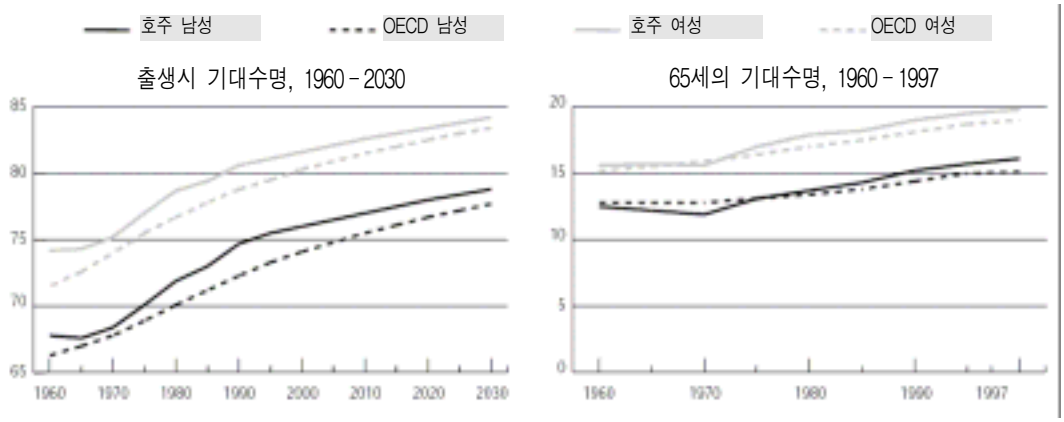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의 전형적인 남성의 패턴은 고용에 보내는 기대 년수에서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인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에 보내는 기대 년수는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전형적인 OECD 국가에서 오늘날 남성은, 고용에 자신의 인생의 단지 절반을 소요한다. 반면 여성은 고용에 더 많은 전보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역시 더 빨리 퇴직하여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호주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흡사하다 :

○ 오늘날의 노동시장 여건이 지속되면, 호주 남성은 기대수명의 약 절반—38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8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는 시나리오하에서, 2030년까지 남성은 다소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될 것 같고(36년), 수명 연장의 결과로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43년).

○ 오늘날 호주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3년은 고용되지 않으나, 2030년에 이르면 고용 기간은 39년이 되고, 비고용 기간은 45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호주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다. 호주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치.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0%미만에서 오늘날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경에는 약 20%가 될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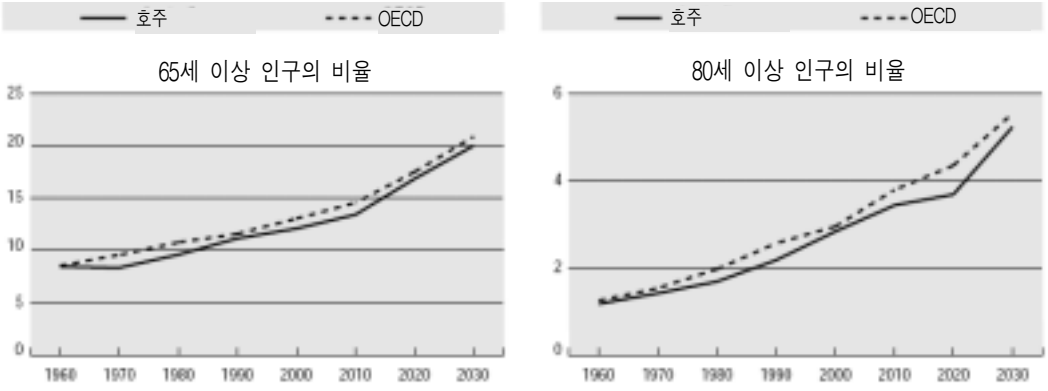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전형적으로 근로 연령 집단의 규모와 연계하여 의존 인구의 크기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 인구층의 압력을 조사한다. 이는 노인 인구 집단이 경제에 만들어내는 압력—근로 연령 인구가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 미치는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급여의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 대비 수급자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은 급여가 조달되는 방식과 노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아래 선). 이 비율은 호주에서 약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여 조정을 하는데, 조기 퇴직과 기타 영향으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의 수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에 두 가지 수치는 같은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4명의 근로자 당 한 명의 노인이 존재한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2.5명의 근로자만이 존재하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약한 고령화의 압력

의존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OECD 국가보다 고령화 수준이 낮고, 2010년 이후의 비율 역시 다소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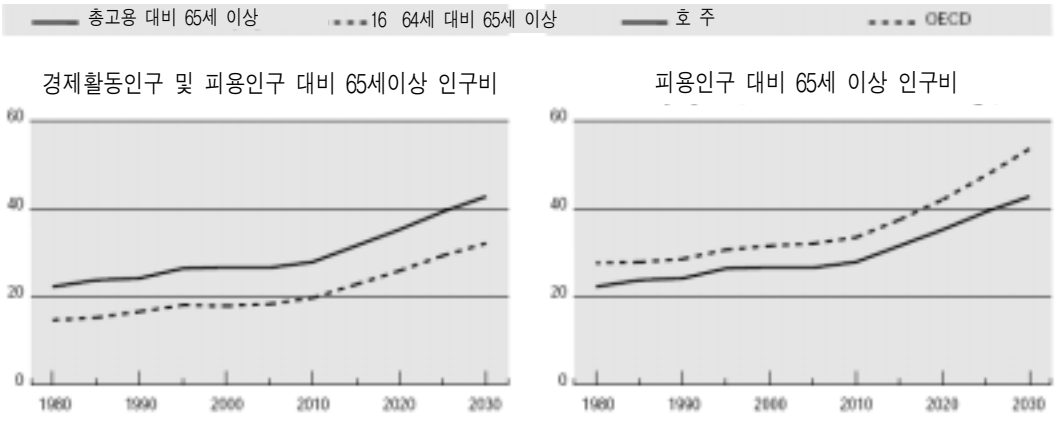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재 전체적으로 약 45%의 호주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8%로 절정에 달하고 2030년에는 47%로 떨어질 것이다—OECD 평균은 2030년에 약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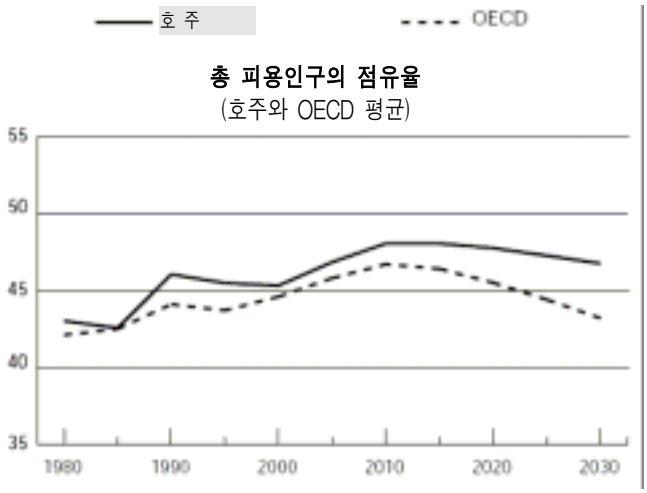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목표는 고용에 소요되는 년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부록에서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여러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활동의 가능한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가깝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에서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었다.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의 오스트리아 여성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며, 남성은 16년을 더 살 수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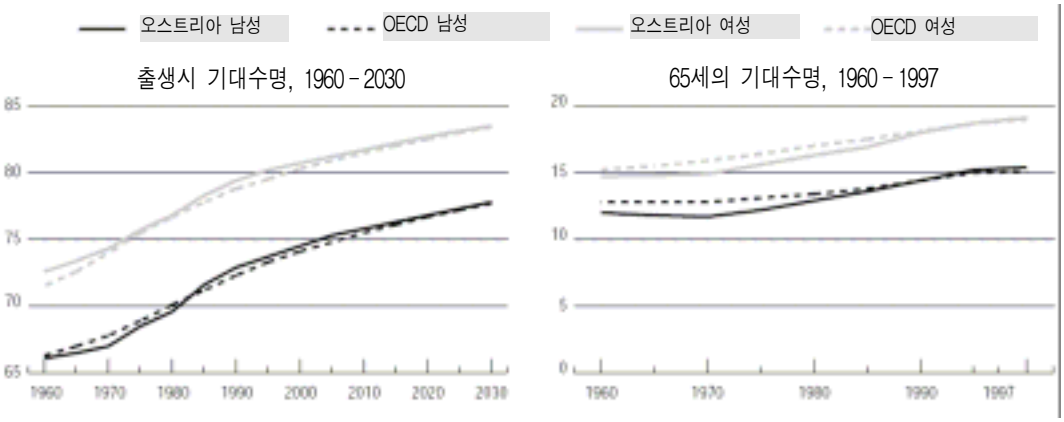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근접한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오스트리아 남성은 기대 수명의 약 절반—37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다소 덜 고용될 것 같고(32년), 수명 증가의 결과로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더 증가할 것 같다(45년).

○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여성은 2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간은 비고용 상태일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많이 변하지 않을 지 모른다. 그러나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수명 연장의 결과로서 증가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2% 이하로부터 오늘날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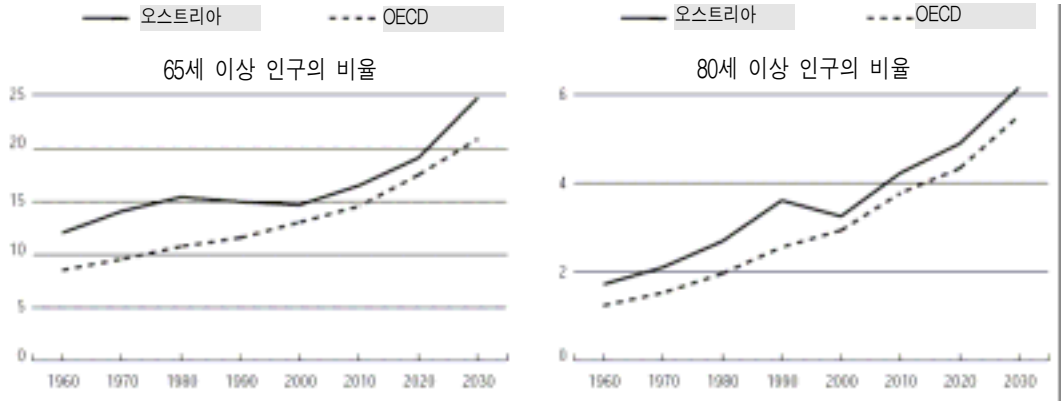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오스트리아에서 약 201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보다 2010년 이후에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 .5 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압력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하다

오른쪽 밑의 차트는, 비록 예측 기간의 끝으로 갈수록 달라지기는 하지만, 조정된 의존율이 OECD 국가들과 오스트리아가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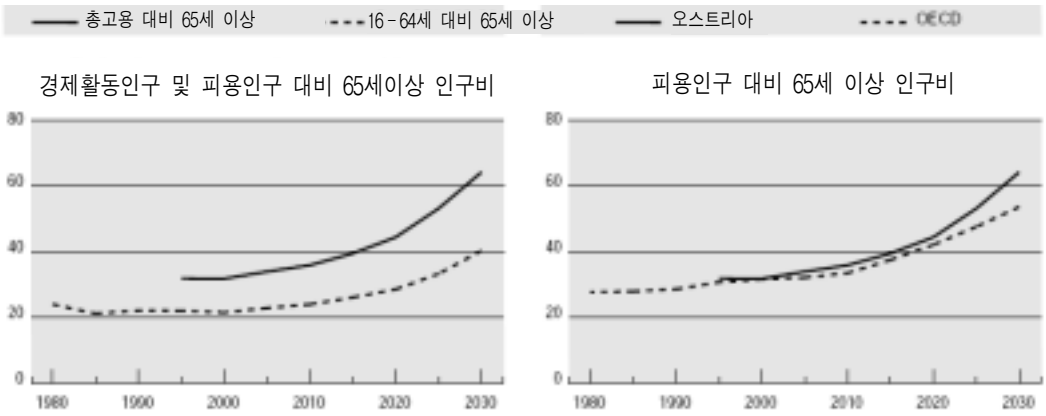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6%의 오스트리아 인구가 오늘날 고용상태에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수 십년 동안 유지되다가, 2030년에는 39%로 떨어질 것이다—OECD 평균은 2030년에 약 43%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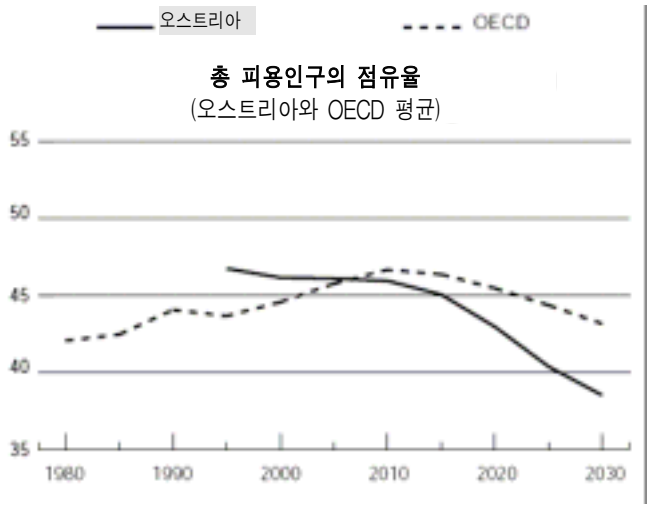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목표는 고용에 소비되는 햇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에서 언급했듯이, 제시하는 결과는 가능한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벨기에

개인들의 수명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가깝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인 벨기에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며,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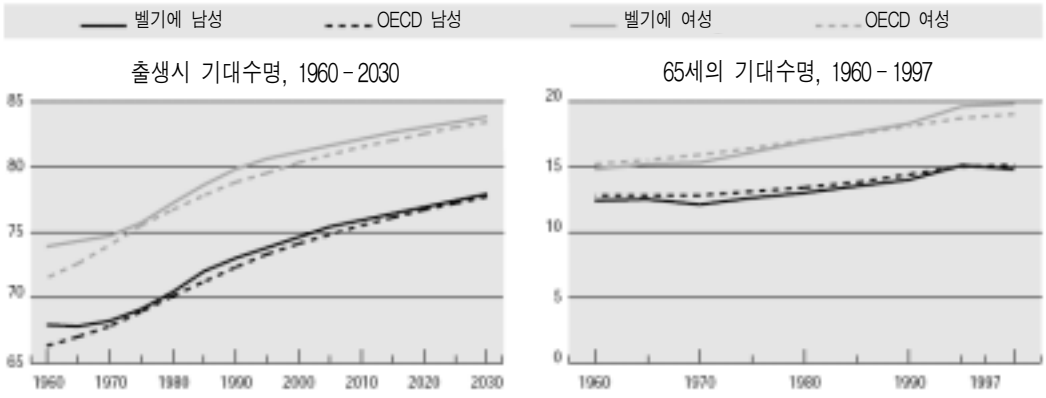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특히 퇴직과 같이 근로 외에 시간을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전형적인 OECD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남성이 고용 상태로 자기 인생의 단지 절반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고용 상태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이미 OECD 평균 보다 생애 노동기간이 짧고, 남성이 고용보다 비고용 상태로 더 많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벨기에 남성은 생애 중 단지 약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2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2030년경 남성은 인생에서 단지 28년만 고용상태로 지낼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상승하면서 50년 동안 고용 밖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 벨기에의 여성은 23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8년은 비고용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경에는 고용된 기간은 39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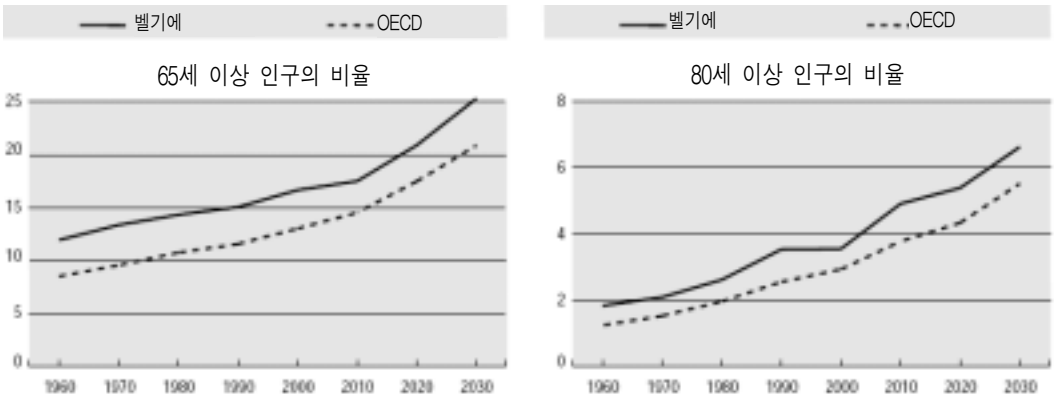

벨기에의 인구 또한 고령화하고 있다—그리고 OECD 평균 보다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 고령화의 주요 책임은 출산율 저하에 있다. 벨기에의 인구는 점점 나이 들고 있다—대략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2% 이하로부터 오늘날 17%까지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2030년이 되면 약 25%의 인구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은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추세는 OECD 평균 정도이다. 그러나 벨기에 인구의 미래 예측에 따르면 OECD 평균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전형적으로 근로 연령 인구 규모 대비 의존 인구의 크기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 인구 집단의 압력을 측정한다. 이는 노인 인구 집단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주는 압력—근로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과 같은 급여에서 대략적인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 대비—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가 조달되는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벨기에에서 이 비율은 약 201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조기 퇴직과 다른 요소의 결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수를 고려한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2.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다 더 큰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벨기에에서 의존율 추세의 상승패턴이 OECD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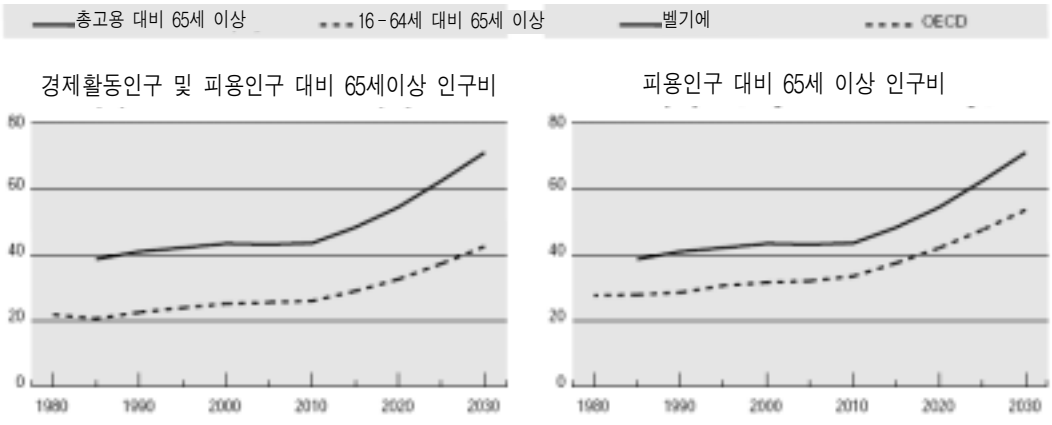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비율 변화—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오늘날 약 38%의 벨기에 인구가 고용상태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0%로 절정에 달하고 2030년에는 36%로 떨어질 것이다—OECD 평균은 2030년에 약 4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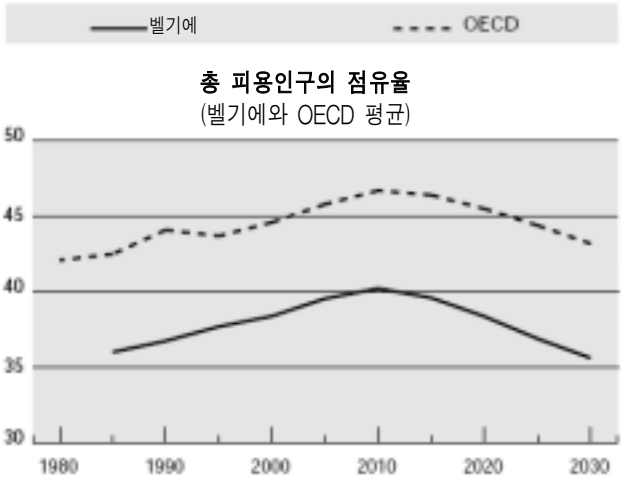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캐나다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9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인 캐나다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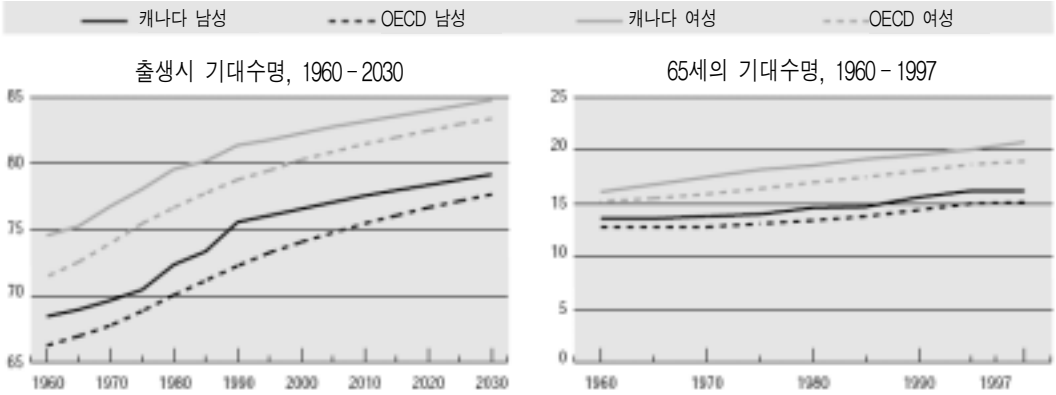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캐나다의 상황은 OECD 평균과 흡사하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캐나다 남성은 기대 수명의 약 절반—38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경 남성은 35년 동안 고용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4년).

— 오늘날 캐나다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고용되지 않은 채 보낸다. 2030년 경에는 고용에 소요할 기간이 38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고용 기간은 47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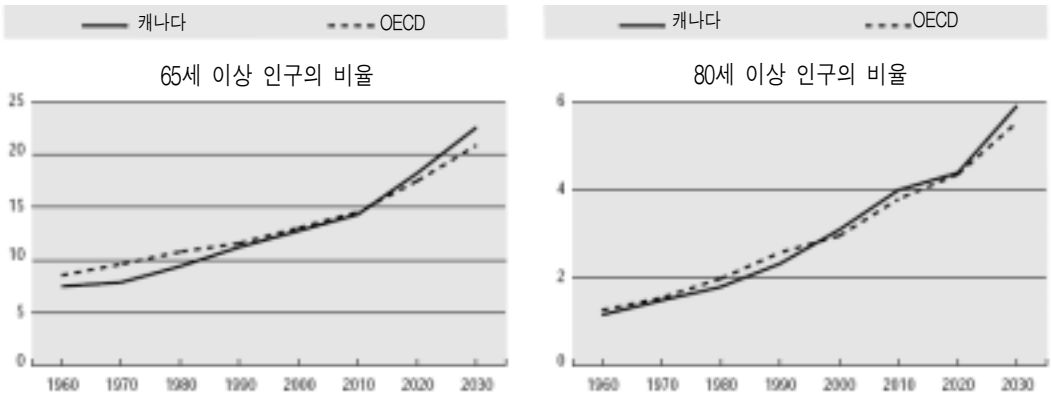

캐나다의 인구 역시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에 근접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60년 10%이하에서 오늘날 12%까지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의 인구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

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캐나다에서 약 2010년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보다 약한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오른쪽 밑의 차트를 보면, 캐나다의 의존율은 OECD 국가보다 조금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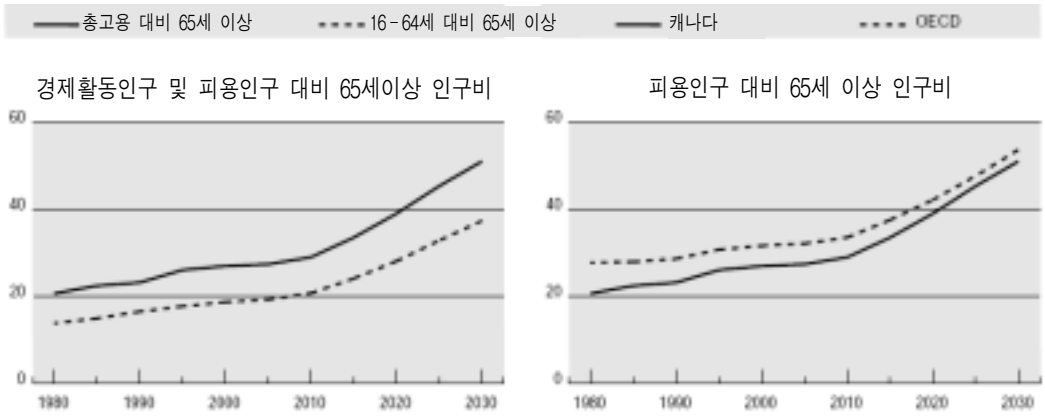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오늘날 약 47%의 캐나다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44%로 떨어질

것이다—OECD 평균은 2030년에 약 43%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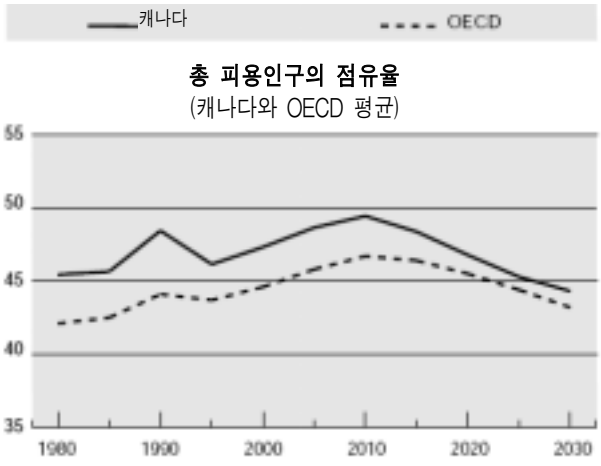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캐나다는 한 예이다.

체 코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체코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 체코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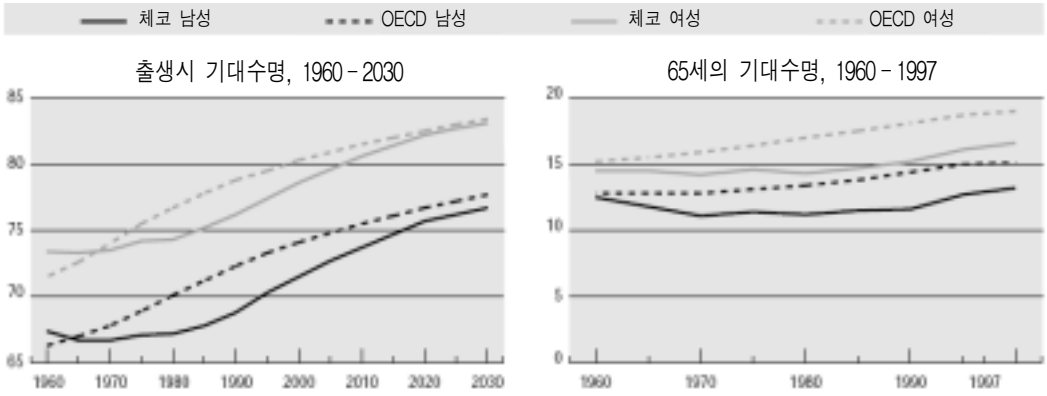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는 체코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 십 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불행하게도, 본 보고서 작업에 사용된 기술은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체코 공화국에는 적용되기 힘들고, 따라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생애 년수의 예측 역시 비현실적이 되기 쉽다.

체코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0%이하로부터 오늘날 13%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에는 6%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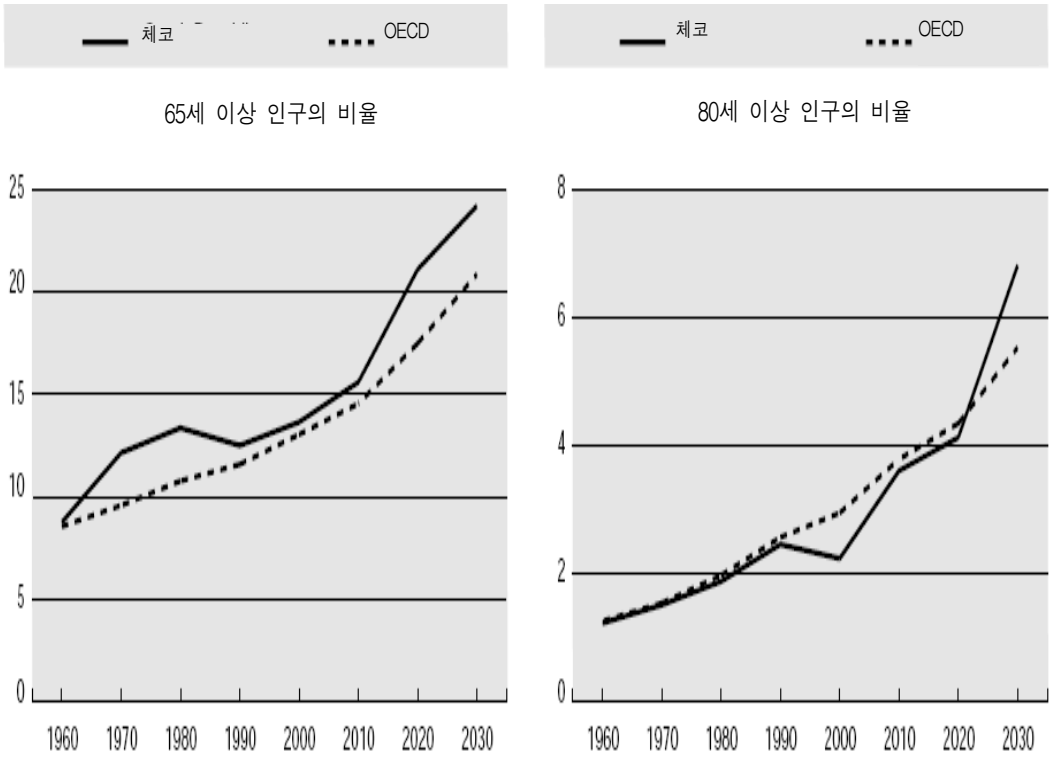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

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체코에서 약 2010년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 조금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분야의 예측은 체코 공화국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OECD 평균과 비슷한 고령화 압력

왼쪽 밑의 차트는 의존율의 성장이 OECD 국가와 꽤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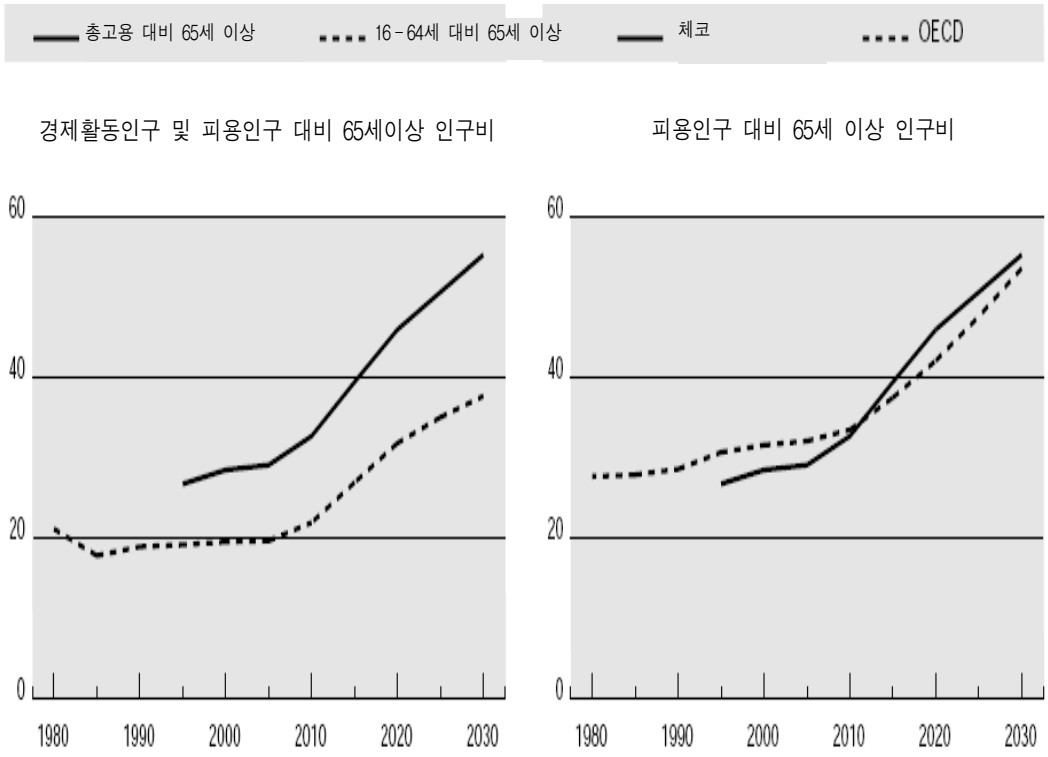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체코 공화국을 포함해서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덴마크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0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2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인 덴마크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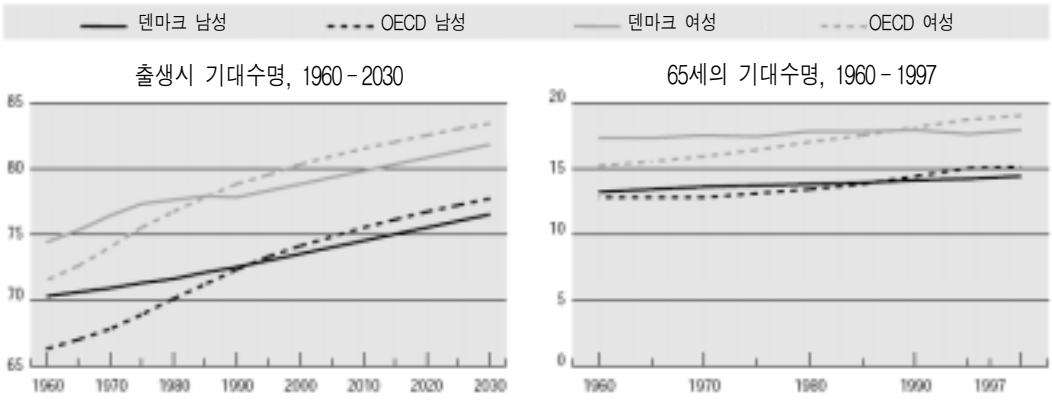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덴마크의 상황은, 최근 수십년간 덴마크 여성이 근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면, OECD 와 흡사하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덴마크 남성은 4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4년은 비고용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5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황이 역전됨.

○ 오늘날 덴마크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비고용일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는 38년 정도를 고용상태로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덴마크의 인구 역시 고령화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좀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덴마크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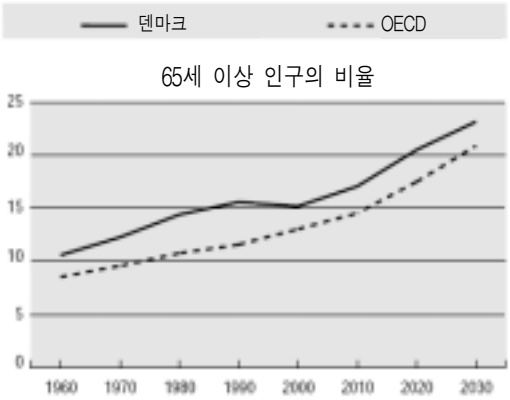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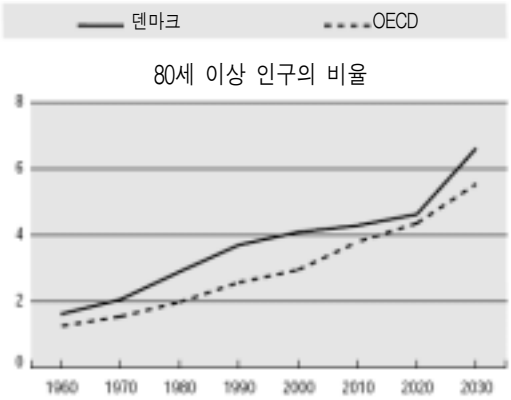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덴마크에서 약 2005년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2.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를 보면 덴마크의 비율은 OECD 평균과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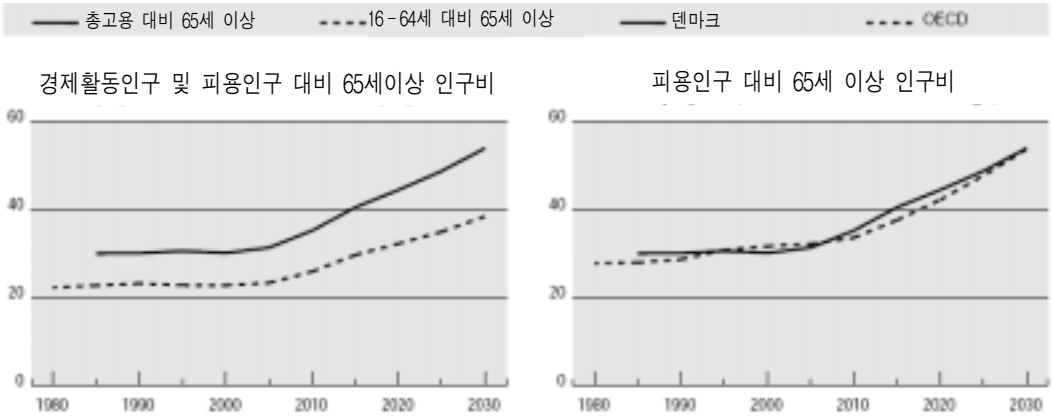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현재 전체적으로 약 51%의 덴마크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43%로 감소할 것이다—OECD 평균은 2030년에 약 4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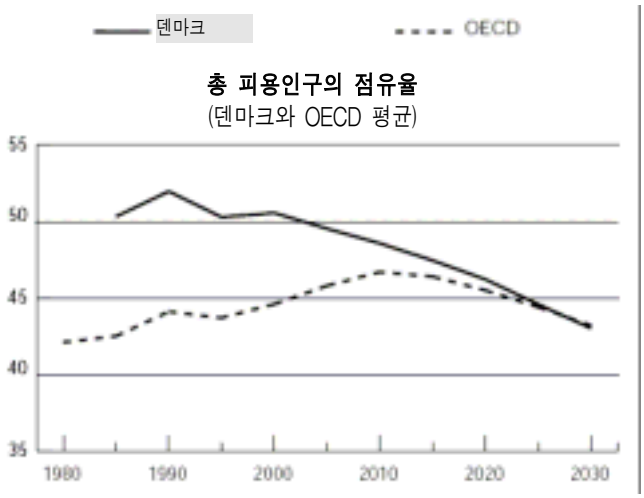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핀란드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5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핀란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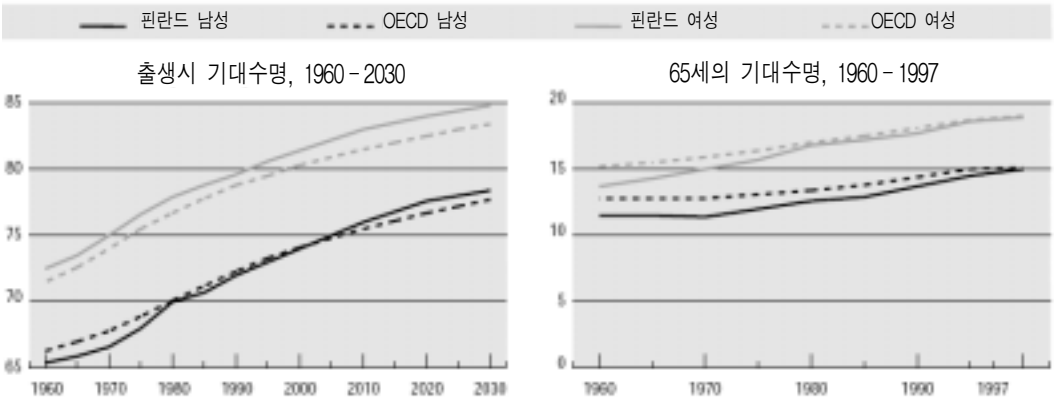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새로이 고용되는 인구와 고용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구가 비슷해지는 경향이 좀 더 일찍 발생했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핀란드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2년은 비고용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경 남성은 28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50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황의 역전임.
○ 오늘날 핀란드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1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좀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핀란드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7%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8%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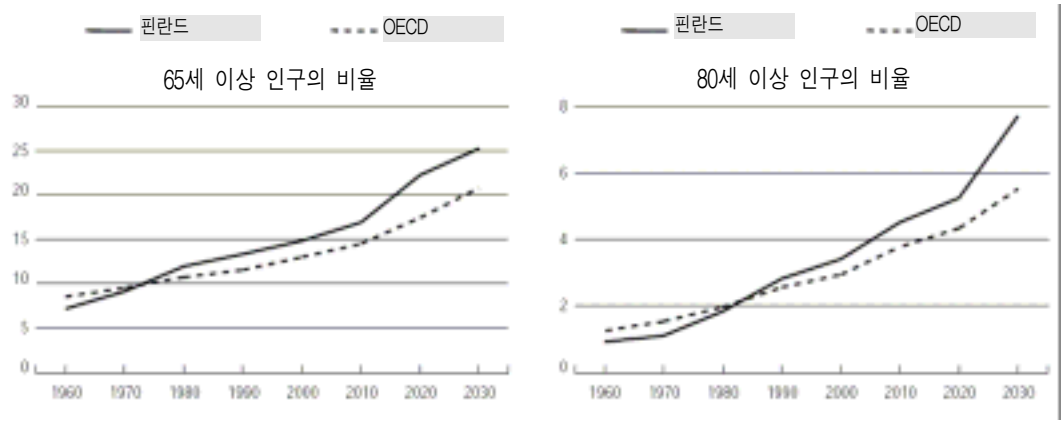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

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핀란드에서 약 2005년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심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핀란드의 파용인 대비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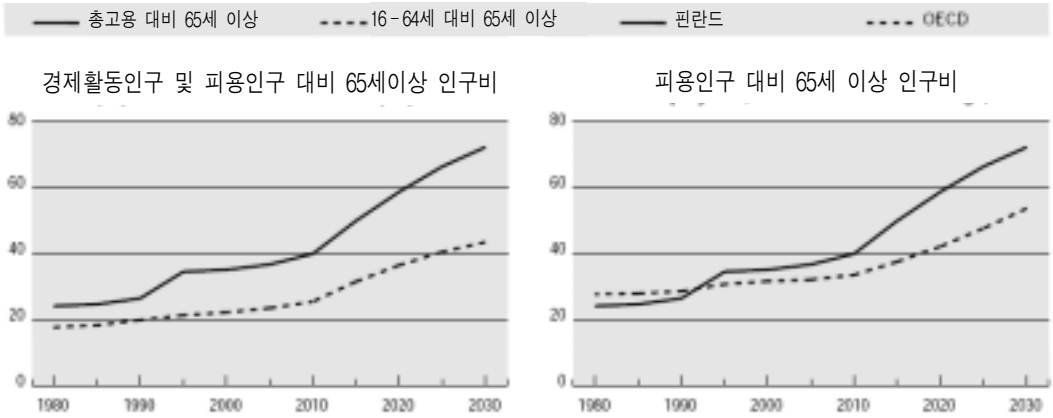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2%의 핀란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5%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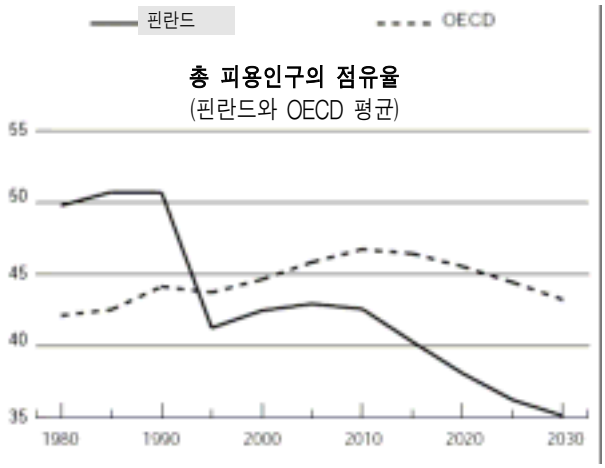

핀란드의 예측치는, 실업이 미래에 매우 낮을 것이라는 가정—모든 나라에 적용—과 더불어 1990년 초반과 중반의 높은 실업이 반영되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프랑스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5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프랑스 여성은 21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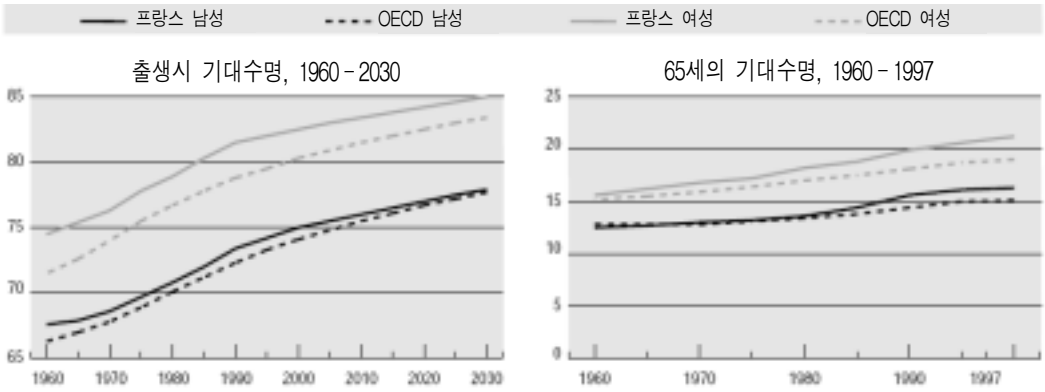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프랑스에서 남성의 고용 쇠퇴는 OECD 평균 보다 심각해서 1980년대에 이미 고용기간과 비고용기간이 같은 지점(교차지점)에 이르렀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프랑스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3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29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9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프랑스의 여성은 25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8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나고 52년 동안 비고용 상태로 살게 될 것 같다.

프랑스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좀 더 연령이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프랑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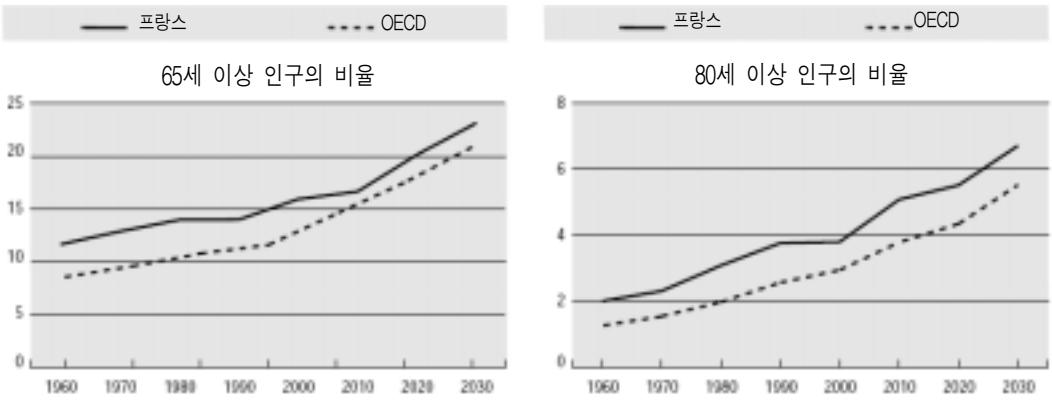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

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프랑스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전통적인 측정방식의 결과보다는 2010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2.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심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프랑스에서의 의존율의 패턴이 OECD 국가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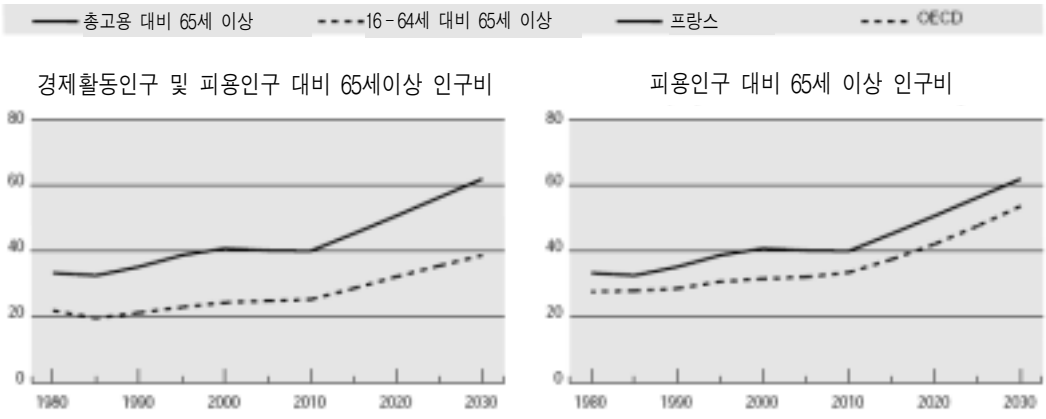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0%의 프랑스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2%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7%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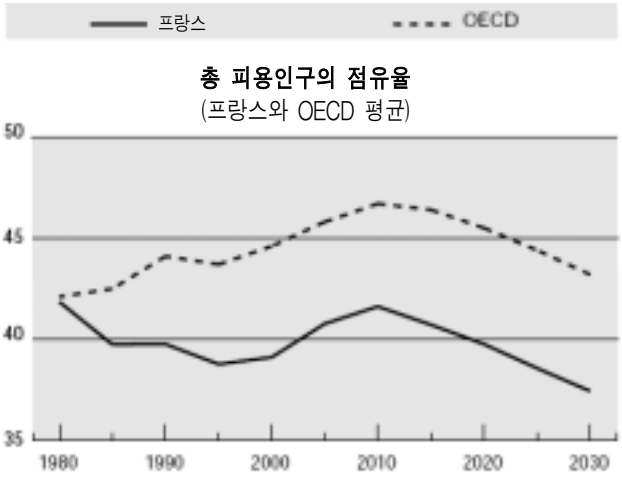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프랑스와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독 일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독일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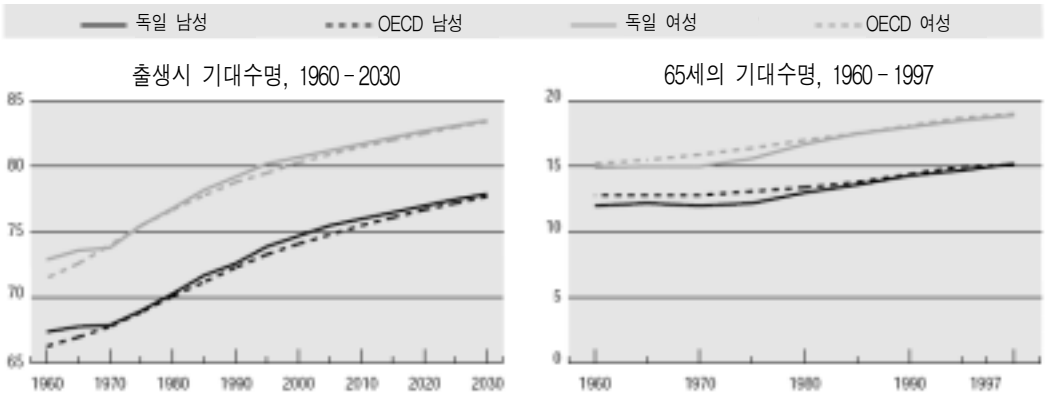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독일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 근처이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독일 남성은 36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8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독일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9년으로 늘어나고 고용되지 않은 채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연령이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6.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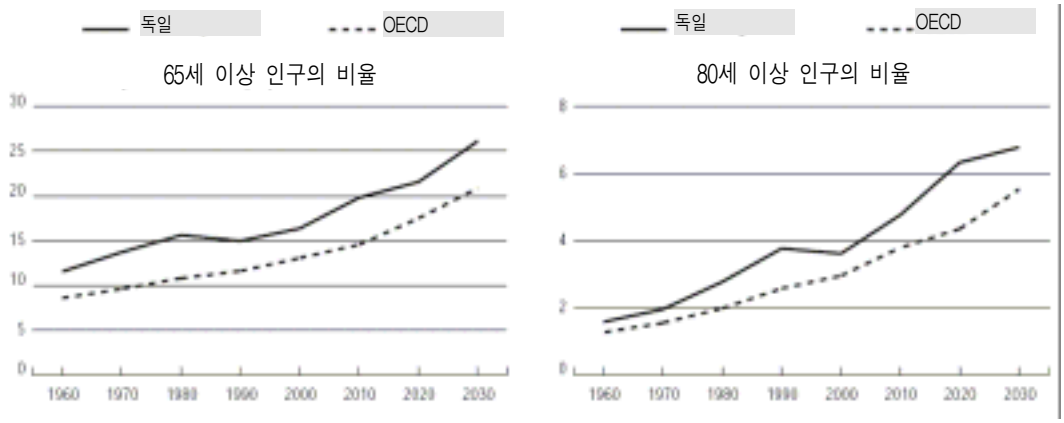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독일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2.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심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를 보면, 독일은 비록 그 차이가 예측 기간 끝으로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OECD 국가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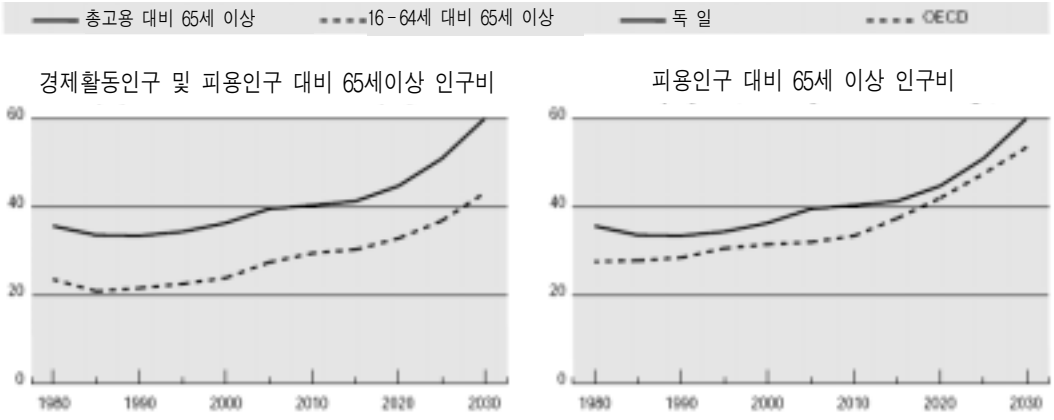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5%의 독일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5년에 49%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43%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과 거의 같다.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독일은 사용된 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정밀한 분석에서는 노인 남성과 여성 집단의 고용이 현재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 진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그리스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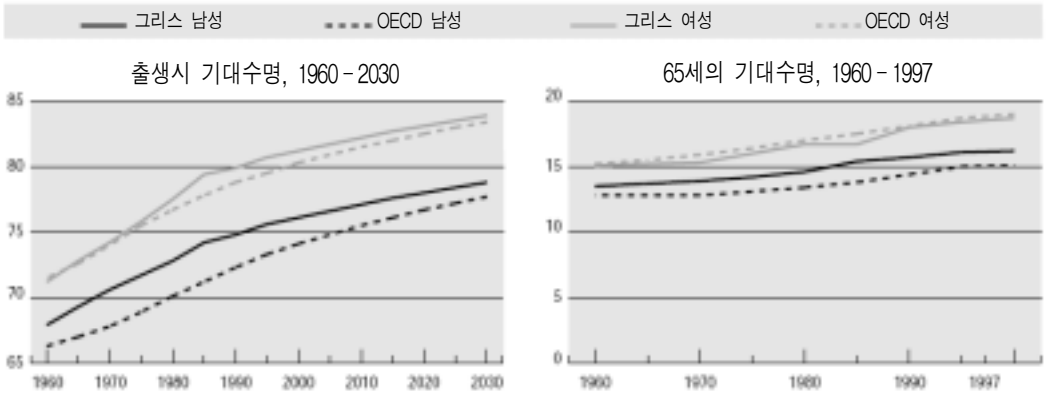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리스는 OECD 평균보다 여성의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제외하면, OECD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그리스 남성은 37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5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그리스의 여성은 21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0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2년을 살게 될 것 같다.

그리스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더 연령이 높고, 점점 빨리 늙어가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8%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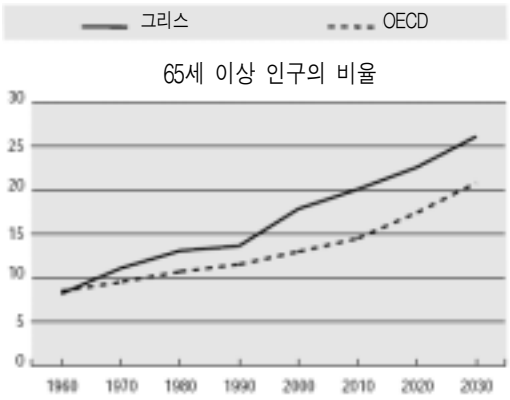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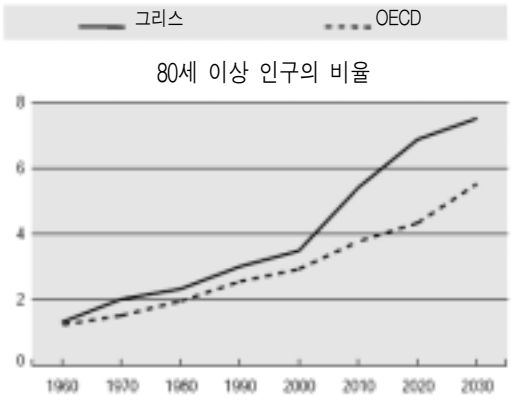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독일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2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심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독일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약간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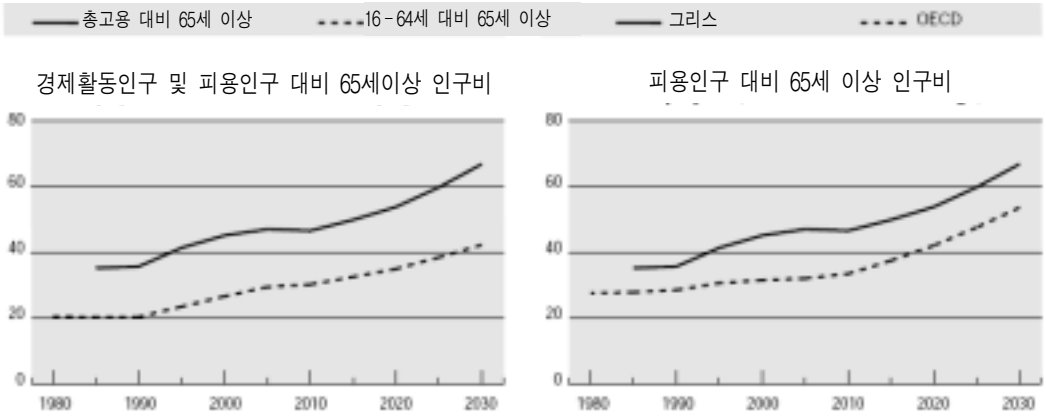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재 전체적으로 약 40%의 그리스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3%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30%로 감소해서 2030년에는 40%가 될 수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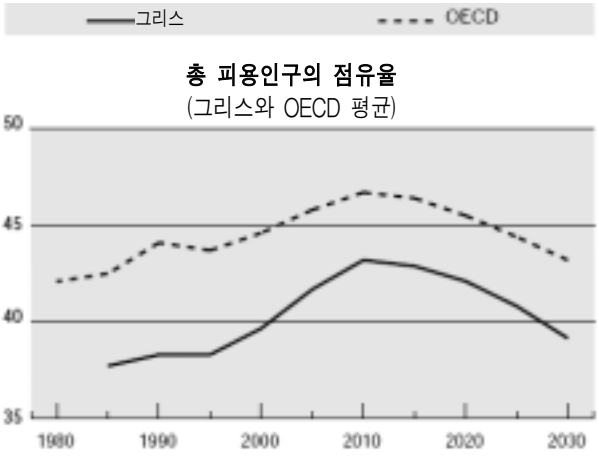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헝가리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4세와 80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헝가리 여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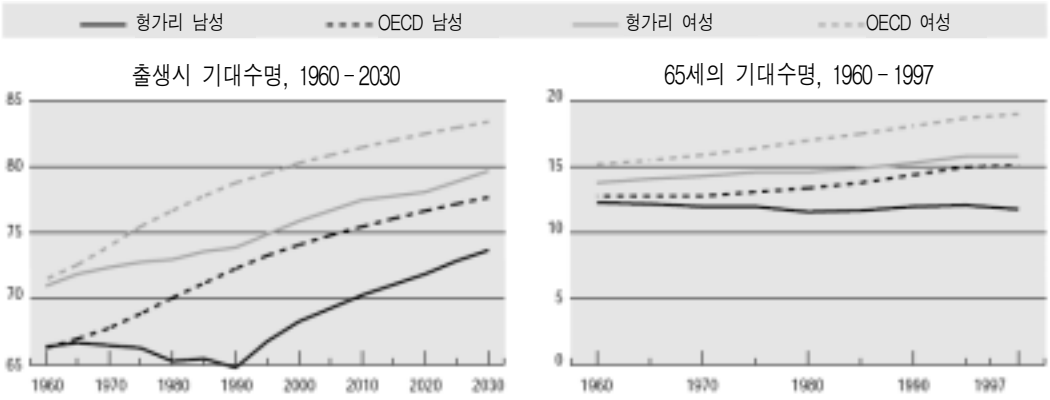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법을 적용할만한 일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의 경우는 고용에 대한 현실적인 생애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다.

헝가리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 — OECD 평균과 근사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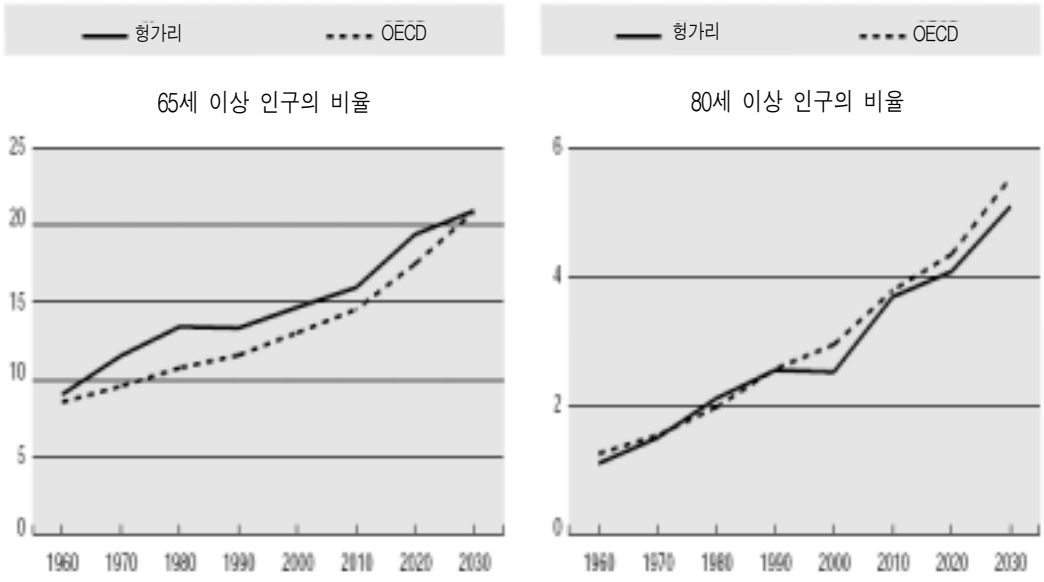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헝가리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

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통적인 측정방식 결과보다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오늘날 2.5명의 근로자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때문에 헝가리에서 예측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심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를 보면, 헝가리에서 현재의 노동 시장 추세가 미래까지 지속된다면, OECD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비율이 상승할 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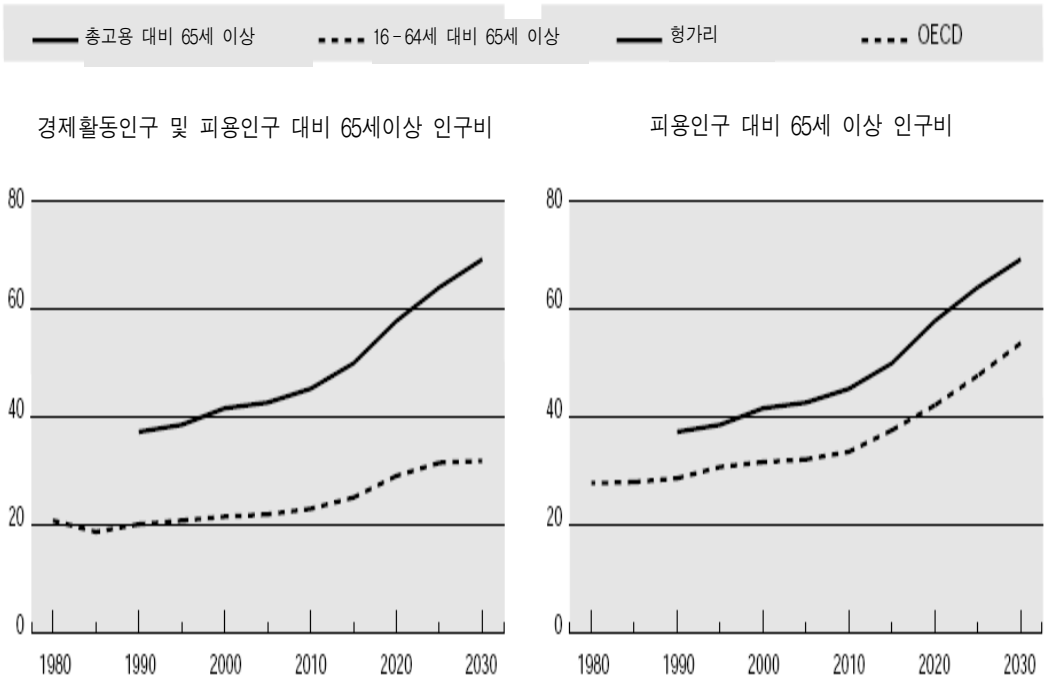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5%의 헝가리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5년에 49%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43%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과 거의 같다.

10장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헝가리의 경우 명백히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고, 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아이슬란드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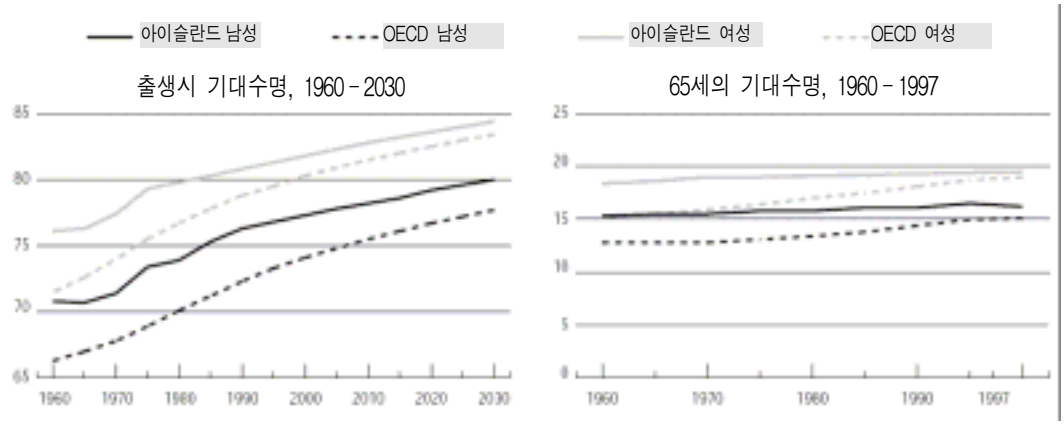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꽤 다르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아이슬란드 남성은 4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고용 상태에서 보내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56년간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5년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여성은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7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더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 수준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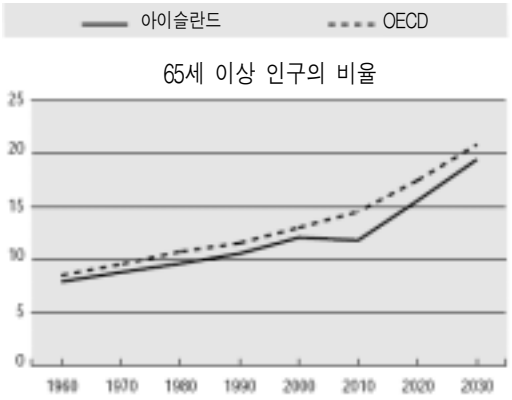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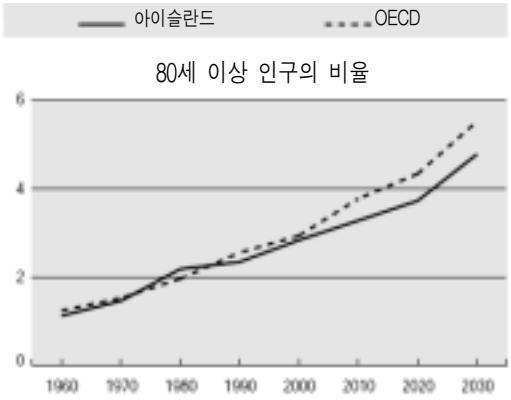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할 것이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아이슬란드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4.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3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낮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아이슬란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낮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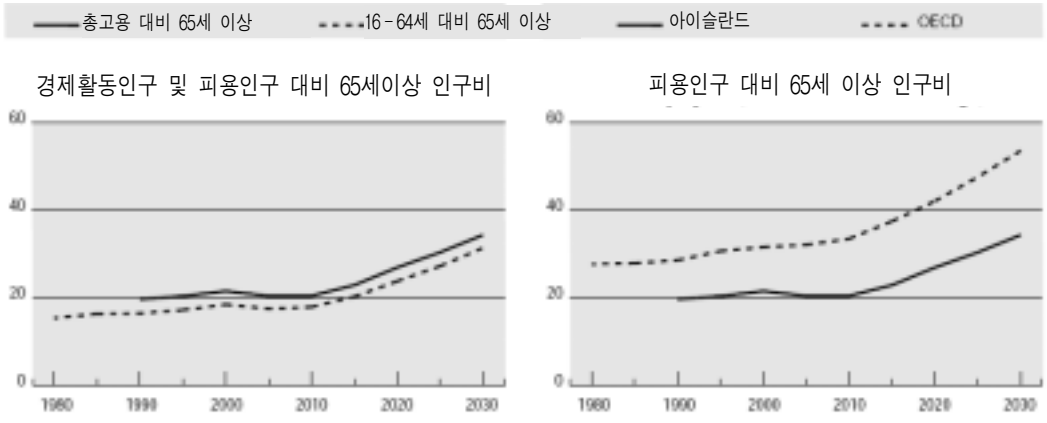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56%의 아이슬란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5년에 59%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57%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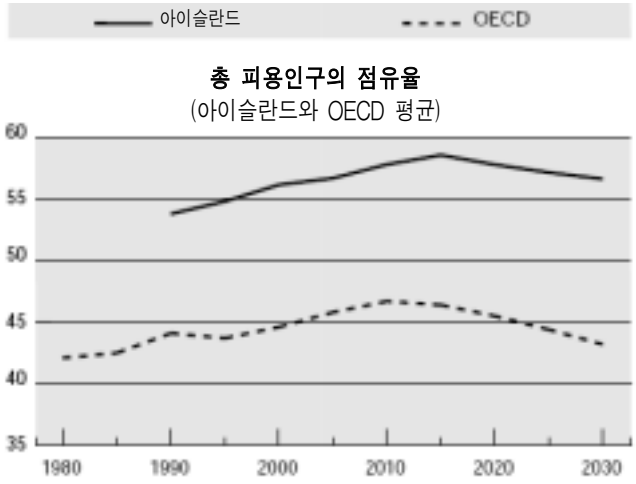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고, OECD 평균에 근접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아일랜드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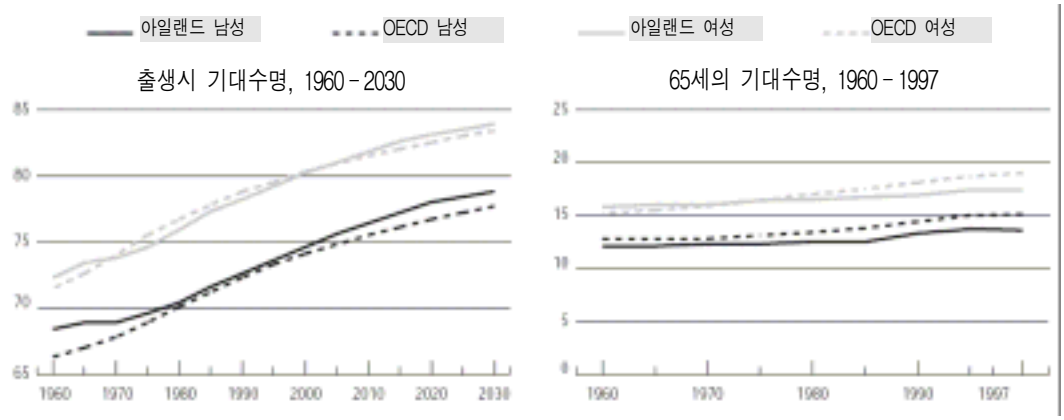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의 상황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성 고용이 상당히 늘어난 것과 더불어, 오늘날 OECD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아일랜드 남성은 인생의 절반—38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4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5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오늘날 아일랜드의 여성은 2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5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늙기 시작하였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최근 수십년간 약 11%로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8%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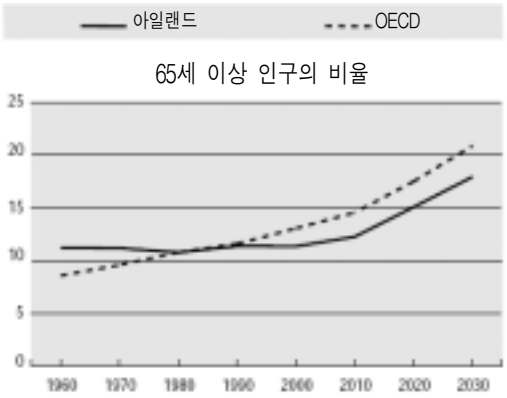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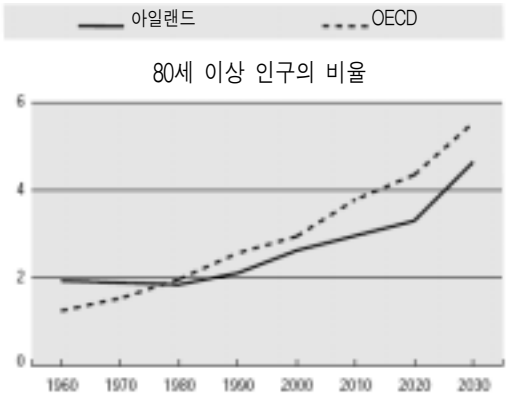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할 것이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아일랜드에서 20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2010이후 보다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10 년간 대부분의 나라보다 낮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아일랜드에서의 비율이, 10년 동안 감소할 것이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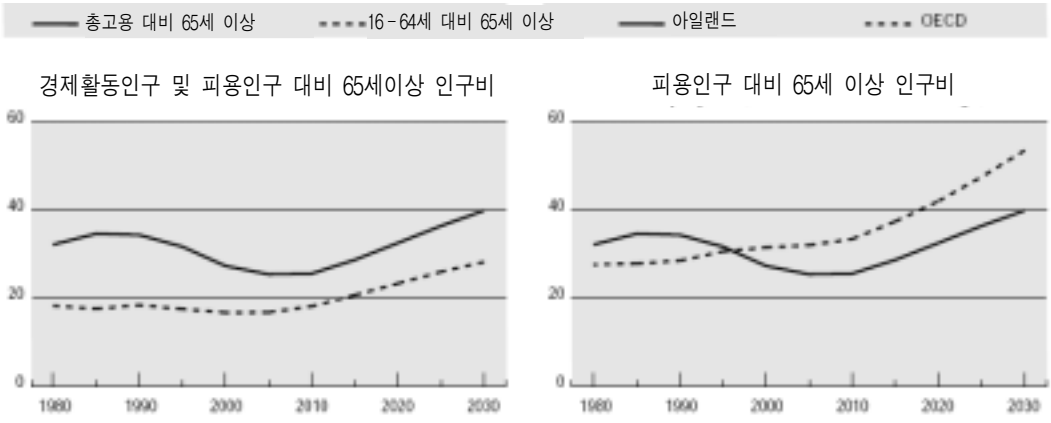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1%의 아일랜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8%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5%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조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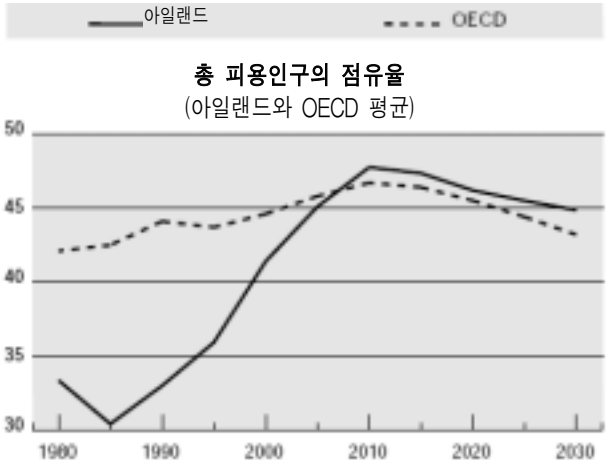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이탈리아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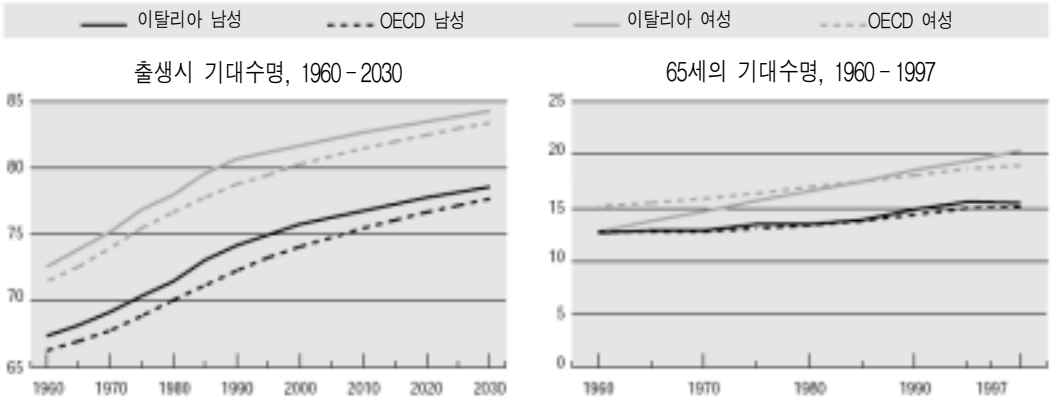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근로 쇠퇴는 매우 심각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들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을 근로에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탈리아는 그 지점을 이미 10년 전에 도착했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이탈리아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년 동안 고용되고 43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27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시간은 52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오늘날 이탈리아의 여성은 1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3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2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8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이탈리아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까지 거의 3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 또한 심각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8%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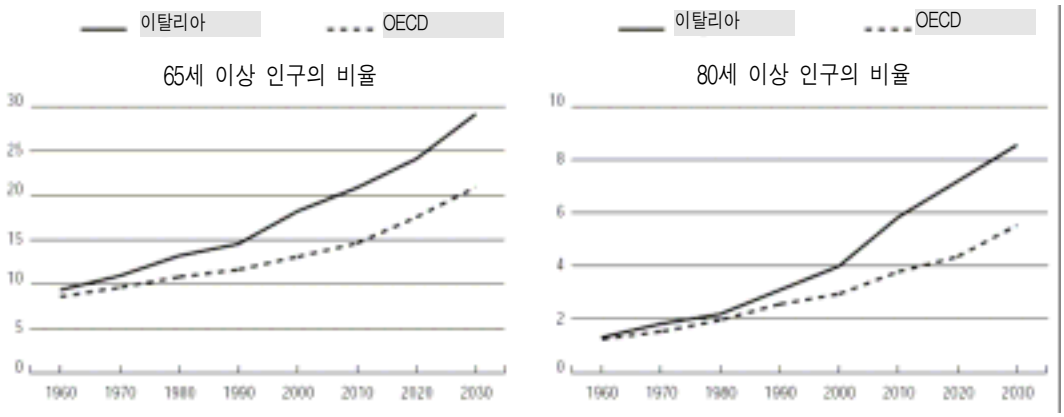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

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이탈리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2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1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은 고령화 압력

만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OECD 평균보다 높아 지고,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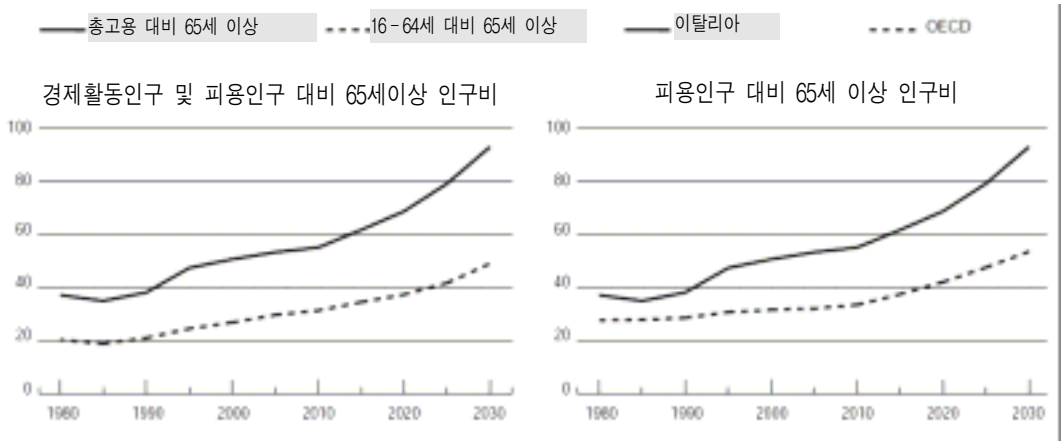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36%의 이탈리아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38%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31%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2030년에 43%)보다 훨씬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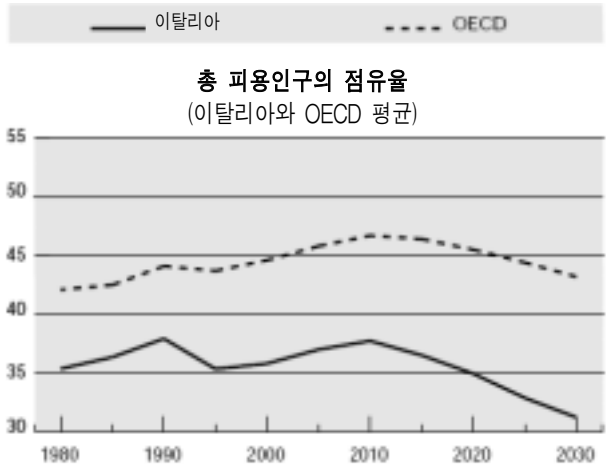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이탈리아와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는 사용된 예들 중 하나였다.

일 본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일본에서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 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6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일본 여성은 22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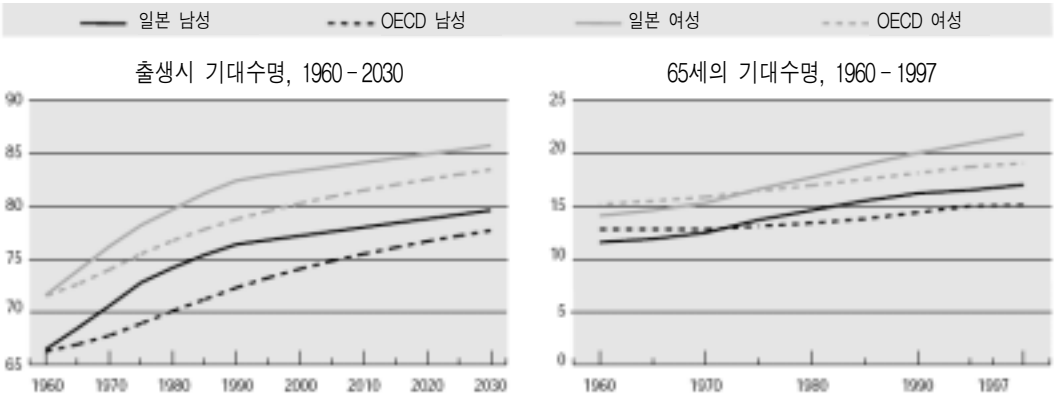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일본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OECD의 평균적인 패턴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아니다. 남성의 평균 고용연수 기대는 감소하지 않았고, 향후 오랫동안 비고용 기간보다 더 길 것이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일본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46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1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같은 햇수만큼(47년) 고용될 것 같고, 그러나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시간은 33년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 오늘날 일본의 여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1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8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인구는 OECD 평균 보다 더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일본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6%로부터 오늘날 약 1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7%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10%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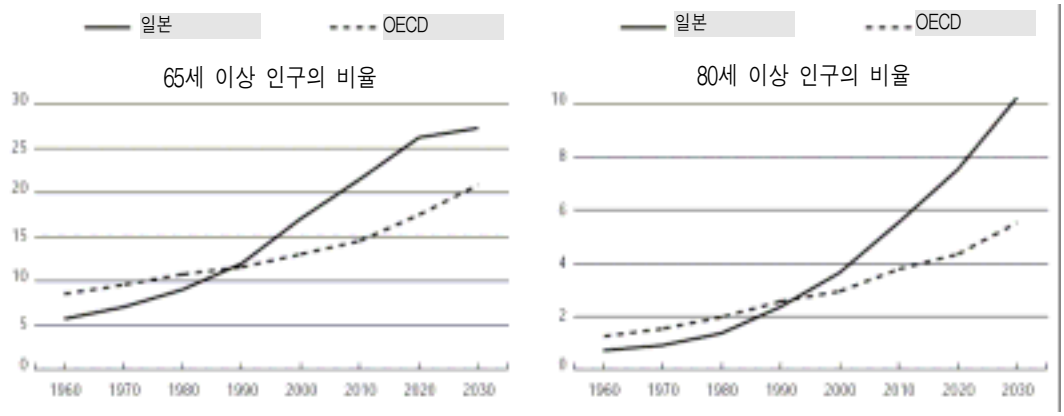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일본에서 증가율이 낮아질 2020년까지 매우 급작스럽게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년 이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다 높은 고령화 압력 예상

기본적으로 일본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른쪽 밑의 차트는 일본에서의 비율이 여전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한편, 2030년 이후에는 흡사해 질 것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경에는 일본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비슷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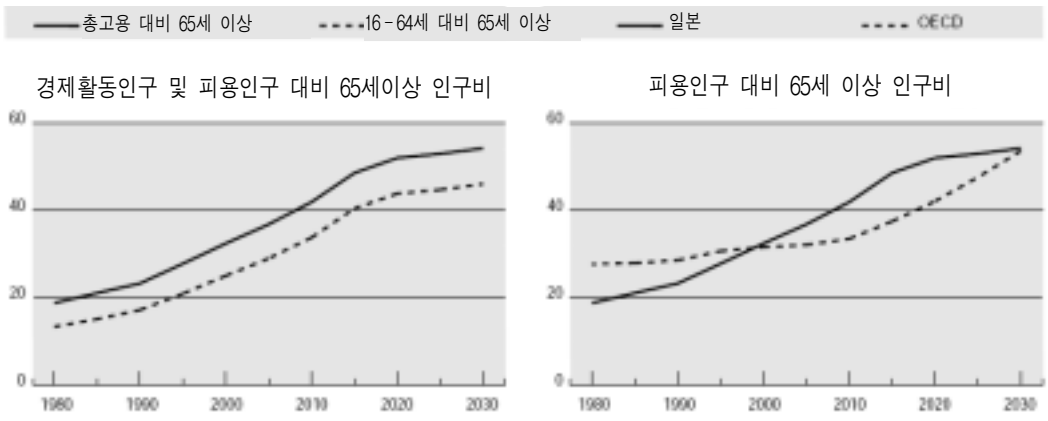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53%의 일본 인구가 오늘날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정점에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30년까지 50%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다.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본은 사용된 예들 중 하나이다.

한 국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4세, 여성은 57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1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한국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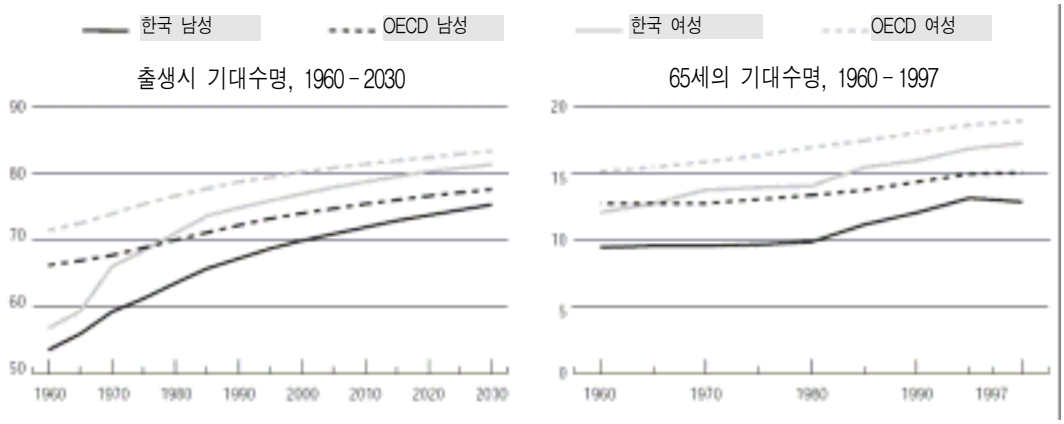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과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비슷하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과 일본의 중간쯤 되는 패턴을 보인다. 인생에서 근로로 보내는 기대 햇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한국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43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2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42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4년으로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 오늘날 한국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6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6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그러나 OECD 평균보다 아직 상당히 젊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수십년 전에는 OECD 평균 보다 젊은 나라였는데, 그 차이를 줄이면서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3%로부터 오늘날 약 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8%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은 더 심각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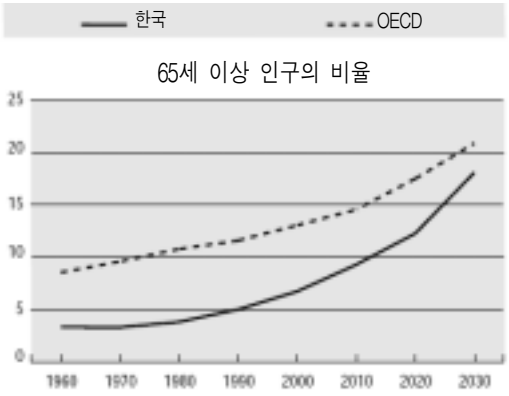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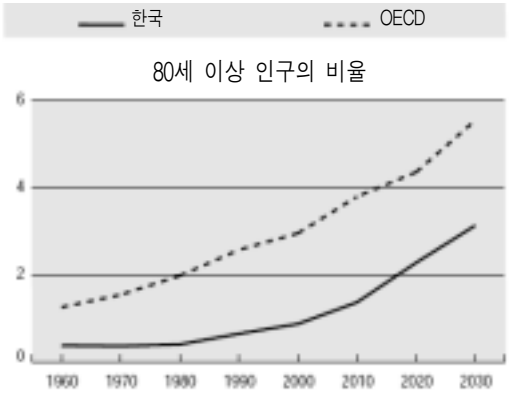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한국에서 2010년 이후 더 빠르게,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7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3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낮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한국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낮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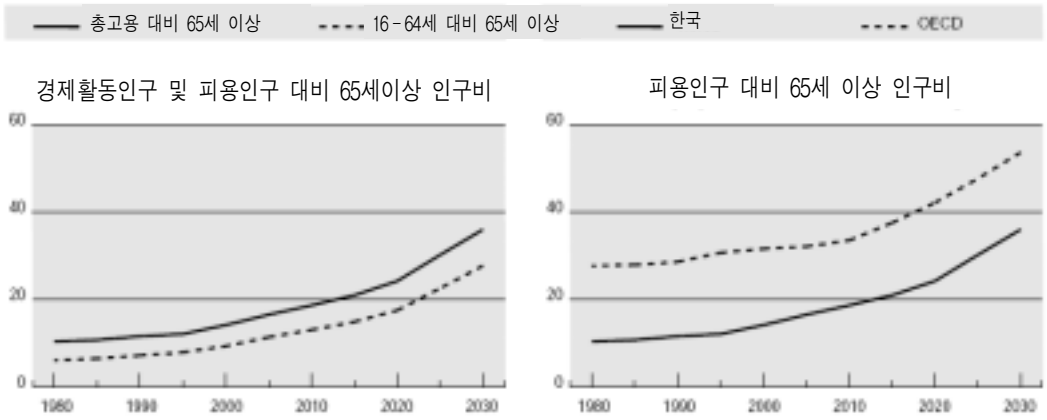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8%의 한국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곧 50%에 이르고 유지될 것이다. 2030년에 50%에 이를 것인데,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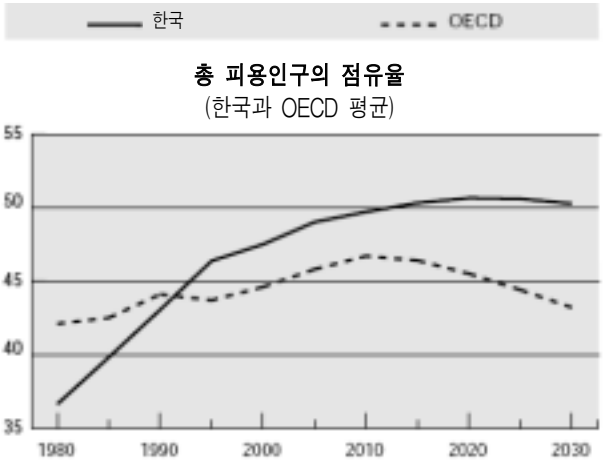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한국과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룩셈부르크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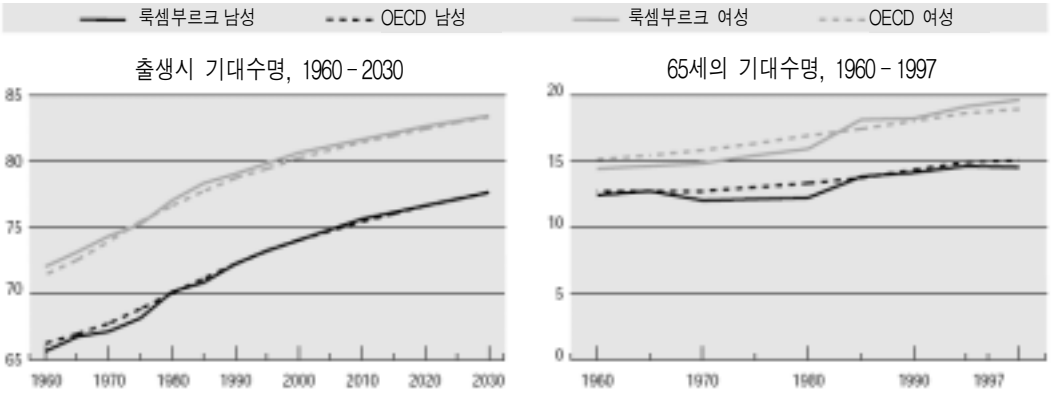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근로에서의 삶과 근로 밖에서의 삶의 기간이 같은 지점을 1990년대 초반에 도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OECD 평균과 비슷하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룩셈부르크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하인 3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30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룩셈부르크의 여성은 2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0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덜 고령화하였고, OECD 평균율로 성장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1%로부터 오늘날 약 14%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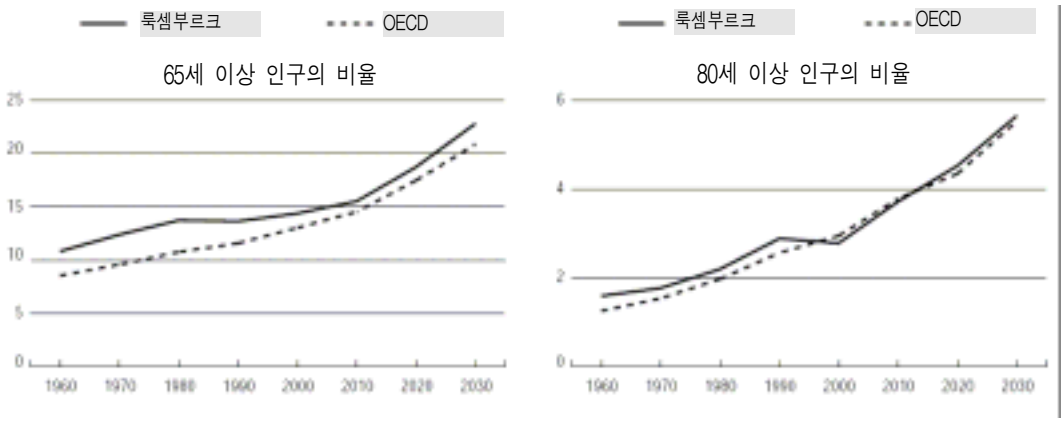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룩셈부르크에서 특히 2010년 이후,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1명의 노인 당 약 2.5명 보다 약간 많은 근로자가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약간 높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룩셈부르크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조금 높고, 앞으로 같은 비율로 변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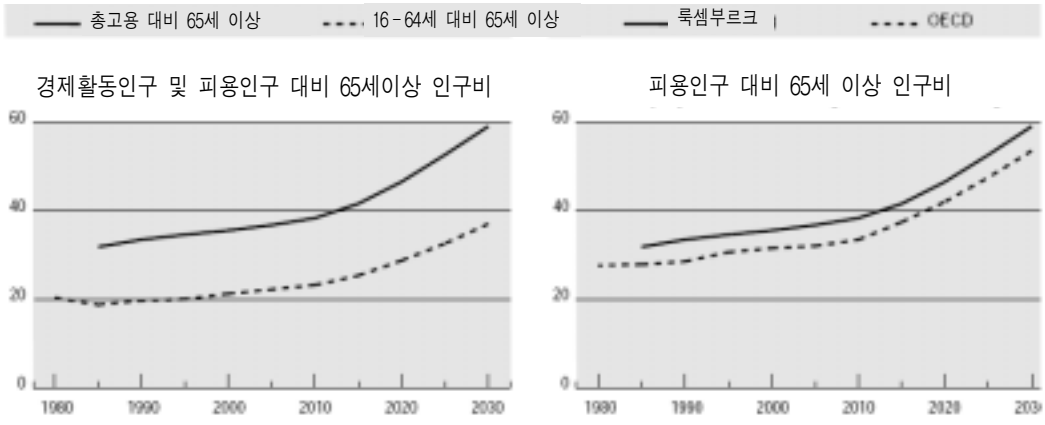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0%의 룩셈부르크 인구가 고용되어 있고,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꽤 일정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지 39%가 고용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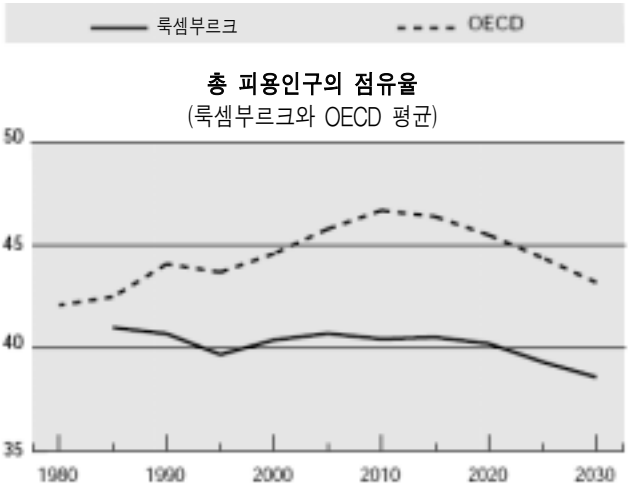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멕시코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현재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따라잡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6세, 여성은 6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1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멕시코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65세에 수명 기대 수치는 OECD 평균에 근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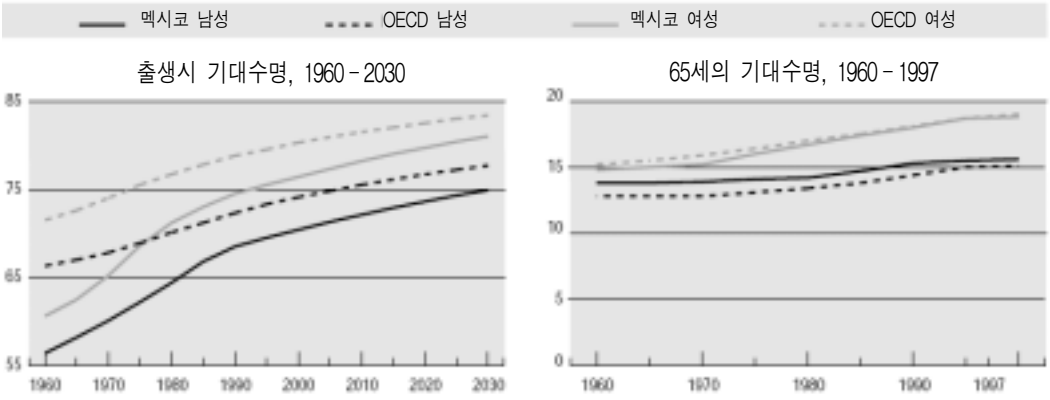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멕시코에서의 상황은, 남성 근로 햇수가 높아지고 있고 감소율이 적다는 점에서 OECD 와 다르다. 현 보고서가 예측하고 있는 기간 내에 교차지점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여성이 고용으로 보내는 햇수는 OECD 평균보다 늘 낮았다.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멕시코 남성은 51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2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45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5년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멕시코의 여성은 23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4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젊지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출산율 저하가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다.

멕시코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5%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임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1%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수는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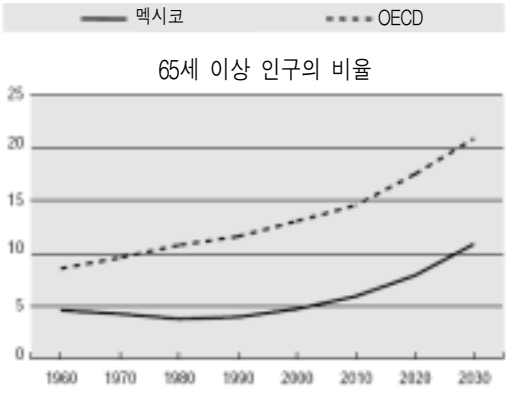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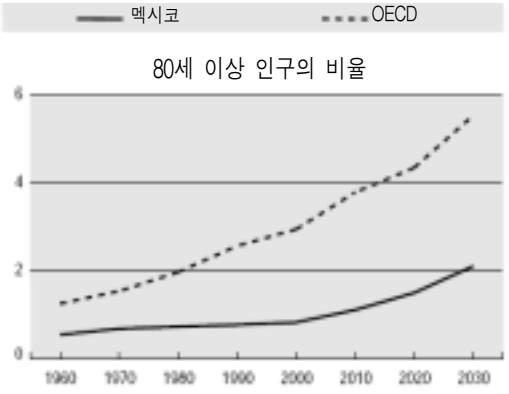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이하이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멕시코에서 약 2010년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8명 이상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단지 4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차트는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은 압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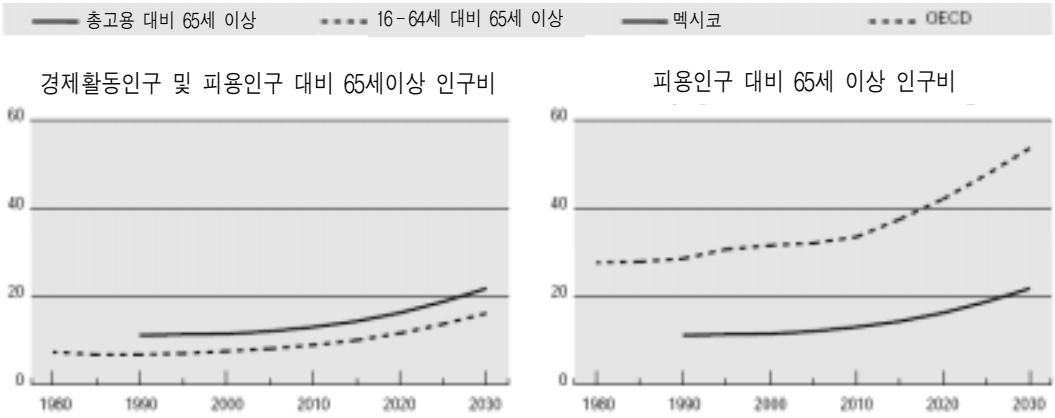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1%의 멕시코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그것은 예측 기간 동안 줄곧 성장하여 2030년에 50%에 이를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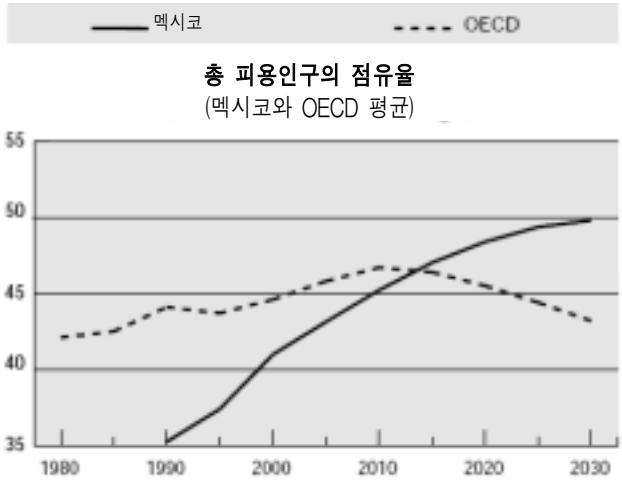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멕시코와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멕시코의 경우엔, 예측을 하는데 기초적인 시계열 자료가 제한되었고, 그래서 예시된 수치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네덜란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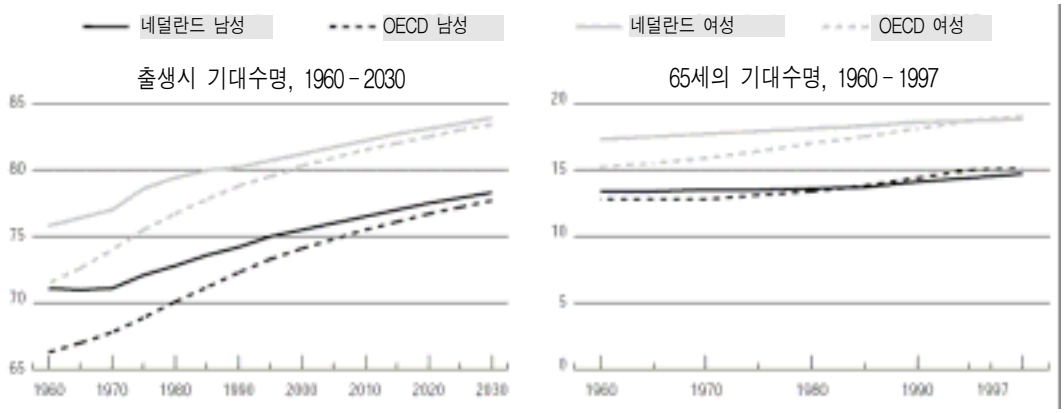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네덜란드의 상황은, 남성을 덜 고용하려는 경향이 이미 역전되었고, 여성 고용의 성장이 OECD 평균 보다 높다는 점에서 OECD 평균과 꽤 다르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네덜란드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4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6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증가한 4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4년으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네덜란드의 여성은 2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3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1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2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는 본 보고서가 예측기간으로 삼고 있는 기간 내에 교차지점에 도달할 지 모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비록 2010년 이후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지만, 네덜란드의 인구는 약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령화하고 있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4%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6%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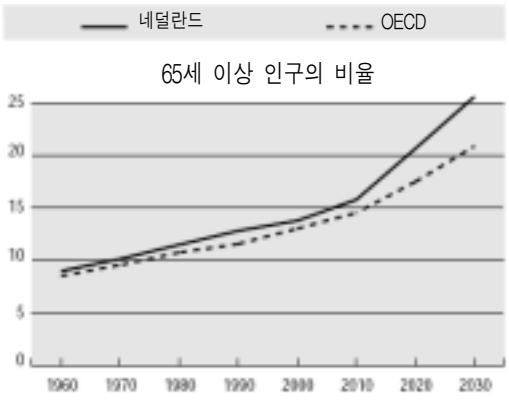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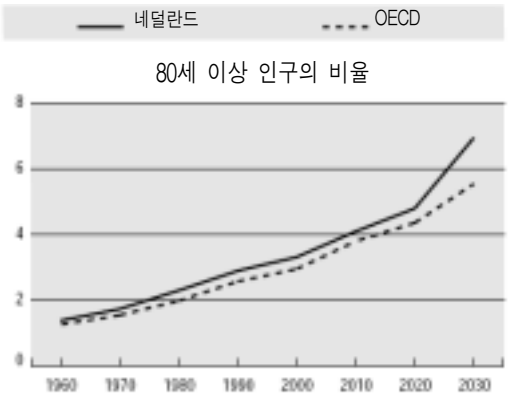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네덜란드에서 약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수를 고려한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낮은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의 비율은OECD 국가보다 조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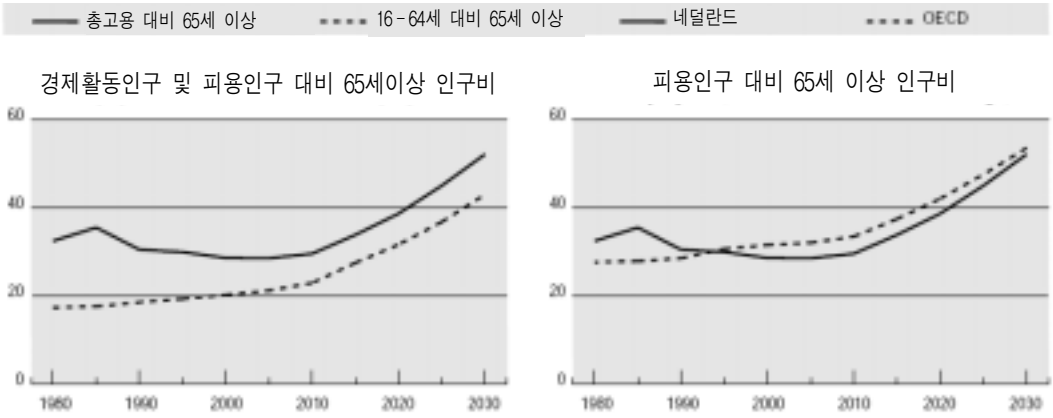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8%의 네덜란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5년에 54%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9%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높다.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예로 사용된 것이다. 위의 예측은 최근 성과가 매우 좋은 네덜란드 노동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뉴질랜드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뉴질랜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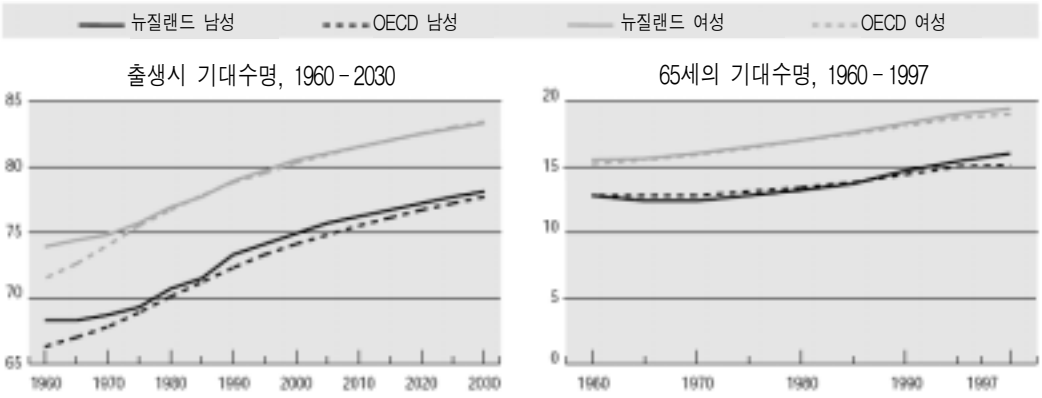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여성의 경우 고용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뉴질랜드 남성은 그들 기대 수명의 절반보다 조금 긴 39년 동안 고용되고, 36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5년 미만을 고용상태로, 반면 43년 이상을 비고용 상태로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 오늘날 뉴질랜드의 여성은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7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뉴질랜드는, 여성의 교차점이 본 보고서의 예측기간 내에 도달할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뉴질랜드는 OECD 평균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더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1%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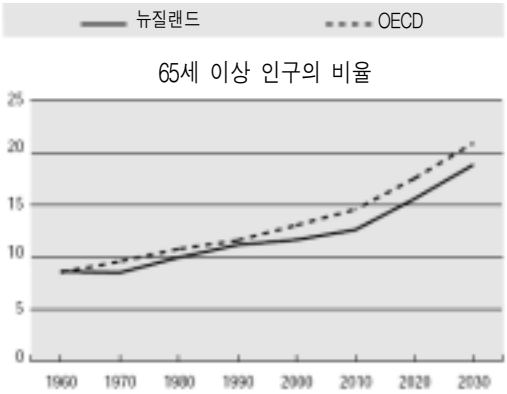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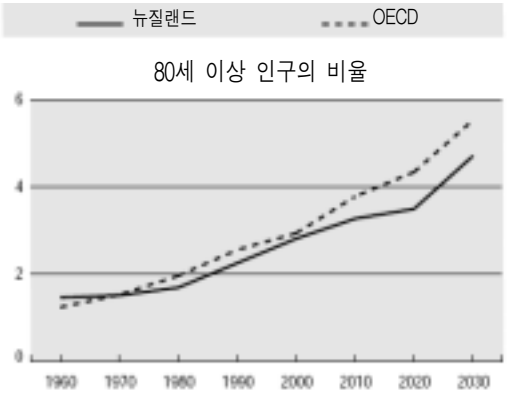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꽤 일정했지만, 2010년 이후 좀 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두 선은 2010년 이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4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낮은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전망이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는 뉴질랜드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낮고 2010년 이후의 증가율도 또한 조금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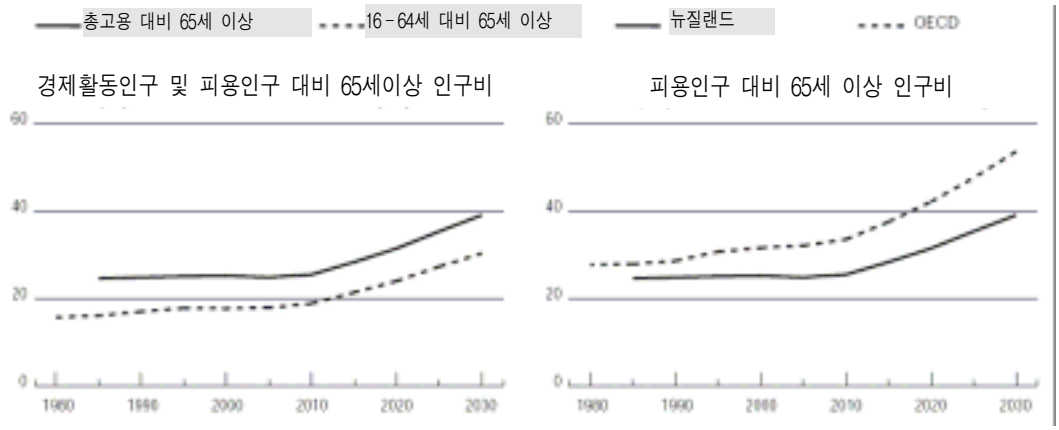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6%의 뉴질랜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50%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8%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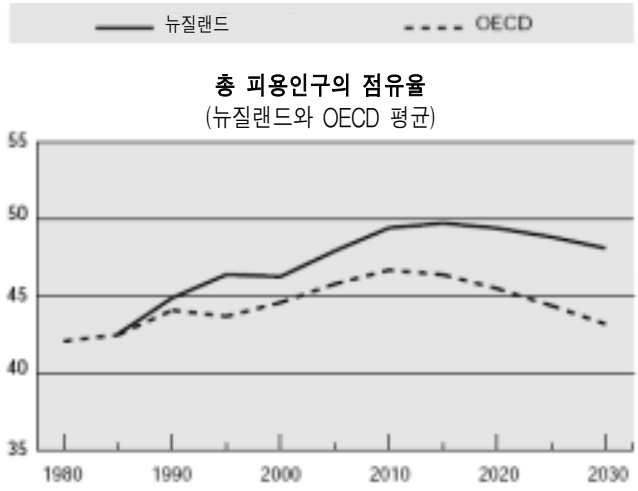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뉴질랜드와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노르웨이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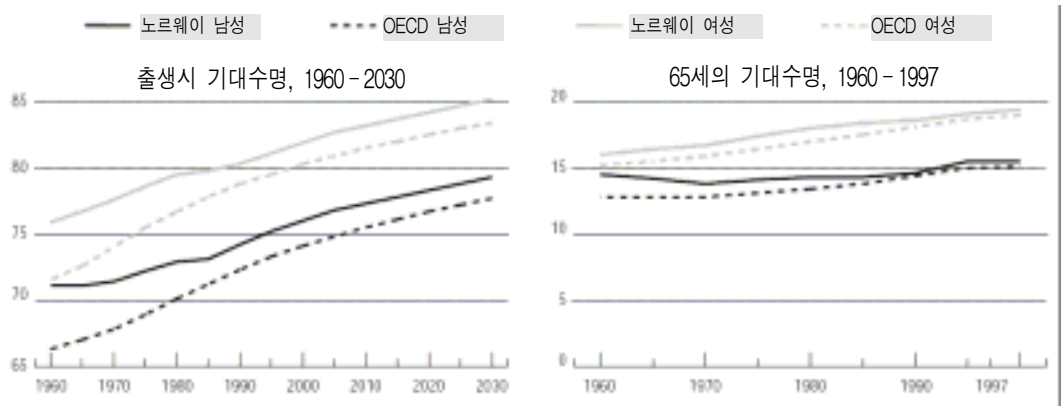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의 상황은, 여성의 고용율이 빠르게 성장하고, 남성의 고용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OECD 평균과 비슷하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노르웨이 남성은 4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1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41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8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 오늘날 노르웨이의 여성은 3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2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6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노르웨이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1%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 .5 %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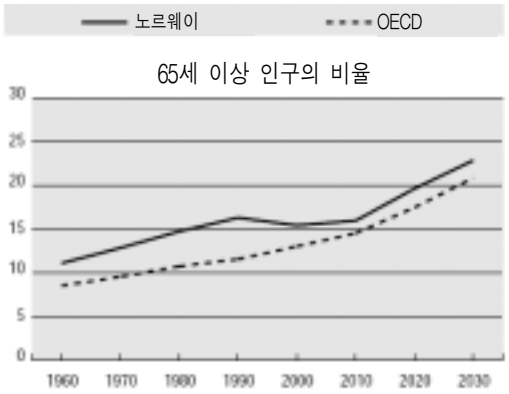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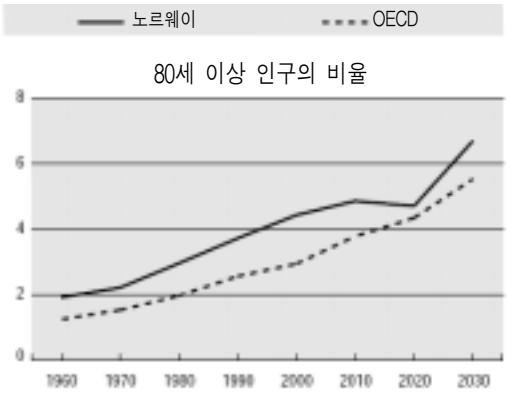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노르웨이에서 약 2005년 이후 특히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낮은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예정이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는 노르웨이에서의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보다 낮고 2010년 이후 증가율 역시 느릴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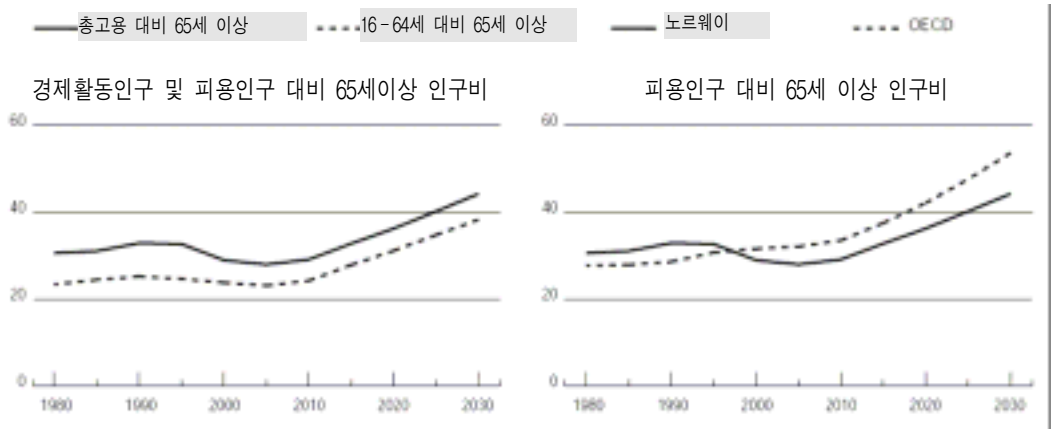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53%의 노르웨이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55%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올 것 같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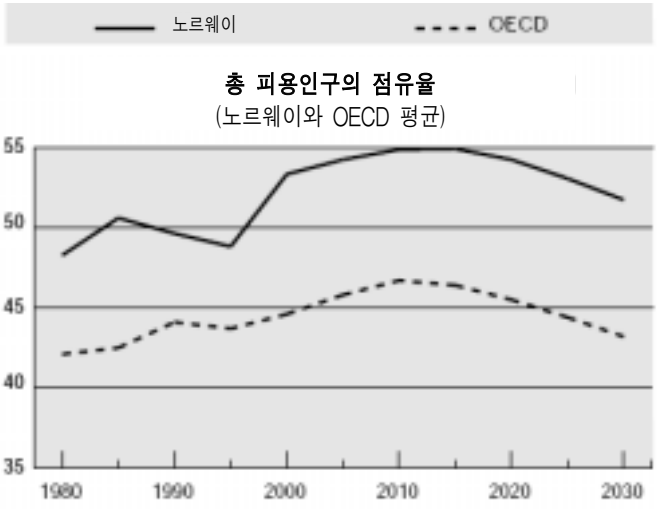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폴란드

개인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다소 아래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2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폴란드 여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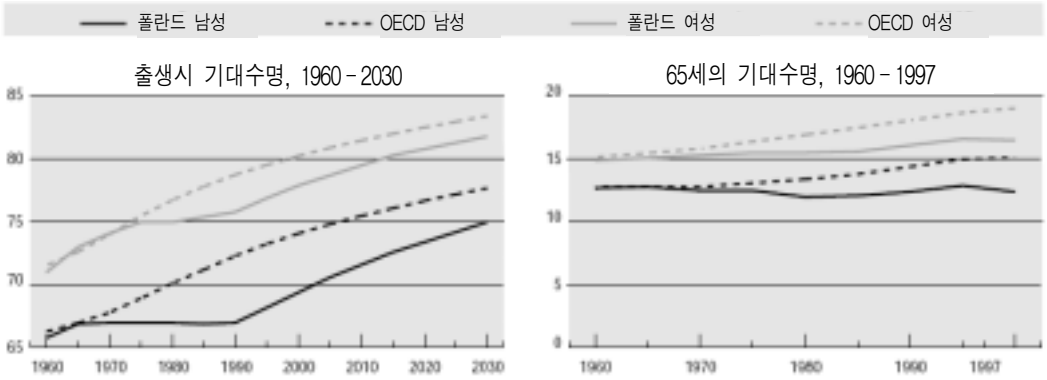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폴란드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고용율이 낮고, 여성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상승률이 낮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다. 불행하게도,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법은 데이터가 제한된 폴란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폴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폴란드 인구는 대강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6%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4.5 %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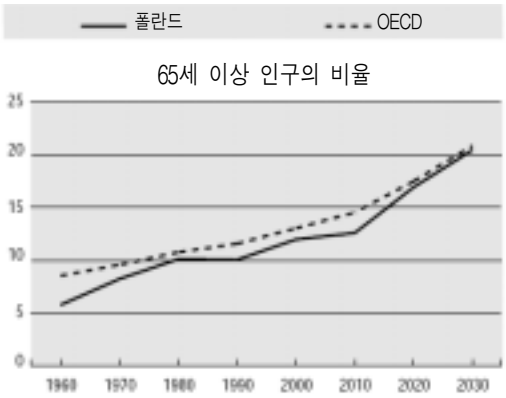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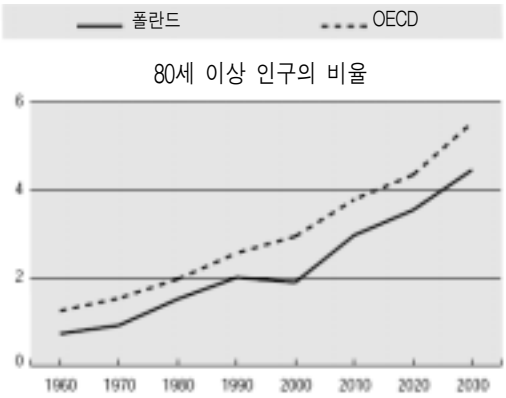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폴란드에서 약 2010년 이후 꽤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는데,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오늘날 3.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헝가리의 예측은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폴란드에서의 비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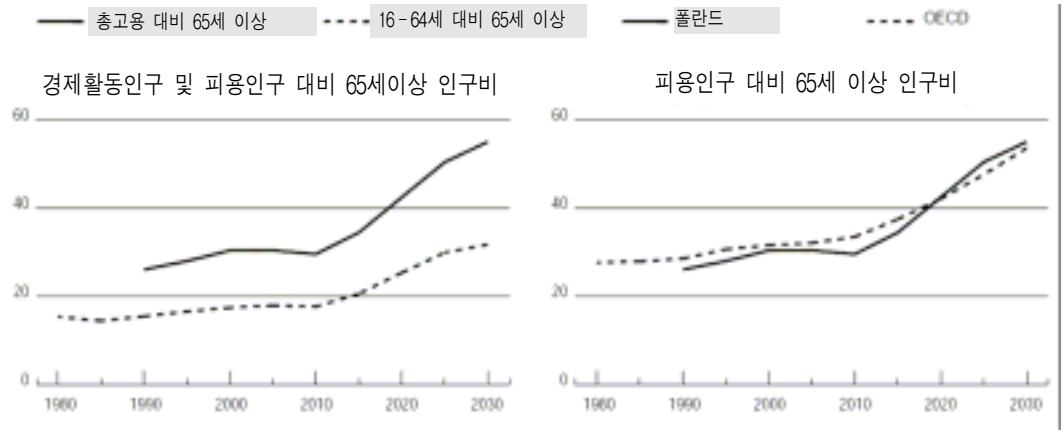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39%의 폴란드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43%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37%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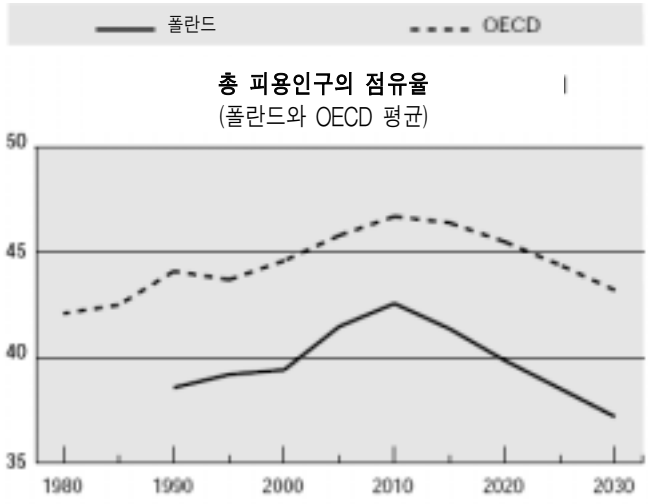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측에 쓰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폴란드의 경우에, 해석 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낮았으나, 꾸준히 높아져 지금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1세, 여성은 67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포르투갈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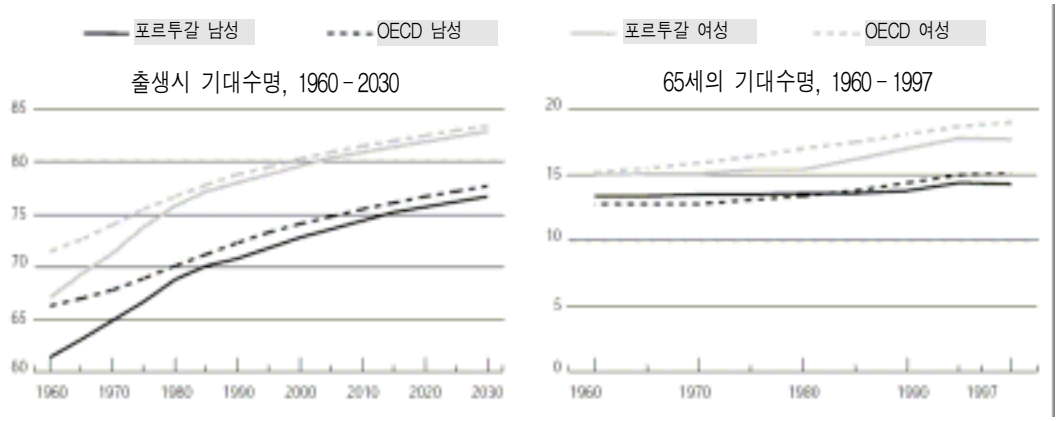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포르투갈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3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4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3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 포르투갈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9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4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포르투갈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포르투갈 인구는 OECD 평균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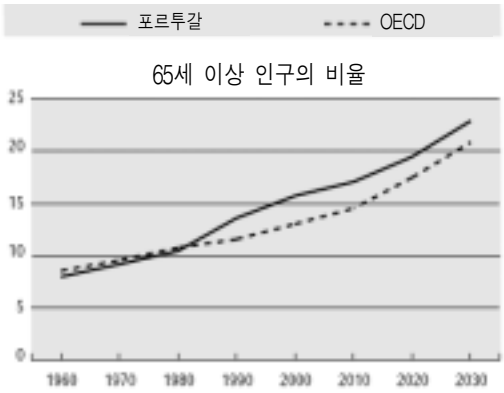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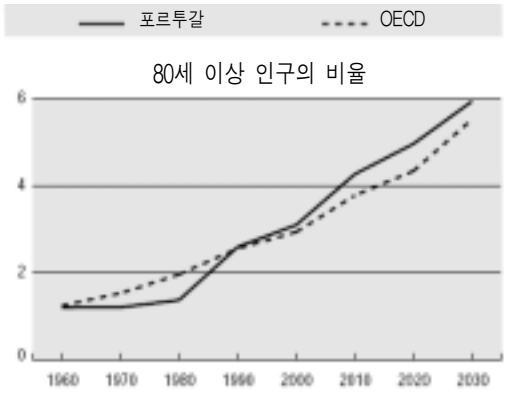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

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포르투갈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포르투갈의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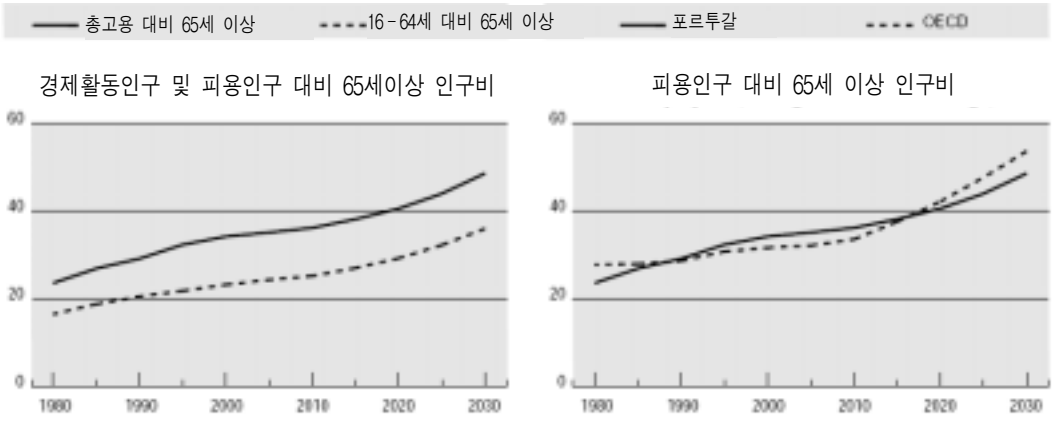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6%의 포르투갈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20년에 58%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7%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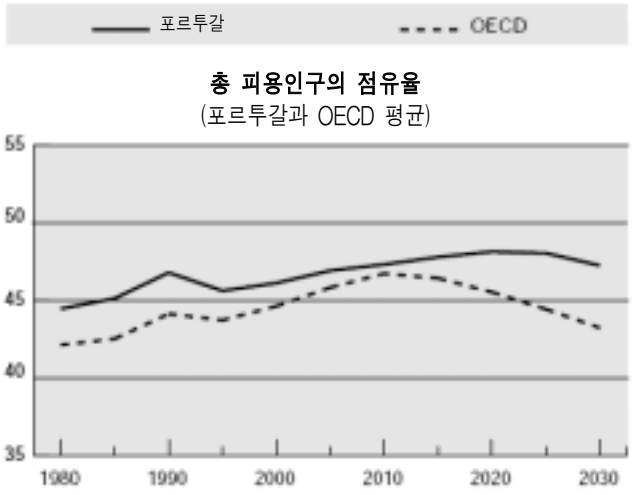

총 피용인구의 점유율
(포르투갈과 OECD 평균)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스페인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페인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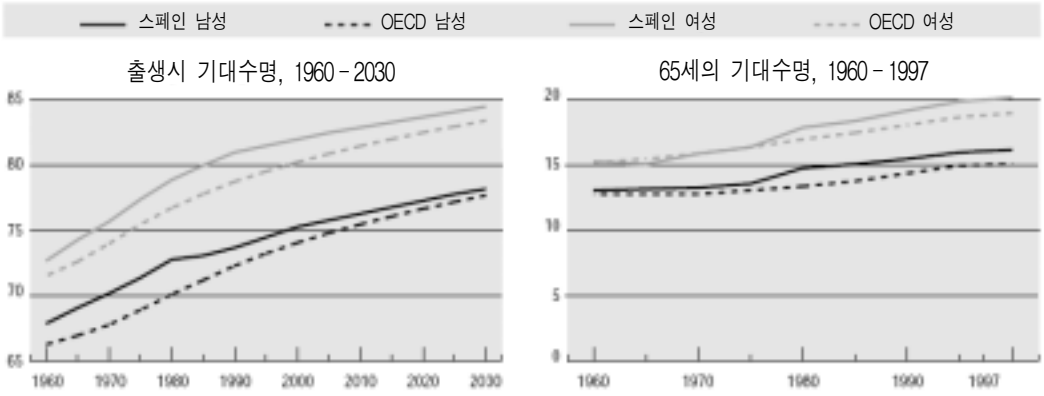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스페인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교차점을 이미 10년 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OECD 와 비슷하다. 여성의 고용수준은 과거에는 낮았지만, 예측 기간 끝에 가면 OECD 평균을 따라 잡을 것으로 보인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스페인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이 안 되는 33년 동안 고용되고 42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 오늘날 스페인의 여성은 1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4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4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1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스페인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페인 인구는 - OECD 평균보다 다소 빠르게 —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6%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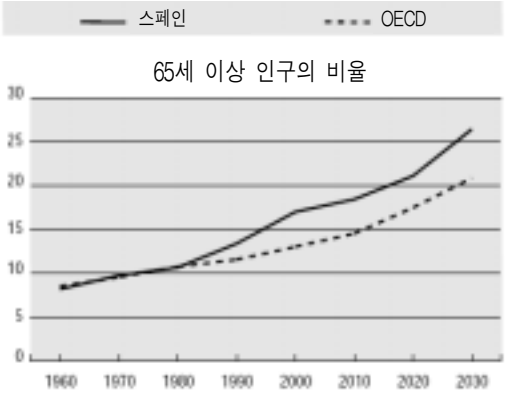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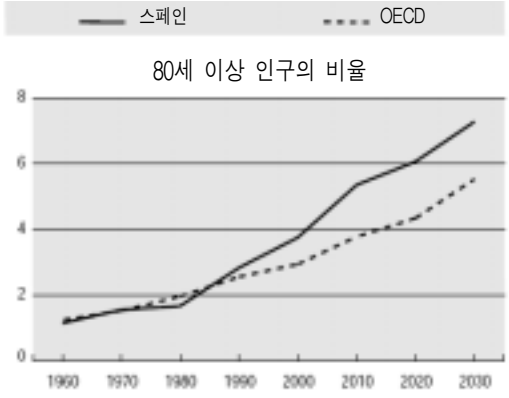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스페인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꽤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 이는 최근에 보다 심화된 압력을 보여준다. 오늘날 2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큰 고령화 압력

오른쪽의 차트는, OECD 평균보다 스페인의 인구학적 압력이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압력은 미래 시나리오의 가정에서는 줄어들며, 많은 다른 OECD 국가에서 발견되는 정도로 2010년 이후 다시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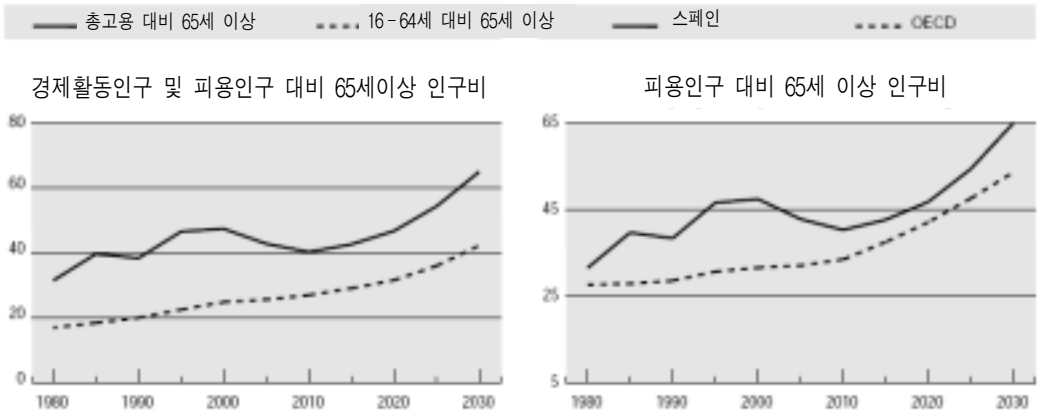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36%의 스페인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되고(이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진 실업 감소의 가정이 옳다면) 그 수는 2015년에 46%로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1%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조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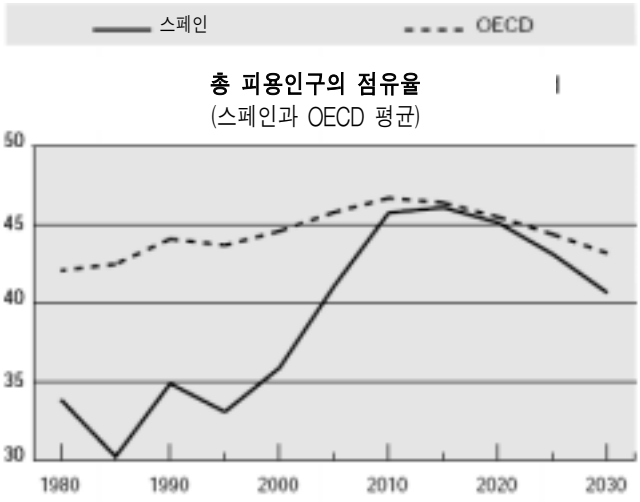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행동의 가능한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스웨덴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2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웨덴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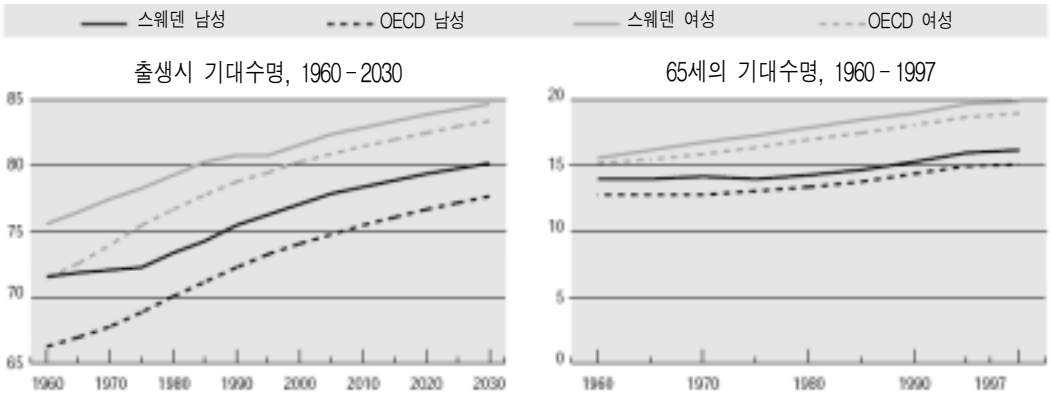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근처이다. 여성의 경우 역사적으로 평균 근로 년수가 높은 패턴이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199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스웨덴 남성은 기대수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간인 37년 동안 고용되고 4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다소 적은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스웨덴의 여성은 3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6년으로 조금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스웨덴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웨덴의 인구는 고령화 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8.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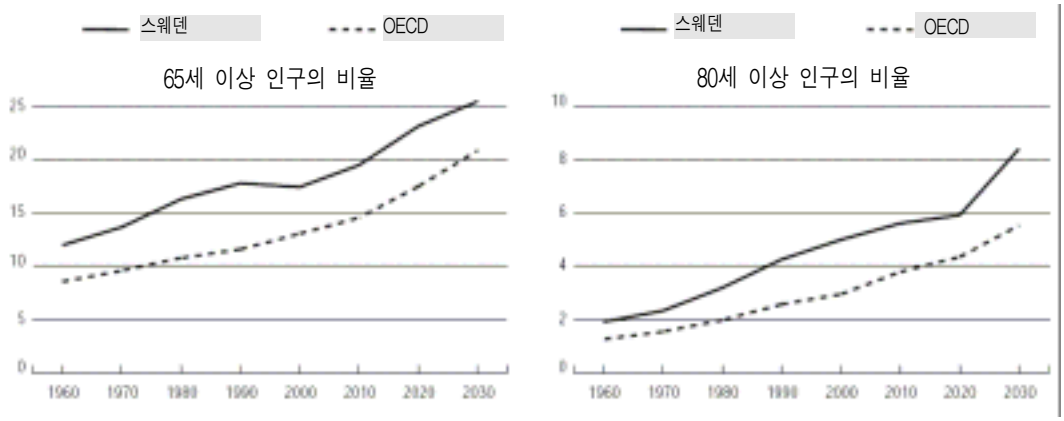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스웨덴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꾸준히 증가했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측정치 보다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 오늘날 2.5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1.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높은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스웨덴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높고,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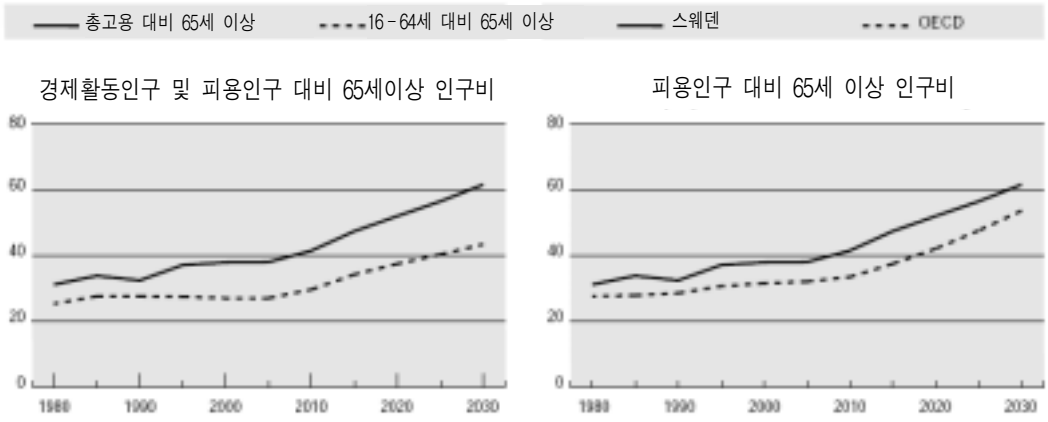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6%의 스웨덴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30년 경에는 약 41%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조금 낮다. 그러나 이 예측하에서 만들어진 가정은 스웨덴의 경우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이 예측은 1990년대 중반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스웨덴의 실업 상태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한편 표시된 그림은 OECD 평균과 그리 동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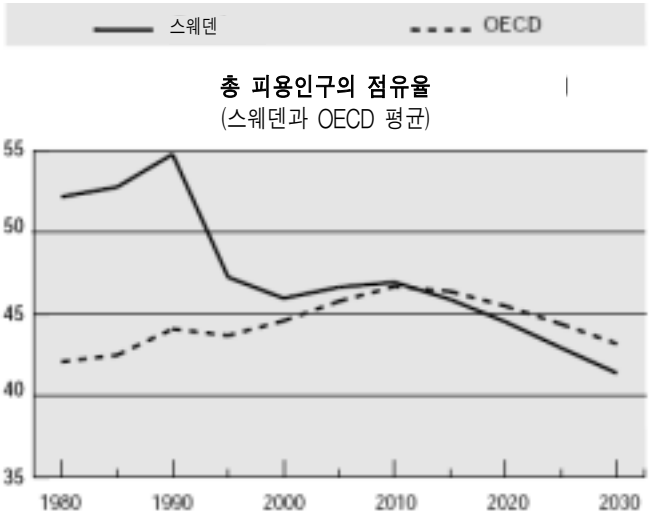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사용된 하나의 예이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스위스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9세, 여성은 75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위스 여성은 21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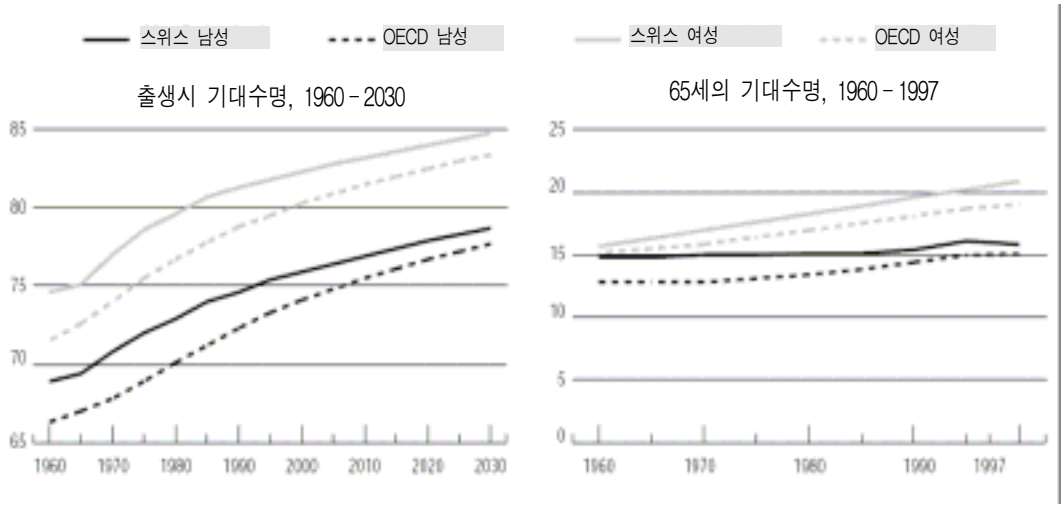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불행하게도, 스위스의 관련 데이터는 설득력 있는 예측치를 얻기에는 너무 최근 자료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노동 시장 여건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보다 고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스위스의 인구는 고령화 할 것이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위스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더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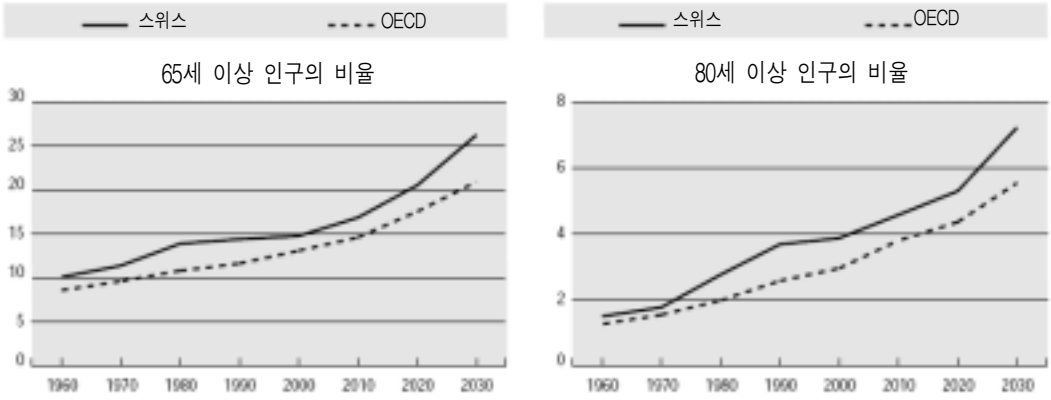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스위스에서 이 기간을 통

해서 그리고 2010년 이후 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4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2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것이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는 스위스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 비슷한 비율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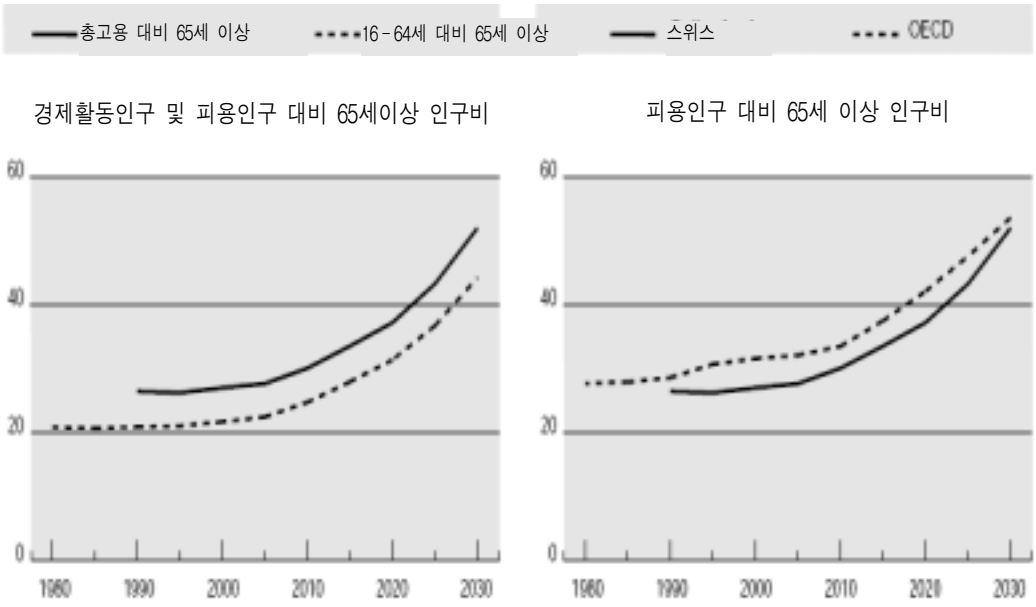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55%의 스위스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30년까지 50%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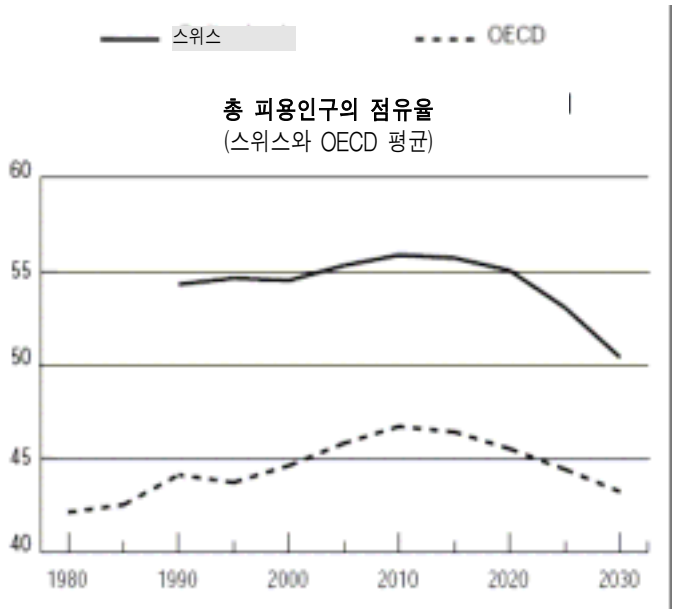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터 키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터키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1세, 여성은 5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4세와 79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터키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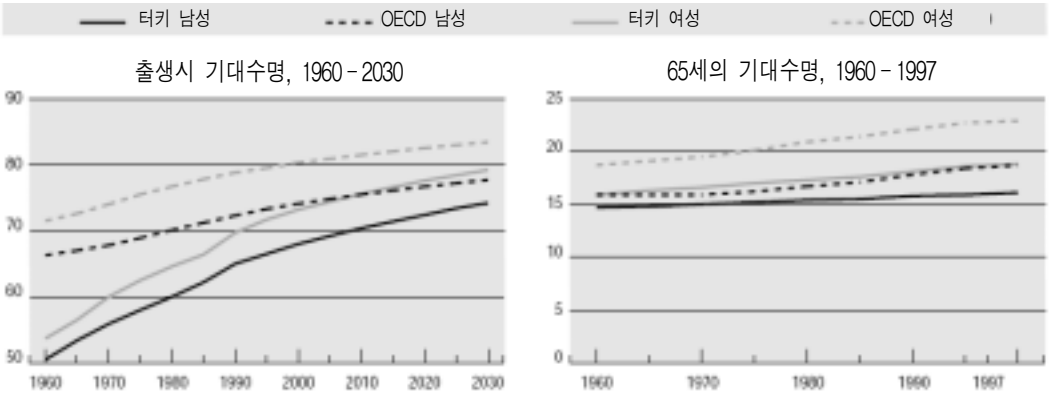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터키에서의 상황은, 짧은 수명 때문에 남성이 고용 외에 보내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다. 여성의 고용율 역시 상당히 낮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터키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인 41년 동안 고용되고 28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1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터키의 여성은 15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현재 추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 63년 동안 비고용 상태로 지낼 것이다.

터키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터키의 인구는 고령화할 것이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젊게 남아 있을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4%로부터 오늘날 약 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1%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은 매우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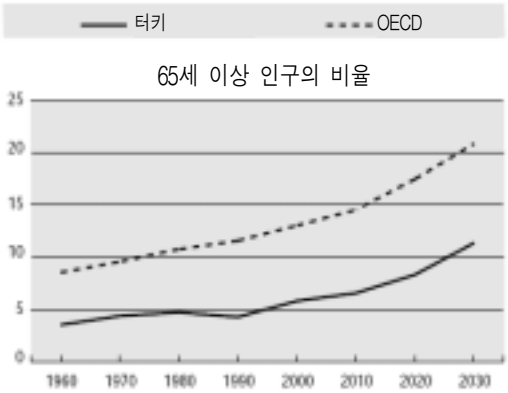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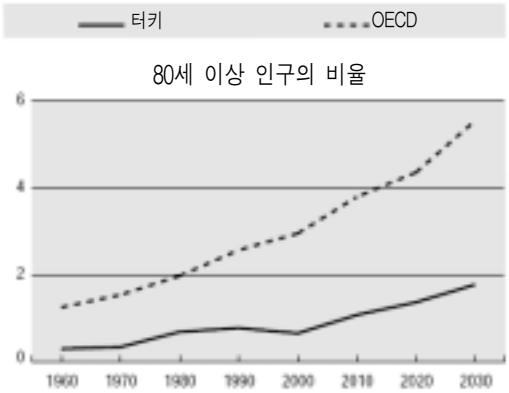

결국,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터키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고, 2010년 이후 조금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4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5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낮은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것이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에 따르면 터키에서의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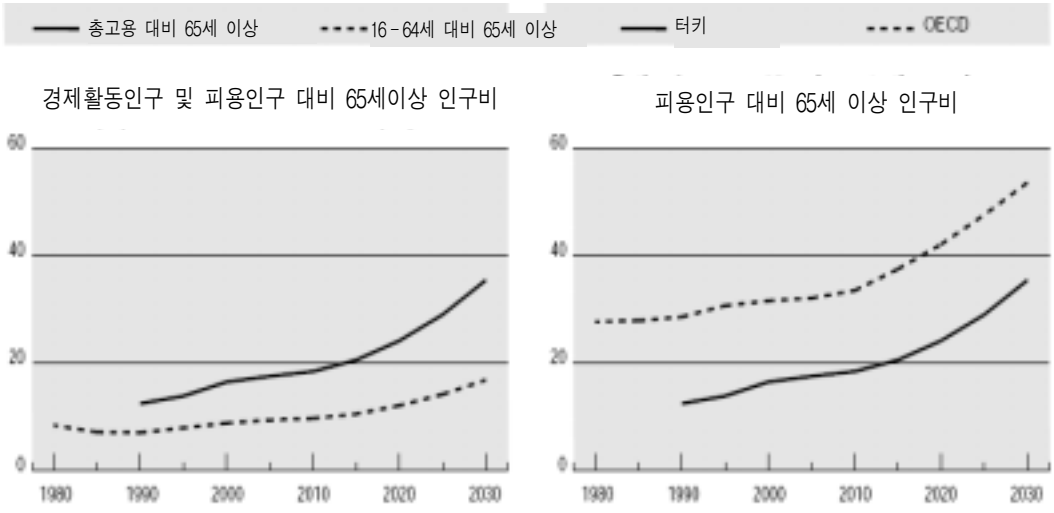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35%의 터키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수십년 동안 일정할 것이며, 이후 32%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상당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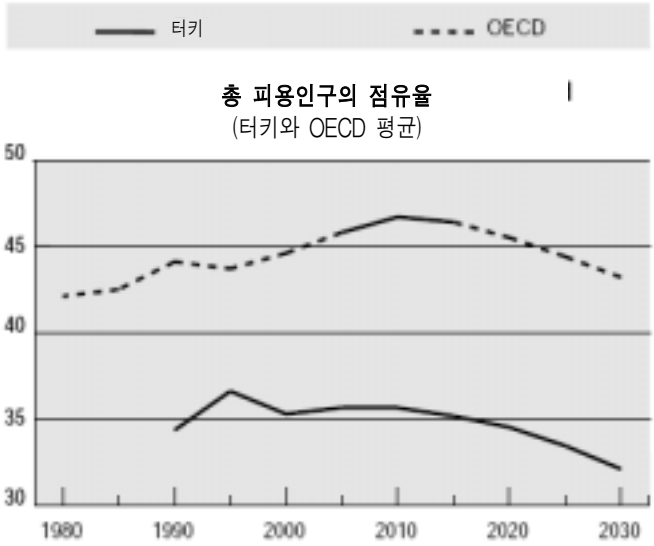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영 국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영국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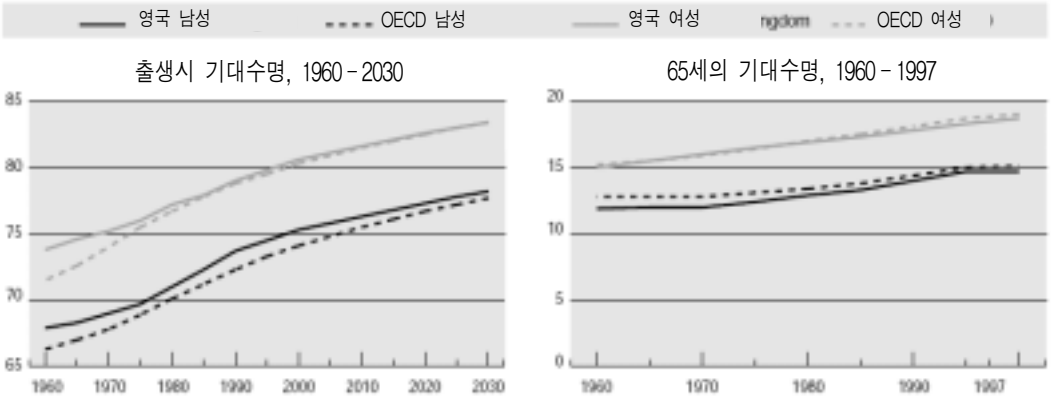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영국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영국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38년—고용되고 3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날 영국의 여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 .5 %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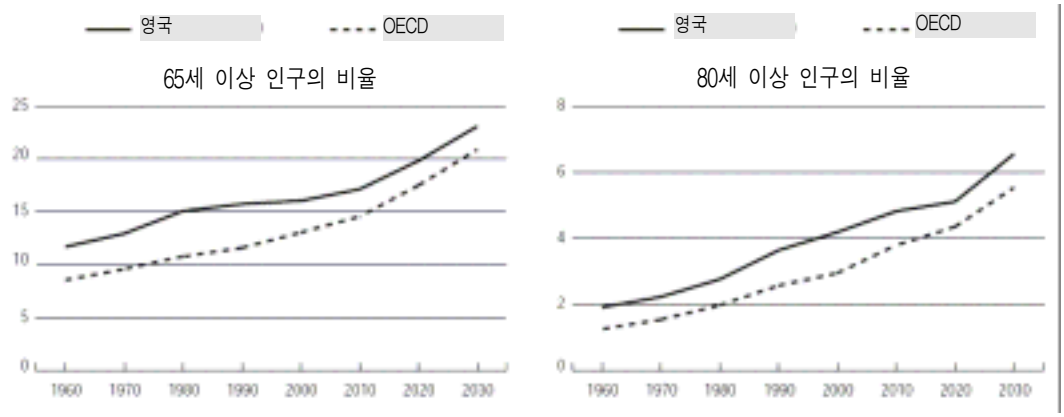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

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영국에서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조정치는 위의 선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측정결과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단지 약 2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평균 정도의 고령화 압력

오른쪽 밑의 차트는 영국에서의 비율이 현재는 OECD 국가보다 높지만, 본 보고서가 사용한 예측 기간 끝에 가면 그 격차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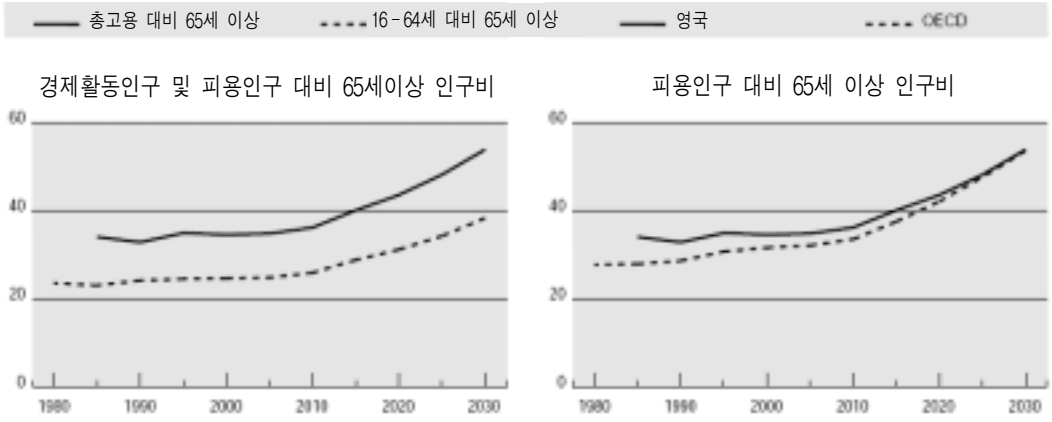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46%의 영국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에 정점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2030년까지 43%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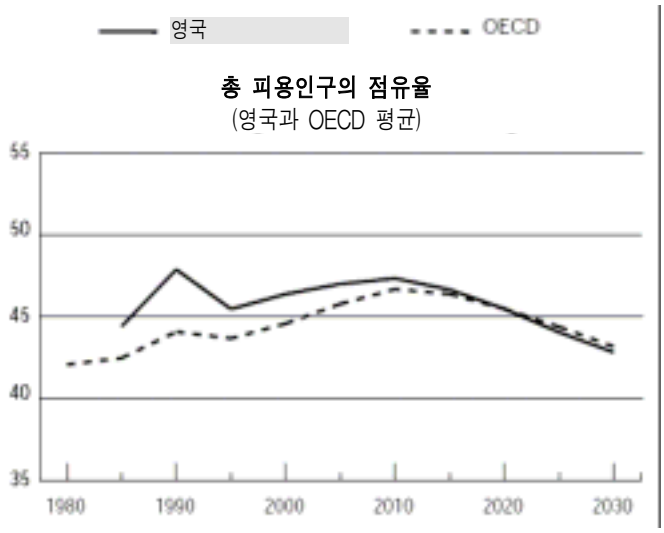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으며, 영국은 사용된 예들 중 하나였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이 미칠 영향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미 국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미국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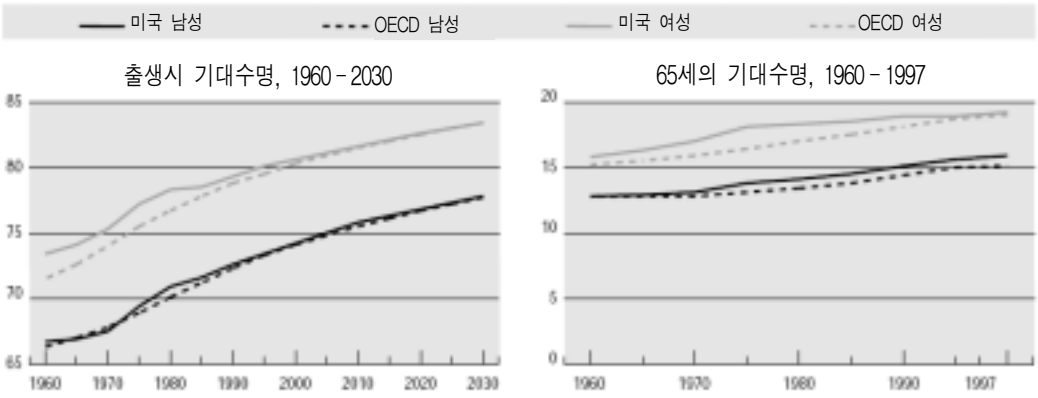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햇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햇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8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또한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미국의 상황은 남성의 근로 쇠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지만, 여성이 근로에서 보내는 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

○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미국 남성은 인생에서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2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의 고용은 많이 변화하지 않을 것—41년—이지만,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수명증가의 결과로 37년으로 상승할 것이다.

○ 오늘날 미국의 여성은 36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5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3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은 4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인구 역시 고령화하고 있다 - OECD 평균 수준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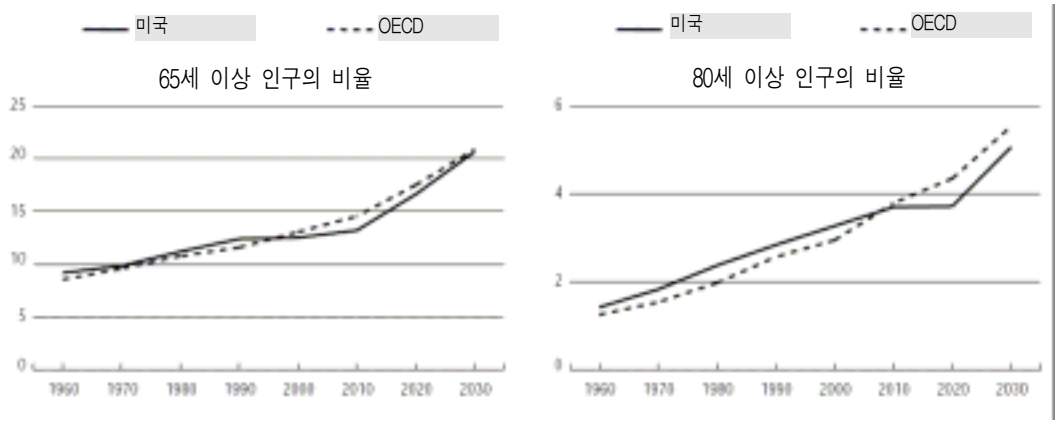

노인 의존율은 증가할 것이다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

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의 차트는 노인 의존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미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할 2010년까지 일정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 두 선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오늘날 4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거의 2.5 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조금 낮은 고령화 압력

의존율은 높아질 것이지만, 오른쪽 밑의 차트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증가율 역시 덜 급속할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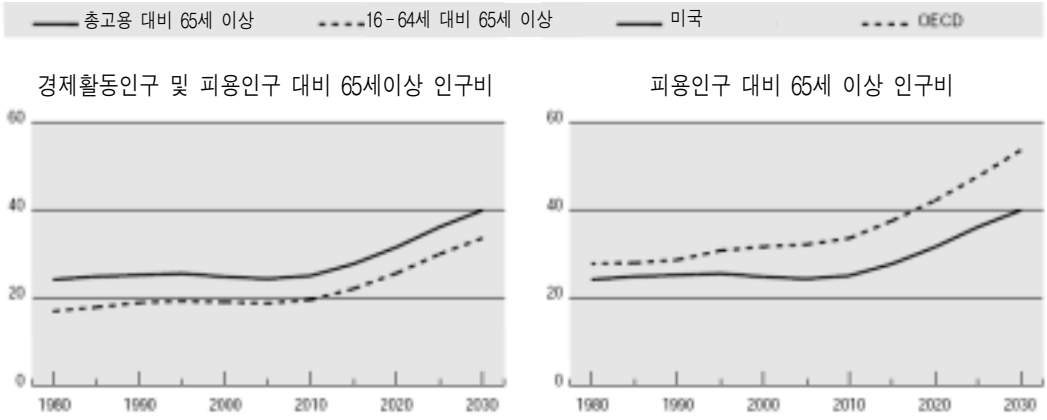

10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와 노동 시장 추세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고용된 인구집단의 변화하는 비율—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생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50%의 미국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2010년까지 조금 증가하고 2030년까지 52%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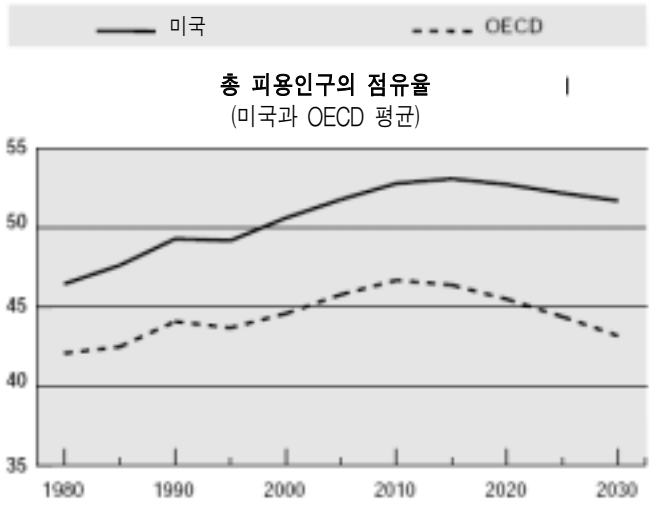

물론, 반드시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는 고용상태로 소요하는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10장에서 논의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부록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제시된 결과는 미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지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 본 번역서는 내부 자료용으로 번역된 것이며,
요약본은 위원회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정책 개혁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Social Issues-
OECD 2000

2006년 2 월 발행

발행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 (Tel 2110-6428 Fax 503-7130)

편집·인쇄/(주)이문기업 504-1600 〈비매품〉